



# 소액결제시장 변화에 따른 법제 대응방안 연구

김명아



# 소액결제시장 변화에 따른 법제 대응방안 연구

A Study of Legal Countermeasures due to Change  
in the Retail Payment Market

연구책임자 : 김명아(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Kim, Myoung-Ah

2020. 10. 31.



## 연구진

연구책임	김명아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심의위원	정 대	교수(해양대학교)	
	한정미	선임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박기령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장원규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연구감리	강현철	선임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원고자문	김성천	전문위원(前 한국소비자원)	
	고재종	교수(선문대학교)	
연구보조원	양승일	연구원(JAIST)	
	윤창호	연구원(한국법제연구원)	



## 요 약 문

### I. 배경 및 목적

- 최근 핀테크 분야의 다양한 기술과 서비스의 등장으로 지급결제 방식에도 많은 변화를 겪고 있음
  - 미리 등록한 지급결제 수단을 통하여 자동으로 계산되는 무인편의점의 등장이나 신용카드 실물 없이도 모바일카드 등록을 통해 이루어지는 다양한 간편결제, 각종 인터넷·쇼핑 플랫폼에서 선불충전방식으로 이루어지는 페이 등 지급결제 분야에서 소비자의 편리성과 선택권이 확대되고 있음
- 인터넷의 발달과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전자상거래가 일상화되고, 간편결제·간편송금 지급수단이 보편화되면서 소액결제시장은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음
  - 최근의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 거래가 급증하는 한편, 온라인플랫폼이나 APP에 기반한 다양한 방식의 지급결제수단이 등장하는가 하면, 지급결제플랫폼이 대형화되면서 새로운 유형의 FinTech 서비스나 금융상품이 출시되기도 함
  - 지급수단 다양화나 지급결제 방식의 디지털화, 지급수단의 모바일화에 따라 간편결제는 더욱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새로운 유형의 지급결제수단이 등장하여 지급결제 수단이 다양화되면서 기존의 법제 적용만으로는 효과적인 관리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기도 함
  - 글로벌 핀테크의 30% 이상이 금융결제 분야에 집중되어 있으며,페이팔·알리바바·레볼루트 등 해외 주요 핀테크기업도 금융결제를 기반으로 금융플랫폼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시장지배력 있는 기술기반의 BigTech 기업의 금융분야 진출도 확산되고 있음

- 소액결제시장에서의 변화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디지털금융 분야의 혁신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며, 이러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및 시행령, 감독규정 등에 대한 개정 논의도 활발하게 추진 중임
  - 2019년 2월 25일에는 이러한 지급결제 분야의 변화를 인지하고 핀테크 및 금융 플랫폼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방안」이 공개된 바 있음
  - 2020년 7월 26일에는 금융위원회가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을 공개하고, Small License 제도의 도입 및 종합지급결제업, 지급지시결제업 등을 도입하기로 하면서 전자금융거래법의 개정방향에 대하여서도 밝힌 바 있음
  - 이러한 금융위원회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방향에는 이용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 및 빅테크기업의 역외적용 등 다양한 내용의 규정을 도입할 것을 예고하고 있음

## II. 주요내용

### ▶ 본 연구에서는 소액결제시장의 변화 현황과 소액결제 지급수단 및 관련 지급결제서비스의 다양화에 따른 제도적·법리적 대응방안을 모색함

- 본 연구에서는 최근의 소액결제시장 변화에 따른 정부의 정책 추진 방향을 바탕으로, 금융결제 분야 건전성과 소액결제서비스의 이용자 편익과 보호를 최대로 고려하는 균형감있는 시각에서 소액결제 관련 법제 대응방안을 제시하도록 함
  - 우선 소액결제의 개념을 명확히 함으로써 법제 분석 대상 및 관련 법제의 분석 범위를 정하도록 함

- 각 장에서는 국내의 소액결제시장 변화와 이에 따른 정부의 금융결제 혁신 방안 추진 과정에서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이라는 측면과 지급결제 분야에서 주요하게 판단되어야 하는 금융안정성 내지 건전성, ICT 기반으로 하는 간편결제나 온라인·모바일 결제 분야로서의 보안성·안전성 문제, 그리고 사용자 편의 제고와 혁신성을 핵심으로 하는 기술혁신적 금융 서비스·상품의 최종 소비자 편의 평가, 이용자 및 금융소비자의 보호 및 지위 제고 등에 대하여 개선방안과 법제 대응방안을 제시함

**▶ 지급결제 수단은 디지털금융의 발전에 따라 간편송금·간편결제 지급수단이 보편화되고 있으며, COVID-19로 인한 비대면 거래 급증에 따라 소액결제시장이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어 소액결제의 개념 확정을 통한 관련 법제의 정비가 필요한 상황임**

- 최근 ‘소액결제(RPS: retail payment system)’ 시장이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지급결제수단이 등장하여 지급결제 수단이 다양화되면서 기존의 법제 적용만으로는 효과적인 관리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며, ‘소액결제’에 대한 일정한 개념의 확정이 필요함
- 기존에 ‘소액결제’의 개념은 보통 비은행기구가 은행에 소액결제(RPS: retail payment system)를 요청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개념으로 주로 이해되기도 하나, 최근에는 소비자가 상품 및 서비스를 소비함으로써 발생하는 거래관계에서 지급수단으로 사용하는 소액결제 방식이 ‘소액결제’로 통칭되면서 이러한 기존의 소액결제의 정의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액결제’의 개념을 각 경제주체의 경제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당사자간의 거래에서 채권·채무관계를 변제하기 위하여 행하는 일련의 지급행위와 이에 따른 은행·금융회사 간 청산(clearing)과 결제의 절차인 ‘지급결제(payment and settlement)’ 중, 보통 비은행기구가 은행에 소액결제를 요청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개념인 ‘소액결제(RPS: retail payment system)’로서의 “소비자의 상품·서비스 이용과 구매에 따른 지급수단으로서의 ‘소매(retail)’의 개념”으로 사용함
- 소액결제의 개념이 소매결제의 개념으로 이해되는 경우가 늘면서, 소액결제에 관한 정책을 담당하는 금융당국은 소액결제시스템의 운영과 관리에 대한 역할을 담당하는 한국은행이나 금융결제원 외에도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 등과 같이 전자금융거래의 관리와 감독을 담당하는 경우로 확대되고 있음
  - 즉, 금융거래와 관련하여서는 금융위원회, 관리·감독에 대한 실질적인 업무는 금융감독원,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과 효율성 등 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대하여서는 한국은행과 금융통화위원회,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 금융결제원, 금융거래 관련 보안에 관하여서는 금융보안원, 디지털 금융혁신추진과 관련하여서는 디지털금융협의회가 각 기능별로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이에, 2019년 2월 25일에는 이러한 지급결제 분야의 변화를 인지하고 핀테크 및 금융플랫폼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방안」이 공개된 바 있으며, 금융결제 인프라 전만의 개편을 통하여 혁신적인 결제서비스 출현과 활성화를 지원하고 금융결제 부문의 혁신 및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목표를 밝힌 바 있음
  - 이어 2020년 7월 27일 금융위원회는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을 통하여 디지털금융의 혁신과 안정을 위한 주요 제도개선 추진사항을 제시함으로써 금융안정과 이용자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의 추진을 예고하고 있음

- 금융위원회의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에서는 전자지급수단 간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재정립하여 기능이 유사한 형태끼리 통합하고, 기존 업종을 통합하여 재편하겠다는 개편안을 제시한 바 있어, 향후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서도 이러한 방향에서 법제 정비방안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최근의 빅테크 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소액결제가 늘면서 역외적용 등의 규정 도입이 예상되며, 고객자금의 안전한 보관과 관리 등 지급결제업자의 고객 수취자금 보호 및 건전성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2021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독립금융상품자문업자 등과 같이 My Data 활용성이 커지면서 지급결제 분야에서도 ‘지급지시결제업’의 등록 기준이 정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오픈API를 활용한 독자계정을 개설할 수 있는 종합전자금융업의 등장도 기대를 모으고 있음
  - 이 밖에도 후불소액결제의 제한적 허용 및 간편결제 충전한도 상향 등 서비스 범위의 확대에 따른 이용자보호 제도의 보완 및 강화도 함께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 **해외 각국에서도 디지털경제의 확대와 발전에 따른 지급결제시장에서의 변화에 발맞추어 선제적으로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고 있음**

- 201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EU의 「지급결제산업지침(PSD2: The revised Payment Services Directive)」은 유럽의 EU 회원국과 회원국 외의 국가들에게도 다양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아시아 각국에서도 지급결제 관련 법제를 정비하고 있음

- EU의 PSD2에 따라 영국에서도 2017년 「지급결제서비스법(Payment Services Regulations 2017)」을 국내법으로 입법화한 바 있으며, 독일에서는 지급결제서비스감독법(Zahlungsdiensteaufsichtsgesetz)이 2018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음
- 한편, EU의 PSD2는 EU 회원국 외의 다른 유럽국가들에 대하여서도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 그리고, 싱가포르에서는 2019년 「지급결제서비스법(Payment Services Acts)」 제정을 통하여 지급결제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간의 법률관계에 대한 기초를 마련한 바 있음
- 일본의 「자금결제법(資金決済に関する法律)」은 2010년 이래 여러차례 개정을 거쳐 오면서 지급결제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으며, 중국의 경우 인터넷금융 관련 지급결제에 관한 다양한 규정들을 시행해 오면서 효율성 확보 및 이용자 수취자금의 보호 강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이스라엘에서는 2019년 지급결제서비스법을 제정하여 2020년부터 시행하여 오고 있으며, 지급결제서비스 계약에 관한 법률 관계 및 지급결제수단에 대한 무권한거래 등에 대하여 관련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지급결제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한 기본법으로 기능하고 있음

▶ **소액결제시장의 특성을 반영하여 소액결제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입법적 개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소액결제시장 변화에 따른 이용자 보호와 관련하여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시, 다면시장으로서의 플랫폼(MSP multisided Market) 기능을 하는 소액결제시장의 특성을 반영하여 정보접근성과 교섭력 측면에서 불리한 이용자의 지위를 보완할 수 있는 입법적 고려가 필요함

- 2014년 제정된 『OECD 모바일 및 온라인 결제 소비자정책 가이드라인(Consumer Policy Guidance on Mobile and Online Payments)』에서는 온라인플랫폼 내지 APP을 기반으로 한 지급결제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에 대한 지급결제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다양한 주의의무와 조치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준수할 수 있는 수준의 입법적 고려가 필요함

▶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은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를 전자지급결제 거래를 수행하는 지급결제서비스제공자로서 판단하면서도 진입규제가 여러 규정에 흩어져 있는 형태로 구성되어 진입규제 사업법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여야 할 것임**

-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지급결제서비스의 제공자와 이용자 간의 법률관계를 중심으로 하여 지급결제의 다층적 구조를 반영한 거래관계에 대한 요소와 금융거래요소로 규정하여 시장 신뢰 확보 및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주로 법제를 구성하여야 함
- 지급결제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진입규제를 다루는 규정을 지급결제거래법과 별도로 구분하여 제정하고, 지급결제거래법에서는 지급결제업자와 이용자 간의 법률관계를 규정하는 한편 이용자보호를 규율하는 방식으로 체계화가 필요함
- 이용자보호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하여 당사자간 책임의 범위와 입증책임의 전환, 손해배상액의 예정, 우선보상조치 등 위험부담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권리관계를 규정하는 조문들을 명시적으로 채택하여야 할 것임
  - 무권한 거래의 범위와 사기행위 간 경계 명확화 및 무권한거래 및 중복/다회 결제에 대한 이용자 보호 방안을 도입하여야 할 것임
  - 아동 지급결제에 대한 모니터링과 부당한 표시 및 광고행위에 대한 감독, 자동재구매계약 등 자동지급결제에 대한 규제, 국경간 거래에 대한 옵션 및 추가비용에 대한 명확한 고지 및 예상외 비용 발생 가능성에 대한 사전 정보제공 등 의무도 고려하여야 할 것임

- 분쟁해결제도 및 피해구제 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절차에 대한 사전 고지 및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진 대형플랫폼 소액결제사업자의 외관/보증책임 등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도 있음
- 한편, 「소비자기본법」이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콘텐츠산업진흥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등 각각의 관련 법제에서도 소액결제서비스 관련 사항을 보완하고, 각각의 이용자보호 강화를 위한 지침과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Ⅲ. 결론

- 디지털금융 산업의 발전과 금융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선순환적인 측면과 금융안정 및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안정성 및 보안성, 편익 등을 균형감 있게 고려하여 소액결제시장 변화에 따른 법제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함
- 나아가, 소액결제시장 변화에 따른 지급결제서비스 관련 규제개선 및 이용자보호와 금융보안 분야 쟁점에 대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이를 통하여 빠르게 변화하는 소액결제시장에 대한 규제환류체계를 확립해 나가야 할 것임

▶ 주제어 : 소액결제시장, 디지털금융, 전자금융거래법, 빅테크, 이용자 보호 강화, 지급결제거래법, 규제환류체계

# Abstract

## I. Backgrounds and Purposes

- Recently, with the emergence of various technologies and services in the Digital Finance, payment methods have been changed too.
- Convenience and options of consumer are expanding continuously by the emergence of unmanned convenience stores that are automatically calculated through pre-registered payment methods, various simple payments made through mobile card registration without a real credit card, and payments made by prepaid recharge on various online shopping platforms.
- The retail payment market is changing at a rapid pace with the development of the internet network and e-commerce using mobile devices becoming commonplace, and the use of payment methods as simple payment and simple remittance
  - While non-face-to-face transactions have rapidly increased due to the recent Covid-19, various payment methods based on online platforms or APPs have appeared and new types of FinTech services or financial instruments have been launched as payment platforms have become larger also.
  - With the emergence of new types of payment methods and diversification of payment methods, effective management may be difficult only by applying the current legislations.

- More than 30% of global FinTech is concentrated in the financial payment industry, and major global FinTech companies such as PayPal, Alibaba, and Revolute are also growing into financial platforms based on financial payment, and a technology-based BigTech company with market dominance is also expanding into the financial sector.
- In line with the changes in the retail payment market,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is promoting various policies for innovation in the field of digital finance, and actively promoting discussions on revisions to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enforcement ordinances, and supervisory regulations for the smooth implementation of these policies.
  - On February 25, 2019, in order to recognize the changes in the payment services and to activate the FinTech and financial platform, 「The Financial Payment and Settlement Infrastructure Innovation Plan」 was disclosed jointly with relevant ministries.
  - On July 26, 2020,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nnounced the 「Comprehensive Digital Finance Innovation Plan」 and decided to introduce a small license system, a comprehensive payment settlement business, and a payment order settlement business, and also revealed the direction of the revision of the Financial Transactions Act.

- It is predicted to introduce various regulations such as measures to strengthen user(consumer) protection and offshore application to Big-Tech companies as Jurisdiction in the direction of the draft of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Revision by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 **II. Main contents**

- ▶ In this study, the legal countermeasures related payment services have been sought and current status of the retail payment market and the diversification of retail payment means too.
  - It is based on the government's policy promotion direction according to the recent changes in the retail payment market, measures to respond to laws related to retail payment from a balanced perspective that consider the soundness of the financial payment industry and the user's convenience and user(consumer) protection of retail payment services to the maximum.
  - First, by clarifying the concept of retail payment , it is necessary to determine the scope of the analysis of the legal system and the target of the legal system.

- In each chapter, there is a change in the domestic retail payment market and the development of a fair transaction environment in the process of the government's financial payment innovation plan accordingly, financial stability and soundness, which must be judged major in the payment and settlement field, and simple payment based on ICT and improvement measures and legislation regarding security and safety issues in the field of online and mobile payments, evaluation of the final consumer benefits of technologically innovative financial services and products with a focus on enhancing user convenience and innovation, protecting users and financial consumers, and raising their status, etc.

▶ International institutes related finance market and consumer protection or each countries are also preemptively reorganizing related laws and systems to keep pace with changes in the payment and settlement market due to the expansion and development of the digital economy.

- The EU's 「The revised Payment Services Directive (PSD2)」, which has been in effect since 2018, has various effects on EU members, non-members, and even Asian countries also reorganize Payment Service laws.
  - In accordance with the PSD2 of the EU, the 「Payment Services Regulations 2017」 in the UK was legislated as a domestic law.
  - Meanwhile, the PSD2 of the EU has a wide range of influences on other European countries other than EU member states.

- In addition, in Singapore, through the enactment of the 「Payment Services Acts」 in 2019, the basis for the legal relationship between payment service providers and users has been established.
  - Japan's "Funds and Settlement Act" has been revised several times since 2010, expanding the scope of payment and settlement, and in China, securing efficiency and securing efficiency by implementing various regulations on payment and settlement related to internet finance. There is a movement to strengthen the protection of user funds received.
  - In Israel, the Payment Service Act was enacted in 2019 and has been in force since 2020, and the protection of users of payment services has been established by relevant regulations regarding the law on payment services contracts and unauthorized transactions with payment methods.
- ▶ Various legislative improvement measures should be prepared to protect users of retail payment services by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tail payment market.
- When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is revised in relation to user(consumer) protection due to changes in the retail payment market, the disadvantage of users in terms of access to information and bargaining power is supplemented by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tail payment market, which functions as a platform as a multisided market (MSP multisided market). Legislative considerations that can be done.

- In 2014, the 「OECD Consumer Policy Guidance on Mobile and Online Payments」 provides a variety of payment service providers to users who use online platform or APP-based payment services. Since the duty of caution and the duty to take action are prescribed, legislative consideration at the level to comply with them is required.
- ▶ The current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considers a financial company or an electronic financial business operator as a payment service provider that conducts electronic payment transactions, but it should be improved the structural problem of not having the status of the regulation for each parties of payment service as provider, user, the third parties, etc., but the business regulation for providers.
- In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the legal relationship between providers and users of payment services is centered on the elements of the transaction relationship reflecting the multi-layered structure of payment and settlement, and the elements of financial transactions are defined to secure market trust and strengthen user protection. Must be configured
- Regulations dealing with entry restrictions for payment service providers are established separately from the payment transaction act, and the Payment and Settlement Transaction Act requires systematization in a way that regulates user(consumer) protection while stipulating the legal relationship between payment settlement companies and users.

- Regarding user protection, provisions that stipulate specific rights relations in relation to risk-bearing, such as the scope of liability between the parties and the conversion of the burden of proof, the schedule of compensation for damages, and priority compensation measures, should be explicitly adopted.
  -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boundaries between the scope of unauthorized transactions and fraudulent activities, and introduce measures to protect users against unauthorized transactions and duplicate/multiple payments.
  - Monitoring of payments for children, supervision of unfair display and advertising activities, relief for automatic payments such as automatic repurchase contracts, clear notification of options and additional costs for cross-border transactions, and prior information on the possibility of unexpected costs Obligations such as provision should also be considered.
  - It is also necessary to prepare a dispute settlement system and damage relief procedure, and to consider introducing the appearance/guarantee responsibility of large platform retail payment operators as Big Tech with prior notice and market dominant status on the procedure.

- On the other hand, the 「Consumer Basic Act」, 「Terms and Conditions Regulation Act」, 「Consumer Protection Act in Electronic Commerce, etc.」, 「Contents Industry Promotion A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 Utilization Promo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Act」, 「Installation Payment In each related legal system such as the transactions laws, it is necessary to supplement the matters related to retail payment services and to prepare guidelines and standards for strengthening the protection of each user(consumer).

### III. Conclusion

- In consideration of the virtuous cycle of the development of the digital finance industry and strengthening the competitiveness, the stability, security, convenience, and financial stability of the financial industry and protection of financial consumers, it is necessary to prepare legislation measures to respond to the changes in the retail payment market.
  - Furthermo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regulatory feedback system for the rapidly changing retail payment market through regulatory reform and user(consumer) protection and financial security issues.
- ▶ **Keywords: Retail Payment Market, Digital Financ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 Act, Big-Tech, Consumer Protection Reinforcement, Payment Service Act, regulatory feedback system**

요 약 문 .....	5
Abstract .....	13

## 제1장 서론 / 25

제1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	27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29
1. 연구의 범위 .....	29
2. 연구의 방법 .....	31

## 제2장 소액결제시장의 변화와 관련 정책 현황 / 39

제1절 소액결제의 의의 .....	41
1. 소액결제의 개념 및 범위 .....	42
2. 소액결제시장 변화의 특성 .....	50
제2절 소액결제 방식의 변화 연혁과 소액결제시장 현황 .....	52
1. 소액결제 방식의 변화와 지급결제수단의 편리성을 확보한 간편결제의 확대 .....	52
2. 소액결제시장 현황 .....	53
제3절 소액결제 관련 정책 현황 .....	58
1. 소액결제 관련 정책 추진 주체 .....	58
2. 소액결제 관련 혁신 정책 .....	77
3. 소 결 .....	88

## 제3장 소액결제 관련 법제 현황과 문제점 분석 / 91

제1절 서 설 .....	93
제2절 소액결제 관련 법제의 주요 내용 .....	97
1. 소액결제 관련 법제의 구성 .....	97
2. 소액결제 관련 법제의 주요 내용 .....	100
제3절 전자금융거래법의 연혁 및 최근 개정 법률안의 주요내용 .....	134
1. 전자금융거래법의 주요 연혁 .....	134
2. 21대 국회 계류 중 법안 .....	142
3. 정부제출안(금융위원회) .....	144
4. 20대 국회에서 발의되었던 법안 연혁(폐기법안) .....	145
제4절 디지털 금융융합혁신방안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논의 .....	143
1.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방향과 주요 쟁점 .....	143
2. 혁신적 디지털 금융산업 육성 .....	143
3. 디지털금융 이용자보호 체계 확립 .....	159
4. 디지털금융 보안 강화 .....	167
제5절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에 대한 입법적 검토 .....	170
1. 디지털금융 혁신방안에 따른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방향 .....	170
2. 소액지급결제 분야 디지털금융 이용자 자금보호 제도 강화 .....	182
3. 전자금융거래의 활성화 .....	185
4. 전자금융거래의 감독 및 감시 .....	193
제6절 소액결제 관련 법제 개선 필요성 .....	203
1. 소액결제 관련 법제의 문제점 .....	203
2. 지급결제시스템 참가 대상 확대에 따른 시장친화적 입법의 필요성 .....	204
3. 새로운 전자지급수단 대응 및 이질적 요소 간 통합의 필요성 .....	208
4. 전자금융거래법 개정방안 .....	209

## 제4장 소액결제시장 변화에 따른 해외 입법 동향 / 213

제1절 서 설 .....	215
제2절 소액결제 관련 국제기구의 제도적 대응 동향 .....	215
1. BIS CPMI .....	215
2. FSB .....	218
3. OECD .....	220
4. ISO .....	226
제3절 소액결제 관련 해외 각국의 정책 및 입법 사례 .....	228
1. E U .....	228
2. 영 국 .....	237
3. 독 일 .....	239
4. 일 본 .....	242
5. 싱가포르 .....	250
6. 이스라엘 .....	256
7. 중 국 .....	257
제4절 소결 및 시사점 .....	260

## 제5장 소액결제시장 변화에 따른 법제 대응방안 및 결어 / 267

제1절 서 설 .....	269
제2절 소액결제시장 변화에 따른 이용자 보호 강화 방안 .....	271
1. 소액결제시장 변화에 따른 전자금융거래 이용자 보호 필요성과 최근 입법 동향 .....	271
2. 소액결제서비스 이용시 명시·설명 의무 강화 .....	276

3. 소액결제를 통한 지급사실의 통지의무 강화 및 거래오류의 정정요청 제도화 .....	280
4. 부당거래행위의 규제 .....	283
5. 분쟁해결제도 보완 .....	286
6. 소액결제 서비스 수단의 호환성 및 다양성 보장 .....	288
7. 소액결제 서비스제공자의 의무와 책임 강화 .....	289
제3절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방안 .....	295
1. 소액결제 관련 정보의 수집 및 활용 동의 및 정보제공 .....	295
2. 지급결제 관련 보안 강화 .....	297
제4절 소액결제시장 변화에 따른 법제 개선방안 .....	300
1. 소액결제 관련 개별법에 대한 법제 개선방안 .....	300
2. 지급결제 중심의 법제 개편 필요성과 입법적 대응방안 .....	304
제5절 결 어 .....	312
참고문헌 .....	317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제1장

# 서론

## 제1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최근 핀테크 분야의 다양한 기술과 서비스의 등장으로 지급결제 방식에도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즉, 미리 등록한 지급결제 수단을 통하여 자동으로 계산되는 무인편의점의 등장이나 신용카드 실물 없이도 모바일카드 등록을 통해 이루어지는 다양한 간편결제, 각종 인터넷·쇼핑 플랫폼에서 선불충전방식으로 이루어지는페이 등 지급결제 분야에서 소비자의 편리성과 선택권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그동안 국내에서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지급결제수단은 98년 이후 신용카드 보급과 사용기반(신용카드 의무수납제, 세제 혜택, 각종 부가서비스) 구축을 계기로 일반 상거래에서 신용카드 사용이 일상화되어 온 특징을 가지고 있다.<sup>1)</sup> 이러한 국내 지급결제 분야의 상황은 신용카드 중심의 금융결제가 외상결제로 인해 가계건전성에 부정적이면서도 신용카드가맹점 입장에서는 카드수수료 지출을 통한 고비용 상거래 구조가 형성되어 경제전반에 부담을 준다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sup>2)</sup>

한편, 핀테크 결제사업자들이 국내에서 새로운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간편결제·송금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금융결제 분야의 혁신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으나, 핀테크기업 입장에서는 국내의 지급결제시스템 하에서는 은행결제망 접근 및 이용이 쉽지

1) 관계부처 합동, “핀테크 및 금융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방안”, 보도자료, 2019.2.25., 3면.

2) 관계부처 합동, “핀테크 및 금융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방안”, 보도자료, 2019.2.25., 3면.

않거나 상당한 비용이 부과된다는 점, 제한적인 서비스만 가능하다는 점 등의 어려움이 지적되어 왔다.<sup>3)</sup>

이러한 국내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핀테크의 30% 이상이 금융결제 분야에 집중되어 있으며,페이팔·알리바바·레볼루트 등 해외 주요 핀테크기업도 금융결제를 기반으로 금융플랫폼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시장지배력 있는 기술기반의 BigTech 기업의 금융 분야 진출도 확산되고 있다.<sup>4)</sup>

2019년 2월 25일에는 이러한 지급결제 분야의 변화를 인지하고 핀테크 및 금융플랫폼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방안」이 공개된 바 있다. 즉, 혁신적인 결제사업자들이 원활하게 시장에 진입하여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결제 시스템의 접근성·개방성을 확대하고, 새로운 결제서비스를 법제도 내에 유연하게 수용할 수 있도록 탄력적인 규제 체계를 새로 도입하기 위하여 금융결제 시스템을 혁신적으로 개방하고 금융결제업 체계를 전면 개편함으로써 관련 규제와 세제를 시장친화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이다.<sup>5)</sup>

특히, 공동결제시스템인 오픈뱅킹을 구축하고 이를 법제화 함으로써 핀테크기업에 안정적으로 금융결제망을 개방하고, 그동안의 업종별 규율체계에서 벗어나 기능별로 규율 체계를 전환하는 한편 종합지급결제업이나 지급지시결제업 등 새로운 전자금융업을 도입하여 관련 규제나 세제도 시장친화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sup>6)</sup>

또한, 2020년 7월 26일에는 금융위원회가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을 공개하고, Small License 제도의 도입 및 종합지급결제업, 지급지시결제업 등을 도입하기로 하면서 전자금융거래법의 개정방향에 대하여도 밝힌 바 있다. 이러한 금융위원회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방향에는 이용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 및 빅테크기업의 역외적용 등 다양한 내용의 규정을 도입할 것을 예고하고 있다.

3) 관계부처 합동, “핀테크 및 금융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방안”, 보도자료, 2019.2.25., 3면.

4) 관계부처 합동, “핀테크 및 금융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방안”, 보도자료, 2019.2.25., 1면.

5) 관계부처 합동, “핀테크 및 금융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방안”, 보도자료, 2019.2.25., 1~15면.

6) 관계부처 합동, “핀테크 및 금융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방안”, 보도자료, 2019.2.25., 1~15면.

이러한 국내의 소액결제시장 변화와 이에 따른 정부의 금융결제 혁신 방안 추진 과정에서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이라는 측면과 지급결제 분야에서 주요하게 판단되어야 하는 금융안정성 내지 건전성, ICT 기반으로 하는 간편결제나 온라인·모바일 결제 분야로서의 보안성·안전성 문제, 그리고 사용자 편의 제고와 혁신성을 핵심으로 하는 기술혁신적 금융 서비스·상품의 최종 소비자 편의 평가, 이용자 및 금융소비자의 보호 및 지위 제고 등 다양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최근의 소액결제시장 변화에 따른 정부의 정책 추진 방향을 바탕으로, 금융결제 분야 건전성과 소액결제서비스의 이용자 편의와 보호를 최대로 고려하는 균형감있는 시각에서 소액결제 관련 법제 대응방안을 제시하도록 한다.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1. 연구의 범위

본 보고서에서의 구체적인 연구 범위는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소액결제시장의 변화와 관련 정책 현황을 소개한다. 이를 위한 전제로서 소액결제의 개념과 유형별 형태, 간편결제·간편송금과의 관계 등을 살펴봄으로써 소액결제의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하도록 한다.

즉, 한국은행에서 제시하고 있는 소액결제 관련 개념을 바탕으로 최근 급속한 기술 발전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가 창출되고 있는 간편결제 방식의 지급결제를 포함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최근 소액결제시장의 변화를 연혁별로 유형화하여 소개하도록 한다.

또한, 최근 정부가 금융규제혁신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바, 소액결제와 관련한 금융결제 혁신방안과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 등에 대하여도 소개함으로써 향후 새로운 형태의 소액결제 서비스 발전 가능성을 예측하는 한편, 소액결제시장의 변화 방향성에 대하여도 제시할 수 있도록 한다.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 소액결제 관련 법제의 구성 및 주요 법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제시할 수 있도록 한다.

소액결제는 소비자의 대금지급 및 결제에 대한 전반적인 법제가 적용되는 한편, 소액결제 수단별로 적용되는 업종별 법규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각 법규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쟁점이 되는 규정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소액결제시장의 변화에 따른 법제 대응방안 도출의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본 보고서에서는 핀테크 분야에서 공통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바와 같이, 기술혁신에 따른 새로운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이 금융소비자에게 최종적으로 비용편익 내지 사용자편리성을 제공하는지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어서 정부의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방안]과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을 분석하고, 다양한 입법론적 개선 가능성을 열어 두도록 한다.

제4장에서는 소액결제와 직접 관련있는 지급결제법제에 대한 해외 입법 사례를 소개하도록 한다. 이를 통하여, 지급결제 분야 모바일 소액결제 및 최근의 새로운 지급결제 서비스와 관련하여 OECD 나 BIS, FSB와 같은 국제기구들의 입법적 대응 동향과 해외 각국의 소액결제 관련 입법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법제 대응방안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제5장에서는 제4장까지의 분석 내용을 기반으로, 우리나라에서의 지급결제 체제 개편 관련 법제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한다.

우선, i) 정부의 정책 추진에 따른 입법적 대응방안 및 개선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2020년 7월의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4대 추진전략에 대하여 구체적인 법리적 검토를 수행하고, 입법적 개정 방향성을 상세하게 제시할 수 있도록 한다.

다음으로, ii) 온라인플랫폼과 지급결제플랫폼의 발달에 따라 소액결제시장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일명 BigTech사업자와 이용자 간 구조적 관계를 반영할 수 있는 법제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하여, OECD의 소비자보호지침과 EU의 온라인플랫폼 이용자보호 지침 수준의 논의를 통하여 소액결제시장 변화에 따른 이용자 보호 강화 방안을 제시하도록 한다.

그리고, iii) 비대면시대의 조기 도래에 따른 온라인플랫폼과 전자금융거래에서의 지급결제 관련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 방안에 대하여서도 제안하도록 한다.

또한, 빠르게 변하는 시장상황과 기술의 변화에 따라 소액결제시장도 빠르게 변하고 있으므로, 기존의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종합적으로 다루기 어려웠던 온라인플랫폼거래 및 소액결제의 다면시장적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급결제법제 전체에 대한 종합적인 입법 개선 방안과 그 방향성에 대하여서도 함께 제시할 수 있도록 한다.

## 2. 연구의 방법

본 보고서에서는 연구의 목적을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소액결제와 관련한 문헌 조사 및 소액결제시장 변화에 대한 분석 대상 자료의 수집을 진행하였다. 또한, 관련 주요 기관 및 업계의 실무담당자 및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소액결제 관련 법제 개선 의견을 수렴하고, 연구의 방향 및 연구 범위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관련 법제를 효과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온라인·모바일 기반의 소액지급결제와 관련된 「전자금융거래법」과 함께 실물·전자 신용카드 등을 수단으로 하는 소액지급결제 관련 법제로서의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대하여 법령 분석을 실시하도록 한다.

이외에도 소액결제와 관련하여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은행법」과 「외환거래법」,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등 주요 금융법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 보호법」,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 ITC 기술과 관련된 주요 법령을 함께 분석하기로 한다. 또한, 문헌 조사나 법령 조사 외에도 주요 국제기구의 소액결제 관련 법제 대응

동향과 해외의 소액결제 관련 입법 동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인터넷 자료검색 및 뉴스기사 검색을 통한 정보수집과 이를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한 관련 자료의 조사들도 함께 수행하기로 한다.

연구과정에서는 입법 및 금융업 분야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 정확한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즉, 전문가 회의 및 워크숍을 통한 비정기적 회의를 통하여서는 소액결제와 관련된 각 쟁점별 사항에 대하여 심도있는 토론을 수행하는 한편, 지급결제분야 주요 전문가를 구성원으로 하는 인적 pool을 활용함으로써 소액결제 관련 '지급결제포럼'을 운영함으로써 소액결제 분야 법제 대응방안 도출에 객관성과 다양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전문가회의와 워크숍, 포럼 운영을 통하여 소액결제시장 변화에 따른 입법적 수요와 효과적인 법제 개선방안, 전체 금융업법과의 조화를 통한 소액결제 분야 법제 대응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한다.

각 회차별 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표 1> 제1차 전문가 회의 (2020년 2월 12일)

##### 소액결제시장 변화 현황과 연구범위 등에 대한 의견 수렴

###### ○ 소액지급결제 시장의 변화와 관련 정책 현황 검토

- 소액지급결제 유형의 다양화와 관련 규제혁신 정책에 따른 변화 논의
- My payment 관련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방안에 따른 종합지급결제업 및 지급지시서비스업의 등장과 관련 문제점 논의
- 결제인프라개방 정책인 오픈뱅킹과 관련하여, 시범실시 후 금융결제원과 은행 간 협의를 통한 개선방안 도출 예정 확인

###### ○ 소액결제시장 변화에 따른 법제 대응방안 연구범위 검토

- 소액지급결제와 간편결제 간 개념을 유형화하여 연구범위를 설정하고, 한국은행에서 발간되는 보고서 등을 참고하여 개념을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 확인

## 고려 사항 및 협조 요청

## ○ 소액결제시장 분야 핀테크 규제 관련 개선 및 법제 대응방안 마련 고려사항

- 핀테크 산업의 발전과 금융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선순환적인 측면과 금융안정 및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안정성 및 보안성, 편익 등을 균형감 있게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 종합지급결제업 및 지급지시서비스업과 관련한 은행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여신전문업법 등 개정 내용과 이에 대한 평가 및 분석이 필요할 것임
- 하반기 이후 오픈뱅킹과 관련한 제도 보완 사항이 도출되면, 이를 반영한 법제 대응방안 수립이 가능할 것임
- 소액결제 분야 관련 전문가 섭외 등 포럼 및 워크숍 개최에 대한 협력도 추진 일정에 맞추어 고려하도록 함

## &lt;표 2&gt; 제2차 전문가 회의 (2020년 5월 12일)

## 소액결제의 개념에 따른 연구대상 및 연구범위 등에 대한 의견 수렴

## ○ 소액결제 개념 관련 논의

- 소액결제는 한국은행에서 사용하고 있는 소액결제(금융망,어음,지로 모두 포함)와 소매결제(Retail Payments)의 개념으로 나누어지고, 실제로는 지급결제수단의 편리성을 도모한 간편결제를 중심으로 한 소액결제시장의 변화가 두드러지므로 이에 대한 설명 필요

## ○ 소액결제시장 관련 법제의 구조와 대응방안 등 연구방향성 검토

- 지급결제시장 관련 법제는 시스템운영·관리/공정경쟁/소비자보호/관리감독 측면 모두에서 적용될 것이나, 소액결제시장의 변화에 따른 법제대응방안은 주로 시스템 운영·관리 및 소비자 보호 강화, 기능별 규제에 따른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을 위주로 검토되어야 하므로, 동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연구범위 내에서 분석할 것을 권함

## 고려 사항 및 협조 요청

## ○ 소액결제와 소매결제, 소비결제, 지급결제 간 개념 정립의 필요성 확인

- 소매결제는 지급결제시스템의 운영/관리 차원에서의 소매결제이며, 실제 사용 측면에서 본다면 간편결제수단을 통한 소액결제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보호 측면이 강조되므로 소비결제의 개념도 비교하여 설명할 필요가 있음

**<표 3> 제3차 전문가 회의 (2020년 5월 13일)**

소액결제시장 변화에 따른 관련 법제 전면개정안의 방향성 논의

- 소액결제시스템 및 시장 변화에 따른 관련 정책 현황과 법규 개정안 방향성 확인
  - 소액결제시장의 변화에 따른 소액결제시스템 및 시장변화에 따른 관련 정책은 시스템 운영·관리 및 소비자 보호 강화, 기능별 규제에 따른 관리·감독 관련 사항을 위주로 작성

고려 사항 및 협조 요청

- 정부의 「전자금융거래법」전면개정안 준비 작업에 따른 연구 필요 대상 논의
  - EU의 PSD2와 같이 기능별 규제방식 및 적용범위 확대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며, 정부는 전면개정안을 준비하고 있으므로, 2019년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공동의 [금융인프라 혁신방안]에 따른 정책방향성에 대하여 구체적인 법리 검토가 필요함

**<표 4> 지급결제포럼 Kick-off 회의 (2020년 6월 12일)**

소액결제시장 변화 현황과 세부 주제별 개선방안 논의

- 한국은행과 금융결제원의 소액결제시스템 참가대상 확대 관련 규정 개정 방향성 확인
  - 한국은행은 소액결제(차액결제) 시스템 참가기준을 한국은행의 한은금융망을 통한 차액결제방식으로 소액결제시스템을 통합하기로 하는 보도자료를 6월4일 발표함. 이에 따른 소액결제시스템 참가대상 확대와 관련하여, 동일업무-동일리스크-동일규제 원칙에 따른 규제 설계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소액후불결제제도 도입 논의에 따른 쟁점 논의
  - 소액후불결제제도는 기존의 휴대폰소액결제 제도 및 신용카드 후불결제제도와와의 형평성을 고려하되, 소비자 편익과 소비자 보호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야 할 것임

고려 사항 및 협조 요청

- 가상자산의 금융결제시스템 편입 가능성 등에 대한 해외 사례 검토
  - EU의 PSD2(개정 지급결제지침)이나 일본의 금융상품판매법 및 할부판매법의 개정에 따라 가상자산의 금융결제시스템 편입 가능성이 제고되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가상자산'으로 분류하여 별도로 관리하게 되므로, 전자금융거래법 내지 소액결제 관련 법제에서는 다루지 않는 것으로 함

**<표 5> 지급결제포럼 제1차~제5차 회의 (2020년 6월~8월)**

## 소액결제시장 변화 현황과 세부 주제별 개선방안 논의

**○ 금융위원회의 지급결제 관련 법제 개선 방향 및 금융혁신 정책 공유 및 검토**

- 금융위원회가 2020년 추진 중인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에 대한 검토 및 관련 법리 검토를 수행하고, 지급결제 참가 당사자 자격, 지급결제 참가 방식, 지급결제 수단을 중심으로 운영되던 기존의 업역을 개편하여 지급결제 참가방식 및 제공 서비스의 특성에 따른 업종 유형으로 재편하여 종합지급결제업자 및 세부업역별 Small License 관리감독하는 방식을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마이데이터업과 마이페이먼트업 간 결합 가능성과 각 업별 소관 법률에 대한 쟁점을 공유함

**○ EU, 일본, 중국, 싱가포르 등 지급결제분야 해외 입법례 검토**

- 해외 소액결제시장의 변화에 따른 지급결제제도 개편에 대한 해외 각국의 입법 경험을 소개하고, 고객자금 예치 비율 제한 및 스몰라이센스 관리 제도, 디지털자산(가상자산)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현황, 무권한거래에 대한 이용자의 주의의무 및 지급결제업자의 보상 범위 등 우리나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시 고려할 필요가 있는 규정들을 검토함

**○ 소액지급결제 시장의 지급과 결제, 청산의 각 절차에서 참가자별 역할을 검토**

- 우리나라에서 지급, 결제, 청산 각 절차별로 참가자의 구성과 역할을 검토하고, 다른 나라와는 다른 몇가지 시스템 운용상의 차이를 기초로, 소액결제시장 청산 담당 기관의 기능 및 업무의 범위, 오픈뱅킹 참가 범위의 확대 가능성 등을 논의함

**○ 온라인플랫폼이나 APP에서의 소액결제에 대한 역외적용 문제와 이용자보호 방안 검토**

- 국내에서 해외 간편결제서비스를 이용한 물품·서비스 구매시, 역외 지급결제가 이루어지는 법적 구조에 대하여, 역외적용 규정을 채택할 필요성을 확인하고, 온라인플랫폼 지급결제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보호방안의 강화 필요성을 확인하고 관련 사항을 논의함

## 고려 사항 및 협조 요청

**○ 오픈뱅킹 및 청산/결제 과정에서의 참가자 범위 및 역할이 외국의 운용구조와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시스템 운용상의 차이를 인정할 필요가 있음**

- 지급, 결제, 청산 각 절차별로 소액결제시장 청산 담당 기관의 기능 및 업무의 범위, 오픈뱅킹 참가 범위의 확대 가능성 등에 대하여서는 금융당국과 관련 기관, 각 협회 등 실무계와 학계가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하여 결정해 나가야 할 것임

**<표 6> 제1차 워크숍 (2020년 9월 14일)**

## 소액결제시장 변화에 따른 제도 및 법리적 검토 사항 논의

**○ 디지털 금융종합혁신방안에 따른 법제 변화 방향 검토 및 문제점 논의**

- 전자금융거래법의 기존 업역 관리 방식 변화에 따라 새로 도입되는 종합지급결제업자의 경우, 현행 제도상 전자금융거래법과 자본시장법상의 인가요건을 갖추어도 가능함
- 소액지급결제 시장의 지급과 결제, 청산의 각 절차에서 참가자별 역할이 해외 오픈뱅킹 내지 결제/청산 시스템과 차이가 있어서 별도의 고려들이 필요함

**○ 소액지급결제 및 간편결제/간편송금 시스템 이용자 보호를 위한 추가적인 방안 마련 필요**

- 무권한 거래의 범위와 사기행위 간 경계 명확화 및 무권한거래 및 중복/다회 결제에 대한 이용자 보호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 아동 지급결제에 대한 모니터링과 부당한 표시 및 광고행위에 대한 감독, 자동재구매계약 등 자동 지급결제에 대한 구제, 국경간 거래에 대한 옵션 및 추가비용에 대한 명확한 고지 및 예상외 비용 발생 가능성에 대한 사전 정보제공 등 의무도 고려하여야 할 것임
- 분쟁해결제도 및 피해구제 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절차에 대한 사전 고지 및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진 대형플랫폼 소액결제사업자에 대하여 외관/보증책임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고려 사항 및 협조 요청

**○ 소액결제시장 변화에 따라 온라인플랫폼상 소액결제서비스 이용자 보호가 강화되어야 함**

- 유럽의 플랫폼모델법상 정보제공의무 및 책임에 관한 입법례를 참고하여 지급결제 서비스 제공자에게 접근성과 가독성을 높일 수 있는 설명의무 및 조치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음

**<표 7> 제2차 워크숍 (2020년 9월 29일)**

## 소액결제시장 변화에 따른 법리적 검토 사항 논의

**○ 소액결제 이용자 보호 및 규제체계 재편 필요성 검토**

- 소액결제서비스분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약관규제법상 소액결제서비스 표준약관,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보호지침, 콘텐츠산업진흥법상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에 소액결제서비스 내용을 신설하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전자금융거래법에 소액결제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규정을 신설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지급결제법안의 단독입법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을 논의함

---

**고려 사항 및 협조 요청**

---

**○ 소액결제시장 변화에 따른 소액결제서비스의 다면시장성 특성 고려의 필요성 확인**

- 지급결제분야의 거래구조는 거래당사자와 지급결제서비스제공자 및 관련 서비스제공자로 구성되어 다면시장성(Multi-Sided Platform)의 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소액결제 이용자 보호를 위한 종합적이고 다양한 고려가 필요함
-



## 제2장

# 소액결제시장의 변화와 관련 정책 현황

제1절 소액결제의 의미

제2절 소액결제 방식의 변화 연혁과 소액결제시장 현황

제3절 소액결제 관련 정책 현황



## 제2장

# 소액결제시장의 변화와 관련 정책 현황

### 제1절 소액결제의 의의

인터넷의 발달과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전자상거래가 일상화되고, 간편결제·간편송금 지급수단이 보편화되면서 소액결제시장은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특히, 새로운 유형의 지급결제수단이 등장하여 지급결제 수단이 다양화되면서 기존의 법제 적용만으로는 효과적인 관리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최근의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 거래가 급증하는 한편, 온라인플랫폼이나 APP에 기반한 다양한 방식의 지급결제수단이 등장하는 가 하면, 지급결제플랫폼이 대형화되면서 새로운 유형의 FinTech 서비스나 금융상품이 출시되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차차 현금 사용 비율은 줄어들고 있으며, 신용카드 등 비현금지급수단 사용이 늘어나면서 소액결제에 대한 비현금지급수단의 보편화<sup>7)</sup>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전자지급수단 다양화나 지급결제 방식의 디지털화<sup>8)</sup>, 지급수단의 모바일화에 따라 간편결제는 더욱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sup>9)</sup>

7) 송은영·박정현, “2015년 지급수단 이용행태 조사결과 및 시사점”, 『지급결제조사자료2016-3』한국은행 금융결제국 결제연구팀(2016.1), 2면.

8) 송은영·박정현, “우리나라 소액결제시장 혁신을 위한 과제”, 『지급결제조사자료2015-3』한국은행 금융결제국 결제연구팀(2015), 2면.

9) 박태준·김민정, “간편결제 서비스의 등장과 카드업 영향분석”, 『CFRI INSIGHT 2020-』여신금융연구소(2020.1), 1면.

이러한 소액결제시장에서의 변화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디지털금융 분야의 혁신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며, 이러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및 시행령, 감독규정 등에 대한 개정 논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소액결제시장의 변화 현황과 소액결제 지급수단 및 관련 지급결제 서비스의 다양화에 따른 제도적·법리적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우선 아래에서는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소액결제의 개념과 범위를 확정하고, 관련 정책 현황을 소개함으로써 이러한 소액결제시장 변화에 따른 법제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 1. 소액결제의 개념 및 범위

### (1) 소액결제와 지급결제

지급결제(payment and settlement)는 각 경제주체의 경제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당사자간의 거래에서 채권·채무관계를 변제하기 위하여 행하는 일련의 지급행위와 이에 따른 은행·금융회사 간 청산(clearing)과 결제의 절차로 이해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지급결제시스템은 “금융시장의 원활한 기능과 금융안정에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금융 인프라이며, 경제주체들이 실물 및 금융거래에 따라 발생하는 채권-채무관계를 청산하는 메커니즘”으로 이해된다.<sup>10)</sup>

지급수단별 지급결제 방식의 유형의 전통적 분류방식에 따르면 현금과 비현금 방식으로 구분되고, 비현금방식에 어음·수표, 지로, 타행환, CD/ATM 등의 계좌송금과 자금관리 서비스(CMS), 인터넷뱅킹 등의 자금이체, 지급카드의 종류에 따른 신용·선불·직불 카드 등으로 분류되어 왔다. 또 최근에는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직불 카드 유형의 지역화폐가 등장하기도 하였다.

10) 김자봉, 「지급결제기능과 금융시스템의 안정」, 한국금융연구원, 2010. 12., 25면.

한편, 금융결제원이 제공하는 금융공동망 분류에 따르면 CD공동망서비스, 타행환공동망서비스, 전자금융공동망서비스, CMS공동망서비스, 전자화폐공동망서비스, 지방은행공동망서비스, 부가세 매입자 납부서비스 등을 활용한 다양한 지급결제가 일어나기도 한다.<sup>11)</sup>

특히, 최근에는 실시간추심이체 방식의 송금을 통한 소액결제가 늘고 있으며, 주로 ○○페이로 불리기도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상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활용한 지급방식의 소액결제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기존에 사용되던 어음·수표를 통한 지급결제방식이나 장표지료를 통한 지급결제 방식, 사업자간 거래에서 주로 활용되는 대량지급과 타행환 방식 외에도 최근에는 모바일뱅킹 및 인터넷뱅킹, CD/ATM, 대금지급을 위한 자동이체, 전자고지서를 통한 간편송금 등 계좌이체 방식의 소액결제도 금융결제원이 제공하는 다양한 금융공동망서비스를 통하여 일상생활에서 보편화되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지급결제시스템 방식에서 기존에 ‘소액결제’의 개념은 보통 비은행기구가 은행에 소액결제(RPS: retail payment system)를 요청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개념으로 주로 이해되기도 하였다.<sup>12)13)</sup> 다만, 최근에는 소비자가 상품 및 소비자를 소비함으로써 발생하는 거래관계에서 지급수단으로 사용하는 소액결제 방식이 ‘소액결제’로 통칭되면서 이러한 기존의 소액결제의 정의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11) 금융결제원, 「2020 KFTC」, 2020. 7. 13면([http://www.kftc.or.kr/upload/intro/1\\_5995372673775872E12.pdf](http://www.kftc.or.kr/upload/intro/1_5995372673775872E12.pdf) 2020.10.20. 최종검색)

12) 김자봉, 「지급결제기능과 금융시스템의 안정」, 한국금융연구원, 2010. 12., 27면.

13) 한국은행 홈페이지에서는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는데, 거액결제시스템(LVPS: large-value payment system)의 개념은 “금융기관간 자금거래 등을 결제하는 시스템으로서 건당 거래금액이 크고 거래건수는 많지 않은 거액 소량 결제시스템이다. 한국은행금융결제망(BOK-Wire+, 이하 한은금융망)은 한국은행이 운영하는 지급결제시스템으로서 우리나라에서 하나뿐인 거액결제시스템이다. 한은금융망에는 은행, 금융투자회사, 보험회사 등 대다수 금융기관이 참가하고 있다. 참가기관들은 한국은행에 개설되어 있는 당좌예금계좌간 또는 결제전용예금계좌간 자금이체를 통하여 한국은행은 물론 다른 금융기관과 주고받을 자금을 결제”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한국은행 홈페이지-금융안정-지급결제-지급결제제도-우리나라의 지급결제제도

(<https://www.bok.or.kr/portal/main/contents.do?menuNo=200347> 2020.2.12. 최종검색))

## (2) 소액결제와 거액결제

한국은행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소액결제시스템의 정의를 살펴보면, “소액결제 시스템은 주로 금융기관이 개인이나 기업과 같은 고객을 상대로 한 거래를 결제하는 시스템으로 건당 거래금액은 크지 않으나 거래건수가 많은 소액 대량 결제시스템이다. 우리나라의 주요 소액결제시스템은 대부분 금융결제원이 운영하고 있는데 어음교환시스템, 지로 시스템, 은행공동망, 전자상거래 지급결제시스템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소액결제시스템의 참가기관은 주로 은행들이었으나 2009년 7월부터는 금융투자회사들도 참가하기 시작하였다.”고 소개되고 있다.<sup>14)</sup>

이처럼 그동안 소액결제시스템은 거액결제시스템의 상대적인 개념으로 이해되어 왔으나, 최근 차액결제시스템 참가자의 변화 확대 양상에 따라 소액결제시스템과 거액결제시스템과의 절차 및 기간에서의 차이가 크지 않게 되었다.

이러한 차액결제시스템 참가자 확대에 관하여서는 상세 내용을 후술하기로 한다.

## (3) 소액결제와 소매지급결제 및 소비자 지위

보통 비은행기구가 은행에 소액결제를 요청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개념인 ‘소액결제(RPS: retail payment system)’는 그 정확한 의미를 살펴보면, 소비자의 상품·서비스 이용과 구매에 따른 지급수단으로서의 ‘소매(retail)’의 개념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최근 소액결제시장 변화에 따라 실생활에서 Off-Line 또는 온라인플랫폼·APP을 통하여 이용되는 ‘소액결제’는 소비자의 ‘소비’ 행위에 따른 물품·서비스 매매·이용계약과 이에 대한 대금지급을 위한 지급결제서비스 이용계약으로 구성되어 거래구조가 양면성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거래의 발생과 이를 위한 변제 수단으로서의 지급과 결제에 대한 일련의 절차에서는 소비자보호의 관점에서 이용자에 대한 각 지급·결제서비스 제공자 및 지급결제거래 참가자를 규율할 필요가 있다.

14) <https://www.bok.or.kr/portal/main/contents.do?menuNo=200347> 2020.2.12. 최종검색

#### (4) 소액결제와 간편 결제

간편결제는 소액결제방식 중 지급수단의 접근채널 또는 접근장치의 편의성이 향상된 서비스 형태를 가리키며, 일반적으로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의 비현금 전자적 지급수단을 동반하게 된다.<sup>15)</sup>

간편결제는 모바일방식을 포함한 전자상거래에서 구매자가 신용카드 정보, 계좌 정보 등 지급결제에 필요한 정보를 먼저 입력하여 두고, 필요한 지급결제가 발생할 때 비밀번호 또는 간단한 개인정보 등을 통한 인증만으로 결제를 완료하는 방식의 서비스를 통칭하기도 한다.<sup>16)</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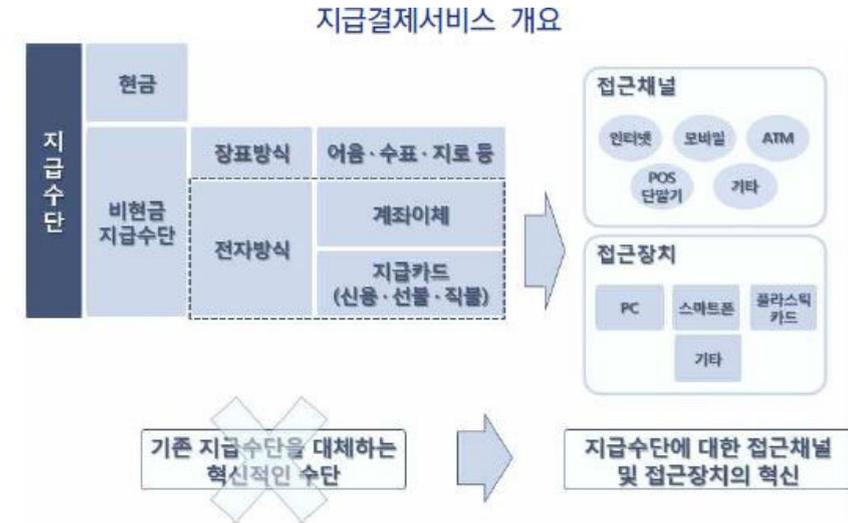
간편결제의 일반적인 유형으로는 물품·서비스 구매자가 구매 전 본인의 지급결제·수단 및 관련 인증 정보를 지급결제서비스제공자에게 제공하여 저장하거나, 지급결제서비스 제공자에게 사전에 충전하여 두고 대금지급에 사용하는 방식 등이 있다.<sup>17)</sup> 이를 위하여 지급결제서비스 제공업체가 선지급 후 구매자 계좌에 대한 실시간추심이체 송금방식 등이 활용된다.

15) 박태준·김민정, 「간편결제 서비스의 등장과 카드업 영향분석」, 여신금융연구소, 2020.1.20.(<https://www.crefia.or.kr/portal/board/board/boardDataDetail.do> 2020.10.20. 최종검색)

16) 조현아, “국내외 비금융기관의 간편결제서비스 관련 동향 및 시사점”, 『지급결제와 정보기술』 금융결제원 제58호 (2014), 2면.

17) 조현아, “국내외 비금융기관의 간편결제서비스 관련 동향 및 시사점”, 『지급결제와 정보기술』 금융결제원 제58호 (2014), 2면.

<그림 1> 지급수단별 지급결제 서비스의 구조<sup>18)</sup>



자료: 여신금융연구소

### (5) 본 연구에서의 소액결제 관련 논의의 범위

실생활에서의 소액결제 사례를 살펴보면, 상품판매 매장에서의 구입을 위한 카드결제, 은행 간 계좌이체를 통한 송금방식의 상품·서비스 대가 지급이나 모임회비·경조사비 등의 납부, 금융기관 자동이체서비스 신청을 통한 요금 납부 등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기술혁신에 따른 새로운 소액결제수단으로서의 간편결제가 소액결제시장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으므로, 본 보고서의 주요 검토 대상은 소액결제망을 통한 계좌이체를 중심으로 하고, 인터넷뱅킹 및 모바일뱅킹 등 전자금융공공망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소액지급결제를 주로 다루기로 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소액지급결제방식은 ‘간편결제’로 통칭되기도 하므로 본 보고서에서는 언론매체를 통하여 지급결제 분야의 기

18) 박태준·김민정, 「간편결제 서비스의 등장과 카드업 영향분석」, 여신금융연구소, 2020.1.20.(<https://www.crefia.or.kr/portal/board/boardDataDetail.do> 2020.10.20. 최종검색)

술적 혁신성이 강조되고 있는 다양한 ‘간편결제’ 방식의 소액지급결제를 중심으로 분석하기로 한다.

간편결제 방식의 소액지급결제에는 계좌이체를 통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일명,페이 방식)과 신용카드 내지 체크카드, 포인트, 간편송금 등을 지급결제수단으로 하는 방식이 모두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지급카드별 이용실적과 소액결제망을 통한 계좌이체 결제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소액결제의 이용 규모가 될 것이다.

<표 8> 소액결제망을 통한 계좌이체 결제금액(일평균)<sup>19)</sup>

(조원, %)

	2017	2018				2019			
		상 반 기	(증감률)	하 반 기	(증감률)	합 계	상 반 기	(증감률)	상하반기 합계
전자금융 공동망**	46.9	51.3	(11.1)	52.3	(9.6)	51.8	53.0	(3.4)	54.8(5.8)
(인터넷뱅킹)	21.8	23.1	(7.6)	23.3	(5.3)	24.0	23.6	(2.0)	모바일 뱅킹 포함 25.1(4.7)
(펄뱅킹)***	19.3	20.9	(8.2)	21.0	(8.9)	20.9	20.9	(0.0)	21.8(3.9)
(모바일뱅킹)	0.5	0.8	(67.6)	0.8	(26.1)	7.0	0.9	(18.6)	
기타****	7.0	7.2	(1.4)	6.8	(-3.3)	1.0	6.8	(-4.7)	6.8(-2.7)
합 계	54.0	58.5	(9.8)	59.1	(8.0)	4.8	59.9	(2.4)	61.6(4.8)

\* ( )내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 타행이체 기준

\*\*\* 급여지급, 대금결제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법인용 금융거래시스템

\*\*\*\* 지로시스템, 타행환 공동망, CD공동망, CMS 공동망 등

자료 : 금융결제원

19) 한국은행 홈페이지 - 커뮤니케이션 - 보도자료 - 2019년 상반기중 지급결제동향, 6면(<https://www.bok.or.kr/portal/bbs/P0000559/view.do?nttId=10053665&menuNo=200690> 2020.02.11. 최종검색); 한국은행 홈페이지 - 커뮤니케이션 - 보도자료 - 2019년중 지급결제동향, 6면(<http://www.bok.or.kr/portal/bbs/P0000559/view.do?nttId=10056860&menuNo=200690> 2020.6.15. 최종검색)

구체적으로는, 2019년 상반기 중 소액결제망을 통한 계좌이체 규모가 일평균 59.9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4% 증가하였으며, 인터넷뱅킹 및 모바일뱅킹 등 전자금융공동망을 중심으로 전년동기대비 3.4%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특히 모바일뱅킹의 경우 모바일 지급채널 이용 증가(2018.12월말 현재 모바일뱅킹 등록고객수는 1억 607만명으로 전년말(9,089만명) 대비 16.7% 증가) 등으로 전년동기대비 18.6%의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sup>20)</sup>

또한, 2019년중 소액결제망을 통한 계좌이체 규모는 일평균 61.6조원으로 전년대비 4.8% 증가하였으며, 인터넷뱅킹 및 모바일뱅킹 등 전자금융공동망을 중심으로 전년대비 5.8% 증가하였다. 모바일뱅킹 등록 고객수는 2019년 9월말을 기준으로 13.3%로 집계되었다.<sup>21)</sup>

<표 9> 지급카드별 이용실적(일평균)<sup>22)</sup>

(십억원, %)

		2017	2018	2019	증감률
건수	신용카드	32,782	36,197	40,693	12.4
	물품 및 용역	32,548	35,967	40,470	12.5
	현금서비스	234	229	224	-2.4
	체크카드	20,127	22,321	24,141	8.2
	선불카드	68	67	86	28.0
	기타*	16.4	36.0	141.4	292.3
	합계	52,994	58,621	65,062	11.0

20) 한국은행 홈페이지 - 커뮤니케이션 - 보도자료 - 2019년 상반기중 지급결제동향, 6면(<https://www.bok.or.kr/portal/bbs/P0000559/view.do?nttId=10053665&menuNo=200690> 2020.02.11. 최종검색)

21) 한국은행 홈페이지 - 커뮤니케이션 - 보도자료 - 2019년중 지급결제동향, 2면(<http://www.bok.or.kr/portal/bbs/P0000559/view.do?nttId=10056860&menuNo=200690> 2020.6.15. 최종검색)

22) 한국은행, 「2019 지급결제보고서」, 2020.3., 51면(<http://www.bok.or.kr/portal/bbs/P0000600/view.do?nttId=10057166&menuNo=200072> 2020.6.15. 최종검색)

		2017	2018	2019	증감률
금액	신용카드	1,926	2,031	2,132	5.0
	물품 및 용역	1,760	1,862	1,967	5.7
	현금서비스	166	169	165	-2.4
	체크카드	466	502	532	6.2
	선불카드	2.1	2.1	2.5	18.8
	기타*	1.1	1.4	2.4	74.2
	합계	2,395	2,536	2,670	5.3

\* 현금IC카드, 직불카드

자료: 전업카드사 및 겸업은행, 금융결제원

한편, 2019년중 지급카드 이용규모는 일평균 6,506만건 및 2.7조원으로 전년보다 건수 및 금액이 11.0% 및 5.3% 증가하였고, 신용카드 이용규모는 물품·용역구매 증가 등으로 전년보다 건수 및 금액이 각각 12.4% 및 5.0% 증가하였으며, 체크카드도 세제혜택 및 신용카드와 유사한 부가서비스 제공 등으로 건수와 금액이 각각 8.2%, 6.2% 증가하였다.<sup>23)</sup> 선불카드 이용규모도 모바일선불카드 출시 등으로 전년보다 건수와 금액이 각각 28.0%, 18.8% 증가하였고, 기타 지급카드의 경우 현금IC카드를 중심으로 이용건수 및 금액이 전년대비 각각 292.3% 및 74.2% 증가하였다.<sup>24)</sup>

소액결제시장은 최근 Off-Line 또는 온라인플랫폼·APP을 통하여 이용되는 간편결제·간편송금을 위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아래에서는 이러한 소액결제시장 변화의 특징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 현황과 입법적 과제 등의 도출 방향성을 모색하기로 한다.

23) 한국은행, 「2019 지급결제보고서」, 2020.3., 51면(<http://www.bok.or.kr/portal/bbs/P0000600/view.do?nttId=10057166&menuNo=200072> 2020.6.15. 최종검색)

24) 한국은행, 「2019 지급결제보고서」, 2020.3., 51면(<http://www.bok.or.kr/portal/bbs/P0000600/view.do?nttId=10057166&menuNo=200072> 2020.6.15. 최종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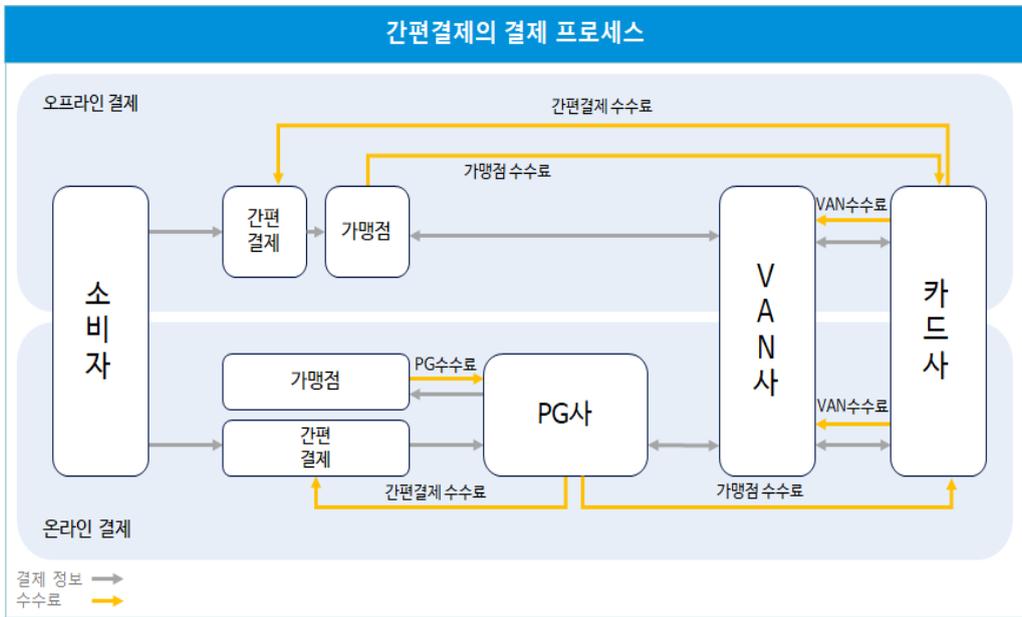
## 2. 소액결제시장 변화의 특성

### (1) 지급결제 수단의 편리성을 확보한 간편결제의 등장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이, 한국은행에서 사용하고 있는 ‘소액결제’의 개념은 Retail Payments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금융회사·은행 간 청산(clearing)과 직결되는 개념이며,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휴대폰소액결제’나 간편결제와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

또한, 일반 상거래에서 사용되는 실물·모바일 신용카드를 이용한 지급결제의 경우, 지급수단으로서의 편리성을 확보한 개념인 간편결제 방식을 통하더라도 VAN사나 PG사가 결제에 포함되는 구조를 가지게 된다. 이러한 기존의 간편결제 프로세스를 도식화하면 다음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신용카드를 지급결제수단으로 하는 간편결제의 결제 프로세스



Source: BNK금융경영연구소, 모바일 결제의 발전이 신용카드업에 미치는 영향, 2015.9, p.10.  
 Note: 일평균 기준

따라서, 한국은행에서 사용하고 있는 ‘소액결제’의 개념이나 ‘소액결제’의 유형 분류에 따른 각 지급수단별 통계자료는 최근의 모바일결제나 간편결제의 정확한 이용률을 추산하기에 부정확한 측면이 있다.

현재 국내 소액결제시장에서의 간편송금·결제 규모는 다음 <표 10>과 같다.

<표 10> 국내 소액결제시장에서의 간편송금·결제서비스 이용 금액

자료 : 한국은행

구 분	2016	2017	2018	2019
간편결제	25.5	65.3	120.9	165.6
간편송금	7.1	35.5	104.6	217.7

## (2) 소액결제시장 참여자 확대와 오픈뱅킹 제도 도입

또한, 그동안 신용카드 중심의 소액결제시장 구조나 간편결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에 대한 지적과 검토가 이루어져 왔다. 즉, 신용카드 가맹점들의 수수료 부담이 과중하다는 등의 지적에 대하여,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공동결제망(오픈뱅킹)을 활용한 금융결제 시스템의 혁신적 개방과 금융결제업 체제 전면 개편을 통한 종합지급결제업 도입 등 다양한 금융결제 혁신 방안을 추진하고 관련 규제 개선 및 세제 지원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sup>25)</sup>

관련 금융결제 혁신 방안 등 정부의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하여서는 목차를 바꾸어 상세히 서술하기로 한다.

25) 관계부처 합동, “핀테크 및 금융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방안”, 보도자료, 2019.2.25., 1~15면.

## 제2절 소액결제 방식의 변화 연혁과 소액결제시장 현황

### 1. 소액결제 방식의 변화와 지급결제수단의 편리성을 확보한 간편결제의 확대

국내 소액결제시장은 초기에 지로용지 등을 통하여 지급결제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신용카드의 보급과 더불어 신용카드를 중심으로 하는 양상을 보여 왔다. 최근에는 온/오프라인 지급결제수단이 다양화 되면서 각 인터넷플랫폼 및 온라인쇼핑플랫폼 등에서 다양한 간편결제로서의 소액결제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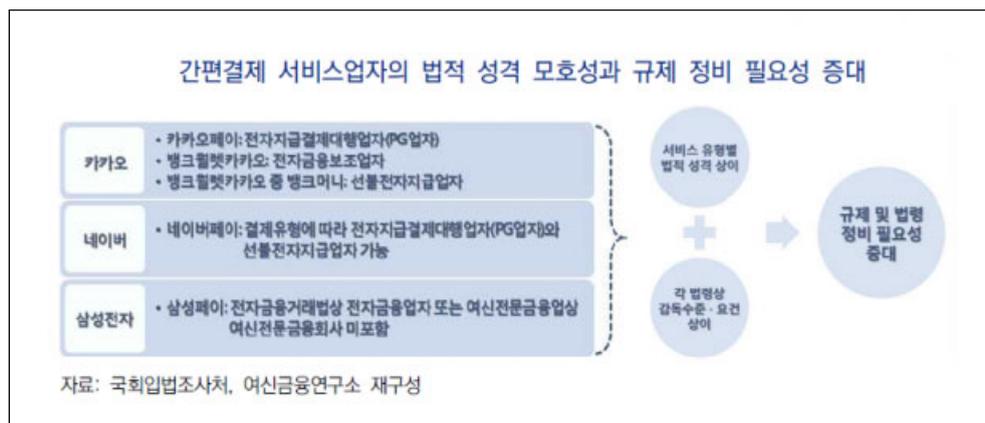
이러한 다양한 간편결제방식의 소액결제는 간편결제, 간편송금, 포인트, (모바일)상품권, 청구서·지로,페이카드, 환전, 리워드 등의 명칭으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실제로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계좌 송금 방식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상의 신용카드, 전자금융거래법상의 선불전자지급수단 등과 관련된 규제가 적용된다. 다만 최근의 간편결제 서비스 유형별로 관련 서비스제공자의 법적 지위나 성격이 달라 법적 지위가 모호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각 법령상 감독수준이나 요건이 서로 다르게 적용될 여지도 생겨나고 있다.

특히, 지급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법상의 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 외에도 삼성페이와 같이 단말기제조사 및 APP제공자의 경우에는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전자금융업자와 유사한 소액결제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그러나,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삼성전자의 법적 지위를 직접 규율대상으로 하는 법률이 모호하여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있으며, 지급결제서비스를 포괄하는 일반적 규제나 감독 법규가 없다는 점이 지적되기도 한다.<sup>26)</sup>

26) 윤미혜, “여신금융연구원 ‘지급결제업 규제 차별 존재-법제도적 정비 필요’, 서울파이낸스 뉴스기사, 2020.1.21. (<https://www.seoulnfn.com/news/articleView.html?idxno=369587> 2020.10.31. 최종검색)

소액결제와 관련된 대표적인 국내 간편결제 서비스 사례에 따른 간편결제 서비스업 관련 법적 성격과 이에 대한 규제 적용상의 문제점을 도식화하면 다음 <그림 3>과 같다.

<그림 3> 간편결제의 서비스의 법적 성격과 규제 정비 필요성<sup>27)</sup>



## 2. 소액결제시장 현황

소액결제시스템(retail payment system)은 주로 기업이나 개인의 소액거래를 처리하는 자금결제시스템으로서 주로 계좌이체나 지급카드, 수표, 지로 등과 관련된 결제가 소액결제시스템으로 처리된다.<sup>28)</sup>

소액결제시스템은 거래 대상이 광범위하고 결제건수가 매우 많아 결제건수와 결제유동성을 줄일 수 있는 차액결제방식을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참가기관의 차액결제 불이행 사태에 대비하여 순신용한도 설정, 사전담보 제공, 손실공동분담제 등과 같은 리스크 관리제도를 두는 경우가 많다.<sup>29)</sup>

27) 윤미혜, “여신금융법 ‘지급결제업 규제 차별 존재-법제도적 정비 필요’, 서울파이낸스 뉴스기사, 2020.1.21. (<https://www.seoulfn.com/news/articleView.html?idxno=369587> 2020.10.31. 최종검색)

28) 한국은행 홈페이지 - 경제교육 - 경제용어사전 - 소액결제시스템(<https://www.bok.or.kr/portal/ecEdu/ecWordDicary/search.do?menuNo=200688&query=%EC%86%8C%EC%95%A1%EA%B2%B0%EC%A0%9C%EC%8B%9C%EC%8A%A4%ED%85%9C&ecWordSn=315> 2020.02.11. 최종검색)

29) 한국은행 홈페이지 - 경제교육 - 경제용어사전 - 소액결제시스템(<https://www.bok.or.kr/portal/ecEdu/>)

우리나라의 소액결제시스템은 금융결제원이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는 어음교환시스템, 지로시스템, 금융공동망(CD공동망, 타행환공동망, 직불카드공동망, CMS공동망, 지방은행공동망, 전자금융공동망, 전자화폐공동망, 국가간ATM공동망)과 전자상거래 결제시스템 등이 있다.<sup>30)</sup>

소액결제시스템을 통한 결제규모를 시스템별로 살펴보면 다음 <표 11>과 같다.

<표 11> 소액결제시스템을 통한 결제규모(일평균)<sup>31)</sup>

항목	금융공동망	지로시스템	어음교환시스템
단위	조원	조원	조원
2014	43.4	1.0	12.6
2015	50.0	1.0	10.2
2016	51.8	1.0	9.1
2017	53.1	1.0	8.2
2018	56.9	1.0	8.1
2019	60.8	10.	7.7

자료 : 금융결제원

2018년 상반기중 현금 이외의 지급수단을 통한 결제금액은 일평균 81.4조원으로 전년 동기(76.1조원) 대비 7.0% 증가하였으며,<sup>32)</sup> 2019년 상반기중 현금 이외의 지급수단을 통한 결제금액은 일평균 79.6조원으로 전년동기(81.4조원) 대비 2.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sup>33)34)</sup>

ecWordDicary/search.do?menuNo=200688&query=%EC%86%8C%EC%95%A1%EA%B2%B0%EC%A0%9C%EC%8B%9C%EC%8A%A4%ED%85%9C&ecWordSn=315 2020.02.11. 최종검색)

30) 한국은행 홈페이지 - 경제교육 - 경제용어사전 - 소액결제시스템(<https://www.bok.or.kr/portal/ecEdu/ecWordDicary/search.do?menuNo=200688&query=%EC%86%8C%EC%95%A1%EA%B2%B0%EC%A0%9C%EC%8B%9C%EC%8A%A4%ED%85%9C&ecWordSn=315> 2020.02.11. 최종검색)

31) <https://www.bok.or.kr/viewer/skin/doc.html?fn=201903250537338560.xlsx&rs=/webview/result/P0000600/201903#> 2020.2.12. 최종검색)

32) 한국은행 홈페이지 - 커뮤니케이션 - 보도자료 - 2018년 상반기중 지급결제동향(<https://www.bok.or.kr/viewer/skin/doc.html?fn=201809050959108670.hwp&rs=/webview/result/P0000559/2018092020.2.11>. 최종검색)

2018년 상반기중 지급카드(+4.4%) 및 소액결제망의 계좌이체(+9.8%)를 통한 결제금액의 증가세가 이어진 반면 어음·수표(-0.1%) 결제는 소폭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으나,<sup>35)</sup> 2019년 상반기중에는 소액결제망의 계좌이체(+2.4%)를 통한 결제금액의 증가세가 둔화된 가운데 어음·수표(-16.2%) 결제는 상당폭 감소한 한편, 지급카드(+5.8%)를 통한 결제금액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up>36)</sup>

참고로 우리나라의 주요 결제시스템별 결제규모 추이는 다음 <표 12>와 같다.

<표 12> 주요결제시스템별 결제규모 추이(일평균)<sup>37)</sup>

항목	증권결제시스템 (좌측)	외환결제시스템 (좌측)	소액결제시스템 (좌측)	거액결제시스템 (우측)
단위	조원	십억달러	조원	조원
2014	65.8	54.4	57	243.9
2015	85.8	55.7	61.2	272.3
2016	113.7	50.4	61.9	299.8
2017	134.6	50.7	62.4	323.0
2018	157.6	65.4	67.0	340.7

자료 : 한국은행, 금융결제원,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33) 한국은행 홈페이지 - 커뮤니케이션 - 보도자료 - 2019년 상반기중 지급결제동향, 1면(<https://www.bok.or.kr/portal/bbs/P0000559/view.do?nttId=10053665&menuNo=200690> 2020.02.11. 최종검색)

34) 여기서 현금 이외의 지급수단에는 금융결제원 운영 소액결제망의 계좌이체, 어음·수표, 지급카드(신용·체크카드 등)(단, 금융기관간 거액자금이체가 이루어지는 한은금융망은 제외) 등의 지급수단을 기준으로 한다.(한국은행 홈페이지 - 커뮤니케이션 - 보도자료 - 2019년 상반기중 지급결제동향, 1면(<https://www.bok.or.kr/portal/bbs/P0000559/view.do?nttId=10053665&menuNo=200690> 2020.02.11. 최종검색)

35) 한국은행 홈페이지 - 커뮤니케이션 - 보도자료 - 2018년 상반기중 지급결제동향(<https://www.bok.or.kr/viewer/skin/doc.html?fn=201809050959108670.hwp&rs=/webview/result/P0000559/201809> 2020.2.11. 최종검색)

36) 한국은행 홈페이지 - 커뮤니케이션 - 보도자료 - 2019년 상반기중 지급결제동향, 1면(<https://www.bok.or.kr/portal/bbs/P0000559/view.do?nttId=10053665&menuNo=200690> 2020.02.11. 최종검색)

37) (<https://www.bok.or.kr/viewer/skin/doc.html?fn=201903250537338560.xlsx&rs=/webview/result/P0000600/201903> 2020.2.12. 최종검색)

〈표 12〉를 통하여 알 수 있듯이, 전체 결제시스템 별 결제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으며, 소액결제시스템에 따른 결제규모도 2014년 57조원에서 2018년 67조원으로 10조원이 증가한 바 있다.

그동안 한국은행이 매년 2회 공개하고 있는 지급결제보고서에서는 지급결제수단으로서의 간편결제의 확대 추세를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통계 기준이 미흡하였으나, 2020년 3월 한국은행이 2020년 3월 공개한 「2019 지급결제 보고서」에서는 지급수단별 통계 및 간편결제·송금에 대한 통계 자료 및 분석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동보고서 3페이지 이하에서는 지급결제 환경 변화에 대하여 지급결제서비스 이용 편의 제고 측면에서의 간편결제·간편송금 서비스 이용 확대의 지속 추이와 다양한 지급서비스 지원을 위한 오픈뱅킹공동업무 확대 내용을 제시하고, 주요국의 신속자금이체(fast-payment)<sup>38)</sup> 도입 확산 현상 및 각국의 국경 간 지급결제서비스 발전방안 논의 활성화 등에 대하여서도 소개하고 있다.<sup>39)</sup>

또한, 동 보고서의 68면에서는 모바일 현금카드 서비스 활성화 지원 계획에 대하여,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는 저비용의 은행 계좌기반 직불서비스가 보다 확산될 수 있도록 모바일 현금카드서비스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향후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는 참여기관과 협력하여 NFC 등 비접촉결제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서비스의 범용성을 높이는 한편 가맹점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한국은행은 모바일 현금카드서비스

38) 신속자금이체는 금융기관의 예금계좌를 통해 개인·기업 등 지급인의 지급지시와 동시에 또는 거의 실시간으로 수취인에게 자금이 이체되고, 연중 24시간 이용가능한 지급결제 서비스를 의미하며, 최근 미국 등 주요국의 신속자금이체(fast payment)시스템의 도입·확산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2001년 금융결제원을 중계센터로 하는 전자금융공동망을 구축하였다. 주요국에서는 2000년대 중반 이후 신속자금이체 도입이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하였으며, 2019년 현재 국제결제은행(BIS) 지급 및 시장인프라 위원회(CPMI) 26개 회원국 중 21개국이 신속 자금이체 도입을 완료하였고, 미도입 국가들 도 신속자금이체 도입 계획을 발표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최근에는 신속자금이체의 결제방식으로 실시간충액결제(RTGS) 방식을 채택하고, 중앙은행이 직접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을 근거로 한국은행도 실시간충액결제방식의 소액결제시스템 'FedNow'를 2023~2024년에 직접 구축·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한국은행, 「2019 지급결제보고서」, 2020.3., 4~5면(<http://www.bok.or.kr/portal/bbs/P0000600/view.do?nttId=10057166&menuNo=200072> 2020.6.15. 최종검색))

39) 한국은행, 「2019 지급결제보고서」, 2020.3., 3~5면(<http://www.bok.or.kr/portal/bbs/P0000600/view.do?nttId=10057166&menuNo=200072> 2020.6.15. 최종검색))

의 부가서비스로 거스름돈 계좌입금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는 현금소지에 따른 불편을 완화하고 유통 및 관리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동 서비스는 참여 유통사업자들의 전산프로그램 개발 등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시작될 예정(2020년 상반기 중)이다. 또한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금융당국과 협의하여 입금한도를 상향조정하고 가맹점을 확대하는 등 편의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히고 있어 향후 간편결제 중심의 소액결제시장 관련 통계 수집과 분석에 대하여서도 좀 더 구체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지급결제보고서에서의 통계 기준 변화나 관련 제도 및 정책에 대한 담론과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소액결제시장의 변화와 이에 따른 정책 추진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 제3절 소액결제 관련 정책 현황

### 1. 소액결제 관련 정책 추진의 주체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액결제의 개념을 소매결제로 판단하는 경우, 소액결제에 관한 정책을 담당하는 금융당국은 소액결제시스템의 운영과 관리에 대한 역할을 담당하는 한국은행이나 금융결제원 외에도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 등과 같이 전자금융거래의 관리와 감독을 담당하는 경우로 확대된다. 즉, 금융거래와 관련하여서는 금융위원회, 관리·감독에 대한 실질적인 업무는 금융감독원,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과 효율성 등 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대하여서는 한국은행과 금융통화위원회,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 금융결제원, 금융거래 관련 보안에 관하여서는 금융보안원, 디지털 금융혁신추진과 관련하여서는 디지털금융협의회가 각 기능별로 관련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아래에서는 각각의 법률에 근거한 기능별 금융당국 주체와 관련 기관들의 소액결제 관련 정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소개하기로 한다.

#### (1) 지급결제제도의 운영·관리 관련 주체로서의 한국은행과 금융통화위원회

우리나라 지급결제제도는 한국은행의 정책결정기구인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지급결제제도의 운영·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한국은행은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한국은행법 제28조, 제81조).<sup>40)</sup>

40) 한국은행 홈페이지- 조사·연구 간행물- 발간주기별 검색- 연간- 지급결제보고서 - 2018년도 지급결제보고서 - 표지 안내문(<https://www.bok.or.kr/portal/bbs/P0000600/view.do?ntId=10050659&menuNo=200456> 2020.02.11. 최종검색)

## 한국은행법

**제2장 금융통화위원회** <개정 2016. 3. 29.>**제1절 금융통화위원회의 구성** <개정 2016. 3. 29.>

제12조(설치) 한국은행에 정책결정기구로서 금융통화위원회를 둔다.

[전문개정 2016. 3. 29.]

**제3절 금융통화위원회의 권한** <개정 2016. 3. 29.>

제28조(통화신용정책에 관한 의결) 금융통화위원회는 통화신용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0. 제81조에 따른 지급결제제도의 운영·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11. 금융기관 및 지급결제제도 운영기관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다만, 통화신용정책의 수립 및 지급결제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12. 제81조의2에 따른 일시적인 결제부족자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제4장 한국은행의 업무** <개정 2016. 3. 29.>**제7절 지급결제업무** <개정 2016. 3. 29.>

제81조(지급결제업무) ① 한국은행은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이 운영하는 지급결제제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② 한국은행은 한국은행 외의 자가 운영하는 지급결제제도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운영기관 또는 감독기관에 운영기준 개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한국은행은 지급결제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지급결제제도의 운영기관에 지급결제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④ 한국은행은 제1항에 따른 지급결제제도의 참가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 3. 29.]

제81조의2(일시 결제부족자금의 지원)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은행이 직접 운영하는 지급결제제도의 참가기관에 일중(日中)의 일시적인 결제부족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 3. 29.]

또한, 전자금융거래법 제41조에 따라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전자지급거래와 관련하여 통화신용정책의 수행 및 지급결제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금융감독원에 검사를 요구하거나 한국은행과의 공동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전자금융거래법
<p><b>제5장 전자금융업무의 감독</b></p> <p>제41조(한국은행의 자료제출 요구 등) ①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전자지급거래와 관련하여 통화신용정책의 수행 및 지급결제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하는 자료는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의 업무부담을 고려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하여야 한다. &lt;개정 2013. 5. 22.&gt;</p> <p>②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통화신용정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자화폐발행자 및 제28조제2항제1호의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등록된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에 검사를 요구하거나 한국은행과의 공동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lt;개정 2013. 5. 22.&gt;</p> <p>③제1항 및 제2항의 요구 방법 및 절차는 「한국은행법」 제87조 및 제88조의 규정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lt;개정 2008. 2. 29.&gt;</p> <p><b>제6장 보칙</b></p> <p>제47조(전자금융거래 통계조사) ①한국은행은 전자금융거래의 현황 파악과 효과적인 통화신용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전자금융업 및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통계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자료를 정부기관, 금융회사등과 전자금융거래 관련 법인과 단체에 요구할 수 있다. &lt;개정 2013. 5. 22.&gt;</p> <p>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정부기관, 금융회사등과 전자금융거래 관련 법인과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lt;개정 2013. 5. 22.&gt;</p> <p>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계조사의 대상과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한국은행은 2018년 금융결제원 소액결제시스템에 대하여 중요지급결제시스템으로 지정된 어음교환시스템, 타행환공동망, 전자금융공동망 등 3개 시스템에 대해서 정기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41)</sup>

해당 정기평가에서 한국은행은 평가기준으로 PFMI 24개 중 상기 지급결제시스템에 적용 가능한 17개 원칙과 「FMI 사이버 복원력 지침」, 「FMI 손실복구 지침(Recovery of financial market infrastructures(2017.7.))」 등의 추가지침을 활용하였으며, 평가 결과 PFMI를 대부분 충족하고 있으나 종합적인 리스크관리 체계, 운영리스크 등의 관리 측면에서 일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한국은행이 금융결제원에 개선권고를 제시한 바 있다.<sup>42)</sup> 특히, 금융결제원에 대하여 한국은행은 전자금융공동망 참가기관의 대규모 전산시스템 변경의 경우 연계테스트를 충분히 실시할 것과 발생가능한 사이버 공격에 대비하여 해킹 및 디도스 등 사이버 공격에 대하여 일부 시스템의 경우 훈련체계를 더욱 강화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지적한 바 있다.<sup>43)</sup>

한편, 차액결제리스크 관리제도와 관련하여서는 고객 간 거래 결과 발생한 은행 간 차액결제대금이 거래일 익영업일(오전11시)에 결제됨에 따라 고객에게 자금을 앞서 지급한 은행은 신용리스크에 노출되므로, 국제기준에 맞춰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 제공비율을 현행 50%에서 100%까지 인상하고, 다만 추가 적격증권으로의 쓸림을 방지하고 유동성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하여 전체 담보증권 중 추가적격증권의 비중을 50% 이내로 제한하기로 한 바 있다.<sup>44)</sup>

\* 미국의 경우 연방준비은행에서 실시간총액결제(RTGS; Real Time Gross Settlement) 방식 소액결제시스템(FedNow) 구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에서 실시간총액결제란 “은행 등 금융기관 간 최종 자금결제가 건별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최종 자금결제가 익영업일에 이루어지는 이연차액결제(DNS; Deferred Net Settlement)방식과 대비”되는 개념이다.<sup>45)</sup>

41) 한국은행 홈페이지- 조사 · 연구- 간행물- 발간주기별 검색- 연간- 지급결제보고서 - 2018년도 지급결제보고서, 17면(<https://www.bok.or.kr/portal/bbs/P0000600/view.do?nttId=10050659&menuNo=200456> 2020.02.11. 최종검색)

42) 한국은행 홈페이지- 조사 · 연구- 간행물- 발간주기별 검색- 연간- 지급결제보고서 - 2018년도 지급결제보고서, 17면(<https://www.bok.or.kr/portal/bbs/P0000600/view.do?nttId=10050659&menuNo=200456> 2020.02.11. 최종검색)

43) 한국은행 홈페이지- 조사 · 연구- 간행물- 발간주기별 검색- 연간- 지급결제보고서 - 2018년도 지급결제보고서, 17면(<https://www.bok.or.kr/portal/bbs/P0000600/view.do?nttId=10050659&menuNo=200456> 2020.02.11. 최종검색)

44) 한국은행 홈페이지- 조사 · 연구- 간행물- 발간주기별 검색- 연간- 지급결제보고서 - 2018년도 지급결제보고서, 27면(<https://www.bok.or.kr/portal/bbs/P0000600/view.do?nttId=10050659&menuNo=200456> 2020.02.11. 최종검색)

45) 한국은행, “미 연준의 실시간총액결제(TRGS) 방식 소액결제시스템(FedNow) 구축 추진 배경 및 시사점”, 한국

**<표 13> 미국의 거액결제시스템 및 소액결제시스템 운영현황(2018년)<sup>46)</sup>**

단위: 조 달러(USD), 개

구분	시스템명	운영 기관	비 고	거래 금액*	참가 기관수**
거액	Fedwire Funds Service	연준	실시간총액결제방식 자금이체시스템	716	5,999
	CHIPS	TCH	혼합형결제방식 자금이체시스템	418	45
소액	ACH	FedACH	대량지급, 자동이체 등 일괄처리 방식의 전자자금이체시스템	27	..
		EPN		TCH	25
	Check Clearing	연준	수표 청산·결제시스템	9	..
		TCH 등		10	..
	RTP 공동망	TCH	실시간총액결제방식 신속자금이체시스템	..	21

\*거래금액: 2018년중 총 처리금액(단위: USD trill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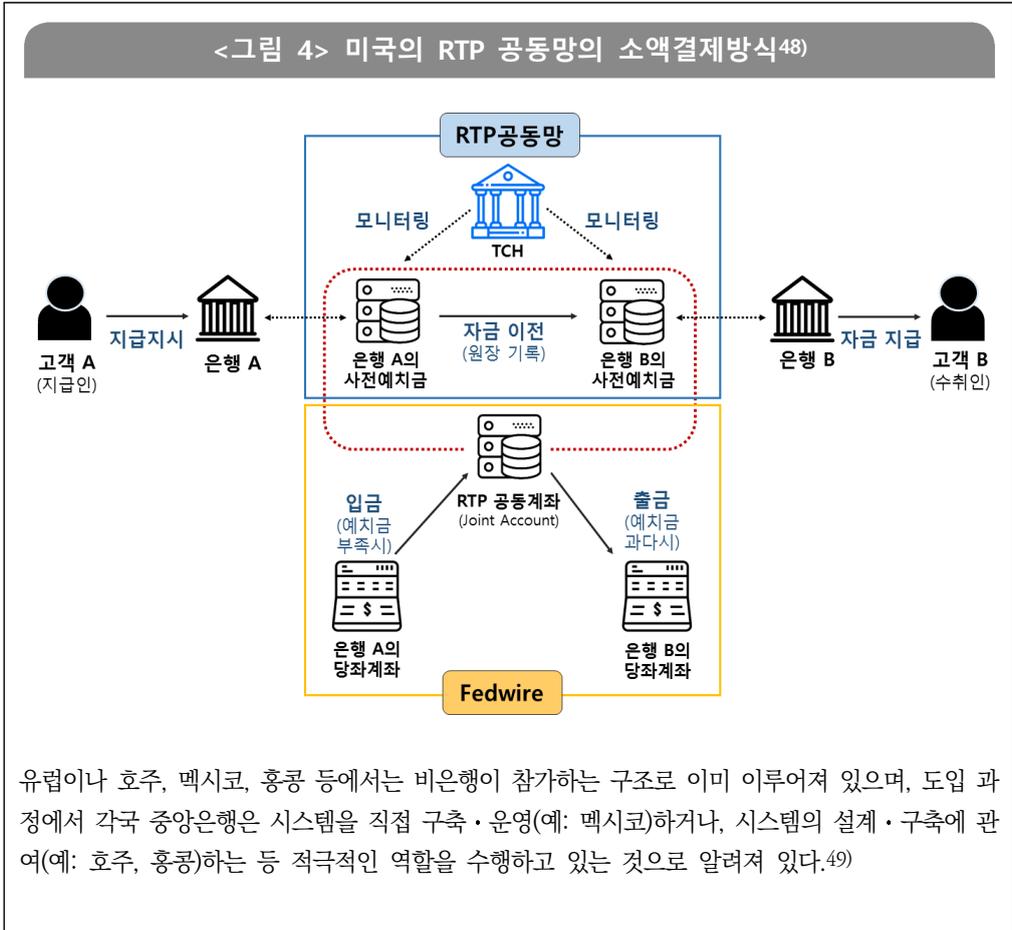
\*\*참가기관수: RTP 공동망은 2019.12월 기준, Fedwire Funds Service는 직접 참가기관 기준

자료 : BIS CPMI Statistics

미국에서는 이미 민간기관에서 이러한 실시간총액결제방식 소액결제시스템이 운영중이며, 대형 상업은행 중심의 민간 청산·결제기관인 TCH(The Clearing House)가 2017년 11월부터 RTGS 방식의 소액결제시스템인 RTP 공동망(Real-Time Payments Network)을 운영 중이다.<sup>47)</sup>

은행 홈페이지 바로가기- 커뮤니케이션- 보도자료- 보도참고자료, 2020.2.3., 1~17면(<https://www.bok.or.kr/viewer/skin/doc.html?fn=202002031025588290.hwp&rs=/webview/result/P0000559/20200202> 2020.02.11. 최종검색)

46) 한국은행, “미 연준의 실시간총액결제(TRGS) 방식 소액결제시스템(FedNow) 구축 추진 배경 및 시사점”, 한국은행 홈페이지 바로가기- 커뮤니케이션- 보도자료- 보도참고자료, 2020.2.3., 5면(<https://www.bok.or.kr/viewer/skin>)



유럽이나 호주, 멕시코, 홍콩 등에서는 비은행이 참가하는 구조로 이미 이루어져 있으며, 도입 과정에서 각국 중앙은행은 시스템을 직접 구축·운영(예: 멕시코)하거나, 시스템의 설계·구축에 관여(예: 호주, 홍콩)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49)</sup>

/doc.html?fn=202002031025588290.hwp&rs=/webview/result/P0000559/202002 2020.02.11. 최종검색)

47) 한국은행, “미 연준의 실시간총액결제(TRGS) 방식 소액결제시스템(FedNow) 구축 추진 배경 및 시사점”, 보도참고자료, 2020.2.3., 9면(<https://www.bok.or.kr/viewer/skin/doc.html?fn=202002031025588290.hwp&rs=/webview/result/P0000559/202002> 2020.02.11. 최종검색)

48) 한국은행, “미 연준의 실시간총액결제(TRGS) 방식 소액결제시스템(FedNow) 구축 추진 배경 및 시사점”, 보도참고자료, 2020.2.3., 5면(<https://www.bok.or.kr/viewer/skin/doc.html?fn=202002031025588290.hwp&rs=/webview/result/P0000559/202002> 2020.02.11. 최종검색)

49) 한국은행, “미 연준의 실시간총액결제(TRGS) 방식 소액결제시스템(FedNow) 구축 추진 배경 및 시사점”, 보도참고자료, 2020.2.3., 1면(<https://www.bok.or.kr/viewer/skin/doc.html?fn=202002031025588290.hwp&rs=/webview/result/P0000559/202002> 2020.02.11. 최종검색)

<표 14> 주요국의 실시간총액결제방식 소액결제시스템 도입 현황<sup>50)</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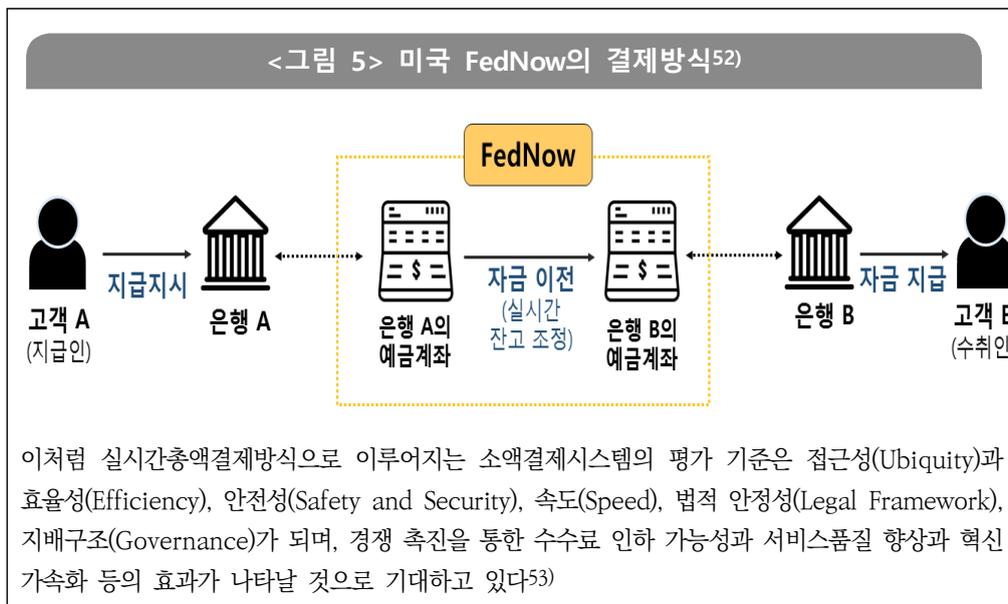
국가	도입연도	시스템명	운영주체	ISO 20022* 도입여부	비은행 참가 여부
스웨덴	2010	BiR(Bankgirot Payment in real time)	Bankgirot	○	-
멕시코	2015	SPEI(Sistema De Pagos Electrónicos Interbancarios)	멕시코 중앙은행	-	○
미국	2017	RTP(Real-Time Payments)	TCH	○	-
	2023~24 (예정)	FedNow	미 연준	○	-
호주	2018	NPP(New Payments Platform)	NPPA	○	○
유럽	2018	SCT inst	EPC	○	○
홍콩	2018	FPS(Faster Payments System)	HKICL	○	○

\* ISO20022: 국제표준화기구(ISO)가 2004년 제정한 금융업무 전반에 이용되는 통신 메시지에 관한 국제표준

미국이 도입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FedNow의 결제방식은 2023년과 2024년에 걸쳐 도입될 예정이며, 참가기관은 대형 상업은행 외에도 전체 예금취급기관이 포함될 예정이며, 연방준비은행에 예치한 참가기관별 지급준비금을 통한 실시간총액결제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sup>51)</sup>

50) 한국은행, “미 연준의 실시간총액결제(TRGS) 방식 소액결제시스템(FedNow) 구축 추진 배경 및 시사점”, 보도참고자료, 2020.2.3., 1면 참고1의 표(<https://www.bok.or.kr/viewer/skin/doc.html?fn=20200203102558290.hwp&rs=/webview/result/P0000559/202002> 2020.02.11. 최종검색)

51) 한국은행, “미 연준의 실시간총액결제(TRGS) 방식 소액결제시스템(FedNow) 구축 추진 배경 및 시사점”, 보도참고자료, 2020.2.3., 7면(<https://www.bok.or.kr/viewer/skin/doc.html?fn=202002031025588290.hwp&rs=/webview/result/P0000559/202002> 2020.02.11. 최종검색)



이러한 미국에서의 제도 도입 기준은 향후 우리나라의 실시간총액결제방식의 소액결제 시스템 구축에도 일정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소액결제시스템에 대한 분산원장기술의 적용 가능성과 한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분산원장기술 기반 소액결제 모의테스트’가 2018년 9월부터 12월까지 실시된 바 있으며, 분산원장기술 기반으로 상품대금 지급 및 소액이체에 대하여 P2P(peer to peer) 방식을 적용하여 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처리성능, 복원력, 확장성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었고, 소액결제에 필요한 결제완결성, 익명성 등 주요 기능도 구현 가능한 것으로 평가된 것으로 전해진다.<sup>54)</sup> 다만 보안성과 관련하여서는 거래 규모 및 노드 간 물리적 거리 확대

52) 한국은행, “미 연준의 실시간총액결제(TRGS) 방식 소액결제시스템(FedNow) 구축 추진 배경 및 시사점”, 보도참고자료, 2020.2.3., 6면(<https://www.bok.or.kr/viewer/skin/doc.html?fn=202002031025588290.hwp&rs=/webview/result/P0000559/202002> 2020.02.11. 최종검색)

53) 한국은행, “미 연준의 실시간총액결제(TRGS) 방식 소액결제시스템(FedNow) 구축 추진 배경 및 시사점”, 보도참고자료, 2020.2.3., 14면(<https://www.bok.or.kr/viewer/skin/doc.html?fn=202002031025588290.hwp&rs=/webview/result/P0000559/202002> 2020.02.11. 최종검색)

54) 한국은행 홈페이지- 조사·연구- 간행물- 발간주기별 검색- 연간- 지급결제보고서 - 2018년도 지급결제보고서, 34면(<https://www.bok.or.kr/portal/bbs/P0000600/view.do?nttId=10050659&menuNo=200456> 2020.02.11. 최종검색)

시 처리성능에 미치는 영향과 로드 및 관리자에 대한 보안성 등에 대하여서는 추가 연구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sup>55)</sup>

## (2)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는 한국은행 부총재를 의장으로 하는 협의체로서 ‘금융권 공동소산센터’ 구축 필요성을 검토하고,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 산하 안전대책위원회에서는 2018년 5월, 소산데이터의 범위 및 보안 관리방안, 소산 거리규정 등을 포함한 「금융권 데이터 원격지 관리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한 바 있다.<sup>56)</sup>

또한 2018년 7월 은행계좌 기반 모바일 직불서비스(모바일 현금카드) 사업을 공동추진하여, 국내 지급서비스 시장에서 고비용 구조의 신용카드 편중 현상을 완화하고, 지급결제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을 감축하는 한편 지급결제 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sup>57)</sup>

모바일 직불서비스 사업은 스마트폰에 앱 형태의 현금카드 탑재를 통하여 상점 등에서 대금지급, 현금 입출금 및 CD/ATM 거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은행들로 구성된 모바일 직불서비스 실무그룹에서 관련 기술 표준을 제정하고, 서비스 플랫폼 구축 방안 등을 마련하여 ‘모바일 지급수단(QR코드) 표준(안)’과 ‘모바일 현금카드(HCE 방식) 표준(안)’을 제시한 바 있다.<sup>58)</sup>

최근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제로페이 등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개발·운영되는 다양한 사업에 ‘모바일 지급수단(QR코드) 표준

55) 한국은행 홈페이지- 조사·연구- 간행물- 발간주기별 검색- 연간- 지급결제보고서 - 2018년도 지급결제보고서, 34면(<https://www.bok.or.kr/portal/bbs/P0000600/view.do?nttId=10050659&menuNo=200456> 2020.02.11. 최종검색)

56) 한국은행 홈페이지- 조사·연구- 간행물- 발간주기별 검색- 연간- 지급결제보고서 - 2018년도 지급결제보고서, 29~30면(<https://www.bok.or.kr/portal/bbs/P0000600/view.do?nttId=10050659&menuNo=200456> 2020.02.11. 최종검색)

57) 한국은행 홈페이지- 조사·연구- 간행물- 발간주기별 검색- 연간- 지급결제보고서 - 2018년도 지급결제보고서, 32~34면(<https://www.bok.or.kr/portal/bbs/P0000600/view.do?nttId=10050659&menuNo=200456> 2020.02.11. 최종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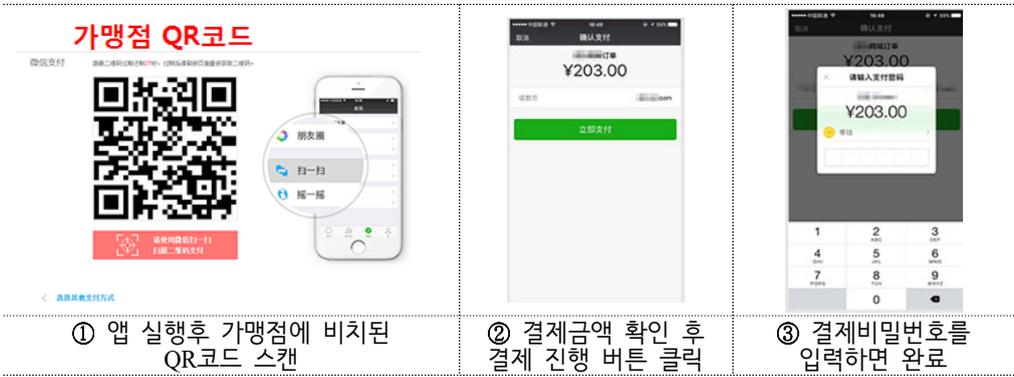
58) 한국은행 홈페이지- 조사·연구- 간행물- 발간주기별 검색- 연간- 지급결제보고서 - 2018년도 지급결제보고서, 32면(<https://www.bok.or.kr/portal/bbs/P0000600/view.do?nttId=10050659&menuNo=200456> 2020.02.11. 최종검색)

(안)이 활용되고 있으며,<sup>59)</sup> 향후 모바일지급결제 분야에서는 소상공인 및 사용자 소득공제 가능성이 확대되면 이러한 스마트폰을 이용한 QR코드 스캔방식은 더욱 광범위하게 활용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에서 마련된 QR코드 규격 표준안 초안을 바탕으로, 2018년 9월 21일, 금융결제원과 금융보안원 주관의 민간협의회는 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QR결제 표준안을 최종 확정하여 9월 말에 중소기업벤처부와 서울시에 전달하고, 11월 6일 보안성 심의 절차를 거쳐 금융결제원·금융보안원 공동으로 「QR결제 표준」을 제정·공표한 바 있다.<sup>60)</sup>

고정형 QR의 경우 소상공인 등이 QR코드를 발급·출력하여 가맹점에 붙여두고, 소비자가 모바일 앱으로 QR코드를 스캔하여 결제처리하는 방식으로, 변동형 QR은 결제 앱에서 ‘결제’를 클릭하여 소비자가 QR코드를 생성하고, 가맹점에서 QR리더기(결제 앱 또는 POS단말기)로 읽어서 결제처리하는 방식으로 구동된다.<sup>61)</sup>

<그림 6> 고정형 QR 진행 방식



59) 한국은행 홈페이지- 조사·연구-간행물-발간주기별 검색-연간-지급결제보고서 - 2018년도 지급결제보고서, 32면(<https://www.bok.or.kr/portal/bbs/P0000600/view.do?nttId=10050659&menuNo=200456> 2020.02.11. 최종검색)

60)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 알림마당 - 위원회 소식 - 보도자료 - 간편결제를 위한 「QR코드 결제 표준」 제정·공표, 2면 ([http://www.fsc.go.kr/info/ntc\\_news\\_view.jsp?bbsid=BBS0030&page=1&sch1=subject&sword=결제&r\\_url=&menu=7210100&no=32767](http://www.fsc.go.kr/info/ntc_news_view.jsp?bbsid=BBS0030&page=1&sch1=subject&sword=결제&r_url=&menu=7210100&no=32767) 2020.2.12. 최종검색)

61) 61)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 알림마당 - 위원회 소식 - 보도자료 - 간편결제를 위한 「QR코드 결제 표준」 제정·공표, 4면([http://www.fsc.go.kr/info/ntc\\_news\\_view.jsp?bbsid=BBS0030&page=1&sch1=subject&sword=결제&r\\_url=&menu=7210100&no=32767](http://www.fsc.go.kr/info/ntc_news_view.jsp?bbsid=BBS0030&page=1&sch1=subject&sword=결제&r_url=&menu=7210100&no=32767) 2020.2.12. 최종검색)

<그림 7> 변동형 QR 진행 방식



### (3) 전자금융공동망 운용 주체로서의 금융결제원

한국은행의 경제용어사전에 따르면, 전자금융공동망은 “ARS공동망을 확대 개편하여 2001년 4월부터 가동된 시스템으로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등전자금융서비스에 대한 중계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전자금융공동망의 대상 업무는 유·무선전화, PC 등의 매체를 통해이루어지는데 크게 대고객업무와 중계업무로 구분된다. 대고객업무는 예금잔액 및 신용카드 관련 각종 정보조회업무, 수표의사고유무 조회 및 환율조회 등이며, 중계업무에는 타행이체, 타행이체 거래확인 조회 및 자기앞수표 조회 업무 등이 있다. 전자금융공동망을 이용할 수 있는 예금계좌에는 보통예금, 당좌예금, 저축예금, 기업자유예금, 투자자예탁금 등이 있다. 은행의전자금융업무 운영시간은 연중무휴로 00시 05분부터 23시 55분까지로 하되, 공동운영시간대인 07시부터 23시 30분 이외시간대의 운영여부는 참가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다.”고 소개되어 있다.<sup>62)</sup>

62) 한국은행 홈페이지 - 경제교육 - 경제용어사전 - 전자금융공동망(<https://www.bok.or.kr/portal/ecEdu/>)

금융결제원은 “5대 국가기간전산망의 하나인 금융전산망 구축을 위하여 1986년 6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출범한 이래 CD공동망, 타행환공동망, 전자금융공동망, 어음교환, 지로 등의 지급결제시스템과 공인인증 등 금융분야 핵심인프라의 구축·운영을 통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지급결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을 설립목적으로 밝히고 있다.<sup>63)</sup>

금융결제원이 정부의 지급결제 정책과 보조를 맞추어 제공해 온 주요 지급결제 관련 서비스 연혁은 다음 <표 15>와 같다.

<표 15> 금융결제원의 주요 지급결제 관련 서비스 내용<sup>64)</sup>

연 도	월	소액결제 관련 서비스 제공 내용
2018	12	내카드 한눈에 서비스 실시
	12	계좌기반 모바일 결제 플랫폼 서비스(제로페이 플랫폼) 실시
	09	모바일 웹브라우저 지원 바이오인증서비스 실시
	08	클라우드 공인인증 서비스 실시
2017	07	지방세 체납자 금융거래정보 중계서비스 실시
	04	현금카드 인출서비스 실시
	01	국고보조금 지급중계서비스 실시
2016	12	바이오정보 분산관리서비스 실시
	08	은행권 공동 오픈플랫폼서비스 실시
	07	스마트보안카드 서비스 실시

ecWordDicary/search.do?menuNo=200688&query=%EC%A0%84%EC%9E%90%EA%B8%88%EC%9C%B5%EA%B3%B5%EB%8F%99%EB%A7%9D&ecWordSn=496 2020.2.12. 최종검색)

63) 금융결제원 홈페이지 - 금융결제원 소개 - 설립목적(<http://www.kftc.or.kr/kftc/about/EgovFoundPurp.do> 2020.2.12. 최종검색)

64) 금융결제원 홈페이지 - 금융결제원 소개 - 연혁(<http://www.kftc.or.kr/kftc/about/EgovKftcHistory.do> 2020.2.12. 최종검색)

연 도	월	소액결제 관련 서비스 제공 내용
2015	12	자동이체(납부) 조회·해지서비스 실시
	10	자동이체 계좌변경서비스 실시
	07	참가은행간 B2B 상거래자료 조회서비스 실시
2014	12	국가간 송금서비스 실시
	11	뱅크월렛카카오서비스 실시
	08	금융회사 신분증 진위확인정보 증계서비스 실시
2013	12	기업 회계감사자료 발급 증계서비스 실시 전자수입인지 통합관리서비스 실시
	10	전자지급보증서 발급·조회서비스 실시
2012	12	금융앱스토어 서비스 실시
	11	스마트폰기반 모바일 지급결제서비스 실시 현금카드 결제서비스 실시
2011	11	플러그인 없는 공인인증서비스(yesign plus) 실시
	03	지방세입금 통합수납처리서비스 실시

특히, 금융결제원은 2017년 4월 도입된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 중 모바일 제공서비스를 개선하여 2018년 7월부터 출금예정액, 이용기관명, 서비스종류 등 출금관련 정보를 자동이체 출금일 전에 통보하는 출금예정 알림서비스를 실시하고, 같은 해 9월 지문정보를 이용한 바이오인증을 인증방식에 추가하는 한편, 12월에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에 신용카드 정보 조회서비스를 추가하여 카드사별 카드내역 및 카드정보, 결제예정금액 등을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sup>65)</sup>

65) 한국은행 홈페이지- 조사·연구- 간행물- 발간주기별 검색- 연간- 지급결제보고서 - 2018년도 지급결제보고서, 31면(<https://www.bok.or.kr/portal/bbs/P0000600/view.do?nttId=10050659&menuNo=200456> 2020.02.11. 최종검색)

또한, 공인인증서 이용 편의성을 개선하기 위해 2018년 3월에 스마트폰에서 일회용비밀번호를 생성할 수 있도록 온라인 OTP를 출시하였고, 9월에는 별도의 플러그인 프로그램의 설치 없이도 공인인증서를 웹브라우저 공동저장소에 보관·이용하는 방식의 브라우저 공동인증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였다.<sup>66)</sup>

금융결제원의 이러한 다양한 서비스는 국가기간전산망의 하나인 금융전산망 구축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정부의 소액결제 정책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시행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소액결제 관련 정책 및 법제의 변화에 따라 금융결제원이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4) 전자금융거래 관련 당국으로서의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자금을 주는 자(지급인)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받는 자(수취인)에게 자금을 이동하게 하는 전자금융거래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지급거래'가 되며(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2호), 이는 지급결제의 주요 형태 중 하나인 금융공동망을 통한 인터넷·모바일 지급결제의 형태를 띠게 된다.

전자금융거래법상의 전자금융업자는 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로서, 전자화폐의 발행 및 관리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를, i) 전자자금이체업무, ii) 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iii)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iv)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 v)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금융업무(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자금을 수수하거나 수수를 대행하는 전자금융업무로서 a)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제10호에 따라 결제대금을 예치받는 업무, b)수취인을 대행하여 지급인이 수취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자금의 내역을 전자적인 방법으로 지급인에게 고지하고, 자금을 직접 수수하며 그 정산을 대행하는 업무)를 하려는 자는 '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다.

66) 한국은행 홈페이지- 조사·연구- 간행물- 발간주기별 검색- 연간- 지급결제보고서 - 2018년도 지급결제보고서, 27면(<https://www.bok.or.kr/portal/bbs/P0000600/view.do?nttId=10050659&menuNo=200456> 2020.02.11. 최종검색)

전자금융거래법상의 상세한 전자금융업 허가·등록 요건은 다음과 같다.

전자금융거래법
<p><b>제31조(허가 및 등록의 요건)</b> ①제28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제4호 및 제5호는 허가의 경우에 한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을 보유할 것</li> <li>2. 이용자의 보호가 가능하고 행하고자 하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충분한 전문인력과 전산 설비 등 물적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li> <li>3. 대통령이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할 것</li> <li>4.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li> <li>5. 대통령이 정하는 주요출자자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추고 있을 것</li> </ol> <p>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 및 등록의 세부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lt;개정 2008. 2. 29.&gt;</p> <p><b>제32조(허가와 등록의 결격사유)</b>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8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할 수 없다. &lt;개정 2008. 2. 29.&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법인 및 그 등록이 말소될 당시 그 법인의 대주주(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었던 자로서 그 말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li> <li>2.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가 있는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법인 및 그 취소 당시 그 법인의 대주주이었던 자로서 그 취소가 있는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li> <li>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중에 있는 회사 및 그 회사의 대주주</li> <li>4.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자</li> <li>5. 허가 또는 등록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대통령이 정하는 금융관계법령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li> <li>6.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대주주인 법인</li> </ol> <p><b>제33조(허가·등록 및 인가의 신청 등)</b> ①제28조, 제29조 및 제45조에 따라 허가·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lt;개정 2008. 2. 29., 2013. 5. 22.&gt;</p> <p>②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 등록 또는 인가를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lt;개정 2008. 2. 29., 2013. 5. 22.&gt;</p>

전자금융거래법
<p>③ 금융위원회는 제28조, 제29조 및 제45조에 따라 허가, 등록 또는 인가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lt;개정 2008. 2. 29., 2013. 5. 22.&gt;</p> <p>[제목개정 2013. 5. 22.]</p> <p><b>제33조의2(예비허가)</b> ① 제28조제1항에 따른 허가(이하 이 조에서 "본허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미리 금융위원회에 예비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p> <p>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예비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예비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본허가 요건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p> <p>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예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p> <p>④ 금융위원회는 예비허가를 받은 자가 본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예비허가 조건을 이행하였는지와 본허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를 확인한 후 본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p> <p>⑤ 예비허가에 관하여는 제33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p> <p>[본조신설 2013. 5. 22.]</p>

한편, 금융감독원은 전자금융거래법 제39조 제1항에서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감독 및 검사 권한을 가지게 되며, 같은 조 제5항 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은 재무상태 검사에 대한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제39조 제6항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금융거래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건전한 운영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일정한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해당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전자금융거래법
<p><b>제5장 전자금융업무의 감독</b></p> <p><b>제39조(감독 및 검사)</b> ①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금융감독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금융위원회의 지시를 받아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의 준수여부를 감독한다. &lt;개정 2008. 2. 29., 2013. 5. 22.&gt;</p>

## 전자금융거래법

②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그 업무 및 재무상태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5. 22., 2016. 1. 27.>

③금융감독원장은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의 전자금융업무와 그와 관련된 재무상태를 검사하고, 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에 대하여 업무와 재무상태에 관한 자료의 제출 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 5. 22.>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금융감독원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를 한 때에는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⑥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건전한 운영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5. 22., 2017. 4. 18.>

1.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2.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주의 또는 경고
3. 임원과 직원에 대한 주의, 경고 또는 문책의 요구
4. 임원(「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업무집행책임자는 제외한다. 이하 제39조의2에서 같다)의 해임권고 또는 직무정지

**제6장 보칙**

제48조(권한의 위탁) 금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또한, 전자금융거래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장에게 권한의 일부를 위탁하고 있다.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30조(권한의 위탁)** ①금융위원회는 법 제4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08. 2. 29., 2008. 7. 9., 2012. 5. 7., 2013. 11. 22., 2015. 4. 14., 2016. 6. 28.>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1.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인증방법에 관한 기준의 설정
    - 1의2.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정보기술부문에 대한 계획의 접수
    - 1의3. 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의 접수
    - 1의4. 법 제25조에 따른 약관의 제정 및 변경 보고의 접수, 약관 변경의 권고
  2. 법 제28조·제29조·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등록 및 등록 말소
    - 2의2.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그 내용에 관한 신고의 접수
    - 2의3.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허가·인가를 하기 위한 검토
    - 2의4. 법 제33조의2제2항 및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본허가·본인가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의 확인
    - 2의5. 법 제33조의2제4항 및 제45조의2제4항에 따른 예비허가·예비인가의 조건 이행 여부 확인 및 본허가·본인가의 요건을 충족하는지의 확인
  3. 법 제40조에 따른 제휴, 위탁 또는 외부주문에 관한 계약에 대한 시정 또는 보완 지시
  4.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업무 및 경영실적보고서의 제출방법 및 절차의 결정, 보고서의 접수
  5.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경영지도기준의 구체적 산정방법의 설정
- ②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결과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그리고,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및 신뢰성과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전자금융거래법 제40조), 업무 성과를 분석할 수 있도록 업무별로 다른 업무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고, 전자금융거래 관련 업무 및 경영실적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할 의무가 있다(같은 법 제42조).

## 전자금융거래법

**제40조(외부주문등에 대한 감독 및 검사)** ①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전자금융보조업자와 제휴, 위탁 또는 외부주문(이하 이 조에서 "외부주문등"이라 한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하는 때(전자금융보조업자가 다른 전자금융보조업자와 외부주문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하는 때를 포함한다)에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및 신뢰성과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5. 22.>

## 전자금융거래법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계약 내용이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경영의 건전성 및 이용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대하여 관련 계약 내용의 시정 또는 보완을 지시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5. 22.>

③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외부주문등과 관련하여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전자금융보조업자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5. 22.>

④ 금융감독원장은 전자금융보조업자가 제3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전자금융보조업자에 대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 <신설 2013. 5. 22.>

⑤ 금융감독원장은 제4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보조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3. 5. 22.>

1. 조사사항에 관한 진술서의 제출
2. 조사에 필요한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의 제출
3. 관계인의 출석

⑥ 정보기술부문의 정보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위탁받은 전자금융보조업자는 해당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전자금융거래정보의 보호 및 안전한 처리를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 10. 15.>

⑦ 제4항에 따른 조사에 관하여는 제39조제4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3. 5. 22., 2014. 10. 15.>

[제목개정 2013. 5. 22.]

**제42조(회계처리 구분 및 건전경영지도)** ①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자금운용과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업무의 성과를 분석할 수 있도록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업무별로 다른 업무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고,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업무 및 경영실적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5. 22., 2014. 10. 15.>

② 금융위원회는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건전경영을 지도하고 전자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경영지도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5. 22.>

1. 자본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자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3. 유동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금융위원회는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제2

## 전자금융거래법

항의 경영지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경영의 건전성을 크게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자본금의 증액, 이익배당의 제한 등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5. 22.>

④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재무상태가 제2항의 경영지도기준에 미달하거나 거래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인하여 제2항의 경영지도기준에 미달하게 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때에 필요한 조치 등에 관하여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1조제1항·제4항·제5항, 제13조의2, 제14조,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 제14조의7,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제27조 및 제2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 5. 22.>

## 2. 소액결제 관련 혁신 정책

### (1) 금융위원회의 소액결제 분야 혁신 정책 추진 동향

#### 1)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방안(2019)

2019년 2월 25일에는 이러한 지급결제 분야의 변화를 인지하고 핀테크 및 금융플랫폼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방안」이 공개된 바 있다.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방안」의 주요 추진 배경은 다음과 같다.<sup>67)</sup>

전세계적으로 핀테크 중심의 금융혁신이 활발히 진행되는 가운데, 특히 금융결제\* 부문에서 혁신과 경쟁이 가장 치열하게 전개

\* 국내외 송금, 상거래 결제, 금융투자 등을 위한 이체 등 → 일상적인 생활금융

□ 금융결제는 많은 고객 접점과 빅데이터 등을 통해 종합적인 금융플랫폼으로 발전하는 등 핀테크 혁신의 교두보 역할

→ 글로벌 시장에서는 이미 핀테크기업을 비롯해 여러 사업자들이 금융결제 시장에 진출해

67) 관계부처 합동, “핀테크 및 금융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방안”, 보도자료, 2019.2.25, 1면.

시장을 빠르게 선점하고 있는 상황

\* 글로벌 핀테크의 30% 이상이 금융결제 분야에 집중 // 페이스북, 알리바바, 레볼루트 등 주요 핀테크기업도 금융결제를 기반으로 금융플랫폼으로 성장 // 시장지배력 있는 기술기반의 BigTech 기업의 금융 분야 진출 확산

□ 주요 선진국들은 금융결제 부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과감하게 인프라 혁신을 추진중

○ 혁신적인 결제사업자들이 원활하게 시장에 진입하여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결제 시스템의 접근성·개방성을 확대하고,

○ 새로운 결제서비스를 법제도 내에 유연하게 수용할 수 있도록 탄력적인 규제 체계를 새로 도입

□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핀테크기업을 중심으로 간편결제, 금융 플랫폼 등 새로운 혁신적인 서비스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으나,

○ 폐쇄적 금융결제 시스템과 경직적 규제 체계 등으로 금융변혁을 이끌기에는 한계 → 신용카드 위주 결제와 단순 마케팅 경쟁 지속

□ 현재의 낮은 금융결제 인프라를 계속 유지할 경우, 빠르게 변화 하는 글로벌 금융결제 혁신 흐름에서 뒤처질 우려

○ 금융결제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연관산업의 혁신 성장도 저해

또한, 정부는 금융결제 인프라 분야 혁신의 필요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sup>68)</sup>

금융결제는 여타 금융서비스와는 달리 금융, 실물, 대외부문 전반에 걸쳐 연결성과 파급력이 큰 금융혁신의 핵심 토대

\* 특히, 최근 IT, 모바일 등 핀테크기술과 결합하면서 금융결제의 파급력이 더욱 커짐 ① 많은 고객 접점의 특성 → 금융결제와 연계하여 여타 금융업으로 확장 및 종합적인 금융플랫폼\*으로 발전 가능

\* 하나의 앱으로 결제, 대출, 자산관리 등을 모두 처리할 수 있는 종합 금융서비스

- 알리바바는 계좌기반 QR결제 서비스(알리페이)를 통해 중국 모바일 결제시장의 절반 이상을 점유한 이후 투자, 신용평가, 소액대출 연계 등을 통해 종합적 금융업(엔트파이낸셜)으로 성장

② 금융결제 과정에서 소비자와 판매자 등에 대한 광범위한 빅데이터 창출 → 빅데이터의 직

68) 관계부처 합동, “핀테크 및 금융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방안”, 보도자료, 2019.2.25, 2면.

- 점 판매뿐만 아니라 이를 활용하여 금융업 및 여타 사업\*에서 경쟁우위 확보 가능
- \*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상품 추천서비스, 비즈니스 컨설팅, 유통·재고 관리 등 ㉓ 금융결제는 대규모 상거래\*를 기반으로 하면서 다양한 분야의 산업·서비스와 밀접하게 관련 → 실물경제와 높은 연결성
- \* 우리나라 상거래 결제규모는 약 1,000조원 수준(카드결제가 80% 내외)
- 효율적인 결제서비스는 낮은 수수료 및 결제편의 제고 등을 통해 사업자 부담을 경감하고 상거래를 활성화하는 효과
  - 모바일 쇼핑, O2O(온라인-오프라인 연계서비스), 공유서비스, 지급결제 기술·보안 등 新산업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 ㉔ 온라인 해외직구, 해외 여행·유학, 해외 송금 등과 연계하여 다른 금융업에 비해 해외 진출의 가능성과 기회가 많고,
  - 동시에 글로벌 결제사업자의 국내 진입 등 대외 경쟁 노출도 높음

정부에서 공개한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방안은 3대 추진전략 및 9대 추진과제로 구성되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sup>69)</sup>

####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방안 < 3대 추진전략 및 9대 추진과제 >

##### ◆ 목 표

- : 금융결제 인프라 전반의 개편
  - 혁신적인 결제서비스 출현과 활성화 지원
  - 금융결제 부문의 혁신 및 경쟁 촉진
- ( 전략 [1] ) 금융결제 시스템을 혁신적으로 개방하여 다양한 결제서비스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
  - ( 전략 [2] ) 전자금융업의 기능별 규율 전환 및 기능 확대 등 금융결제업 체계 전면 개편을 통해 혁신적인 결제서비스 창출 촉진
  - ( 전략 [3] ) 낡은 규제 정비, 세제 인센티브 등 규제·세제의 시장 친화적 개선을 통해 새로운 결제서비스 활성화 여건 마련

69) 관계부처 합동, “핀테크 및 금융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방안”, 보도자료, 2019.2.25., 5면.

금융결제 시스템 혁신적 개방	금융결제업 체계 전면개편	규제·세제의 시장 친화적 개선
❶ 공동 결제시스템(오픈뱅킹) 구축	❷ 업종별 → 기능별 규율 체계 전환	❸ 낮은 규제 개선
❹ 오픈뱅킹 법제도화	❸ 새로운 전자금융업 도입	❹ 범용성 제고를 위한 제도 지원
❺ 핀테크기업에 금융결제망 개방	❹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 허용	❺ 세제 인센티브 방안 검토 추진

## 2)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2020)

금융위원회가 2020년 7월 27일 발표한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에서는 ‘디지털금융의 혁신과 안정을 위한 주요 제도개선 추진사항’을 제시하고 있다.<sup>70)</sup>

이러한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에 따른 4대분야 혁신전략은 2019년의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방안’의 3대추진전략에 비하여 금융안정과 이용자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고심하여 설계한 노력이 엿보이며, 향후 입법적 개선조치를 통한 다양한 제도 변화가 예상된다.

다음의 <그림 8>은 금융위원회가 2020년 7월 27일 제시한 디지털금융 혁신과 안정을 위한 주요 제도개선 추진사항에 대한 기본방향을 인용한 것이며, 제도개선 추진의 대략적인 윤곽이 일목요연하게 잘 드러나 있다.

70) 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 발표- 디지털금융의 혁신과 안정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전자금융거래법』의 전면 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2020. 7. 27. 보도자료 1면([http://www.fsc.go.kr/info/ntc\\_news\\_view.jsp?menu=7210100&bbsid=BBS0030&no=34066](http://www.fsc.go.kr/info/ntc_news_view.jsp?menu=7210100&bbsid=BBS0030&no=34066) 2020.10.5. 최종검색)

<그림 8> 디지털금융 혁신과 안정을 위한 주요 제도개선 추진 개념도<sup>71)</sup>



이러한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의 추진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는「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2020년 3분기 내에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것으로 공표되었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개정안 공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법률 개정 전 시행 가능한 제도의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과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과 행정지도 및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하여 우선 실시될 것으로 예상된다.<sup>72)</sup>

우선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을 기초로 판단컨대, 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이라도 큰 시일 내에 선불수단 충전한도 상향이 이루어지면 현행 최대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증액되어 전자제품 구매나 여행상품 지급결제 등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결제 가능범위가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시행령 제13조). 이 때 거래질서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1일 총 이용한도(1천만원)가 함께 설정될 것으로 보인다.

71) 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발표- 디지털금융의 혁신과 안정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전자금융거래법」의 전면 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2020. 7. 27. 보도자료 3면의 ‘기본방향’ 그림 인용([http://www.fsc.go.kr/info/ntc\\_news\\_view.jsp?menu=7210100&bbsid=BBS0030&no=34066](http://www.fsc.go.kr/info/ntc_news_view.jsp?menu=7210100&bbsid=BBS0030&no=34066) 2020.10.5. 최종검색)

72) 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발표- 디지털금융의 혁신과 안정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전자금융거래법」의 전면 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2020. 7. 27. 보도자료 13면([http://www.fsc.go.kr/info/ntc\\_news\\_view.jsp?menu=7210100&bbsid=BBS0030&no=34066](http://www.fsc.go.kr/info/ntc_news_view.jsp?menu=7210100&bbsid=BBS0030&no=34066) 2020.10.5. 최종검색)

현재 추심이체의 출금 동의와 관련하여서는 시행령 제10조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조의 개정을 통하여 지급인으로부터 출금에 대한 동의를 얻는 방법이 다양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즉, 서면 또는 녹취(전화 녹취, 음성응답 시스템(ARS)) 외에도 챗봇 등 다양한 수단의 활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금융보안 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장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내용이 대폭 개정될 것으로 예상되며, 일례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제14조의2) 외에도 최근 인증·신원확인(DID) 분야에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 기반 인증 등에 대하여서도 일정 부분 개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된다.<sup>73)</sup>

또한, 재해재난 상황에서 업무를 유지·복구·재개하기 위한 대응계획인 금융회사 등의 업무지속계획 수립 의무를 금융인프라 기관까지 확대할 것으로 보이며, 위기대응 훈련 정례화 및 침해사고 대응, 위기정보 공유 등을 위하여 금융보안원의 기능도 강화될 것으로 판단된다.<sup>74)</sup>

그리고, 이용자 자금 보호를 위하여 '가이드라인' 방식의 행정지도를 통하여, 전자금융업자의 선불충전금에 대해 은행 등 외부기관에 예치·신탁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는 조치도 이루어지게 되었다.<sup>75)</sup> 즉, 자금이체업자나 새로 도입되는 종합지급결제사업자의 경우 이용자 자금의 100%를 예치하여야 하고, 대금결제업자의 경우에는 50%이상 예치하도록 하였다.<sup>76)</sup>

73) 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 발표- 디지털금융의 혁신과 안정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전자금융거래법』의 전면 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2020. 7. 27. 보도자료 6면([http://www.fsc.go.kr/info/ntc\\_news\\_view.jsp?menu=7210100&bbsid=BBS0030&no=34066](http://www.fsc.go.kr/info/ntc_news_view.jsp?menu=7210100&bbsid=BBS0030&no=34066) 2020.10.5. 최종검색)

74) 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 발표- 디지털금융의 혁신과 안정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전자금융거래법』의 전면 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2020. 7. 27. 보도자료 11면([http://www.fsc.go.kr/info/ntc\\_news\\_view.jsp?menu=7210100&bbsid=BBS0030&no=34066](http://www.fsc.go.kr/info/ntc_news_view.jsp?menu=7210100&bbsid=BBS0030&no=34066) 2020.10.5. 최종검색)

75) 금융감독원, “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 자금이 안전하게 보호됩니다-『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 자금 보호 가이드라인』 시행”, 2020.9.27. 보도자료, 1~8면([http://www.fss.or.kr/fss/kr/promo/bodobbs\\_view.jsp?seqno=23394&no=15603&s\\_title&s\\_kind&page=1](http://www.fss.or.kr/fss/kr/promo/bodobbs_view.jsp?seqno=23394&no=15603&s_title&s_kind&page=1) 2020.10.12. 최종검색); 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 발표- 디지털금융의 혁신과 안정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전자금융거래법』의 전면 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2020. 7. 27. 보도자료 7면([http://www.fsc.go.kr/info/ntc\\_news\\_view.jsp?menu=7210100&bbsid=BBS0030&no=34066](http://www.fsc.go.kr/info/ntc_news_view.jsp?menu=7210100&bbsid=BBS0030&no=34066) 2020.10.5. 최종검색)

이러한 예치금 설정 기준은 중국인민은행이 2018년 12월 6일『지급결제기관의 위안화 준비금 계좌의 폐지에 관한 업무 관련 통지(关于支付机构撤销人民币备付金账户有关工作的通知)』를 통하여 2019년 1월 14일까지 준비금계좌 운영을 폐지하고, 비은행 모바일지급결제기관에 대한 ‘준비금(备付金)’<sup>77)</sup>을 100%로 상향조정한 입법례를 참고한 것으로 파악된다.<sup>78)</sup>

이처럼, 시행령 내지 감독규정 개정을 통하여 우선 추진할 수 있는 제도 외의 다른 추진 대상들의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작업을 통하여 이용자 보호 및 행위제한 관련 규정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 (2) 오픈뱅킹(결제인프라 개방) 시범서비스

위에서 언급한 금융결제 혁신방안에 대하여, 2019년 실제로 금융결제 시스템 혁신적 개방 부분에서는 은행 협조 및 금융결제원 규약 개정 등을 통하여 공동결제시스템(오픈뱅킹)을 구축하고, 기존에 400~500원 수준의 은행결제망(이체 API) 이용료를 1/10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계획<sup>79)</sup>을 추진하여 10월30일부터 시범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다.

즉, 2019년 10월 30일부터 10개 은행(신한, KB국민, 우리, IBK기업, KEB하나, NH농협, BNK부산, BNK경남, 전북, 제주)에서 오픈뱅킹 시범서비스를 실시하고, 시범실시 이후 일주일 동안 102만명이 서비스에 가입하여 183만 계좌(1인당 1.8개)를 등록하였으며, 총 이용건수는 1,215만건(일평균 174만건)인 것으로 집계되었다.<sup>80)</sup>

76) 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 발표- 디지털금융의 혁신과 안정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전자금융거래법』의 전면 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2020. 7. 27. 보도자료 7면([http://www.fsc.go.kr/info/ntc\\_news\\_view.jsp?menu=7210100&bbsid=BBS0030&no=34066](http://www.fsc.go.kr/info/ntc_news_view.jsp?menu=7210100&bbsid=BBS0030&no=34066) 2020.10.5. 최종검색)

77) 중국에서 비은행 모바일 지급결제기관에 대한 준비금제도는 “고객이 온라인상에서 물품 구매를 위해 알리페이나 위챗페이와 같은 비은행 결제기관을 통해 물품대금을 결제하거나, 예치한 자금 중 고객 또는 사업자가 인출하지 않아 비은행 결제기관이 임시로 보관하고 있는 금액을 의미”한다고 한다(노은영, “중국 비은행 지급결제기관의 모바일결제에 관한 규제 연구”, 『금융법연구』 제16권 제3호, 2019, 금융법학회, 185면.

78) [http://www.gov.cn/xinwen/2018-12/06/content\\_5346147.htm](http://www.gov.cn/xinwen/2018-12/06/content_5346147.htm) 2020.10.5. 최종검색

79) 관계부처 합동, “핀테크 및 금융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방안”, 보도자료, 2019.2.25, 6~7면.

80) 금융위원회, “오픈뱅킹(결제인프라 개방) 시범서비스 이용현황”, 금융위원회/금융결제원 보도참고자료, 2019.11.6., 1면

이러한 오픈뱅킹 시범사업을 통하여, 정부는 오픈뱅킹 시스템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있으며, 타 은행에 보유하고 있는 계좌를 등록하려는 경우 보유 계좌번호 자동조회가 이루어지지 않아 계좌번호를 직접 입력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어카운트인포 서비스와의 연계를 통하여 계좌 자동조회 후 등록할 수 있도록 보완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81)</sup> 또한, 예·적금 등록과 관련하여 계좌등록절차나 방식이 은행별로 달라 일부 은행에서는 예·적금이나 수익증권 계좌등록이나 조회가 제한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하여서도 어카운트인포 서비스와의 연계를 통해 개선하였다고 전해진다.<sup>82)</sup>

이러한 시범사업 기간을 거쳐 2019년 12월 18일 오픈뱅킹이 전면시행 되었으며, 2020년 1월 8일을 기준으로 1,197만명이 가입하고, 2,222만 계좌가 등록되고, 핀테크 업권에서 은행권과 대비하여 빠른 속도로 신규 가입과 계좌등록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sup>83)</sup>

정부는 이를 위하여 i) 참가기관을 상호금융이나 저축은행, 우체국 등 제2금융권으로 확대 여부, ii) 예·적금 등 보유자산 조회·이체 외에 API 기능 다양화 가능성, iii) 모바일·인터넷 외 점포 등 대면 채널을 통한 서비스 허용, iv)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 등 새로운 금융산업 제도 도입에 따른 영향 분석 및 시너지 창출 방안, v) 오픈뱅킹을 통한 휴면 계좌 활성화, 가상계좌 등 이용 계좌 확대 등 이용자 편의성 제고 추진, vi) 오픈뱅킹 관련 리스크 분석 및 보안·이용자 보호 강화 방안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오픈뱅킹 고도화 방안을 마련 중이다.<sup>84)</sup>

현재 오픈뱅킹의 원활한 이용과 고객지원을 위하여 금융결제원은 오픈뱅킹 통합 홈페이지(www.openbanking.or.kr)를 운영하고 있으며, 오픈뱅킹 API는 ① 잔액조회, ② 거래내역조회, ③ 계좌실명조회, ④ 송금인 정보조회, ⑤ 입금이체, ⑥ 출금이체, ⑦ 수취조회 분야에서 각각 적용되고 있다.<sup>85)</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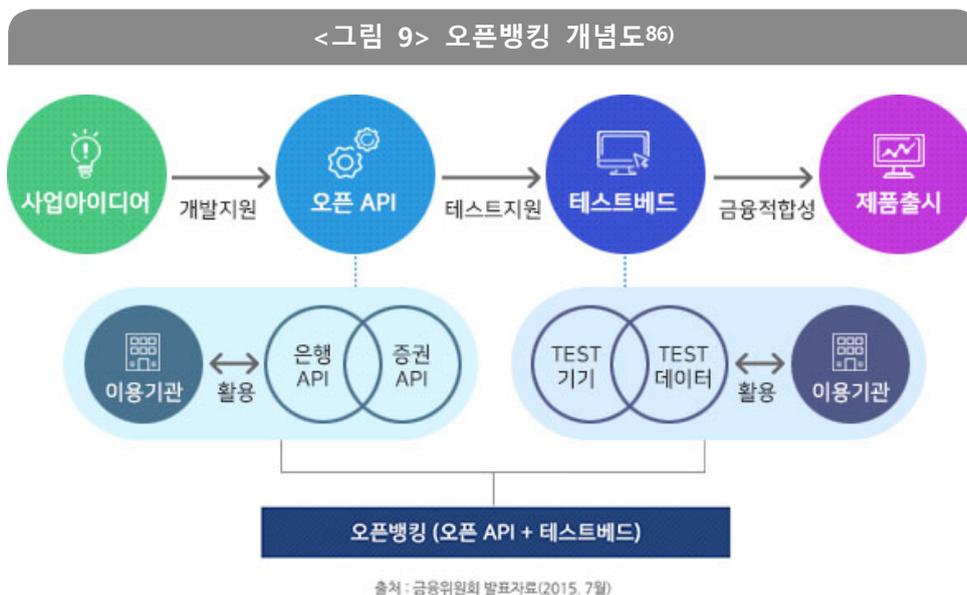
81) 금융위원회, “오픈뱅킹(결제인프라 개방) 시범서비스 이용현황”, 금융위원회/금융결제원 보도참고자료, 2019.1.16., 2면

82) 금융위원회, “오픈뱅킹(결제인프라 개방) 시범서비스 이용현황”, 금융위원회/금융결제원 보도참고자료, 2019.1.16., 2면

83) 금융위원회·금융결제원, “오픈뱅킹 전문시행 이후 동향”, 금융위원회/금융결제원 보도자료, 2020.1.10., 1면.

84) 금융위원회·금융결제원, “오픈뱅킹 전문시행 이후 동향”, 금융위원회/금융결제원 보도자료, 2020.1.10., 3면

다음 <그림 9>는 오픈API를 활용한 테스트베드 운용절차를 도식화한 것이다.



오픈API는 핀테크기업이 직접 응용프로그램과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공개된 프로그램 도구로서, 현재 7개의 서비스 API와 인증/관리 API가 제공되고 있다.<sup>87)</sup>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핀테크기업에 대한 오픈뱅킹API 접근 외에도 은행 상호 간 오픈뱅킹API 접근을 허용하고 있어서, 향후 은행 간 또는 은행-핀테크기업 간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기존에 시중 은행을 중심으로 한 오픈뱅킹제도가 향후 새마을금고중앙회,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신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금융투자협회(금융투자업), 여신금융협회

85) 오픈뱅킹(오픈뱅킹공동업무) 홈페이지- 오픈뱅킹 API(<https://www.openbanking.or.kr/main> 2020.6.15. 최종검색)

86) 오픈뱅킹(오픈뱅킹공동업무) 홈페이지- 오픈뱅킹 소개- 오픈뱅킹이란? - 개요(<https://www.openbanking.or.kr/apt/content/openplatform> 2020.6.15. 최종검색)

87) 오픈뱅킹(오픈뱅킹공동업무) 홈페이지- 오픈뱅킹 소개- 오픈뱅킹이란? - 개요(<https://www.openbanking.or.kr/apt/content/openplatform> 2020.6.15. 최종검색)

(여신금융업), 우정사업본부, 저축은행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제공기관 및 연계서비스 제공 기관에 대하여서도 확대할 것인지, 그 범위를 어디로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sup>88)</sup>

한편, 오픈뱅킹 서비스 이용자 측면에서는 일반적인 지급결제서비스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와 동일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즉, 보안에 대한 이용자 불안과 무권한거래에 대한 사후구제 범위와 이용자 면책 기준, 연령대별 디지털 격차 문제 해소 및 이용자의 보안상 주의의무 이행을 위한 금융소비자 교육, 오픈뱅킹 관련 분쟁해결절차의 운용과 서비스제공자의 거래안전을 위한 각종 조치 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 (3) 오픈뱅킹의 고도화 및 법제화 방안

2019년 4월 15일 개최되었던 「성공적인 오픈뱅킹 도입을 위한 향후 과제」 세미나 발표 [지급결제 분야 해외 혁신 사례 및 시사점](전상욱, 우리금융경영연구소)에서는 “혁신적 금융서비스”와 “플랫폼 기반 생태계 구축의 중요성”을 금융회사의 중요한 전략으로 제시한 바 있으며,<sup>89)</sup> 국내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 내지 관련 보고서들도 공통적으로 오픈뱅킹을 핀테크 산업의 도약을 위한 중요한 기점으로 판단하면서 핀테크와 금융기관의 경쟁과 협력 강화를 통하여 간편결제 경쟁 저해 요소 제거를 위한 중요한 제도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sup>90)</sup>

이처럼 학계 및 실무계 모두에서 핀테크발전에 오픈뱅킹의 역할과 그 중요성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금융연구원·KRG가 2020년 4월1일부터 4월8일 기간동안

88) 서정호, “오픈뱅킹 고도화를 위한 개선방안”, 『오픈뱅킹 도입성과와 발전방향』세미나 자료, 금융연구원, 2020. 7. 6., 13의 [참여기관의 확대] 인용.

89) 전상욱, “지급결제 분야 해외 혁신 사례 및 시사점”, 『오픈뱅킹 도입성과와 발전방향』세미나 자료, 금융연구원, 2020. 7. 6., 9면의 [Open Banking에 대응하기 위한 금융회사의 전략 방향] 내용 인용.

90) 손현욱, “오픈뱅킹 도입 의의와 발전을 위한 제언”, 『오픈뱅킹 도입성과와 발전방향』세미나 자료, 금융연구원, 2020. 7. 6., 12면의 [간편결제 경쟁 저해 요소 제거] 내용 인용 ; 정은진, “핀테크 산업의 도약을 위한 기점, 오픈뱅킹”, 『동향』 제32권1호 통권696호, 한국콘텐츠진흥원, 2020.1.31.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산업정보포털-지식라운지-간행물-연구보고서-핀테크 산업의 도약을 위한 기점, 오픈뱅킹(2020.6.19. 게재)(<http://portal.kocca.kr/portal/bbs/view/B0000204/1941399.do?menuNo=200247&categorys=4&subcate=58&cateCode=0> 2020.10.05. 최종검색)

은행APP 오픈뱅킹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일반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오픈뱅킹 서비스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만족한다는 긍정적 응답이 71.3%의 결과를 얻은 것으로 발표되었다.<sup>91)</sup> 다만, 최근 간편결제와 함께 오픈뱅킹방식으로 운용되는 간편송금APP과의 비교 부문에서는 “타행 통합조회/이체 외 별다른 서비스가 없고 간편송금앱보다 활용성이 떨어진다는 점도 제기”되는 것으로 나타나<sup>92)</sup> 향후 오픈뱅킹 분야에서의 간편송금서비스의 활용성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오픈뱅킹 사용시 우려되는 점으로는 개인정보 보안에 대한 불안과 은행별 인증 방식의 차이, 증장년 층에 대한 사용편의성 문제점, 금융사고에 대한 불안감 등도 함께 조사된 것으로 나타나<sup>93)</sup> 오픈뱅킹 전분야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및 금융사고에 대한 오픈뱅킹 참가 금융사 및 핀테크업체에 대한 이용자 보호 정책과 분쟁해결제도의 도입에 대한 활발한 논의와 종합적인 제도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영국의 경우 금융옵부즈만서비스(FOS), 일본의 경우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를 통하여 금융소비자의 사후구제를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용자의 사후구제에서 주로 논의되는 가가 요소별 분쟁해결제도는 ① 위법계약에 대한 해지권, ③ 금융회사 자료열람요구권, ④ 손해배상 입증책임 전환, ⑤ 소액분쟁에 대한 처리, ⑥ 징벌적 손해배상, ⑦ 집단소송 등으로 구성된다.<sup>94)</sup>

따라서, 간편결제 및 간편송금 분야와 직결되어 있는 오픈뱅킹 제도와 관련하여서도 이용자보호를 위하여서는 이러한 분쟁해결제도의 입법적 기초를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국제결제은행(BIS)가 금융시장 인프라에 관한 원칙으로 ‘투명하고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갖출 것을 제시하고 있는 것과도 같은 맥락이라 이해할 수 있겠다.<sup>95)</sup>

91) 서정호, “오픈뱅킹 고도화를 위한 개선방안”, 『오픈뱅킹 도입성과와 발전방향』, 세미나 자료, 금융연구원, 2020. 7. 6., 4면의 [오픈뱅킹 이용자 서베이 - 오픈뱅킹 서비스의 전반적인 만족도] 인용.

92) 서정호, “오픈뱅킹 고도화를 위한 개선방안”, 『오픈뱅킹 도입성과와 발전방향』, 세미나 자료, 금융연구원, 2020. 7. 6., 5면의 [오픈뱅킹 이용자 서베이 - 오픈뱅킹 사용 시 우려되는 점] 인용.

93) 서정호, “오픈뱅킹 고도화를 위한 개선방안”, 『오픈뱅킹 도입성과와 발전방향』, 세미나 자료, 금융연구원, 2020. 7. 6., 4면의 [오픈뱅킹 이용자 서베이 - 오픈뱅킹 서비스의 전반적인 만족도] 인용.

94) 이성복, “금융소비자 사후구제 권리 증진 방안”, 『금융소비자보호 정책방향 토론회』, 세미나 자료, 금융연구원, 2018.11., 7면의 [해외 금융소비자 사후구제 제도 도입 현황] 인용.

특히, 오픈뱅킹(공동 결제시스템)은 현행 법률상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서 은행권의 참여나 이용료 등 제도의 안정성이나 항구성을 보장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으며, 현재에는 은행권 자율 규약에 따라 이용·제공기관 및 이용료 등을 은행권에서 임의적으로 결정해 온 바 있다.<sup>96)</sup> 또한, 정부는 이러한 은행결제망 개방이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해외 선진 사례들을 반영하여, 전자금융거래법 등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모든 은행이 결제사업자에게 은행의 자금이체 기능을 표준화(API)하여 제공하도록 의무화 하는 한편, 은행결제망을 이용하는 결제사업자에 대해 이체처리 순서, 처리 시간, 비용(이용료) 등에서 차별행위를 금지하는 규정 등을 채택하는 법 개정안을 마련할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sup>97)</sup>

### 3. 소 결

현행 소액결제와 관련된 정책과 제도는 금융위원회의 “디지털금융혁신방안”과 한국은행의 지급결제 관련 정책을 기초로 하여, 「한국은행법」과 「전자금융거래법」을 중심으로 그 입법적 기초가 설계되어 있다.

다만, 기술혁신에 따른 핀테크 분야 서비스가 날로 발전하고 있는 가운데, 소액결제시장에서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지급결제 생태계도 최근 빠른 속도로 재편되고 있다. 이처럼 기술혁신을 기초로 한 소액결제시장에서 제공되는 지급결제 관련 서비스 또한 기존의 입법 체계나 규제 체계에서는 적용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간편결제 플랫폼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 및 상품의 유형 또한 기존의 감독 체계 내에서 일률적으로 감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95) 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 발표- 디지털금융의 혁신과 안정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전자금융거래법」의 전면 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2020. 7. 27. 보도자료 9면([http://www.fsc.go.kr/info/ntc\\_news\\_view.jsp?menu=7210100&bbsid=BBS0030&no=34066](http://www.fsc.go.kr/info/ntc_news_view.jsp?menu=7210100&bbsid=BBS0030&no=34066) 2020.10.5. 최종검색)

96) 관계부처 합동, “핀테크 및 금융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방안”, 보도자료, 2019.2.25., 8면.

97) 관계부처 합동, “핀테크 및 금융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방안”, 보도자료, 2019.2.25., 8면.

이에 세계 각국은 지급결제수단 다양화에 따른 소액결제시장 및 지급결제 생태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급결제법제의 혁신을 시도하고 있다. 즉, EU, 싱가포르, 이스라엘 등에서 지급결제법제를 정비함으로써 새로운 지급결제수단의 발전과 금융분야의 혁신을 촉진하면서도 이용자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금융혁신과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확보를 균형 잡있게 추구해 나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이 지급결제분야에 대한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와 함께 입법조사처 등에서도 새로운 전자지급결제서비스의 발전과 이용자보호를 위한 다양한 입법방향성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sup>98)</sup>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도 우리나라 간편결제 분야의 근거법률인 『전자금융거래법』과 최근의 소액결제시장 변화에 따라 함께 검토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다양한 관련 법제 현황을 분석하여 현행 법제의 한계점을 살펴보고, 향후 지급결제 분야 법제 개선 방향성 등 중·장기적인 법제 대응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한다.

98) 최지현, 새로운 전자지급서비스의 정착을 위한 입법과제, 경제·산업 분야 입법 및 정책 과제, 통권 3호, 2016.12.1. 입법조사처.; 채규향, 조민경, 배문선, 신종 전자지급서비스의 확산 및 제약요인과 과제, 금융결제국 전자금융팀, 지급결제 조사자료 2015-2.



## 제3장

# 소액결제 관련 법제 현황과 문제점 분석

제1절 서 설

제2절 소액결제 관련 법제의 주요 내용

제3절 전자금융거래법의 연혁 및 최근 개정 법률안의 주요내용

제4절 디지털 금융융합혁신방안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논의

제5절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에 대한 입법적 검토

제6절 소액결제 관련 법제 개선 필요성



## 제3장

# 소액결제 관련 법제 현황 및 문제점 분석

### 제1절 서 설

그동안 국내에서 소액지급결제와 관련하여서는 주로 간편결제·간편송금으로 불리는 다양한 지급결제방식을 위주로 논의가 구성되어 왔다. 즉, 이러한 소액지급결제 분야 법제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지급결제수단을 기준으로 하여, 전자지급이체업, 전자화폐업, 선불전자지급수단업, 직불전자지급수단업, 전자지급결제대행법, 결제대금예치업, 전자고지결제업으로 구분하여 적용되어왔다.

현행 국내 소액결제 관련 법제의 구성 및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표로 소개하자면 다음 <표 16>과 같다.

<표 16> 소액지급결제 유형별 관련 법제의 구성

지급결제 또는 서비스 유형		결제수단	서비스제공자 및 관련 업무	관련 법률
소액 결제 (간편 결제)	신용/ 직불	신용카드/ 직불카드 (실물 및 모바일카드)	전자지급결제업, 결제대행업(PG), 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업	전자금융거래법
			신용카드업, 부가통신업, 결제대금예치업, 수납대행가맹점(신용카드 가맹점)	여신전문금융업법
			기타전문외국환업무(해외셀러에 대한 정산의 경우)	외국환거래법

지급결제 또는 서비스 유형		결제수단	서비스제공자 및 관련 업무	관련 법률
페이 충전	신용카드		전자지급결제업, 결제대행업(PG), 신용카드업, 부가통신업, 결제대금예치업, 수납대행가맹점/ 기타전문외국환업무	전자금융거래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외국환거래법
	직불카드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업/ 부가통신업, 결제대금예치업, 수납대행가맹점/ 기타전문외국환업무	전자금융거래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외국환거래법
	추심이체 출금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결제대금예치업,	전자금융거래법
휴대폰 소액 결제	통신과금 서비스 <sup>99)</sup>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이동통신사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포인트	포인트, 캐쉬백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업, 선불카드 유사 지급 수단	전자금융거래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상품권	선불카드 등		선불카드, 선불전자지급수단, 상품권 (개인 신용카드회원의 월1백만원 한도내 이용)	전자금융거래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지역사랑 상품권		지역상품권(지역화폐)의 발행·판매·교부·사용/ 판매대행/ 개별가맹점·환전대행가맹점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온라인청구서	페이 전자고지		전자고지결제업	여신전문금융업법 전자금융거래법 <sup>100)</sup>
외국환소액송금	전자 지급수단		소액해외송금업자,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 외국환중개회사	전자금융거래법, 외국환거래법 <sup>101)</sup> ,

9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① 10. “통신과금서비스”란 정보통신서비스로서 다음 각 목의 업무를 말한다.

다만, 기존의 소액결제시장에서의 서비스 유형과 달리 최근 기술의 발달에 따라 소액결제시장에서 지급결제수단은 더욱 다양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현행의 지급수단별 규제 체계에 따르면 향후 관련 법률과 소관부처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가 2020년 7월 27일 발표한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향후 My Payment(지급지시전달업)과 종합지급결제업이 도입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 즉, 종합지급결제업자는 각 세부 업종별 인허가 및 등록 기준에 따라 전자지급결제

- 가. 타인이 판매·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의 대가를 자신이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의 요금과 함께 청구·징수하는 업무
  - 나. 타인이 판매·제공하는 재화등의 대가가 가목의 업무를 제공하는 자의 전기통신역무의 요금과 함께 청구·징수되도록 거래정보를 전자적으로 송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업무
- 100)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금융개혁 추진 이후 비조치의견서 및 유권해석 첫 사례-「금융개혁 현장점검반」 BC카드 현장방문 결과”, [비조치의견서 회신문], 2015.4.8.([http://www.fsc.go.kr/info/ntc\\_news\\_view.jsp?bbsid=BBS0030&page=1&sch1=subject&sword=비조치의견서&r\\_url=&menu=7210100&no=30351](http://www.fsc.go.kr/info/ntc_news_view.jsp?bbsid=BBS0030&page=1&sch1=subject&sword=비조치의견서&r_url=&menu=7210100&no=30351) 2020.10.5. 최종검색)

요청대상 행위	<input type="checkbox"/> 신용카드업자인 비씨카드(주)가 '전자고지결제업'*을 부수업무로 영위할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제재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비조치의견을 요청 * 수취인을 대행하여 지급인이 수취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자금의 내역을 전자적인 방법으로 지급인에게 고지하고, 자금을 직접 수수하며 그 정산을 대행하는 업무 (「전자금융거래법」제 28조 제2항 제5호,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2호) <참작 사유> ① 「전자금융거래법」(제28조)상 신용카드업자가 '전자고지결제업'을 영위하는 것은 조건없이 허용됨(금융위 등록의무 면제) ② 여전업감독규정(§7의2①)에서도 카드사에게 '결제시스템 제공' 업무를 허용하여 이미 금융기관간 대금정산업무가 이루어지고 있음 ③ 카드사의 부수업무 확대를 위한 네거티브 방식 개정이 예정
제재대상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	<input type="checkbox"/> 비씨카드(주)가 동 업무를 영위하더라도 별도의 제재조치는 부과하지 않을 예정

101)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3호 나목 및 다목,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및 제2항, 「외국환거래규정」 제1-2조 제34호[시행 2020. 8. 4.] [기획재정부고시 제2020-21호, 2020. 8. 4., 일부개정]

「외국환거래규정」
제1-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4. "지급수단"이라 함은 법 제3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정부지폐·은행권·주화·수표·우편환·신용장과 환어음·약속어음·상품권·기타 지급받을 수 있는 내용이 표시된 우편 또는 전신에 의한 지급지시 및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화폐, 선불전자지급수단 등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수단을 말한다. 다만, 액면가격을 초과하여 매매되는 금화 등은 주화에서 제외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0-21호, 2020.8.4. 개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각 유형별 사업자가 가진 Small License를 모두 가질 수 있는 지위에 더하여, 금융결제망 참가를 통해 급여 이체, 은행의 예금·대출과 같은 여수신 업무를 제외하고 카드대금·보험료·공과금 납부 등 계좌 기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sup>102)</sup>

따라서, 현재 지급수단을 기준으로 각 유형별 사업자의 제공서비스가 규정되어 있는 기존의 「전자금융거래법」은 사업자의 제공서비스 및 업무 유형을 기준으로 그 구성도 재편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소액후불지급결제 및 금융보안, 역외적용 규정, 금융결제망 참가를 통한 지급결제전용계좌 기반서비스 등 지급결제 플랫폼의 지위와 업무범위가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향후 소액결제시장의 변화에 따른 법제 대응 방안은 이와같이 각 지급결제 플랫폼의 지위와 업무범위를 유형별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관리·감독 및 행위규제와 이용자보호 조치를 기준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

102) 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 발표- 디지털금융의 혁신과 안정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전자금융거래법」의 전면 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2020. 7. 27. 보도자료 ([http://www.fsc.go.kr/info/ntc\\_news\\_view.jsp?menu=7210100&bbsid=BBS0030&no=34066](http://www.fsc.go.kr/info/ntc_news_view.jsp?menu=7210100&bbsid=BBS0030&no=34066) 2020.10.5. 최종검색)

## 제2절 소액결제 관련 법제의 주요 내용

### 1. 소액결제 관련 법제의 구성

현행 지급결제법제는 전자금융거래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전자정부법,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민법, 상법, 소비자기본법 등 지급결제수단 종류 및 지급결제거래의 형태에 따라 분산하여 규율하고 있다.

<표 17> 소액결제 지급수단별 법제 현황

전자화폐,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자금이체, 직불전자지급수단, 전자채권	전자금융거래법
신용카드, 선불카드, 직불카드	여신전문금융업법
전자어음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통신과금서비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상자산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다음의 <표 18>은 소액결제시장 변화에 따른 법제 대응방안을 효과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소액결제를 수행하는 간편결제 플랫폼에 대한 관리·감독 구조를 중심으로 후불 소액결제 및 금융거래정보 등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 현행 법제의 구성과 주요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내용이다.

**<표 18> 소액·간편결제 플랫폼에 대한 관리·감독 구조에 따른 법제 구성<sup>103)</sup>**

구분	관리·감독 유형 및 내용		적용 근거	소관 기관
1	<b>전자금융업의 허가/등록</b>	허가(전자화폐:자본금50억이상)/ 등록(전자자금이체업:30억, 직불전자지급수단:20억, 선불전자지급수단:20억, 전자지급결제대행:3억, 결제대금예치업:3억, 전자고지결제업:3억, 전자채권의 등록 및 관리 업무:30억)	전자금융거래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전자금융업감독규정	금융위원회
	<b>행위규제</b>	접근매체·계좌정보 사용·관리, 거래내용 확인, 오류정정, 사업자의 책임, 접근매체 분실·도난 책임, 전자지급거래 계약, 거래지시 철회, 추심이체 출금동의, 발행/사용/환금·환급, 전자채권양도의 대항요건,	전자금융거래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전자금융업감독규정	공정거래위원회
	<b>유권해석/비조치의견서</b>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사례집 <sup>104)</sup>	기획재정부
	<b>이용자 보호</b>	안전성 확보,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지정,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평가, 전자책 침해행위등 금지, 침해사고 통지, 전자금융거래 기록의 생성·보존·파기, 전자지급수단 발행·이용한도, 약관의 명시와 변경통지, 전자금융거래정보 제공, 분쟁처리 및 분쟁조정	전자금융거래법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b>금융상품판매·자문업무의</b>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등록, 등록의 영업행위 금지, 영업행위 일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2021.3.25.시행)	행정안전부

103) 각 법률 및 시행령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구분	관리·감독 유형 및 내용		적용 근거	소관 기관
	<b>상대방(사모투자자 제외)</b>	원칙/적합성·적정성원칙,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 광고, 계약서류 제공의무, 광고준수사항, 업종별 영업행위 준수사항, 자료의 기록·유지·관리, 판매업자/직접판매업자의 손해배상책임, 청약철회, 위법계약 해지		
	<b>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b>	금융회사등에 대한가상자산 관련 불법재산 의심거래 및 고액거래 보고의무와 고객확인 의무,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의무, 예치금 구분 관리, 고객별 거래내역 분리 관리, 금융거래정보 5년간 보존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2021.3.25.시행)	
2	<b>행위규제</b>	모바일상품권(발행, 환불, 유효기간, 소멸시효)	신유형상품권 표준약관	
		표시·광고, 거래조건, 청소년 접근제한조치, 사업자의 책임범위, 거래기록열람, 확인 및 정정·취소 절차, 대금지급 신뢰확보, 정보수집·도용시조치, 재화등 공급 조치, 청약철회 방해 금지, 사업자 금지행위, 적립금 표시·보상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3	<b>소액해외송금</b>	소액해외송금업무 등록(10억), 안전성 확보, 이행보증금 산정·예탁(3억원)·지급·반환/업무범위(건당 미화 5천불 한도), 약관의 명시,	외국환거래법 및 시행령/외국환거래규정	
	<b>소득공제</b>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126의2)	조세특례제한법	

구분	관리·감독 유형 및 내용		적용 근거	소관 기관
4	휴대폰 소액결제	건전성 확보, 모니터링·해킹방지 시스템 구축, 비상시스템관리 대책, 통신과금서비스 이용 동의, 전자적 대금결제창, 결제비밀번호, 월자동결제, 결제사항 고지, 거래 기록의 보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통신과금서비스 운영에 관한 고시	
5	지역사랑상품권	발행·환전, 가맹점 등록, 판매대행점의 협약 및 관리, 재발급, 목적 외 사용금지 등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2. 소액결제 관련 법제의 주요 내용

### (1)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지급수단별로 전자자금이체,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신용카드, 전자채권, 그 밖에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수단을 규정하고, 각 지급수단별 업무 유형에 따라 전자금융업자(전자화폐 발행, 지급결제서비스 제공)와 전자금융보조업자(전자금융거래보조)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전자금융거래법
<p><b>제2조(정의)</b>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1. “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전자자금이체,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신용카드, 전자채권 그 밖에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수단을 말한다.</p> <p>12. “전자자금이체”라 함은 지급인과 수취인 사이에 자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개설된 계좌(금융회사에 연결된 계좌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서 다른 계좌로 전자적 장</p>

104) [금융규제민원포털] - [금융규제 개선활동 공지사항] -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사례집 배포] (<https://better.fsc.go.kr/user/bbs/fsc/24/111/bbsDataView/1178.do?page=1&column=&search=&bbsDataCategory=> 2020.10.5. 최종검색)

## 전자금융거래법

치에 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이체하는 것을 말한다.

- 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지급인의 지급지시
  - 나.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수취인의 추심지시(이하 “추심이체”라 한다)
13. “직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이용자와 가맹점간에 전자적 방법에 따라 금융회사의 계좌에서 자금을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그 대가의 지급을 동시에 이행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발행한 증표(자금을 유통받을 수 있는 증표를 제외한다)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14.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다만, 전자화폐를 제외한다.
- 가. 발행인(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외의 제3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될 것
  - 나. 구입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가 2개 업종(「통계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상의 업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상일 것
15. “전자화폐”라 함은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 가.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지역 및 가맹점에서 이용될 것
  - 나. 제14호 가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 다. 구입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가 5개 이상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업종 수 이상일 것
  - 라. 현금 또는 예금과 동일한 가치로 교환되어 발행될 것
  - 마. 발행자에 의하여 현금 또는 예금으로 교환이 보장될 것
16. “전자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전자문서에 기재된 채권자의 금전채권을 말한다.
- 가. 채무자가 채권자를 지정할 것
  - 나. 전자채권에 채무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것
  - 다.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의 공인전자서명이 있을 것
  - 라. 금융회사를 거쳐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자채권관리기관(이하 “전자채권관리기관”이라 한다)에 등록될 것
  - 마.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가목 내지 다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전자문서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송신하고 채권자가 이를 같은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신할 것

### 1) 전자자금이체

전자자금이체란 지급인과 수취인 사이에 자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개설된 계좌(금융회사에 연결된 계좌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서 다른 계좌로 전자적 장치에 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이체하는 것을 말한다.

- 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지급인의 지급지시
- 나.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수취인의 추심지시(이하 "추심이체"라 한다)

### 2) 직불전자지급수단

직불전자지급수단이란 이용자와 가맹점간에 전자적 방법에 따라 금융회사의 계좌에서 자금을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그 대가의 지급을 동시에 이행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발행한 증표(자금을 용통받을 수 있는 증표를 제외한다)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 3) 선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이란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다만, 전자화폐를 제외한다.

- 가. 발행인(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외의 제3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될 것
- 나. 구입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가 2개 업종(『통계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상의 업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상일 것

#### 4) 전자화폐

전자화폐란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지역 및 가맹점에서 이용될 것
- 나. 제14호 가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 다. 구입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가 5개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 수 이상일 것
- 라. 현금 또는 예금과 동일한 가치로 교환되어 발행될 것
- 마. 발행자에 의하여 현금 또는 예금으로 교환이 보장될 것

#### 5) 전자채권

전자채권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전자문서에 기재된 채권자의 금전채권을 말한다.

- 가. 채무자가 채권자를 지정할 것
- 나. 전자채권에 채무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것
- 다. 「전자서명법」제2조제3호의 공인전자서명이 있을 것
- 라. 금융회사를 거쳐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자채권관리기관(이하 “전자채권관리기관”이라 한다)에 등록될 것
- 마.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가목 내지 다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전자문서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송신하고 채권자가 이를 같은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신할 것

#### 6) 그 밖에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수단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전자지급수단에 모바일 신용카드를 포함한 다양한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수단을 포함하도록 하여, 포괄적 개념을 적용함으로써 향후 기술 발달에 따라 등장할 수 있는 다양한 전자지급결제수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7) 전자지급결제 서비스 제공 유형별 전자지급거래의 법률관계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지급결제업무를 정의하면서 전자금융업자와 전자금융보조업자를 구분하고 있다(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4호, 제5호). 전자금융업자는 전자지급결제 대행(PG; Payment Gateway)업,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직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결제대금예치(Escrow)업, 전자고지결제업 등 5개 종류로 분류되며, 전자금융보조업자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를 보조하거나 그 일부를 대행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자를 말한다.<sup>105)</sup>

또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전자적 장치(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와 이용자 사이에 미리 약정한 전자적 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전자적 장치를 포함한다)를 통하여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제7조 제1항),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이에 대한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제8조 제1항).

그리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지급인 또는 수취인과 전자지급거래를 하기 위하여 체결한 약정에 따라 수취인이나 수취인의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지급인 또는 수취인이 거래지시한 금액을 전송하여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제12조 제1항), 이용자는 제13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다(제14조 제1항).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지급결제업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있는데,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제9조 제1항).

105) 한국은행, 「한국의 지급결제제도」(2014), 100면.

1.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2.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3.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 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한편,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이용자보호 강화 규정을 채택하고 있는 바,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 및 전자금융보조업자(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는 전자금융거래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하고(제21조 제1항),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에서 입은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제27조 제1항).

한편, 전자금융거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전자금융감독규정(금융위원회고시)이 마련되어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은 전자금융보조업자의 지위(제3조), 전자금융거래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것(제2장)으로 확인에 필요한 구체적인 거래용(제4조), 추심이체 출금 동의 방법 등(제6조),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것(제3장)으로 해킹 등 방지대책(제15조), 이용자 비밀번호 관리(제33조), 전자지급수단의 이용한도(제39조), 약관교부 방법 등(제40조), 전자금융업의 허가 및 등록 및 업무(제4장), 전자금융업무의 감독(제5장) 등이다.

## (2)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신전문법」이라 함)

: 신용카드 발행 및 관리, 전자화폐 발행, 지급결제서비스 대상

### 1) 신용카드

신용카드는 가맹점 확보 등 일정한 자격을 구비한 신용카드업자가 카드 신청인의 신용상태나 미래소득을 근거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신용구매하거나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발행하는 지급수단이다.<sup>106)</sup>신용카드는 카드발행기관의 성격에 따라 전문카드사 카드와 겸영은행 카드로 구분되며, 해외사용 가능여부에 따라 국내 전용카드와 국내외 겸용카드로 구분된다.<sup>107)</sup> 국내외 겸용카드의 경우 국제적 서비스망을 갖춘 VISA, MasterCard, AMEX 등 해외 카드사와 제휴하여 해외에서도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sup>108)</sup>

#### 여신전문금융업법

##### 제2조(정의) ...

3. '신용카드'란 이를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신용카드가맹점에서 결제할 수 있는 증표로서 신용카드업자(외국에서 신용카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발행한 것을 말한다(단, 금전채무의 상환, 금융투자상품 등의 결제, 사행성게임물의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 지급, 사행행위 등의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 지급 제외).

**제16조(신용카드회원등에 대한 책임)** ①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이나 직불카드회원으로부터 그 카드의 분실·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부터 그 회원에 대하여 그 카드의 사용에 따른 책임을 진다.

② 신용카드업자는 제1항에 따른 통지 전에 생긴 신용카드의 사용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책임을 진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의 분실·도난 등에 대하여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용카드회원이 지도록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신용카드회원에 대하여 그 계약내용에 따른 책임을 지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危害) 때문에 비밀번호를 누설(漏泄)한 경우 등 신용카드회원의 고의(故意) 또는 과실(過失)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신용카드업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통지의 접수자, 접수번호, 그 밖에 접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그 통지인에게 알려야 한다.

⑤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신용카드등의 사용으로 생기는 책임을 진다.

1. 위조(僞造)되거나 변조(變造)된 신용카드등의 사용

106) 한국은행, 「한국의 지급결제제도」(2014), 126면.

107) 한국은행, 「한국의 지급결제제도」(2014), 126면.

108) 한국은행, 「한국의 지급결제제도」(2014), 126면.

2. 해킹, 전산장애, 내부자정보유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신용카드등의 정보를 이용한 신용카드등의 사용
3.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盜用)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등의 사용(신용카드회원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업자가 제5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용카드등의 사용에 대하여 그 신용카드회원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증명하면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용카드회원등이 지도록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계약을 신용카드회원등과 체결한 경우에는 그 신용카드회원등이 그 계약내용에 따른 책임을 지도록 할 수 있다.
- ⑦ 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계약은 서면으로 한 경우에만 효력이 있으며, 신용카드회원등의 중대한 과실은 계약서에 적혀 있는 것만 해당한다.
- ⑧ 신용카드업자는 제1항·제2항·제5항 및 제17조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보험이나 공제(共濟)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⑨ 제5항제3호,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신용카드회원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⑩ 신용카드회원이 서면으로 신용카드의 이용금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신용카드업자는 이에 대한 조사를 마칠 때까지 그 신용카드회원으로부터 그 금액을 받을 수 없다.

## 2) 직불카드

직불카드는 상품·서비스 구매에 대한 지급결제 과정에서 구매자의 은행계좌에서 대금이 직접 판매자의 예금계좌로 자동이체되는 구조를 가진 지급수단이다.<sup>109)110)</sup> 은행 및 카드사 등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직불형카드의 종류에는 직불카드, 체크카드, 현금IC카드가 있으며 카드유형별로 발급기준, 사용장소 등에 차이가 있다.<sup>111)</sup>

109) 한국은행, 『한국의 지급결제제도』(2014), 129면.

110) 직불전자지급수단과 직불카드의 개념에 관하여,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직불카드(체크카드)는 신용카드사가 발행하여 신용카드 가맹점에서만 유통되는 것에 한정되며 이 경우 여신전문법이 우선 적용된다. 직불카드는 전자금융거래법상의 직불전자지급수단과 동일한 개념과 기능을 하며 두 전자지급수단 간의 관계는 선불카드에서와 같은 설명이 가능하다”고 한다(김시홍, “전자지급수단의 법적 규제방안”, 가천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15.12), 16면).

111) 한국은행, 『한국의 지급결제제도』(2014), 130면.

## 여신전문금융업법

## 제2조(정의) ...

6. “직불카드”란 직불카드회원과 신용카드가맹점 간에 전자적(電子的) 또는 자기적(磁氣的) 방법으로 금융거래계좌에 이체(移替)하는 등의 방법으로 결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증표(자금(資金)을 용통받을 수 있는 증표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 3) 선불카드

선불카드는 이용고객이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일정금액을 저장한 카드를 카드발행자로부터 구입하여 상품구매 또는 서비스 이용 시마다 대금이 자동으로 차감 지급되도록 한 카드로서 사용범위에 따라 범용 선불카드와 단일목적 선불카드로 구분된다.<sup>112)</sup> 선불카드는 신용카드사가 발행하는 선불카드와 은행 등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전자화폐, 전자금융업자가 발행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구분된다.<sup>113)</sup> 대부분의 신용카드사들은 일정금액이 충전되어 사용한도가 미리 정해져 있으며, 그 범위 내에서 일반 신용카드처럼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고 재충전도 가능한 기명 선불카드 또는 무기명 선불카드(기프트카드)를 발행하고 있다.<sup>114)</sup>

## 여신전문금융업법

## 제2조(정의) ...

8. “선불카드”란 신용카드업자가 대금을 미리 받고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록(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말한다)하여 발행한 증표로서 선불카드소지자가 신용카드가맹점에 제시하여 그 카드에 기록된 금액의 범위에서 결제할 수 있게 한 증표를 말한다.

112) 한국은행, 「한국의 지급결제제도」(2014), 127면.

113) 한국은행, 「한국의 지급결제제도」(2014), 127면.

114) 한국은행, 「한국의 지급결제제도」(2014), 127면.

## (3)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어음법」이라 함) - 법무부

##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자문서”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2. “전자어음”이란 전자문서로 작성되고 제5조제1항에 따라 전자어음관리기관에 등록된 약속어음을 말한다.
3. “공인전자서명”이란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4. “전자어음관리기관”이란 제3조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기관을 말한다.
5. “사업자고유정보”란 전자어음과 관련된 당사자의 상호나 사업자등록번호, 회원번호, 법인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등 사업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6. “금융기관”이란 「은행법」에 따른 은행 및 이에 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기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7. “이용자”란 전자어음거래를 위하여 전자어음관리기관에 등록하고 전자어음관리기관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어음거래를 하는 자를 말한다.

전자어음법은 전자적 방식으로 약속어음을 발행·유통하고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전자어음법은 지급결제수단의 하나인 전자어음을 정의하고 있으며, “전자어음”이란 전자문서로 작성되고 제5조제1항에 따라 전자어음관리기관에 등록된 약속어음을 말한다(제2조 제2호).

또한, 전자어음법에는 이용자보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전자어음관리기관은 전자어음을 등록할 때에 이용자에게 전자어음거래에 관한 약관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용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약관을 발급하고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제18조 제1항). 또한, 전자어음관리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어음거래와 관련하여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이용자가 전자어음거래에서 입은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제19조 제1항).

#### (4) 은행법

: 예금/대출, 신용카드발행 및 관리, 전자화폐 발행, 지급결제서비스 제공 여부

은행법
<p><b>제27조(업무범위)</b> ① 은행은 이 법 또는 그 밖의 관계 법률의 범위에서 은행업에 관한 모든 업무(이하 “은행업무”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p> <p>② 은행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예금·적금의 수입 또는 유가증권, 그 밖의 채무증서의 발행</li> <li>2. 자금의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li> <li>3. 내국환·외국환</li> </ol> <p><b>제27조의2(부수업무의 운영)</b> ① 은행은 은행업무에 부수하는 업무(이하 “부수업무”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p> <p>② 은행이 부수업무를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운영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수업무 중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업무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영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채무의 보증 또는 어음의 인수</li> <li>2. 상호부금(相互賦金)</li> <li>3. 팩토링(기업의 판매대금 채권의 매수·회수 및 이와 관련된 업무를 말한다)</li> <li>4. 보호예수(保護預受)</li> <li>5. 수납 및 지급대행</li> <li>6.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대행</li> <li>7.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지급대행</li> <li>8. 은행업과 관련된 전산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의 판매 및 대여</li> <li>9. 금융 관련 연수, 도서 및 간행물 출판업무</li> <li>10. 금융 관련 조사 및 연구업무</li> <li>11. 그 밖에 은행업무에 부수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li> </ol> <p>③ 은행이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업무계획 및 예상손익에 관한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p> <p>④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신고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수업무의 운영을 제한하거나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은행의 경영건전성을 해치는 경우</li> <li>2. 예금자 등 은행 이용자의 보호에 지장을 가져오는 경우</li> </ol>

은행법
<p>3. 금융시장 등의 안정성을 해치는 경우</p> <p>⑤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신고받은 부수업무 및 제4항에 따라 제한 또는 시정명령을 한 부수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p> <p><b>제28조(겸영업무의 운영)</b> ① 은행은 은행업이 아닌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겸영업무"라 한다)를 직접 운영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에서 인가·허가 및 등록 등을 받아야 하는 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무</li> <li>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에서 정하는 금융 관련 업무로서 해당 법령에서 은행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업무</li> <li>3. 그 밖에 그 업무를 운영하여도 제27조의2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무</li> </ol> <p>② 은행이 겸영업무를 직접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1항제1호에 따른 업무: 금융 관련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 및 등록 등을 신청할 때 신고</li> <li>2.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업무: 그 업무를 운영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신고</li> </ol> <p>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신고내용이 제27조의2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겸영업무의 운영을 제한하거나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p>

은행법은 은행업 인가를 받은 경우에 적용되는 법률로서 전자금융업자에게는 적용될 여지가 적다. 다만, 오픈뱅킹 등 오픈API와 관련된 소액결제서비스 제공 및 관련 서비스 제공 시 최근 증권연계 계좌 등을 활용한 관련 서비스의 제공이나 광고와 같은 모호한 표현이 실무에서 등장하기도 한다. 향후 종합지급결제업자의 경우에는 ‘계정’ 등의 구별된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은행법이나 금융투자업법의 적용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고,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은행법 적용 대상 및 제외 대상을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5)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및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은행(이하 “은행”이라 합니다.)과 이용자 사이의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거래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도모하고 거래당사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전자금융거래”라 함은 은행이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제공하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이용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비대면·자동화된 방식으로 직접 이용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2. “이용자”라 함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은행과 체결한 계약(이하 “전자금융거래계약”이라 합니다.)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고객을 말합니다.
3. “지급인”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의하여 자금이 출금되는 계좌(이하 “출금계좌”라 합니다.)의 명의인을 말합니다.
4. “수취인”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의하여 자금이 입금되는 계좌(이하 “입금계좌”라 합니다.)의 명의인을 말합니다.
5. “전자적 장치”라 함은 현금자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 컴퓨터, 전화기 그 밖에 전자적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이용되는 장치를 말합니다.
6.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합니다.
  - 가. 은행이 제공한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 나.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생성정보 또는 인증서
  - 다. 은행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 라. 등록되어 있는 이용자의 생체정보
  - 마. 가목 또는 나목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
7. “전자문서”라 함은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작성,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합니다.
8. “거래지시”라 함은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계약에 의하여 은행에 개별적인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9. “오류”라 함은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약관(개별약관을 포함합니다.), 전자금융거래계약 또는 이용자가 거래지시한 대로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합니다.
10. “계좌송금”이라 함은 이용자가 자동입출금기를 통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계좌에 자금을 입금하는 것을 말합니다.
11. “계좌이체”라 함은 지급인의 전자적 장치를 통한 지급지시에 따라 은행이 지급인의 출금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하여 같은 은행 또는 다른 은행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말합니다.

##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12.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라 함은 계좌이체가 장래의 특정일자에 이루어지도록 이용자가 미리 거래지시하고 은행이 이를 해당일자에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13. “추심이체”라 함은 수취인의 전자적 장치를 통한 추심지시에 따라 은행이 지급인의 출금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하여 같은 은행 또는 다른 은행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말합니다.
  14. “예약에 의한 추심이체”라 함은 추심이체가 장래의 특정일자에 이루어지도록 이용자가 미리 거래지시하고 은행이 이를 해당일자에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15. “지연이체”라 함은 이용자가 계좌이체 거래지시를 한 시점으로부터 일정시간이 경과한 후에 은행이 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16. “영업일”이라 함은 통상 은행이 영업점에서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날을 말합니다.
  17. “단말기 지정 및 이용”이라 함은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 시 계좌이체가 가능한 전자적 장치(이하 “단말기”라 합니다.)의 IP주소, MAC주소 등 기기정보를 은행에 등록하고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18. “추가적인 보안조치”라 함은 이용자가 지정하지 않은 단말기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제6호의 접근매체 외의 휴대폰 문자 또는 2채널(서로 다른 두 가지 이상의 통신 경로를 이용) 등의 수단으로 본인임을 확인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 ㉔ 이 약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전자금융거래법」 및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약관법은 사업자가 그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約款)을 작성하여 거래에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규제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이를 통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생활을 균형 있게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제1조), 약관법은 표준약관제도를 규정하고 있다(제19조의3).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제10028호]을 제정·운영하고 있으며, 정의 규정(제2조)과 함께 거래의 성립(제11조), 거래지시의 처리기준(제12조), 추심이체의 출금동의(제13조), 지급의 효력발생시기(제15조), 거래지시의 철회(제16조), 거래내용의 확인(제17조), 오류의 정정(제18조), 사고·장애시의 처리(제19조), 손해배상 및 면책(제20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 (6)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금융위원회, 법무부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 하.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다음 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이하 “가상자산사업자”라 한다)
    - 1) 가상자산을 매도, 매수하는 행위
    - 2)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하는 행위
    - 3)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4) 가상자산을 보관 또는 관리하는 행위
    - 5) 1) 및 2)의 행위를 중개, 알선하거나 대행하는 행위
    - 6) 그 밖에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거. 제2호에 따른 금융거래등을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 “금융거래등”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 가. 금융회사등이 금융자산(「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을 말한다)을 수입·매매·환매·중개·할인·발행·상환·환급·수탁·등록·교환하거나 그 이자·할인액 또는 배당을 지급하는 것과 이를 대행하는 것, 그 밖에 금융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
  -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다. 카지노사업자의 영업장에서 현금 또는 수표를 대신하여 쓰이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현금 또는 수표를 교환하는 거래
  - 라. 가상자산사업자가 수행하는 제1호하목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가상자산거래”라 한다)
3.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가. 화폐·재화·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이 사용처와 그 용도를 제한한 것
  -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
  - 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같은 조 제15호에 따른 전자화폐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  
 마.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어음  
 바. 「상법」 제862조에 따른 전자선하증권  
 사. 거래의 형태와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불법재산”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범죄수익등  
 나.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항에 따른 불법수익등  
 다.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
5. “자금세탁행위”란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범죄행위  
 나.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7조에 따른 범죄행위  
 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 「관세법」 제270조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죄를 범할 목적 또는 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조세를 탈루할 목적으로 재산의 취득·처분 또는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假裝)하거나 그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
6.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란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5조의3(전신송금 시 정보제공)** ① 금융회사등은 송금인이 전신송금(電信送金: 송금인의 계좌보유 여부를 불문하고 금융회사등을 이용하여 국내외의 다른 금융회사등으로 자금을 이체하는 서비스를 말한다)의 방법으로 500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송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송금인 및 수취인에 관한 정보를 송금받는 금융회사등(이하 “수취 금융회사”라 한다)에 제공하여야 한다.

#### 1. 국내송금

- 가. 송금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을 말한다. 이하 같다)  
 나. 송금인의 계좌번호(계좌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참조 가능한 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  
 다. 수취인의 성명 및 계좌번호

#### 2. 해외송금

- 가. 송금인의 성명  
 나. 송금인의 계좌번호  
 다. 송금인의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 외국인인 경우에는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말한다)  
 라. 수취인의 성명 및 계좌번호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② 국내송금의 경우 수취 금융회사와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1항에 따라 송금한 금융회사등(이하 "송금 금융회사"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제1항제2호다목의 정보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수취 금융회사가 제4조에 따른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수취 금융회사로부터 보고받은 정보를 심사·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③ 송금 금융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송금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3영업일 이내에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특정금융정보법은 금융거래 등을 이용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규제하는 데 필요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행위를 예방하고 나아가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특정금융정보법은 지급결제수단의 하나인 가상자산을 정의하고 있으며,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제2조 제3호 전문).

## (7) 금융혁신지원특별법

###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융관련법령"이란 별표에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률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을 말한다.
2. "금융업"이란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 및 보험업(「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지주회사는 제외한다)과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3.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 가.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및 종합금융회사
  - 다.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보험대리점(법인에 한정한다) 및 보험중개사(법인에 한정한다)
  - 라.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금융혁신지원특별법
<p>마.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p> <p>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p> <p>사.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p> <p>아.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p> <p>자.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p> <p>차.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조합과 농업협동조합중앙회</p> <p>카.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수산업협동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p> <p>타.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과 산림조합중앙회</p> <p>파.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신용협동조합중앙회</p> <p>하.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와 새마을금고중앙회</p> <p>거.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자 및 전자금융보조업자</p> <p>니.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금융업을 영위하는 공사 및 기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p> <p>4. “혁신금융서비스”란 기존 금융서비스의 제공 내용·방식·형태 등과 차별성이 인정되는 금융업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한다.</p> <p>5. “혁신금융사업자”란 제5조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한 회사로서 제4조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를 말한다.</p>

금융혁신지원특별법상 혁신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액결제서비스 제공업자의 경우에는 혁신금융사업자로서 금융위원회에 규제샌드박스 신청을 할 수 있다. 소액결제시장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서비스나 상품을 제공하려는 소액결제업자의 경우 이러한 혁신금융서비스를 기반으로 리스크에 대한 모니터링 및 관련 법규의 규제 적정성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8)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과 「소비자기본법」 - 금융위, 공정위

: 금융소비자 보호와 간편송금·간편결제 분야 이용자의 권리 강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p><b>제2조(정의)</b>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금융상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p> <p>가. 「은행법」에 따른 예금 및 대출</p> <p>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상품</p> <p>다.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상품</p> <p>라.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예금 및 대출</p> <p>마.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시설대여, 연불판매, 할부금융</p> <p>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상품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p> <p>2. “금융상품판매업”이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 또는 반복적인 방법으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業)을 말한다. 다만, 해당 행위의 성격 및 금융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금융상품판매업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p> <p>가. 금융상품직접판매업: 자신이 직접 계약의 상대방으로서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영업으로 하는 것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에 따른 투자중개업</p> <p>나.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p> <p>3. “금융상품판매업자”란 금융상품판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률(이하 “금융관계법률”이라 한다)에서 금융상품판매업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 인허가 또는 등록을 하도록 규정한 경우에 해당 법률에 따른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금융관계법률에서 금융상품판매업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 해당 법률에 따른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여도 그 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 업무를 영위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금융상품판매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하며, 다음 각 목에 따라 구분한다.</p> <p>가.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금융상품판매업자 중 금융상품직접판매업을 영위하는 자</p> <p>나. <b>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금융상품판매업자 중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을 영위하는 자</b></p> <p>4. “금융상품자문업”이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 또는 반복적인 방법으로 금융상품의 가치 또는 취득과 처분결정에 관한 자문(이하 “금융상품자문”이라 한다)에 응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p> <p>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되거나 송신되고, 불특정 다수인이 수시로 구입하거나 수신할 수 있는 간행물·출판물·통신물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조언을 하는 것</p>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나. 그 밖에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가 해당 법률에 따라 자문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등 해당 행위의 성격 및 금융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금융상품자문업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 “금융상품자문업자”란 금융상품자문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금융관계법률에서 금융상품자문업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 인허가 또는 등록을 하도록 규정한 경우에 해당 법률에 따른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금융상품자문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6. “금융회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중소기업은행법」 제3조제3항, 「한국산업은행법」 제3조제1항, 「신용협동조합법」 제6조제3항,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11제8항,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1조의4제2항, 「상호저축은행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 농협은행, 수협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투자자문업자, 투자일임업자, 신탁업자 또는 같은 법 제336조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 다.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12제1항에 따른 농협생명보험 및 농협손해보험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라.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 마.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자와 유사한 자로서 금융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7.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금융회사
-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1조제9항에 따른 투자권유대행인
- 다. 「보험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보험설계사
- 라. 「보험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보험대리점
- 마. 「보험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보험중개사
- 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겸영여신업자
- 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모집인
- 아. 그 밖에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자와 유사한 자로서 금융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8. “금융소비자”란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 체결의 권유를 하거나 청약에 받는 것(이하 “금융상품계약체결등”이라 한다)에 관한 금융상품판매업자의 거래상대방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의 자문업무의 상대방인 전문금융소비자 또는 일반금융소비자를 말한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9. “전문금융소비자”란 금융상품에 관한 전문성 또는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금융상품 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금융소비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전문금융소비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일반금융소비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상품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이하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동의하여야 하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동의한 경우에는 해당 금융소비자는 일반금융소비자로 본다.

가. 국가

나.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투자성 상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계약체결등을 할 때에는 전문금융소비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마. 그 밖에 금융상품의 유형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10. “일반금융소비자”란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금융소비자를 말한다.

**제12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등록)** ① 금융상품판매업등을 영위하려는 자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별로 제3조에 따른 예금성 상품, 대출성 상품, 투자성 상품 및 보장성 상품 중 취급할 상품의 범위를 정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금융상품판매업등을 영위할 수 있다.

1. 금융관계법률에서 금융상품판매업등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도록 규정한 경우

2. 금융관계법률에서 금융상품판매업등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 해당 법률에 따른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여도 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

.....

③ 제1항에 따라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교육 이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것

2. 제4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로 등록하려는 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이 제4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그 밖에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업무 수행기준, 필요한 인력의 보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④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금융상품자문업자 또는 법인인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의 경우

가.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마. 이 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률 또는 외국 금융 관련 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바. 이 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률에 따라 임직원 제재조치(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의 경우 해당 조치에 상응하는 통보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으로서 그 조치의 종류별로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사. 금융소비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법인인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경우**

가. 제1호가목·나목 및 라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이 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률 또는 외국 금융 관련 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⑤ 제1항에 따라 금융상품판매업자등으로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등록요건 심사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2021. 9. 25.] 제12조제1항, 제12조제2항, 제12조제4항, 제12조제5항, 제12조제6항 중 금융상품자문업자 관련 부분

한편, 소비자기본법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소비자단체의 역할 및 자유시장경제에서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관계를 규정함과 아울러 소비자정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소비자기본법은 지급결제서비스에도 적용되고, 지급인은 소비자, 지급결제서비스업자는 사업자에 해당된다(제2조 참조).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제정된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대상 품목중에 지급결제서비스업종인 신용카드업, 전자지급수단발행업(전자화폐, 선불전자지급수단) 등에 대해 분쟁유형 및 해결기준을 규정되어 있다.

신용카드업 (1-2)		
분쟁 유형	해결 기준	비 고
1) 분실·도난신고를 통지한 날로부터 60일전 이후에 제3자가 부정사용한 경우	○ 전액보상	* 소비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신용카드회원 약관에 규정)는 과실상계 가능함.
2) 발급카드 수령 전 제3자에게 전달되어 부정 사용된 경우	○ 전액보상	* 다만, 회원이 카드 미수령에 따른 사고발생 사실(타인수령 등)을 인지하였으나, 카드사에 신고를 지연함으로써 부정사용대금이 발생한 경우 과실상계 가능함.
3) 명의도용에 따른 신용카드 부정발급, 카드의 위·변조에 의해 제3자가 부정사용한 경우	○ 명의인의 카드대금 채무무효	* 피해유형3)의 경우 소비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는 보상하지 않음.
4) 가맹점 수수료가 회원에게 전가된 경우	○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수수료 환급	

신용카드업 (2-2)		
분쟁 유형	해결 기준	비고
5) 비밀번호 유출이 된 경우 - 분실 또는 도난 시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로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 - 카드 위변조로 비밀번호가 유출되어 사용된 경우	○ 전액보상  ○ 전액보상	
6)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카드사에 항변권을 행사하였으나 거절하는 경우 - 할부계약이 성립되지 않았거나 무효인 경우 - 착오, 사기, 강박,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 계약 등으로 할부거래계약을 취소한 경우 - 상품에 결함이 있거나, 카탈로그 및 견본과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경우로서 가맹점의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토록 청구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 계속적거래계약에서 가맹점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해지를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는 경우 - 물품 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원에게 인도 또는 제공되지 아니한 경우 - 가맹점의 도산 등 기타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할부거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카드사에 할부금 지급거절 의사를 통지한 시점 이후에 도래하는 할부금에 대한 지급거절	* 지급거절은 할부가격이 2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할부기간 이내에 카드사에 당해 사유를 통지함.
7) 부당한 금융채무불이행자 등재	○ 금융채무불이행 기록삭제 및 손해배상	

전자지급수단발행업		
분쟁 유형	해결 기준	비고
1) 사업자가 잔액에 대한 환급을 거부할 경우 - 선불전자지급수단인 경우  - 전자화폐인 경우	○ 기준금액의 60% 또는 80% 이상을 사용한 경우에는 잔액 환급  ○ 잔액의 100% 환급	* 선불 전자지급수단 및 전자화폐는 전자금융거래법상의 개념을 준용함.  * 기준금액은 최종 충전 후의 잔액(최종 충전 전의 잔액+최종 충전금액)으로 함.  * 잔액환급비율 · 기준금액 1만원 초과일 경우 : 100분의 60 이상 사용 시 · 기준금액 1만원 이하일 경우 : 100분의 80 이상 사용 시
2) 이용대금을 초과하여 인출된 경우	○ 초과인출금액 재충전 또는 환급	

(9)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sup>115)</sup>

: 전자결제수단(전자문서 형태로 이루어지는 대금결제수단)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p><b>제2조(정의)</b>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전자상거래”란 전자거래(「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방법으로 상행위(商行爲)를 하는 것을 말한다.</li> <li>2. “통신판매”란 우편·전기통신,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화권유판매는 통신판매의 범위에서 제외한다.</li> </ol>

115)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이라 한다)에서는 전자지급수단을 ‘전자결제수단’으로 규정하고(제8조), 이를 ‘전자문서’ 형태로 이루어지는 대금결제수단으로 구체화(동법 시행령 제7조)하고 있기 때문에, 전자상거래법상 대부분의 전자지급결제수단이 적용대상이 되며 소비자보호의 대상이 된다 (김시홍, “전자지급수단의 법적 규제방안”, 가천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15.12), 11면).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3. “통신판매업자”란 통신판매를 업(業)으로 하는 자 또는 그와의 약정에 따라 통신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통신판매증개”란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이용을 허락하거나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거래 당사자 간의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소비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등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
  - 나. 가목 외의 자로서 사실상 가목의 자와 같은 지위 및 거래조건으로 거래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6. “사업자”란 물품을 제조(가공 또는 포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수입·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 제외)** ① 이 법의 규정은 사업자(「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단단계판매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상행위를 목적으로 구입하는 거래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라 하더라도 사실상 소비자과 같은 지위에서 다른 소비자와 같은 거래조건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교부의무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거래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의 내용이나 교부의 방법을 다르게 할 수 있다.

1. 소비자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약관 또는 정형화된 거래방법에 따라 수시로 거래하는 경우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거래
2. 다른 법률(「민법」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제외한다)에 이 법의 규정과 다른 방법으로 하는 계약서 교부의무 등이 규정되어 있는 거래

③ 통신판매업자가 아닌 자 사이의 통신판매증개를 하는 통신판매업자에 대하여는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가 하는 증권거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 하는 금융상품거래 및 일상 생활용품, 음식료 등을 인접지역에 판매하기 위한 거래에 대하여는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및 제20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하여 이 법과 다른 법률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을 적용한다.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전자적 대금지급의 신뢰 확보)** ①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수단에 의한 거래대금의 지급(이하 “전자적 대금지급”이라 한다)방법을 이용하는 경우 사업자와 전자결제수단 발행자, 전자결제서비스 제공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대금지급 관련자(이하 “전자결제업자 등”이라 한다)는 관련 정보의 보안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와 전자결제업자 등은 전자적 대금지급이 이루어지는 경우 소비자의 청약의사가 진정한 의사 표시에 의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명확히 고지하고, 고지한 사항에 대한 소비자의 확인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마련하여야 한다.

1. 재화등의 내용 및 종류
2. 재화등의 가격
3. 용역의 제공기간

③ 사업자와 전자결제업자 등은 전자적 대금지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전자문서의 송신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언제든지 소비자가 전자적 대금지급과 관련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④ 사이버몰에서 사용되는 전자적 대금지급 방법으로서 재화등을 구입·이용하기 위하여 미리 대가를 지불하는 방식의 결제수단의 발행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제수단의 신뢰도 확인과 관련된 사항, 사용상의 제한이나 그 밖의 주의 사항 등을 표시하거나 고지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에 전자적 대금지급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전자결제업자 등은 대금지급 관련 정보의 열람을 허용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분쟁의 해결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3조(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의 제정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에서의 건전한 거래질서의 확립 및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사업자의 자율적 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지침(이하 “소비자보호지침”이라 한다)을 관련 분야의 거래당사자,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 정할 수 있다.

② 사업자는 그가 사용하는 약관이 소비자보호지침의 내용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소비자보호지침과 다르게 정한 약관의 내용을 소비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거나 고지하여야 한다.

**제24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이라 한다)을 체결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제4항에 따른 결제수단의 발행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여야 한다.

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계약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2. 소비자피해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기관과의 채무지급보증계약
3. 제10항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 ② 통신판매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지급식 통신판매를 할 때 소비자가 제13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결제대금예치의 이용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을 선택한 경우에는 소비자가 결제대금예치를 이용하도록 하거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은 소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삭제 <2013. 5. 28.>
    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로 재화등의 대금을 지급하는 거래. 이 경우 소비자가 재화등을 배송받지 못한 때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는 구매대금 결제 취소 등 소비자피해의 예방 및 회복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3. 정보통신망으로 전송되거나 제13조제2항제10호에 따른 제3자가 배송을 확인할 수 없는 재화등을 구매하는 거래
    4. 일정기간에 걸쳐 분할되어 공급되는 재화등을 구매하는 거래
    5. 다른 법률에 따라 소비자의 구매안전이 충분히 갖추어진 경우 또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로 결제대금예치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이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곤란하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거래
  - ④ 제2항에 따른 결제대금예치의 이용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은 이 법 위반행위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보상하거나 제8조제4항에 따른 결제수단 발행자의 신뢰성을 확보하기에 적절한 수준이어야 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⑥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에 따라 소비자피해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소비자피해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를 지연한 경우에는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⑦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려는 사업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기 위하여 매출액 등의 자료를 제출할 때 거짓 자료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⑧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한 사업자는 그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를 사용할 수 있으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지 아니한 사업자는 그 표지를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지를 제작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⑨ 제2항에 따른 결제대금예치의 이용에 관하여는 제8항을 준용한다.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㉑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제1항에 따른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를 준용하되, 같은 조 제1항 중 “제5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제13조제1항 또는 제29조제3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는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로, “제37조제1항제3호”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3호”로 보고, 같은 조 제9항 및 제10항 중 “이 법”은 각각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로 본다.

전자상거래법은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높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전자상거래법은 전자결제업자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수단에 의한 거래대금의 지급(이하 "전자적 대금지급"이라 한다)방법을 이용하는 경우 사업자와 전자결제수단 발행자, 전자결제서비스 제공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대금지급 관련자(이하 "전자결제업자등"이라 한다)는 관련 정보의 보안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제8조 제1호).

통신판매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할 때 소비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제수단으로 재화등의 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이하 “결제업자”라 한다)에게 재화등의 대금 청구를 정지하거나 취소하도록 요청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제18조 제3항 전문).

전자상거래법 제21조에 따라 제정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일반사항의 하나로 ‘전자적 대금지급의 신뢰확보’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법 제6조 및 시행령 제6조제2항의 거래기록(그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포함한다) 열람과 관련하여 사업자가 조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가. 사이버몰을 통하여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 거래당사자인 소비자에게 해당사이버몰에서 거래기록을 열람·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나. 사이버몰이외의 수단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 거래당사자인 소비자에게 전화, 팩스, 인터넷 등을 통하여 쉽게 거래기록을 열람·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다. 소비자가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동일한 거래기록의 열람을 계속,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경우는 위 가., 나. 규정의 예외로 한다.

**(10)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p><b>제2조(정의)</b>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표시”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등”이라 한다)가 상품 또는 용역(이하 “상품등”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상품의 용기·포장(첨부물과 내용물을 포함한다), 사업장 등의 게시물 또는 상품권·회원권·분양권 등 상품등에 관한 권리를 나타내는 증서에 쓰거나 붙인 문자·도형과 상품의 특성을 나타내는 용기·포장을 말한다.</li> </ul> <p><b>가. 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등에 관한 사항</b></p> <p><b>나. 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등의 상품등의 내용, 거래 조건, 그 밖에 그 거래에 관한 사항</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 “광고”란 사업자등이 상품등에 관한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문·인터넷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li> <li>3. “사업자”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li> <li>4. “사업자단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업자단체를 말한다.</li> <li>5. “소비자”란 사업자등이 생산하거나 제공하는 상품등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li> </ul> <p><b>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b>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거짓·과장의 표시·광고</li> <li>2. 기만적인 표시·광고</li> <li>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li> </ul>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p>4. 비방적인 표시·광고</p> <p>②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b>제10조(손해배상책임)</b> ① 사업자들은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p> <p>②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사업자들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들어 그 피해자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p> <p><b>제11조(손해액의 인정)</b> 제3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p>

최근 증권연계 계좌 등을 활용한 관련 서비스의 제공이나 광고가 등장하면서 이용자에게 은행 계좌나 은행 통장과 동일하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있으며, 향후 종합지급결제업자가 관련 서비스나 상품을 광고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향후 은행 계좌 및 증권사의 계좌, 그리고 종합지급결제업자의 계좌에 대한 용어 구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1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통신과금서비스(휴대폰소액결제), 소액후불결제업(미도입)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p><b>제2조(정의)</b>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li> <li>2. “정보통신서비스”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기통신역무와 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것을 말한다.</li> </ol>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를 말한다.
  4. “이용자”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5. “전자문서”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어 송수신되거나 저장된 문서형식의 자료로서 표준화된 것을 말한다.
  6. 삭제 <2020. 2. 4.>
  7. “침해사고”란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논리폭탄, 메일폭탄, 서비스 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공격하는 행위를 하여 발생한 사태를 말한다.
  8. 삭제 <2015. 6. 22.>
  9. “계시판”이란 그 명칭과 관계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할 목적으로 부호·문자·음성·음향·화상·동영상 등의 정보를 이용자가 게재할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를 말한다.
  10. “통신과금서비스”란 정보통신서비스로서 다음 각 목의 업무를 말한다.
    - 가. 타인이 판매·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의 대가를 자신이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의 요금과 함께 청구·징수하는 업무
    - 나. 타인이 판매·제공하는 재화등의 대가가 가목의 업무를 제공하는 자의 전기통신역무의 요금과 함께 청구·징수되도록 거래정보를 전자적으로 송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업무
  11.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란 제53조에 따라 등록을 하고 통신과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12.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란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로부터 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하여 재화등을 구입·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13. “전자적 전송매체”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부호·문자·음성·화상 또는 영상 등을 수신자에게 전자문서 등의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는 매체를 말한다.
-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정하는 것 외에는 「국가정보화 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정보통신망법은 지급결제수단의 하나인 통신과금서비스를 정의하고 있으며(제2조 제1항 제10호), “통신과금서비스”란 정보통신서비스로서 다음 각 목의 업무를 말한다.

- 가. 타인이 판매·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의 대가를 자신이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의 요금과 함께 청구·징수하는 업무
- 나. 타인이 판매·제공하는 재화등의 대가가 가목의 업무를 제공하는 자의 전기통신역무의 요금과 함께 청구·징수되도록 거래정보를 전자적으로 송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업무

또한, 정보통신망법은 통신과금서비스 관련 이용자보호를 규정하고 있으며,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통신과금서비스가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제57조 제1항).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재화등의 판매·제공의 대가가 발생한 때 및 대가를 청구할 때에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제58조 제1항).

1.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일시
2. 통신과금서비스를 통한 구매·이용의 거래 상대방(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하여 그 대가를 받고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거래 상대방”이라 한다)의 상호와 연락처
3. 통신과금서비스를 통한 구매·이용 금액과 그 명세
4. 이의신청 방법 및 연락처

또한,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통신과금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율적인 분쟁 조정 및 해결 등을 시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제59조 제1항). 그리고,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통신과금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하여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그 손해의 발생이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제외된다(제60조 제1항).

한편,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6장의2 통신과금서비스에는 등록요건(제66조의2), 통신과금서비스의 안정성·신뢰성 확보를 위한 필요조치(제66조의6), 거래기록의 보존기간 및 약관 변경 방법(제66조의7), 구매자정보 제공 요청의 내용 및 절차 등(제66조의8), 이의신청 및 권리구제를 위한 절차(제66조의9) 등이 규정되어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7장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장제2에 따라 제정된 통신과금서비스 운영에 관한 고시(과학기술통신부고시)에서는 모니터링 및 해킹방지 시스템 구축(제6조), 해킹방지 시스템 운영(제7조), 통신과금서비스 이용 동의 등(제14조), 휴면이용자의 이용 정치(제15조), 전자적 대금 결제창(제16조), 결제비밀번호(제17조), 월자동결제(제18조), 결제사향 고지(제19조), 거래기록의 보존(제20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 (11) 소결 및 소액결제 법제 관련성 검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자금융거래법」 외에도, 대금지급수단으로서의 소액결제가 가지는 특성상,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결제수단’(제8조) 내지 ‘전자문서’ 형태로 이루어지는 대금결제수단으로 구체화(같은 법 시행령 제7조)하고 있기 때문에, 전자상거래법상 대부분의 전자지급결제수단도 지급결제법제로서의 소액결제 관련 법제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소액결제시장에서의 소액결제수단 이용자도 같은 법에 따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전자어음의 경우, 한국은행에서 사용하는 ‘소액결제’의 개념에 따라 ‘각 경제주체의 경제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당사자간의 거래에서 채권·채무관계를 변제하기 위하여 행하는 일련의 지급행위와 이에 따른 은행·금융회사 간 청산(clearing)과 결제의 절차’인 ‘지급결제(payment and settlement)’ 수단의 하나일 뿐이며, 일반 디지털금융을 통한 지급결제서비스의 이용자들이 전자어음을 사용하는 경우는 없다. 즉, 소매 지급결제로서의 ‘소액결제(RPS: retail payment system)’로 이해하는 경우, 전자어음은 “소비자의 상품·서비스 이용과 구매에 따른 지급수단으로서의 ‘소매(retail)’의 개념”에서는 제외될 것이다.

전자금융거래와 전자금융방식의 지급결제 유형에 따라 각각의 법제가 모두 적용될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소액결제시장 변화에 따른 법제 대응방안의 모색에서 앞서 살펴본 법률들의 연관성은 조금씩 인정되기도 한다. 그러나, 정부의 [디지털 금융종합혁신 방안]에서 밝히고 있는 다양한 정책을 단독 입법 내에서 해결하여야 하는 경우, 현행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통한 방식이 우선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디지털금융거래에서의 주요 적용 법률인 전자금융거래법의 연혁과 관련 개정 방향을 살펴봄으로써 소액결제 법제의 주요 방향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 제3절 전자금융거래법의 연혁 및 최근 개정 법률안의 주요내용

### 1. 전자금융거래법의 주요 연혁

#### (1) 2006년 제정법

전자금융거래법은 16대 국회에서 정부가 발의했지만, 임기만료폐기되었고, 17대 국회에 다시 발의되어 2006년 4월 28일 제정,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sup>116)</sup>

당시 전자금융거래법 제정 당시의 제정이유는 “인터넷뱅킹 등 전자금융거래가 확산되어 전자화폐 등 새로운 전자지급수단이 출현함으로써 비대면성 등과 같은 전자금융거래의 특성을 반영하여 거래당사자의 권리·의무 등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는 한편, 전자금융업무를 영위하는 자에 대한 허가·등록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이었다.

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전자지급거래의 효력발생시기, 오류의 정정절차 등 전자금융거래 법률관계의 명확화(제7조 및 제12조), 전자금융사고의 이용자와 금융기관 등의 책임 부담 원칙(제8조), 비금융회사의 전자금융업 진입기준(제27조, 제29조 및 제30조), 전자금융업자 등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검사·감독(제38조 및 제41조)으로 소개되었다.

당시 소관위 심사보고서에서는 전자지급거래 등 전자금융에 관하여 여러 법률에 산재해 있는 각 규정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단일한 법률로 규정할 필요가 인정된 한편, 오프라인상의 금융거래를 중심으로 규정된 기존의 금융법제들도 전자금융거래의 특성을 체계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sup>117)</sup>

116) 2006년 전자금융거래법 제정법에 대해서는 의안정보시스템 [likms.assembly.go.kr](http://likms.assembly.go.kr) (2020.9.25.접속)

117) 재정경제위원회, 전자금융거래법안 심사보고서, 2006.4. 6면~7면(<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029751> 2020.10.5. 최종검색)

이후,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거래 및 전자지급거래에 대한 법적 근거로서 자리잡게 되었다.

## (2) 개정 연혁

그동안 전자금융거래법은 16차 개정이 있었으며, 7번의 타법 개정과 9번의 일부개정으로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sup>118)</sup>

- 1차 [법률 제8387호, 2007. 4. 27., 타법개정] [시행 2007. 10. 28.]
- 2차 [법률 제8863호, 2008. 2. 29., 타법개정] [시행 2008. 2. 29.]
- 3차 [법률 제9325호, 2008. 12. 31., 일부개정] [시행 2009. 4. 1.]
- 4차 [법률 제10303호, 2010. 5. 17., 타법개정] [시행 2010. 11. 18.]
- 5차 [법률 제11087호, 2011. 11. 14., 일부개정] [시행 2012. 5. 15.]
- 6차 [법률 제11407호, 2012. 3. 21., 타법개정] [시행 2012. 3. 21.]
- 7차 [법률 제11461호, 2012. 6. 1., 타법개정] [시행 2012. 9. 2.]
- 8차 [법률 제11814호, 2013. 5. 22., 일부개정] [시행 2013. 11. 23.]
- 9차 [법률 제12837호, 2014. 10. 15., 일부개정] [시행 2015. 4. 16.] [시행 2015. 10. 16.]
- 10차 [법률 제13069호, 2015. 1. 20., 일부개정] [시행 2015. 1. 20.]
- 11차 [법률 제13929호, 2016. 1. 27., 일부개정] [시행 2016. 1.27.] [시행 2016. 7. 28.]
- 12차 [법률 제14132호, 2016. 3. 29., 일부개정] [시행 2016. 6. 30.]
- 13차 [법률 제14828호, 2017. 4. 18., 일부개정] [시행 2017. 10. 19.]
- 14차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시행 2017. 7. 26.]
- 15차 [법률 제17297호, 2020. 5. 19., 일부개정] [시행 2020. 8. 20.] [시행 2020. 11. 20.]
- 16차 [법률 제17354호, 2020. 6. 9., 타법개정] [시행 2020. 12. 10.]

118)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연혁에 대해서는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http://www.law.go.kr) 참고(2020.9.25. 최종검색)

### 1) 3차 일부개정(2008)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전자금융거래의 오류로 인한 금융이용자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스스로 또는 이용자의 요구에 의해 전자금융거래의 오류를 인지한 경우에는 그 원인과 처리결과를 이용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 타인명의의 통장을 절취 또는 대여·양수하여 사용하는 이른바 “대포통장”을 활용한 범죄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전자식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 부정 대여 또는 질권 설정행위를 하거나 이런 행위들을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

### 2) 5차 일부개정(2011)

#### ○ 개정 이유

-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전자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금융기관 등으로 하여금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지정하여 조직 내 정보보호 위험을 상시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하는 한편, 양벌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일부 벌칙조항 중 벌금형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벌금액을 개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벌칙 적용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 ○ 주요 내용

##### 가.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지정 등(안 제21조의2제1항 및 제2항 신설)

금융기관 등은 전자금융업무 및 그 기반이 되는 정보기술부문 보안을 총괄하여 책임질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총자산, 종업원 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은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임원으로 지정하도록 함.

##### 나.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업무(안 제21조의2제3항 신설)

정보보호최고책임자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전략 및 계획의 수립, 정보기술부문의 보호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함.

##### 다. 양벌규정에 책임주의 원칙 반영(안 제50조)

법인 또는 개인이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해서는 처벌을 면하도록 하고, 양벌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벌칙조항 중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조항에 대하여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별도로 규정함

### 3) 8차 일부개정 (2013)

#### ○ 개정 이유

- 전자금융거래의 안전한 기반 조성을 위하여 전자금융업자 등의 해킹 관련 책임을 명확히 하고,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전자금융기반시설에 대한 취약점을 스스로 분석·평가하도록 하며, 전자금융기반시설에 대한 전자적 침해행위 금지 및 침해사고의 발생 시 금융위원회·금융회사 등의 대응조치를 신설하고, 금융감독원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자금융보조업자에 대해서도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 주요 내용

- 가.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하지 않는 금융회사는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안 제3조제3항 신설)  
실제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하지 않는 금융회사(집합투자업자, 투자자문업자 등)에 대해서는 과잉규제의 우려가 있어 이 법의 적용을 배제하되, 대상회사를 금융업권 단위가 아닌 금융회사 규모 및 전자금융거래의 빈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나. 해킹 관련 전자금융사업자 등의 책임 명확화(안 제9조제1항)  
해킹(정보통신망 등에 침입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전자금융사업자 등이 이용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도록 함.
- 다. 정보기술부문 계획수립 및 제출(안 제21조제4항 신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정보기술 부문에 대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고, 대표자의 확인·서명을 받아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 라. 전자금융기반시설에 대한 취약점 분석·평가 의무화(안 제21조의3 신설)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가 스스로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보완조치 및 그 이행실태 점검 및 보완조치 미행 시에 대한 제재규정을 도입함.
- 마. 전자적 침해행위 금지 및 침해사고 대응(안 제21조의4부터 제21조의6까지 신설)  
전자금융기반시설을 대상으로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등에 의하여 전자금융기반시설을 공격하는 행위인 전자적 침해행위를 금지하고, 전자적 침해행위로 인하여 전자금융기반시설이 교란·마비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금융위원회가 지켜야 하는 조치사항을 정함.
- 바. 현금자동지급기 등 전자적 장치로부터의 현금인출 최고한도 제한근거 신설(안 제23조제2항 신설)  
법령에 근거 없이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따라 제한하고 있는 현금카드 등을 이용한 현금인출 최고한도 제한근거를 규정함.

사. 공법인의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허용(안 제30조제2항)

「상법」상의 회사로 제한하고 있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관리업의 주체를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까지 확대함.

아. 전자금융업 예비허가 및 예비인가에 대한 근거 마련(안 제33조의2 및 제45조의2 신설)  
전자금융업 허가 또는 인가에 앞서 금융위원회로부터 예비허가 또는 예비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

자. 전자금융보조업자에 대한 조사 강화(안 제40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검사와 관련하여 전자금융보조업자가 자료제출에 불응하거나 부실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이 해당 전자금융보조업자를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함.

#### 4) 9차 일부개정 (2014)

##### ○ 개정이유

- 개인정보 유출방지 및 해킹 등 전자적 침해사고에 대한 대응을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인 경우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겸직을 제한하고, 정보기술 부문의 정보보호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전자금융보조업자가 해당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의 정보보호 및 IT보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형벌 등의 제재수준을 상향조정하고, 징벌적 과징금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공인인증서 사용을 강제하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는 규정을 보완하여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금융보안 수단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용자의 선택에 따른 전자자금이체의 지급 효력 지연조치를 의무화하며, 보존기간이 경과한 전자금융거래기록에 대한 파기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 가. 전자적 장치를 이용한 실시간 자금이체 시 착오 등에 따라 의도하지 않은 계좌에 잘못 이체한 경우 이를 돌려받기 위한 절차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이용자가 원하는 경우 전자자금이체의 거래지시를 하는 때로부터 일정 시간이 경과한 후 지급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조치를 금융회사등이 취하도록 의무화함(제13조제2항 신설).
- 나. 공인인증서 사용을 강제하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는 규정을 보완하여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금융보안 수단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함(제21조제2항 및 제3항).
- 다. 총자산, 종업원 수 등을 감안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경우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겸직을 제한함으로써 전자금융업무 및 정보기술부문 보안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확보함(제21조의2제3항 신설).

- 라. 전자금융거래기록이 불필요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를 파기(신용정보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름)하도록 함(제22조제2항).
- 마. 정보기술 부문의 정보보호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전자금융보조업자는 전자금융거래정보의 보호 및 안전한 처리를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는 것을 금지함(제40조제6항 신설).
- 바.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제공·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 대한 과징금 부과규정을 신설함(제46조제1항 신설).
- 사. 접근권한을 가지지 아니한 자의 데이터 유출 행위 및 전자금융거래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알게 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함(제49조제1항).
- 아. 금융회사 등이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규정을 신설함(제51조제1항).

## 5) 10차 일부개정 (2015)

### ○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 최근 타인 명의의 통장을 절취 또는 대여·양수하여 사용하는 통장인 이른바 "대포통장"이 탈세와 불법자금 세탁 등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고, 특히 대출사기나 보이스피싱사기 사건 등에서 피해 자금을 입금 받는 통장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음.
- 현행법은 이와 같은 대포통장의 근절을 위하여 대가를 주고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음. 그러나 대가를 약속하였으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현행법상 처벌이 어려운 부분이 있음.
- 이에 실제 대가가 없었더라도 영리의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경우도 금지함으로써 대포통장으로 인한 범죄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임.

## 6) 11차 일부개정 (2016)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법은 대포통장 등 접근매체의 양수·양도 행위 등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불법 행위를 광고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제재 근거를 두지 아니함에 따라 대포통장 등의 불법매매 광고 행위는 대포통장이 실제로 매매되지 아니하는 한 처벌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이로 인해 인터넷 또는 주택가 등에 대포통장 등의 불법 양수·양도 등을 모집하는 광고행위가 끊이지 않아 대포통장 등의 불법 양수·양도 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함.
- 이에 접근매체의 양수·양도 등에 대한 광고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대한 처벌규정과 함께 불법 광고행위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하여 사용금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불법행위를 유인하는 광고 행위 등을 규제하려는 것임.

## 7) 12차 일부개정 (2016)

### ○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 현행 전자금융업 등록 자본금 요건은 5억원 이상으로 해외와 비교할 때 그 기준이 다소 높아 소규모 핀테크 스타트업들의 전자금융업 진입에 어려움이 있음.
- 이에 전자지급결제대행업·결제대금예치업·전자고지결제업 등을 소규모로 영업하려는 자의 자본금 요건을 3억원 이상으로 완화하여 전자금융업 진입 장벽을 낮추려는 것임.

## 8) 13차 일부개정 (2017)

### ○ 개정 이유

- 금융회사 등에서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 규정을 신설하고, 금전적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과징금과 과태료의 부과한도를 인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 주요 내용

#### 가. 퇴직자에 대한 조치 내용 통보 규정 신설(제39조의2 신설)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등에서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다면 받았을 조치의 내용을 그 임원 등이 근무한 금융회사 등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회사 등의 장은 이를 해당 퇴임한 임원 등에게 통보하고 기록을 유지하도록 함.

#### 나. 과태료 부과한도 인상 등(제5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금전적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과태료 부과한도를 검사 등 거부·방해 또는 기피의 경우 등에 대하여 현행 1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업무보고서 허위 제출의 경우 등에 대하여 현행 1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인상하고,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9) 15차 일부개정 (2020)

### ○ 개정 이유

- 최근 전기통신금융사기가 크게 증가하여 이로 인한 국민의 피해 규모가 늘어나고 있어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시급함.
- 전기통신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전화·인터넷·모바일 등 다양한 전기통신수단을 통해 국민을 기망하여 재산에 손실을 끼치는 중대사기범죄로서 그 수법이 지능화되고 있는 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범죄의 사전예방적 효과를 높이고, 범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하게 처벌을 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금융회사의 자동화기기(CD/ATM)를 이용하면서 기기의 장애·고장으로 신용카드가 반환되지 않는 경우 이용자가 자신의 신용카드를 반환받으려면 이를 신고하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이용자 본인임을 확인시키기 위하여 그들의 신분증 제시에 응하게 되는데, 신분증 제시를 통한 본인확인조치의 법적 근거는 없음.
- 이에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상의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적 장치의 작동오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획득한 경우 이를 그 이용자에게 반환할 때에는 신분증 제시 요청 등의 방법으로 본인확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 주요 내용

- 가. 접근매체를 중개하거나 대가를 수수(授受)·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함(제6조제3항제5호).
- 나. 금융회사 등은 전자적 장치의 작동오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획득한 경우 그 접근매체를 그 이용자에게 반환할 때에는 신분증 제시 요청 등의 방법으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제6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 다. 누구든지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제6조의3 신설).
- 라.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한 자 등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49조제4항 신설).

## 10) 전자금융거래법 연혁을 통하여서 본 전자금융거래법의 특징과 지위

전자금융거래법은 2007년 시행된 이래, 거래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등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 전자금융업무를 영위하는 자에 대한 허가과 등록 등 감독에 관한 사항 정비라는 입법 목적에 맞게 수차례 개정되어 온 바 있다. 특히, 전자금융거래법의 적용을 통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새로운 전자지급수단의 출현에 대한 적절한 입법적 대응을 위하여 끊임없이 개정되어 온 측면이 있다.

다만,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은 지급결제수단 유형별로 편제가 이루어져 있고, 각 지급결제업에 대한 진입규제와 행위규제를 다루는 방식의 ‘업법’으로서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는 측면이 있다.

## 2. 21대 국회 계류 중 법안

### (1)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박용진의원안)

#### ○ 제안이유

- 최근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통화의 등장으로 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투자를 목적으로 한 가상통화의 거래도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음.
- 그런데 최근 가상통화를 매매하던 이용자들이 해킹사고를 당하고 다단계판매 등으로 인한 투자사기행위가 급증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가상통화의 정의와 가상통화거래에 대한 규정이 없어 가상통화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가상통화의 정의규정을 마련하고, 가상통화취급업의 인가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과 동시에 이용자 보호를 위한 의무와 금지행위 등을 규정함으로써 가상통화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 가. 가상통화를 교환의 매개수단 또는 전자적으로 저장된 가치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 정의하되, 화폐·전자화폐·재화·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 및 전자화폐는 제외함(안 제2조제23호 신설).
- 나. 가상통화취급업을 가상통화매매업, 가상통화거래업, 가상통화중개업, 가상통화발행업, 가상통화관리업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각각의 업을 정의함(안 제2조제24호 신설).
- 다. 가상통화취급업의 인가 요건 및 인가의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6조의3 및 제46조의4 신설).
- 라. 가상통화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가상통화거래업자로 하여금 가상통화예치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거나 피해보상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안 제46조의5 및 제46조의6 신설).
- 마. 가상통화와 관련하여 시세조종행위의 금지, 자금세탁행위 등의 금지, 거래방식의 제한, 가상통화이용자에 대한 설명의무를 규정함(안 제46조의7부터 제46조의10까지 신설).

## (2)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임오경의원안)

### ○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 현행법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 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위조·변조 등 비대면 금융사고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금융사고가 이용자의 과실이 아닌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기술적 문제로 발생한 사고임을 증명하는 입증 책임을 이용자가 지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전문적인 정보통신 기술에 대하여 이용자가 해당 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현행법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사고 인지를 입증하는 것이 어려워 손해를 배상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금융사고의 원인을 보다 수월하게 파악할 수 있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해당 사고가 접근매체의 위조·변조로 발생한 사고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입증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단서 신설).

## (3)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민홍철의원안)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2018년 KT 통신구 화재사고로 대규모 통신장애가 발생함. 이번 사고를 통해 통신망 한 곳에 장애가 발생해도 국민 안전과 사회,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그동안 우리나라의 통신재난 대비가 부족했다는 사실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음.

KT 통신구 화재사고 당시 다수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음. 통신장애 예방을 위해 통신망을 이중화하고 있으나 주회선과 보조회선을 모두 단일사업자로부터 제공받았기 때문임. 반면, 주회선과 보조회선 통신 사업자를 이원화한 금융기관은 화재 발생 뒤 통신망을 보조회선으로 전환하여 피해가 없었음.

이에 국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 회선을 이중화하도록 하고 각 회선은 서로 다른 사업자가 설치·운영하도록 하여 예상치 못한 사고에 대비하려는 것임(안 제3조, 제21조, 제21조의2 등).

#### (4)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김영호의원)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최근 전자금융거래가 활성화되면서 노인이나 장애인 등의 전자금융거래 이용이 증가하고 있지만 노인이나 장애인 등의 경우 상대적으로 정보접근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본인인증 방법 등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교육이 필요하며 본인인증 방법을 다양화하여 노인이나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노인이나 장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금융거래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서 본인인증 방법 등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금융회사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양한 본인인증 방법을 도입하도록 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2 신설)

### 3. 정부제출안(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2020년 7월 27일 ‘디지털금융종합혁신방안’을 발표하면서 디지털금융의 혁신과 안정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전자금융거래법의 전면개편을 추진하고 있다.<sup>119)</sup>

당초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제출안)이 9월말 공개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아직까지 공개된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다만, 그동안 금융위원회 및 관련 기관에서 공개한 주요 개정 방향의 골자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 주요 개정방향

- 새로운 디지털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MyPayment(지급지시전달업),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제도 도입
- 세분화된 전자금융업종을 기능별로 통합·간소화 (자금이체업, 대금결제업, 결제대행업).
- 혁신사업자의 등장을 촉진하기 위해 진입규제 합리화
- 국민의 디지털 경제·금융활동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전자금융업자의 영업 가능범위 확대

119) 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 2020.07.24., [http://www.fsc.go.kr/info/ntc\\_news\\_view.jsp?menu=7210100&bbsid=BBS0030&no=34066](http://www.fsc.go.kr/info/ntc_news_view.jsp?menu=7210100&bbsid=BBS0030&no=34066)

- 전자금융업자가 보유한 이용자 자금이 강력하게 보호되는 체계 확립
- 플랫폼을 통한 연계·제휴 영업 및 AI·빅데이터 등 신기술 활용에 대한 행위 규제 확립
- 전자금융거래시 발생한 사고에 대해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이용자에게는 주의·협력 노력 부여
- 오픈뱅킹과 디지털 지급거래청산의 법적 근거 마련.
- 혁신적이고 안전한 인증·신원확인 수단 개발·활용
- 전자금융거래법의 적용대상 확대로 이용자 보호와 금융보안의 대상 넓힘
-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에 따른 혁신은 장려하고 부작용은 최소화할 수 있는 관리체계 마련.
- 새로운 디지털 리스크 체계적으로 관리·감독
- 민간의 금융보안 관련 거버넌스 강화
- 금융산업의 안전한 디지털 전환 지원
- 금융분야 사이버 안보 관리체계 구축

#### 4. 20대 국회에서 발의되었던 법안 연혁(폐기법안)<sup>120)</sup>

20대 국회 의안 중 임기만료폐기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중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법안은 다음과 같다.

##### (1)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김관영의원안)

###### ○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 현행법 제2조제11호에서는 “전자지급수단”을 전자자금이체,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신용카드, 전자채권, 그 밖에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 수단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핀테크의 발달과 함께 다양한 전자지급수단이 등장하고 있어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두어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후에 전자적 방법으로 그 대가를 지급하도록 하는 후불전자지급수단을 전자지급수단의 하나로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2항).

120) 20대 전자금융거래법안에 대해서는 의안정보시스템 [likms.assembly.go.kr](http://likms.assembly.go.kr) (2002.9.25.) 참조.

## (2)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이종걸의원안)

### ○ 제안이유

- 현행법은 접근매체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가 원칙적으로 무과실책임을 지는 전자금융거래 사고의 기술적 유형 역시 접근매체의 위·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및 거짓이나 부정하게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발생한 사고로만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전자금융거래 기술의 발달에 따라 접근매체가 다양해지고 있으며, 최근 농협은행 인출사고와 같이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기술적 유형의 전자금융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고, 이에 대해 금융회사는 사고의 기술적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음.

따라서 현행법상 정의된 접근매체 이외에도 거래지시를 하는데 사용되는 수단이나 정보를 포괄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음. 또한 전자금융사고는 정보의 한계 등으로 이용자가 금융회사의 책임을 입증하기 어려운 부분이 크고 현행 법령에 금융회사가 안전한 거래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무과실책임의 대상을 사고의 기술적 유형과 무관하게 포괄적으로 정의해야 할 필요가 있음.

한편 현행법상 금융회사 등의 면책사유인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으나, 첨단·고도화한 전자금융거래 사고에 대한 면책사유 및 범위를 법령으로 사전에 규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입법론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음. 또한 사고로부터 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전자금융거래법」의 도입취지와 달리, 고의 또는 중과실 조항이 확대해석되고 있어 전자금융거래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가 민사 소송을 통해서도 거의 배상되고 있지 않음.

또한 현행법상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이용자가 통지한 이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만 무과실책임이 적용되어 보호되는데 반해, 해외의 주요 전자금융거래법령은 이용자가 적시에 해당 사유를 통지하면 통지 이전에 발생한 손해도 일부 또는 전부 금융회사 등이 배상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국내의 금융회사 등은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등 선진 금융보안 기술의 도입에 소극적이고 그 결과 전자금융거래 사고로 인한 책임이 이용자에게 전가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이용자가 일정 기간 내에 무권한거래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면 금융회사 등이 무권한 거래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무과실책임을 지도록 하고, 특히 접근매체나 접근도구에 분실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해당 사유 통지 전의 무권한거래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금융회사 등에게 원칙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면서, 다만, 이용자의 통지 시점에 따라 책임 범위를 다르게 규율하여 금융회사 등과 이용자 사이에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책임이 합리적으로 배분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 주요내용

- 가. '무권한거래' 및 '접근도구'에 대한 정의 조항을 추가함(안 제2조제23호 및 제24호 신설).
- 나. 금융회사 등에 전자금융거래 후 1개월 이내에 이용자에게 통지의무를 부여함(안 제7조제1항 및 제51조제3항제1호).
- 다. 무권한거래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금융회사 등에게 무과실책임을 부여함(안 제9조제1항).
- 라. 거래내용을 제공받은 후 2개월 이내에 무권한거래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거나, 접근매체나 접근도구의 분실이나 도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인식한 이용자가 통지를 적시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금융회사 등의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책함(안 제9조제2항 및 제10조).

**(3)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정태욱의원안)**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법은 가맹점이 거래에 있어 사용하는 수단을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전자화폐로 한정하고 있는데, 전자금융거래의 확대와 거래수단의 다양화에 따라 모든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안 제2조제20호).  
현행법에 따르면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추심이체를 실행하기 위하여는 미리 지급인으로부터 출금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
- 이에 법률로 출금에 대한 동의 방식을 정하되, 기술의 발달에 따라 문자전송, 자동응답, 접근매체를 이용한 동의 등의 다양한 수단을...

**(4)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김종석의원안)**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법은 가맹점이 거래에 있어 사용하는 수단을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전자화폐로 한정하고 있는데, 전자금융거래의 확대와 거래수단의 다양화에 따라 모든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안 제2조제20호).
- 현행법에 따르면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추심이체를 실행하기 위하여는 미리 지급인으로부터 출금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대통령령에서 그 방식을 서면, 녹취 등으로 협소하게 정하고 있음.  
이에 법률로 출금에 대한 동의 방식을 정하되, 기술의 발달에 따라 문자전송, 자동응답, 접근매체를 이용한 동의 등의 다양한 수단을 활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15조).

### (5)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박용진의원안)

#### ○ 제안이유

- 최근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통화의 등장으로 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투자를 목적으로 한 가상통화의 거래도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가상통화를 매매하던 이용자들이 해킹사고를 당하고 다단계판매 등으로 인한 투자사기행위가 급증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가상통화의 정의와 가상통화거래에 대한 규정이 없어 가상통화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가상통화의 정의규정을 마련하고, 가상통화취급업의 인가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과 동시에 이용자 보호를 위한 의무와 금지행위 등을 규정함으로써 가상통화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 가. 가상통화를 교환의 매개수단 또는 전자적으로 저장된 가치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 정의하되, 화폐·전자화폐·재화·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 및 전자화폐는 제외함(안 제2조제23호 신설).
- 나. 가상통화취급업을 가상통화매매업, 가상통화거래업, 가상통화중개업, 가상통화발행업, 가상통화관리업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각각의 업을 정의함(안 제2조제24호 신설).
- 다. 가상통화취급업의 인가 요건 및 인가의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6조의3 및 제46조의4 신설).
- 라. 가상통화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가상통화거래업자로 하여금 가상통화예치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거나 피해보상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안 제46조의5 및 제46조의6 신설).
- 마. 가상통화와 관련하여 시세조종행위의 금지, 자금세탁행위 등의 금지, 거래방식의 제한, 가상통화이용자에 대한 설명의무를 규정함(안 제46조의7부터 제46조의10까지 신설).

### (6)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이동섭의원안)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법에서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잔액이 100분의 20 미만의 범위에서 일정비율 이하인 경우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잔액의 전부를 지급한다는 내용을 약관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정하고 있음.

그러나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화폐의 대응수단으로 사용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국민의 금융편의를 위해 잔액의 전부를 지급할 수 있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한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

- 이에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잔액이 100분의 40 이하인 경우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잔액의 전부를 지급한다는 내용을 약관에 포함시키도록 하여 전자금융거래의 편의를 높이고자 함(안 제19조제2항제3호).

### (7)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김선동의원안)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인터넷뱅킹과 유·무선전화를 활용하는 텔레뱅킹,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하는 전자금융거래가 일반화되면서 비대면 금융거래 비중이 90%를 넘어섰음. 대출, 보험, 투자 등 복잡하거나 위험도가 높은 금융상품도 전자금융으로 대체되고 있고, 기술과 금융이 결합한 핀테크산업 발전에 따라 클라우드펀딩, P2P투자, 간편지급결제 등 새로운 금융거래 기법이 빠른 속도로 개발·적용되고 있으며, 올해에는 영업지점 없이 모든 업무를 비대면으로 처리하는 인터넷전문은행도 출범하였음.

비대면 전자금융거래는 이용 편의를 증진시킨다는 장점이 크나, 상대적으로 복잡한 거래방식과 PC와 스마트폰 등 금융소비자 본인이 거래 사양에 맞는 전자금융기기를 갖춰야 함에 따라 노인이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전자금융거래 이용 비중이 낮고, 이에 따라 수수료 면제와 예금 금리 우대, 대출 금리 인하 등 각종 혜택에서 소외되는 부작용이 나타남.

- 이에 정부는 노인이나 장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금융거래 취약계층에게 전자금융거래 이용을 위한 금융교육을 실시하는 등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여 취약계층의 금융거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47조의2 신설).

### (8)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박광은의원안)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법에 따르면 접근매체 위·변조,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등의 발생으로 인한 이용자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개별적으로 지게 되어 있음.

그러나 핀테크의 성장과 함께 IT기업과 금융회사 간 기술적·물리적 결합이 활발하게 이루어

지고 있어 현행법 체계로는 양자 간의 책임 소재 및 정도의 판단 문제로 피해에 대한 배상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음.

- 이에 전자금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전자금융업자와 금융회사가 피해 이용자에 대한 손해 배상의 책임을 연대하여 지도록 함으로써 신속히 피해자를 구제하고자 함(안 제9조제1항).

### (9)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김상훈의원안)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법은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로서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약정을 체결한 경우, 금융사고로 인한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이 때, 이용자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었음은 이용자 본인이 스스로 입증하여야 하나, 전자금융기술은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영역이자 정보의 비대칭성이 큰 분야로서 이용자가 사고원인과 손해 간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것이 어려움. 실제로 2013-2017년까지 1,506건의 전자금융 보안·기술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45건의 재판 중 이용자가 승소한 사례는 한 건도 없음.

- 이에 금융사고 발생 시 이용자의 고의·중과실 등 책임 있는 사유를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입증하도록 하고, 약관 변경 시 이용자에게 개별적 동의를 받는 등의 방식으로 알리도록 하여 소비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금융사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제24조제3항).

### (10)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하태경의원안)

#### ○ 제안이유

- 최근 비트코인 등 암호통화에 대한 관심이 지대한 상황에서 정부를 중심으로 과도한 암호통화 투기와 불법행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현행 법률 중에는 비트코인 등 암호통화에 관하여 규율하는 바가 없음.

이에 암호통화의 매도·매수·중개·교환·관리 등 암호통화취급업을 허가 대상으로 하고, 암호통화 발행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할 수 있도록 하며, 보안대책 수립·시행,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감독 및 검사 등 암호통화의 안전성, 신뢰성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 가. 암호통화취급업을 암호통화매매업, 암호통화거래업, 암호통화중개업, 암호통화관리업 등으로 분류하고 이를 허가의 대상으로 함(안 제38조의2 신설).
- 나. 암호통화의 발행은 위조 방지 및 거래의 안전성 등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할 수 있도록 하며, 승인 및 기준의 심의를 하기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암호통화발행심사위원회를 둠(안 제38조의4 및 제38조의5 신설).
- 다. 암호통화거래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38조의6 신설).
- 라. 암호통화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암호통화취급업자로 하여금 피해보상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안 제38조의7 신설).
- 마. 암호통화거래에 대한 시세조종행위의 금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금지 자금세탁행위 등의 금지, 이용자에 대한 설명의무를 규정함(안 제38조의8부터 제38조의10까지 신설).
- 바. 시세조종행위 및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하여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등에 비례하는 과징금 또는 벌금을 도입함(안 제46조제2항 및 제48조의2 신설).

**(11)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김두관의원안)**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현대사회에서 휴대성과 편리성으로 인해 현금보다 카드 이용률이 높아지고 있음. 또한 현행법에서도 가맹점들의 탈세 목적의 현금거래를 방지하고자 전자화폐 등의 거래를 규정하고 있음. 최근 일부 가맹점에서는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현금 거래의 소비자에게는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고 전자화폐등의 결제방식만을 취급하거나 전자화폐등을 사용할 경우에만 유리하게 우대하고 있음. 이는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주도적으로 지급방식을 결정하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 최근 미국의 경우에는 신용카드 발급율이 낮고 현금사용율이 높은 저소득층의 소비거래 보호하기 위해 현금결제를 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정한 바 있음.
- 이에 가맹점으로 하여금 거래과정에서 이용자에게 특정한 지급수단을 강요하거나 전자화폐등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이용자를 달리 대우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가 자유롭게 결제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37조제1항 및 제49조제5항제3호).

## (12)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전재수의원안)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법에서는 금융회사 등은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써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음. 즉, 제3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획득하여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 시점이 분실 등의 통지 이전인 경우 은행은 해당 접근매체의 부정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있음.

이와 달리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는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 분실·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이후의 신용카드 사용 뿐만 아니라 통지 전에 생긴 신용카드의 사용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인 60일의 범위에서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음.

공공성을 가지는 금융기관인 은행은 예금을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으로 인하여 예금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는 기간을 신용카드업자와 마찬가지로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 이전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은행법」에 따른 은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 전에 생긴 제3자의 접근매체 사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단서 등).

## (13) 전자금융거래법 관련 법제 정비 방안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금융 기반의 지급결제시장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하여서는 전자금융거래법을 전자금융업법과 전자금융거래관계법으로 기능을 구분하고, 전자금융업법에서는 지급결제서비스 유형별로 각 업역을 정하고, 이에 대한 지급결제업자의 진입규제와 행위규제, 감독 등에 대한 내용을 다루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지급결제업자의 진입규제와 행위규제, 감독 등에 대한 내용을 다루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지급결제업자의 진입규제와 행위규제, 감독 등에 대한 내용을 다루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지급결제업자의 진입규제와 행위규제, 감독 등에 대한 내용을 다루어야 할 것이다.

한편, 전자금융거래관계법에서는 해외의 전자지급결제법과 같이 전자지급결제업자와 이용자 간의 법률관계에 대한 내용과 이용자 보호 규정을 대폭 강화하여 입법함으로써 빠르게 변화하는 소액결제시장에 대한 입법적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금융위원회에서 제시하고 있는 디지털융합혁신방안을 기초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과 관련한 분석 및 개선 방향성을 제시하기로 한다.

## 제4절 디지털 금융종합혁신방안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논의

### 1.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방향과 주요 쟁점

금융위원회는 「전자금융거래법」의 개정 방향으로 혁신적인 디지털금융 산업 육성, 디지털금융 이용자보호체계 확립, 디지털금융 거래기반 구축, 디지털금융 보안 강화의 네 가지 측면에서 「전자금융거래법」의 개정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먼저, 혁신적 디지털금융 산업 육성과 관련해서는 My Payment ·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신설, 전자금융업종 기능별 통합 및 간소화, 최소자본금 등 진입규제 합리화, 소액후불결제, 충전한도상향 등 영업범위 확대 등에 대하여 검토하고 있으며, 둘째, 디지털금융 이용자보호 체계확립과 관련해서는 디지털금융 이용자 자금 보호 강화, 금융 플랫폼 등 영업행위 규율체계 마련, 전자금융사고 책임범위 확대, 합병 및 영업양도 기준 마련, 셋째 디지털금융 거래기반 구축과 관련해서는 오픈뱅킹 및 디지털 지급거래청산 제도화, 금융분야 인증 · 신원확인제도 개선, 전자금융거래법 적용대상 명확화, Big Tech의 금융업 진출 대비 관리체계 마련, 넷째 디지털금융 보안 강화와 관련해서는 디지털 리스크 관리 · 감독 선진화, 금융보안 관련 민간 거버넌스 강화,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디지털 전환 지원, 금융분야 사이버 안보 관리체계 구축 등이다. 이하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 2. 혁신적 디지털 금융산업 육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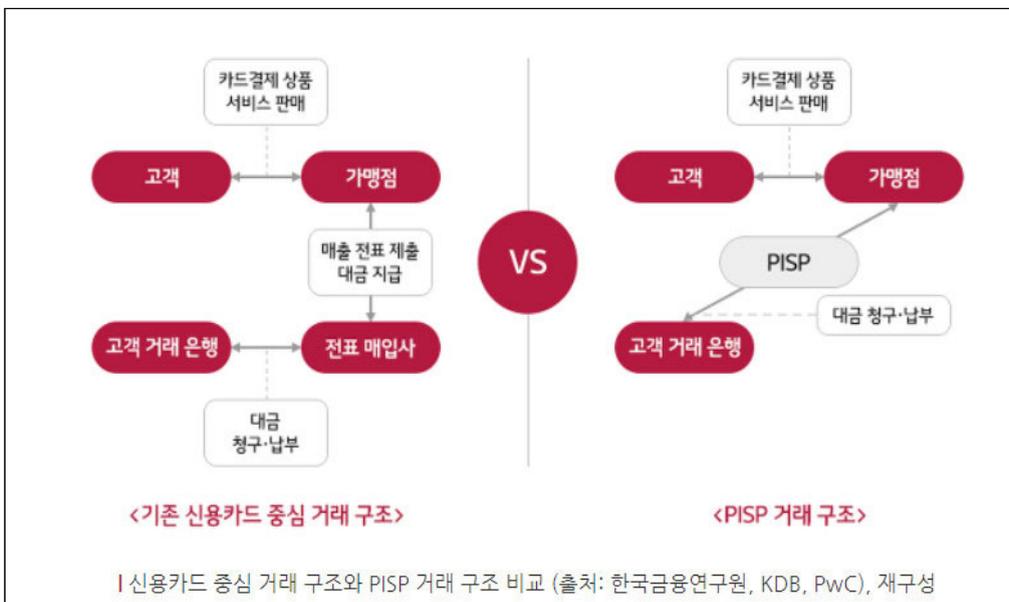
#### (1) 지급지시 서비스업 · 종합지급결제업자 신설

##### 1) 지급지시 서비스업

지급지시 서비스업이란 소비자가 결제 자금을 지급지시서비스업자의 결제계좌에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지급결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핀테크 기반의 혁신 서비스업으로 My Payment라고 한다. 이 제도를 통하여 은행이나 카드사가 그 동안 독점적 권한

을 행사하였던 금융서비스 영역에서 주체가 바뀌고 마이 데이터와 연동한 지급결제시장의 혁신을 촉발하게 될 수 있다.<sup>121)</sup> 즉, 소비자가 금융 서비스 관련 권리를 행사하면 결제 등의 업무를 지급지시전달업자가 대신 관리하고 수행해준다. 이에 정부는 지급지시전달업 라이선스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였다. 금융위원회는 이 제도의 도입을 통해 ① 금융서비스의 고도화, 금융 편리성 대폭 개선, ② 통합 모바일 앱으로 모든 은행계좌 접근, 저렴하고 편리한 결제·송금, ③ 새로운 금융 플랫폼 출현으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하였다.<sup>122)</sup>

<그림 10> 신용카드 중심 거래 구조와 PISP 거래 구조의 비교<sup>123)</sup>



121) 길재식, “마이 페이먼트(PISP) 전쟁, 한국 금융 인프라 지형도 바뀐다”, IT INSIGHT, 2020. 4. 24, <https://blog.lgcns.com/2239> 2020.10.5. 최종검색.

122) “마이 페이먼트(PISP) 전쟁, 한국 금융 인프라 지형도 바뀐다”, IT INSIGHT, 2020. 4. 24, <https://blog.lgcns.com/2239> 2020.10.5. 최종검색

123) 길재식, “마이페이먼트(PISP)전쟁, 한국 금융 인프라 지형도 바뀐다”, IT Insight, 2020. 4. 24, (<https://blog.lgcns.com/2239> 최종검색 2020.10.20.)

## 2) 종합지급결제업자 신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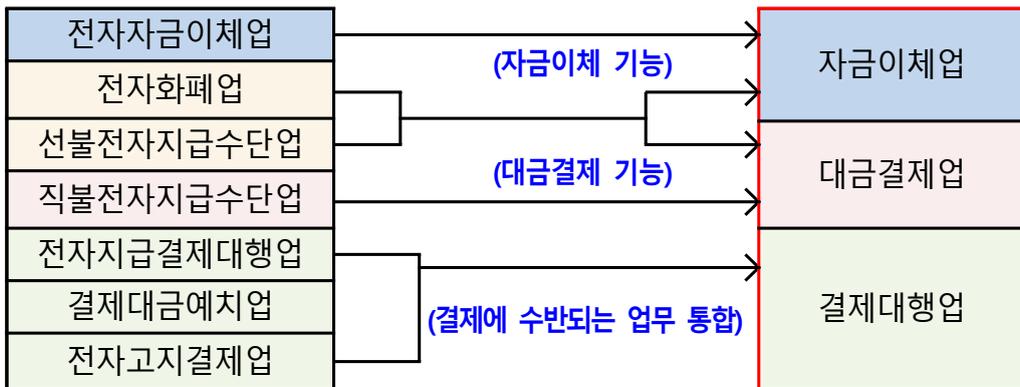
디지털금융을 이용하는 국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글로벌 수준의 디지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자인 종합지급결제업자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플랫폼을 통해 간편결제·송금 외에도 은행계좌 외의 입출금전용계좌 업무를 종합지급결제업자에게 인정함으로써 디지털금융서비스의 다양화를 시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종합지급결제업자가 현재 근행 등 금융회사 연계 계좌만 개설이 가능하던 업무를 금융결제망에 참가하여 직접 결제기능을 수행하는 계좌(payment account)의 발급 및 관리 업무를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즉, 단일 라이선스로 자금이체업·대금결제업·결제대행법 등 모든 전자금융업의 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자가 이용자의 계좌를 직접 보유할 수 있어 급여이체, 카드대금·보험료 납입 등 계좌관리가 가능하며(예대업무 불가), 일반 전자금융업자 대비 대금결제·자금이체의 한도를 상향하고자 하였다. 위의 지급지시 서비스업은 지급결제서비스 제공시에 결제서비스를 위한 정보만을 제공하며, 종합지급결제업은 은행계좌와 구분되는 입출금전용계좌를 발급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금이체 업무 및 지급결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 (2) 전자금융업종 기능별 통합 및 간소화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금융업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자금을 수수(授受)하거나 수수를 대행하는 전자금융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란 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제10호에 따라 결제대금을 예치받는 업무, ② 수취인을 대행하여 지급인이 수취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자금의 내역을 전자적인 방법으로 지급인에게 고지하고, 자금을 직접 수수하며 그 정산을 대행하는 업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즉, 전자금융업무라 함은 불특정 다수의 타인의 자금을 자신 명의의 계좌를 통해 직접 수수하거나 수수 대행하거나 정산하는 공통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sup>124)</sup> 하지만, 이러한 전자금융업 체계로는 과거 금융

회사의 보조적 역할을 했던 업종을 기반으로 한 경직적이고 낮은 규율 체계에 불과하였다.<sup>125)</sup> 따라서 해외에서 활성화된 독자적이고 새로운 결제서비스를 탄력적으로 수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즉, 전자금융업종을 기능별로 통합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그 동안 지나치게 세분화된 전자금융업종 분류가 아래의 현행 7개에서 결제·송금·대행 등 3개로 통합·단순화하고자 하였다.<sup>126)</sup>

<그림 11> 전자금융업종 기능별 통합·간소화 개념도<sup>127)</sup>



출처: 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 발표- 디지털금융의 혁신과 안정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전자금융거래법』의 전면 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2020. 7. 27. 보도자료 4면의 그림 인용

124) 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 발표- 디지털금융의 혁신과 안정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전자금융거래법』의 전면 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2020. 7. 27. 보도자료 11면([http://www.fsc.go.kr/info/ntc\\_news\\_view.jsp?menu=7210100&bbsid=BBS0030&no=34066](http://www.fsc.go.kr/info/ntc_news_view.jsp?menu=7210100&bbsid=BBS0030&no=34066) 2020.10.5. 최종검색)

125) 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 발표- 디지털금융의 혁신과 안정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전자금융거래법』의 전면 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2020. 7. 27. 보도자료, 4면.

126) 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 발표- 디지털금융의 혁신과 안정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전자금융거래법』의 전면 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2020. 7. 27. 보도자료, 4면.

127) [http://www.fsc.go.kr/info/ntc\\_news\\_view.jsp?menu=7210100&bbsid=BBS0030&no=34066](http://www.fsc.go.kr/info/ntc_news_view.jsp?menu=7210100&bbsid=BBS0030&no=34066) 2020.10.5. 최종검색

### (3) 최소자본금 등 진입규제의 합리화

핀테크는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여신전문금융업은 신용카드업, 시설대여·할부리스업, 신기술금융업 등으로 업무가 구분되는데, 신용카드업의 시장진입을 위한 자본금 요건은 200억원 이상으로 규제된다. 또한, 신용카드업에 시설대여·할부리스업, 신기술금융업을 추가하기 위하여서는 400억원 이상이라는 자본금 기준이 적용되고, 신기술금융업 영위를 위하여서는 100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요구된다.<sup>128)</sup>

반면 핀테크의 자본금 기준은 이보다 훨씬 낮다. 현행법상 가장 많은 자본금을 요하는 전자화폐발행업은 50억원 이상, 전자자금이체업은 30억원, 직불전자지급수단업은 20억원, 기타 전자지급결제대행법, 결제대금예치업(ESCROW)은 10억원 등으로 여신업에 비하여 더 낮다.<sup>129)</sup>

<표 19> 전자금융업의 자본금 요건<sup>130)</sup>

업종	전자화폐 발행	전자자금 이체	전자채권 등록관리	선·직불	PG	결제대금 예치	전자고지 결제
자본금	50억	30억	30억	20억*	10억	10억	5억

\* 등록면제 : 총발행잔액 30억원 이하 선불업자, 동일 건물내 제한적 운영 선불업자, 단순 계좌이체 PG

이처럼 지급수단별, 정산서비스별로 각각 진입규제를 적용함에 따라 복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각각 라이선스를 획득하여야 한다. 이에 기존의 업종규율과 규제방식 개선을 통해 핀테크(Fintech) 산업을 우리나라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자 하였다.<sup>131)</sup>

128) 이장준, “핀테크에 기울어진 운동장...규제 ‘무풍지대’, the bell 뉴스기사, 2020.8.6.

(<https://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008041608453640104123&lcode=00>  
2020.10.5. 최종검색)

129) 이장준, “핀테크에 기울어진 운동장...규제 ‘무풍지대’, the bell 뉴스기사, 2020.8.6.

130) 진정구,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5981, 신동우 의원 대표발의)”, 2015. 10. 14면.

이는 해외의 사례에 비추어 보아도 자본금 기준이 높다. 따라서 핀테크 스타트업자 등이 관련 시장에 진입하여 융합산업을 수행하는데 저해되고 있다. 이에 전자금융업 영위를 위한 최저자본금을 EU, 일본 수준으로 대폭 낮추어 스타트업자 등의 진입을 원활하게 하고자 하였다.

#### (4) 소액후불결제 · 충전한도 상향 등 영업범위 확대

현행 간편 결제는 '선불 결제' 시스템이다. 이용자가 자신의 현금을 미리 충전해두면 이 선불 충전금 내에서 돈을 쓸 수 있는 일종의 체크카드 방식이다. 소비자 입장에서 간편 결제로는 대중교통비 후불 결제가 어렵고 충전 잔액 일시 부족으로 불편을 겪을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금융위는 우선 소비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OO페이'로 불리는 간편결제의 충전 한도를 현행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결제 가능 범위도 전자제품 · 여행상품 등으로 넓힌다. 1일 총 이용한도는 1000만원으로 하였다.<sup>132)</sup> 금융위는 “디지털금융 이용이 확대됨에 따라 거래 안정성과 신뢰 확보를 위한 강력한 이용자 보호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며 “빅테크의 금융업 진입, 공인인증 폐지 등 새로운 금융환경에 맞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영업범위의 확대 배경을 설명하였다.<sup>133)</sup>

나아가, 결제대금의 부족분(선불충전금과 결제대금간 차액)에 한하여 최대 30만원(개인별 한도 차등 부여)까지의 소액 후불 결제 기능도 추가하기로 하였다. 신용카드와 차이는 현금서비스 · 리볼빙 · 할부 서비스 금지다. 이자도 수취하지 않도록 기능을 제한한다. 이러한 “30만원으로 후불 결제 기준을 마련한 것은 하이브리드 신용카드를 참고했다”고 언급하면서, “현행 하이브리드 체크카드 한도는 30만원, 휴대폰 소액 결제 한도는 100만원이다”라고 언급하였다.<sup>134)</sup>

131) 양형욱 · 성초롱, “전자금융업 최소자본 50% 이상 낮춘다…규제 대폭완화”, 파이낸셜 뉴스 뉴스기사, 2015. 01. 27, (<https://www.fnnews.com/news/201501271514474131> 2020.10.5. 최종검색)

132) 윤미혜, “OO페이' 한도 500만원 '소액 후불 결제도 가능”, IT Chosun 뉴스기사, 2020. 07. 26. ([http://it.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24/2020072403829.html](http://it.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24/2020072403829.html) 2020.10.5. 최종검색).

133) 윤미혜, “OO페이' 한도 500만원 '소액 후불 결제도 가능” IT Chosun 뉴스기사

이처럼 후불결제 기능을 인정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대손충당금 적립, 사업자간 연체정보 공유, 사업자별 후불결제 총액 제한 등을 통해 사업자 건전성 관리 및 이용자 보호체계도 충분히 마련하도록 검토한다고 언급하였다. 이를 통해, 사회초년생, 주부 등(Underbanked)에게 디지털금융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부여하고 금융이력 축적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새로운 혁신사업자들이 비정형·비금융 데이터(Alternative Data)를 활용하게 되면, 후불결제 시장에서 경쟁과 혁신도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sup>135)</sup>

### 3. 디지털금융 이용자보호 체계 확립

#### (1) 디지털금융 이용자 자금 보호 강화

금융회사 보유예금과 전자금융업자 집금계좌 및 선불계정에 있는 충전금액은 법적 성격 등에 차이가 있다.

<표 20> 예금과 선불전자지급수단 충전 금액의 차이<sup>136)</sup>

구분	예금	선불충전금액
법적 성격	예금채권 소비입치 유사계약	보관금 소비입치계약
선불발행시 관리	별단예금으로 별도 관리	단순 선불계정으로 관리
이자지급의무	예금주에게 이자지급의무 발생	이자발생하나 지급의무 없음
소멸시효	최종 거래일로부터 5년 경과 ※ 은행예금 5년, 우체국예금 10년 휴면예금 이체나 이자 입금시 시효이익 포기(대법원)	충전후 5년간 미사용시 소멸 <sup>137)</sup>
예금자보호법 적용	예금자보호 적용 대상	적용대상 아님

134) 윤미혜, “OO페이’ 한도 500만원 “소액 후불 결제도 가능”, IT Chosun 뉴스기사

135) 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 발표- 디지털금융의 혁신과 안정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전자금융거래법』의 전면 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2020. 7. 27. 보도자료 5~6면 ([http://www.fsc.go.kr/info/ntc\\_news\\_view.jsp?menu=7210100&bbsid=BBS0030&no=34066](http://www.fsc.go.kr/info/ntc_news_view.jsp?menu=7210100&bbsid=BBS0030&no=34066) 2020.10.5. 최종검색)

136) 김시흥, “전자금융거래법의 개정방향과 주요 쟁점”, 2020. 8. 19, 127면.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선불전자금수단의 충전한도가 상향되면 이용자가 충전해 놓은 자금을 대하여 전자금융업자는 해당 자금을 활용한 추가 수익구조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와 욕구가 늘어나게 된다. 이에 전자금융업자에 대하여 이용자로부터 수취한 자금을 보호하고 법에서 정한 용도 외의 불법자금으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통제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이용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sup>138)</sup>

이에 전자금융업자가 보유하는 이용자 자금의 경우 자금이체업을 하는 자는 100%, 대금결제업만 하는 자는 50% 이상 은행 등 외부기관에 예치·신탁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전자금융업자가 도산할 경우, 이용자의 자금에 대해서는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돌려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에도 도입되도록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전 「이용자 자금 보호 가이드라인」을 2020년 하반기 중에 마련하고자 하였다.<sup>139)</sup>

## (2) 금융 플랫폼 등 영업행위 규율 체계 마련

플랫폼이란 공급자와 수요자 등 복수 그룹이 참여해 각 그룹이 얻고자 하는 가치를 공정한 거래를 통해 교환할 수 있도록 구축된 환경으로, 참여자들의 연결과 상호작용을 통해 진화하며, 그 자체가 모두에게 새로운 가치와 혜택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상생이 생태계라고 할 수 있다. 플랫폼 기업의 예로는 구글, 애플, 네이버, 카카오 등을 들 수 있다.<sup>140)</sup> 금융에서의 플랫폼으로는 국민은행의 리브(Liiv), 카아오의 모바일 banking 플랫폼인 카카오뱅크를 들 수 있다.<sup>141)</sup>

137) 일레로, 토스머니의 지급결제 관련 「서비스 이용약관」 제33조(유효기간)에서는 “충전한 날로부터 5년간 본 약관에 따라 이용되거나 환급되지 아니한 토스머니는 소멸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https://toss.im/terms/2020.10.5>. 최종검색).

138) 이새하, “고객돈으로 이자놀이 속수무책...중은 인민銀 의무예치”, 『매일경제』, 2020. 5. 5.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0/05/459386/>.

139) 윤종수·강현구, “전자금융거래법 전면 개편이 추진됩니다.”, 『법률신문』, 2020. 08. 14. <https://www.lawtimes.co.kr/Legal-Info/LawFirm-NewsLetter-View?serial=163575> 2020.10.5. 최종검색.

140) 정용제, “플랫폼 산업현황 및 우체국 모바일금융 플랫폼 전략”, 『우정정보』(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7. 9. 20), 75면.

이러한 금융 플랫폼과 관련하여 금융회사 등이 영업 확장·경쟁, AI 등 신기술 이용에 따른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영업시 행위를 규제를 확립하고자 하였다. 즉, 최근 증가하고 있는 플랫폼 비즈니스, 타 금융사업자와 연계·제휴 등에 적용되는 공정한 행위 규칙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특히, 플랫폼 사업자 등이 AI·머신러닝·빅데이터 등을 비롯한 신기술 활용시 투명성 및 책임 확보를 위한 원칙'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업종별 특성에 따른 개별적 영업행위의 규제 제도도 도입하고자 하였다.<sup>142)</sup>

### (3) 전자금융사고 책임범위 확대

전자금융사고는 관련 사업자에 대한 평판리스크를 현실화시킬 뿐 아니라, 전자금융시스템 전반에 대한 고객 신뢰도 저하 및 전자금융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최근 안전성 이슈가 효율성 중심의 패러다임이 지배해왔던 전자금융 산업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sup>143)</sup>

그런데 전자금융사고 소송의 대부분은 개인정보 노출로 인한 전기통신 금융사기 관련 소송이며, 소비자는 대부분 패소하였다. 대부분의 피해자는 은행을 가장한 파밍(허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금융거래에 필요한 모든 정보(접근매체 정보)를 입력하고 이를 사기범이 가로채 불법이체가 발생하였는데, 법원은 이러한 입력행위에 대하여 이용자의 고의·중과실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sup>144)</sup>

141) 정용제, “플랫폼 산업현황 및 우체국 모바일금융 플랫폼 전략”, 81~84면.

142)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 발표- 디지털금융의 혁신과 안정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전자금융거래법』의 전면 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2020. 7. 27. 보도자료 16면.

143) 김소이, “전자금융사고 발생유형 및 대응현황”, 『지급결제와 정보기술』(금융결제원, 2009. 10), 36면

144) 김태현, “[단독] 금융사기 손배소 소비자 100% 패소...” 금융사 책임 높여야”, News1 2017. 10. 15, 뉴스 기사( <http://www.ewe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17770> 2020.10.5. 최종검색)

<표 21> 전자금융사고 관련 소송 유형(145)

<전자금융사고 관련 소송 현황('12~'17)>

(단위 : 건)

구분	확정판결				소송중(B)	합계(A+B)
	피해자 승소	피해자 일부패소	화해·조정·취하 등*	피해자 패소		
은행	-	4	76	138	6	224
증권·선물	-	-	4	11	-	15
합계	-	4	80	149	6	239

그동안 ‘무권한 거래’의 개념을 입법화하려는 입법적 노력도 있었으나,<sup>145)</sup> 아직까지 법령상 무권한 거래를 정의하는 내용은 존재하지 않고 있고, 다만,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항의 ‘전자금융사고’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 제2호의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무권한 거래’와 유사한 개념이 포함되어 있을 뿐이다.

전자금융거래법
<p><b>제9조(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책임)</b> 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li> <li>2.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li> <li>3.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li> </ol>

145) 김시흥, “전자금융거래법의 개정방향과 주요 쟁점”, 2020. 8. 19, 117면.

146)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16.11월, 이종걸 의원 대표 발의, 폐기)

“무권한 거래”란 이용자 본인이나 그를 대리할 정당한 권한 있는 자의 승인 없이 이루어지는 등 권한 없는 거래지시로 인하여 개시된 거래로서, 이로 인해 이용자가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하는 전자금융거래를 말한다.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欺罔)·공갈(恐嚇)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되,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한다.

가. 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하는 행위

나.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이체하는 행위

그동안의 무권한거래에 포함되는 전자금융사고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sup>147)</sup>

## □ 전자금융사고 사례

## 가.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항 제1호 (접근매체 위변조)

## - (사례1) 신분증 위조 후 알뜰폰 개통 (‘20.6~7월)

- 피해자의 운전면허증을 입수하여 사진을 덧붙여 위조한 후, 이를 이용해 피해자 명의로 알뜰폰을 개통 한 후
- 위조 신분증 제시 및 영상통화를 통해 증권사와 인터넷은행에 비대면 계좌를 개설하고,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 이후 공인인증서와 휴대폰 본인인증을 통해 대출(신용대출 및 보험금 담보대출)을 실행한 후, 이를 위의 비대면 개설 계좌로 이체하여 인출·편취(피해액 약 1억 1,400만원)

## - (사례2) 미성년자 대출 유인 사기 (‘20.7월)

- 부모님의 신분증과 휴대폰화가 있으면 대출을 제공해준다고 SNS에서 미성년자를 유인
- 접촉해 온 미성년자에게 부모의 신분증을 찍어 전송하게 하고, 부모의 휴대폰에 원격 조종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
- 그 후 부모의 휴대폰을 원격으로 조종하면서 신분증 정보를 활용해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 이를 이용해 비대면 대출을 실행한 후 그 금액을 편취(피해 청소년 22명, 피해액 약 7억 5천만원)

147) 김성용, “무권한 전자금융거래 사고 사례”, 2020. 8. 7. 한국법제연구원 제4차 지급결제포럼 KeyNote Speech 자료, 3~7면.

**나.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항 제2호****(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사례1) 메모리 해킹 (13.9~11월) ※금감원 보도자료 참고**

- 이용자의 PC를 악성코드에 감염시킨 후, 이용자가 인터넷 뱅킹 거래를 위해 수취 계좌와 금액을 입력하면 악성코드를 이용해 그 정보를 획득(이때 잠시 멈춤 현상 발생)
- 이후 이용자가 계좌 비밀번호와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여 거래를 실행하면, 수취 계좌와 금액 내용을 메모리 상에서 변조하여 송금 은행으로 전송
- 이용자 입장에서 정상적으로 거래가 마무리된 것으로 판단하나, 실제로는 의도와 다른 계좌로 금액이 이체되어 피해가 발생(피해 건수 22건, 피해액 약 5천만원)

**- (사례2) 은행 내부 시스템 해킹 (18.7월, 해외사례)**

- MoneyTaker라는 해커 그룹이 러시아 PIR Bank의 자금이체 및 카드처리 시스템에 침입하여 악성코드에 감염시킴
- 악성코드 감염 시스템을 이용 러시아 중앙은행(Bank of Russia)에 개설된 PIR Bank 소유 계좌에서 약 100만 달러를 미리 마련한 17개의 계좌로 나누어 이체한 후, 러시아 전역에서 인출
- \* MoneyTaker 그룹은 이 사건 외에도, 3년여 동안 미국 은행 15곳과 러시아 은행 5곳에 대한 공격도 수행한 것으로 확인(사건당 평균손실금액 : 미국(50만 달러), 러시아 (120만 달러))

**다.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항 제3호****(해킹을 통해 획득한 접근매체 등 이용으로 인한 사고)****- (사례1) 카카오뱅크(17년, 20.3월) 및 토스(20.6월) 부정 결제**

- 사고를 통해 유출(기 발생한 불상의 사고로 인한 유출로 추정)된 이용자의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 카드 번호, 결제 비밀번호 등)를 부정하게 획득
- 부정하게 획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웹 상에서 간편결제(토스) 또는 체크카드 결제(카카오뱅크)를 수행
- 카카오뱅크의 경우 약 44만원의 피해(약 6만3천원 씩 7회 부정결제), 토스의 경우 약 938만원의 피해(피해자 8명)가 발생

**- (사례2) 불법유출 카드 정보 유통 (20.6월)**

- 악성코드에 감염된 ATM과 IC 카드 도입 이전의 마그네틱 결제방식의 POS 단말에서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 약 61만7천개의 유효 신용카드 정보(카드번호, 유효기간 등)가 금융회사 해킹 용의자 소유의 외장하드에서 발견
- 이들 중 138건의 부정 사용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었고, 총 피해액은 약 1천만원에 해당
- 이외에도 다크웹 등에서 국내 신용카드 정보(카드번호, 유효기간, CVC 등) 약 90만 건이 불법 유통 중인 것으로 확인(금융보안원)

## □ 전기통신금융사기 사례

## 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 제2호 나목

(기망·공갈을 통해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직접 송금이체하는 것)

## - (사례1) 원격 조종 앱 이용 사례(18.11월, 19.4월)

- 사기범이 피해자 휴대폰으로 허위의 신용카드 승인 문자를 발송하면서, 하단에 가짜 고객센터 전화번호를 안내
- 허위문자를 받은 피해자는 항의를 위해 문자에 안내된 가짜 고객센터로 전화
- 고객센터 상담원을 가장한 사기범은 명의가 도용된 듯하니 대신 신고를 하겠고, 곧 경찰에서 연락이 갈 것이라 기망
- 잠시 후 사이버수사대를 사칭한 다른 사기범이 전화를 걸어 사기 사건에 연루됐으니 재산 확인에 협조하라고 요구하면서 PC에 원격 조종 프로그램 설치를 유도하고 OTP 번호를 획득
- 이후 이를 이용해 피해자의 계좌 잔액을 모두 이체·인출(18.11월 사례)하거나, 피해자 명의로 부정 대출을 실행하여 그 금액을 편취(19.4월 사례)

## 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 제2호 가목 ※권한 거래

(기망·공갈을 통해 피해자로 하여금 송금이체하도록 하는 것)

## - (사례1) 전화 가로채기 앱 이용 (18.9월)

- 저금리의 대출을 광고하면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대출 실행을 위한 별도의 앱(전화 가로채기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
- 이후 대출을 위해서는 기존 대출이 우선 상환되어야 한다고 기망하면서, 이를 위한 입금을 요구
- 이상함을 느낀 피해자가 일단 사기범과의 전화를 끊은 후 확인을 위해 해당 금융기관의 번호로 발신
- 그러나 이미 휴대폰에 설치된 전화 가로채기 앱을 통해 해당 전화는 다시 사기범의 전화로 연결
- 이에 의심을 거둔 피해자는 사기범이 알려준 계좌로 기존 대출의 상환을 위한 자금을 송금하여 피해를 입은 사례

## - (사례2) 피싱 사이트(가짜 대검찰청 홈페이지) 이용 (18.7월)

- 검찰 수사관을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국제 마약 사건에 연루되었으니 다음 날 검찰로 출두하라고 요구
- 피해자가 보이스피싱을 의심하자, 발부된 영장을 확인하라며 대검찰청 홈페이지(피싱 사이트) 주소를 전달
- 피해자는 사기범이 알려준 사이트로 접속해 자신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본인에게 발부된 영장을 확인
- 이후 피해자는 자금의 출처를 확인한 후 환급될 것이라는 사기범의 말을 믿고 사기범이 알려준 계좌로 자금을 이체

이에 피싱이나 파밍사고 중 일부를 무권한거래에 포함하고 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전자금융업자가 지도록 하고, 이용자의 고의·중과실의 요건을 정비하여 전자금융업자의 면책사유를 제한하는 등 전자금융업자의 배상책임을 강화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으며,<sup>148)</sup> 그에 대한 입법화가 시급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도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 구제 절차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발의된 「전자금융거래법」 및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이 2020년 4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서, 금융위원회에서도 보이스피싱을 사회 문제로 인식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즉, 대포통장 양수도나 대여 등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보이스피싱 관련 전과자의 경우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되며, 소액 피해액에 대해서는 채권소멸절차를 개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금융회사의 피해구제 업무에 대한 집중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한 것이다.<sup>149)</sup>

#### (4) 합병 및 영업양도 기준 마련

현재 전자금융업자 등록 사업자는 총 150개사(7월14일 기준)로 대기업집단 계열사와 외국계 기업을 제외하면 중소 핀테크업체나 전자상거래업체가 대부분이다. 대기업집단 계열 전자금융업자 중에서 금융업 진출 가능성이 높은 곳은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파이낸셜 정도다. 그런데 최근들어 네이버나 카카오가 금융업에 진출한다면 핀테크 업체 등을 적극적으로 인수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sup>150)</sup>

이에 금융당국은 이용자 자금 보호를 위해 빅테크에 대해 강화된 이용자 보호 규제를 적용해 이용자 자금을 활용한 과도한 사업 확장을 방지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네이버나

148) 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 발표- 디지털금융의 혁신과 안정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전자금융거래법」의 전면 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2020. 7. 27. 보도자료 5~6면 ([http://www.fsc.go.kr/info/ntc\\_news\\_view.jsp?menu=7210100&bbsid=BBS0030&no=34066](http://www.fsc.go.kr/info/ntc_news_view.jsp?menu=7210100&bbsid=BBS0030&no=34066) 2020.10.5. 최종검색)

149) 금융위원회,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강화 등을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및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이 4.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0.4.29. (<http://ncov.mohw.go.kr/shBoardView.do?brdId=2&brdGubun=26&ncvContSeq=2126> 2020.10.5. 최종검색)

150) 김현동, “빅테크 전자금융업 합병 사전인가제 도입”, 디지털타임즈, 2020. 07. 26,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0072702100858065001](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0072702100858065001) 2020.10.5. 최종검색.

카카오 등 빅테크가 보유한 이용자 충전금 등이 내부자금화되는 것을 막고 자금세탁 위험 예방을 위해 외부청산을 의무화하기로 하였다.<sup>151)</sup> BigTech 기업이 전자금융업자를 인수·합병하는 경우에는 사전 인가제를 도입하여 건전성을 심사함으로써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는 방향성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 4. 디지털금융 보안 강화

##### (1) 디지털 리스크 관리·감독 선진화

금감원의 수석부원장은 “금융혁신으로 금융산업의 성장과 소비자 편익을 제고하면서 동시에 디지털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언급하면서 금융과 IT 융합으로 인한 신규 IT 리스크 관리와 사이버보안 감독을 강화에 대한 방침을 강조하였다. 먼저, 간편결제 등 신기술 적용 금융서비스의 IT 리스크를 분석해 관리방안을 찾고, IT 아웃소싱과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확대에 따른 리스크 관리 적정성도 점검하고자 하였다. 또한 지능화·고도화되는 사이버 침해 위협을 막기 위해 금융권 침해대응 체계를 점검·강화하고, 전자금융거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이상 금융거래 탐지시스템(FDS)도 구축하기로 했으며, 금융혁신의 잠재 위험을 대비하기 위한 종합적 상시감독체계도 구축한다고 하였다. 나아가, 급성장하는 P2P대출 시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레그테크(RegTech: IT 기술을 활용한 금융규제 준수)와 셉테크(SupTech: 최신 기술을 활용한 금융감독)를 활용해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와 금융당국 감독업무 고도화를 추진하며, 기타 '정보보호 수준 자율평가'를 시행해 금융회사가 스스로 정보보호 수준을 평가하고 관리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sup>152)</sup>

151) 김현동, “빅테크 전자금융업 합병 사전인가제 도입”, 디지털타임즈 뉴스기사

152) 유제원, “유광열 수석부원장 “신기술 금융서비스 리스크 관리 강화””, 이뉴스투데이, 2019. 4. 4. <http://www.ewnews.co.kr> 2020.10.5. 뉴스기사.

## (2) 금융보안 관련 민간 거버넌스 강화

그동안 금융권은 2011년 금융회사 등이 일정 수준 이상 IT·보안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하도록 권고하는 하한선 기준(일명 5·5·7기준, 전자금융감독규정 §8②)을 마련하고 그 간 이를 준수해왔다. 5·5·7기준은 IT 인력은 전체 인력의 5% 이상을 확보하고, 보안인력은 전체 IT 인력의 5% 이상 확보하고, 보안예산은 전체 IT 예산의 7% 이상을 확보하는 기준이다. 이러한 5·5·7기준이 권고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금융회사 등이 이를 상회하는 IT·보안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동 기준이 2020년 1월 1일까지만 효력을 가짐에 따라 금융권이 적정 IT·보안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민간 중심의 자율 기준’이 필요하게 됐다. 이에 금융보안원(원장 김영기)은 2019년 12월 ‘금융보안 거버넌스 가이드’를 개정하여 금융권의 IT·보안 인력 및 예산에 관한 권고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아래의 내용은 금융보안 거버넌스 가이드의 주요 내용이다.<sup>153)</sup>

### 1. ‘IT·보안 인력 및 예산 확보를 위한 기본 원칙’

금융회사 등은 안정적인 정보보호 활동을 위해 적절한 보안인력 및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어 금융회사 등이 대내외 환경 및 자체 위험분석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한 보안인력 및 예산을 산정했다. 아울러 금융회사 등은 산정한 보안인력 및 예산 비율이 자사의 위험 등을 적절히 반영하였는지 주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 2. ‘최소한의 IT·보안 인력 및 예산에 대한 기준’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최소한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일정 비율이상의 IT·보안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어 국내 금융권 현황 및 해외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5·5·7 기준의 비율을 최소한 준수할 것을 권고했다. 가트너에 따르면, 해외 기업의 보안예산은 IT 예산 대비 평균 7.6%(금융부문)이며, 보안인력은 IT인력 대비 평균 5.6%를 보유하고 있다.

153) 원병철, “개정된 ‘금융보안 거버넌스 가이드’, 어떤 내용 담겼나”, 보안뉴스, 2020. 1. 2. (<https://www.boannews.com/media/view.asp?idx=85528> 2020.10.5. 최종검색); 금융보안원, 『금융보안 거버넌스 가이드』, 2020.12.([www.fsec.or.kr](http://www.fsec.or.kr) proc fsec bbs fileDownload 2020.10.20. 최종검색)

### (3) 금융 분야 사이버 안보 관리체계 구축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위 “언택트의 뉴노멀” 경향에 따라 금융사나 정보통신사의 재택 근무와 비대면 금융거래가 증가하고 있으며, 해커들의 사이버공격에 대한 우려 또한 급증하고 있어서 최근 디지털 금융 분야나 소액지급결제 분야에서는 보안 관리 기술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sup>154)</sup> 특히, 사회적 이슈를 기초로한 악성 이메일이나 및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단말기나 정보통신기기 등에 악성코드를 감염시키고 정보를 탈취하거나 금융거래를 시도하는 ‘스피어피싱’ 공격의 위험이 높아지는 가운데, 실제로 마스크 무료 배포 안내 사칭 등을 통하여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관련 키워드로 접근하는 사례가 보고되기도 한다.<sup>155)</sup>

이에 금융기관들은 코로나19 관련 상황에 대해 금융사에 사이버공격 유의사항 전파, 원격 접속 등 재택근무 시 금융보안대책 수립 조치, 보이스피싱 모니터링 및 대응체계 강화, 대국민 유의사항 안내 등을 조치해왔으며, 향후에도 금융기관들은 코로나19 관련 사이버공격동향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전 금융사를 대상으로 보안 유의사항을 신속 전파 하는 등 이슈에 대응해나갈 계획으로 전해지고 있다.<sup>156)</sup> 또한 이번과 같은 비상 상황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의 근무환경 변화 등에 맞추어 금융보안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 금융인프라 기관 등의 업무연속성계획(BCP: Business Continuity Plan) 등을 포함한 디지털 금융보안 체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노력도 지속할 것으로 알려졌다.<sup>157)</sup>

154) 정순영, “[코로나 극복, 디지털 금융] 금융보안 관리가 관건”, 거울경제TV 2020.9.21. 뉴스(<https://www.sentv.co.kr/news/view/579796> 2020.10.5. 최종검색)

155) 이종현, “금융보안원, 코로나19 금융부문 사이버 위협 동향보고서 발간”, 디지털데일리, 2020.5.29. 뉴스기사 ([http://m.ddaily.co.kr/m/m\\_article/?no=196215](http://m.ddaily.co.kr/m/m_article/?no=196215) 2020.10.5. 최종검색)

156) 권정수, “금융권, 코로나19 관련 사이버공격 대응 강화 나서”, IT DAILY 2020.3.9. 뉴스기사(<https://www.itdaily.kr/news/articleView.html?idxno=100236> 2020.10.5. 최종검색)

157) 금융위원회, “코로나19 관련 상황을 틈탄 사이버공격에 대응하여 금융회사 등의 보안조치를 강화하고, 해킹 등 피해 예방수칙을 마련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0.3.9. ([http://www.fsc.go.kr/info/ntc\\_news\\_view.jsp?menu=7210100&bbsid=BBS0030&no=33724](http://www.fsc.go.kr/info/ntc_news_view.jsp?menu=7210100&bbsid=BBS0030&no=33724) 2020.10.5. 최종검색)

## 제5절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에 대한 입법적 검토

본 보고서 제3절에서는 금융위원회의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 추진에 따른 전자금융거래법의 개정 방향에 대하여 입법적 검토와 분석을 통한 법제적 대응방안과 입법적 보완 필요 사항등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 1. 디지털금융 혁신방안에 따른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방향

우선, 금융위원회의 디지털금융 혁신방안에 따른 전자금융거래법의 개정방향을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다음 내용과 같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방향]<sup>158)</sup>

#### ● 전자지급수단 개선

- 전자지급수단에 대한 개념정의 (포괄적 네거티브식)
- 기능과 역할이 동일 유사한 형태끼리 통합
- 전자지급수단간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재정립

=> 선불형/직불형/후불형 전자지급수단으로 개편

=> 송금융·결제용, 온라인·오프라인을 구분하지 않음

=>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한 잔액양도방식을 통한 송금 = 전자자금이체업

=> 간편송금/간편결제 분리 : 선불 충전에 의한 송금 = 직불형 전자지급수단

=> “11. 전자지급수단이란 전자지급거래를 위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제공되거나 이용하는 지급수단을 말한다”

#### ● 전자금융업종 개편

- 기존 업종의 통합 재편(단순화)
- 기능중심 : 동일 기능-동일 규제
- 전자금융보조업자 규제 현실화

=> 전자금융보조업자의 신고 및 공시의무 도입, 콜센터/IT개발/유지보수 등 기준 마련

④ 진입규제 완화 및 경쟁차별 해소

- 포괄적·탄력적 라이선스 적용
- 설립 자본금의 대폭 완화
- 기타 경쟁차별요소 해소

=> 허가제(대규모)/등록제(원칙)/등록면제(소규모)

=> 기명식 선불과 전자자금이체 = 환업무의 성격(라이선스 엄격 적용)

=> 통합 라이선스 및 규모별 스몰라이선스 도입

=> 전자금융업자의 지급결제망 직접참가, 독자계좌개설, 금융회사 계좌 접근 권한 부여

\* 지급지시대행업자에 대한 금융회사의 지급지시 수락의무 및 오픈API 동등접근권

⑤ 이용자 수취자금 보호 및 건전성 규제 선진화

- 전자금융업자 건전성 확보의무
- 이용자로부터 수취한 고객자금의 보호
- 건전성 규제 위반시 제재 근거 신설

=> 자기자본대비 미상환잔액에 대한 보호장치 마련

=> 고객자금의 안전 보관 및 관리

=> 건전성 규제(자본적정성, 위험관리, 유동성관리, 자산건전성, 외환건전성, 거시건전성 부담금 등)

=> 이용자 수취자금 보호(선불 미상환잔액 대비 자기자본비율 규제: 자금이체 규모 증가에 대비)

\* 공탁, 별도금예치, 지급준비금 담보제공 등 법제화 방안 및 규제 수준?(선불업자 20%)

\*\* 일본: 1/2, 중국 100%

⑥ 전자금융거래법 실효성 강화

- 관련 법률간 체계 정합성 제고
- 타 법률 내용 이관(장기적) • 전자금융산업 지원 육성

=> 전자금융거래법 우선 적용 원칙 도입

\* 공통적 법률관계, 용어정의, 소비자보호, 사고시 배상책임, 약관·분쟁처리원칙 및 절차, 안전성 기준, 진입규제·건전성감독·검사 및 감독체계 등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의 에스스로 진입요건 및 검사감독 < 전자금융거래법)

- => 통신과금서비스 및 동 서비스업자(정보통신방법 -> 전자금융거래법)
- => 전자어음 및 동 발행관리자, 전자어음등록기관(전자어음법 -> 전자금융거래법)
- => 직불카드(체크), 선불카드(여신전문금융법 -> 전자금융거래법)
  
- => 전자금융거래 및 핀테크 산업발전계획 수립의무 법제화
- => 전자금융산업협회, 전자금융진흥센터 설립 및 예산지원 근거 마련
  - \*이용자·가맹점 표준약관을 제정 신고, 자율적 가이드라인·규약 등의 제정 및 신고, 전자금융거래와 관련된 표준의 연구개발·보급사업 및 국제표준화 활동, 전자금융거래 기술개발의 지원, 전자금융거래 통계의 실태조사의 지원, 이용자(소비자, 정보소외계층) 교육 지원 등

따라서, 향후 이러한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에 따른 다양한 입법적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 차원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작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디지털금융을 기반으로 한 소매결제로서의 소액결제 분야에서는 전자어음이나 전자어음의 발행자, 관리자, 등록기관 등 관련 내용은 소액결제나 간편결제를 중심으로 한 최근의 시장 변화에서 직접적 관련성이 적은 측면이 있다. 향후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서 전자어음 관련 내용을 우선적으로 포함하여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서는 청산과 관련한 지급결제시스템 전체를 고려하여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금융위원회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방향을 기초로 각각의 제도와 추가적인 보완 필요 사항 등에 대하여 각각의 검토 내용을 서술한다.

### (1) 지급지시 서비스업·종합지급결제업자 제도

위에서 언급하였던 지급지시 서비스업과 종합지급결제업자 제도를 신설한다면, 첫째, 이러한 업종의 영업개시를 위해서는 과연 누구에서, 어떤 요건에 따라 인가 내지 등록을 해줄 것인가의 문제, 둘째, 이러한 서비스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은행 결제망 활용과 관련 공동 금융서비스를 표준화된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오픈

158) 금융결제원, 핀테크 혁신을 위한 전자금융업 제도·산업 개편방안, 522면.

뱅킹, 공동결제시스템)의 활용 가능성 등이 문제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제도를 신설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일반 전자금융업자 대비하여 건전성을 강화하여야 하고 이용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금융회사의 수준의 신원 확인, 자금세탁 방지, 보이스피싱 등의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 금융안정 및 이해상충 방지 등을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의 마련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 1) 지급지시 서비스업과 종합지급결제업의 사업자 자격

#### ① 진입요건

지급지시 서비스업과 종합지급결제업 관련한 사업자를 누구로 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아 있다. 현재 전자금융업 진입을 위하여서는 최소자본금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현행의 전자금융업자 기준으로 보면, 전자화폐발행업은 사문화되어 거의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등록제로 운영되고 있는 전자화폐발행업 외의 전자금융거래업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표 22> 전자금융거래법상 세부업종별 최저자본금 기준<sup>159)</sup>

	전자화폐 발행업	전자자금 이체업	전자채권 관리업	선불·직불 전자지급	전자지급 결제대행	결재대금 예치	전자고지 결제
설립 방식	허가	등록	등록	등록	등록	등록	
최소 자본금	50억원	30억원	30억원	20억원	10억원*	10억원*	5억원*

\* 분기별 전자금융거래 총액을 30억원 이하로 운영하는 사업자에 국한

159)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7조(자본금 요건) ①법 제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3. 11. 22.>

먼저, 지급지시 서비스업을 설립할 경우 허가로 할 것인지 등록을 할 것인지가 문제되는데, 동일한 기능에 대해서는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그렇다면 지급지시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전자고지결제와 유사한 것으로 보고 ‘등록’으로 함이 타당할 것이다.

반면, 종합지급결제업은 그 기능이 자금이체, 대금결제, 결제대행업 및 지급지시전달업까지 종합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만약 현행 법제도라면 기능에 따라 여러 번의 허가 및 등록을 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EU PSD2의 경우 하나의 라이선스로 모든 지급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는 바, 우리나라도 종합지급결제업을 도입한다면 이를 통합하여 하나의 라이선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함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만약 이처럼 원스톱으로 처리한다면 등록제로 규정하되 최저 자본금 등 설립 요건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나아가, 이용자 자금을 보유하며 송금업무를 수행하는 자금이체업은 허가제, 그 외 업종은 등록제로 운영되도록 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조건부 등록제의 도입을 논의하고 있다. 물론 조건부 등록제로 운영할 경우 쉽고 빠르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조건성취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비자 보호 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진입조건은 완화하되 조건부 등록제의 도입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 
1. 법 제28조제2항제1호의 전자자금이체업무의 경우 : 30억원
  2. 법 제28조제2항제2호의 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의 경우 : 20억원
  3. 법 제28조제2항제3호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의 경우 : 20억원
  - ② 법 제30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28조제2항제4호의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의 경우: 3억원
    2. 제15조제3항제1호의 업무의 경우: 3억원
    3. 제15조제3항제2호의 업무의 경우: 3억원
  - ③ 법 제30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28조제2항제4호의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의 경우 : 10억원
    2. 제15조제3항제1호의 업무의 경우 : 10억원
    3. 제15조제3항제2호의 업무의 경우 : 5억원
  4. 법 제29조의 전자채권의 등록 및 관리업무의 경우 : 30억원
  - ④ 법 제28조 및 법 제29조에 따른 업무를 둘 이상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을 자본금·출자총액 또는 기본재산으로 한다. 다만, 그 합계액이 50억원 이상이면 50억원으로 한다.

## ② 최소자본금

지급지시 서비스업의 경우 고객이나 가맹점의 자금을 보유하지 않으므로 고객계좌에서 지급지시 서비스업자로의 자금이체는 금지되므로 소비자에게 큰 피해를 줄 우려는 적다고 본다. 따라서 최저자본금에 대해서는 높을 필요는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전자고지결제 업자와 마찬가지로 5억원(분비별 전자금융거래 총액을 30억원 이하로 운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3억원)으로 함이 타당하다.

다음으로 종합지급결제업자의 경우는 그 기능이 자금이체, 대금결제, 결제대행업 및 지급지시전달업까지 종합적으로 업무를 수행함으로 이용자 및 가맹점 보호를 위하여 최저자본금이 높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신설된 제도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마땅치 않지만, 신용카드업의 경우 자본금 200억원 신용카드업을 하면서 시설대여·할부서비스업, 신기술금융업까지 영위하는 경우는 400억원, 신기술금융업만 영위하는 경우 100억원의 요건을 정하고 있다. 또한 보험회사가 모든 종류의 보험상품을 취급하기 위해서는 300억원의 최저자본금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신용카드업과 유사하게 판단하는 것이 적당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종합지급결제업자는 예대업무는 수행하지 않으므로 신용카드업자가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400억원을 요구하는 것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즉, 보험의 경우 300억원 이상을 요구하므로 이에 조화를 이루는 것이 적당하다고 본다. 다만, 이는 정책적인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③ Small License 및 진입방식의 합리화

위의 등록 및 최소 자본금 요건과 관련하여 영업 규모가 작은 경우는 자본금·등록에 대한 특혜를 부여하되, 영업 확장시 자본금 등을 상향 적용(sliding scale 방식)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현행법에 의하면, 분기별 전자금융거래 총액을 30억원 이하로 운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최저자본금을 3억으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위는 분기별 거래액이 100억원, 30억원 이하인 경우 최소자본금을 1/2, 1/4로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영국의 경우 분기별 거래액이 약 120억원 이하인 전자금융업자에 대하여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를 모델로 하고 있다. 생각건대, 스몰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경우 얼마를 최소자본금을 할 것인가는 정책적인 차원에서 결정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진입을 위한 최소자본금을 완화할 경우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문제가 발생할 경우 소비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를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 2) 공동 오픈 API 활용 가능성

위의 지급지시 서비스업과 종합지급결제업을 신설하는 경우 선결되어야 할 조건으로 공동 오픈 API(오픈 banking, 공동결제시스템)의 활용의 문제가 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공동 오픈 API를 활용할 경우에는 은행과 핀테크 업체 간 또는 은행과 은행 간의 상호 경쟁(co-competition)이 심화되고, 은행업의 플랫폼화가 초래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고 본다.

### ① 오픈 banking 및 공동업무시스템의 도입

오픈banking은 개별은행과 제휴 없이도 참여 은행들이 표준화된 방식(API)으로 해당 은행의 자금 이체 기능을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시스템을 말한다.<sup>160)</sup> EU의 PSD2(Payment Services Directive2)와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2015)도 이러한 오픈banking에 대한 기본적인 지침을 마련하여 법제화하고 있다.<sup>161)</sup>

우리나라는 오픈 banking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016년 8월 핀테크 오픈 플랫폼을 금융권공동으로 개설하였으며.<sup>162)</sup> 2019년 12월 오픈 banking 공동업무시스템이 개시되었다.<sup>163)</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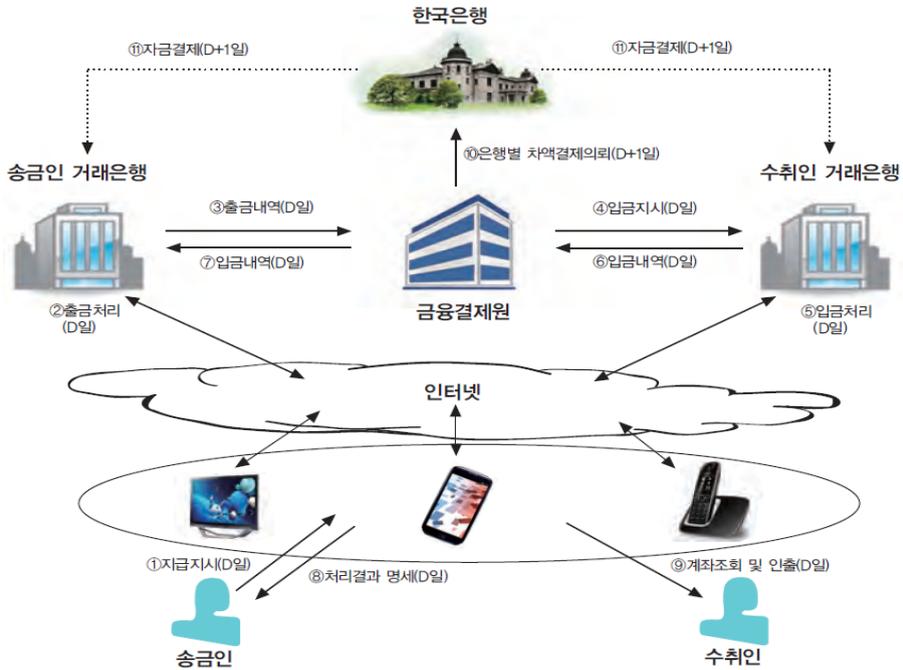
160) 금융위원회, 「핀테크 및 금융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방안」, 6면.

161) 김자봉, “디지털금융 법제화의 글로벌 동향과 시사점”, 『금융포커스』제29권 제9호(2020.4) 20면.

162) 한국은행, 「2019지급결제보고서」, 10면.

163) 한국은행, 「2019지급결제보고서」, 10면.

<그림 12> 소액결제시스템을 통한 고객 자금이체의 처리 절차<sup>164)</sup>



오픈뱅킹시스템 및 핀테크기업의 소액결제시스템 참가를 통한 예상 편익에 대하여 한국은행은 ‘은행을 경유하지 않고, 독자적인 자금 이체업무 처리 가능, 오픈뱅킹시스템 이용 관련 건별 수수료 부담 축소’로 밝히고 있으며, 이러한 소액결제시스템 참가시 예상비용을 ‘특별참가금 납부(1회납), 시스템 운영경비 분담(연납), 관련 시스템 구축비용 부담, 차액결제리스크 관리를 위한 담보부담’ 등으로 밝히고 있다.<sup>165)</sup>

## ② 오픈뱅킹 및 공동업무시스템의 법제화에 대한 검토

위의 오픈뱅킹 및 공동업무시스템을 도입과 관련하여 금융의 신뢰성·안전성을 확보하여 글로벌 수준의 관리·감독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이미 개정된 「지급결제제도

164) 한국은행, “「소액결제시스템 참가제도 개선」 관련 Q&A”, 보도참고자료, 2020.6.24., 8면의 그림 인용.

165) 한국은행, “「소액결제시스템 참가제도 개선」 관련 Q&A”, 보도참고자료, 2020.6.24., 9면.

운영·관리 규정」 외에도 「전자금융거래법」 내지 금융결제원의 「전자금융공동망업무 시행세칙」의 개정 작업도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오픈뱅킹 제도 도입을 위하여서는 “소액결제시스템 참가와 관련한 한국은행 당좌예금 계좌 보유, 한은금융망 참가약정 체결, 차액결제리스크 관리 등 의무사항”이 금융결제원 규정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되며, 소액결제시스템 참가를 위하여서는 “자금이체업무 수행의 법적 근거, 설립법률에 따른 한국은행과 금감원의 공동검사, 차액결제리스크 관리제도 준수 등”의 규정도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sup>166)</sup>

다만, 법제 개선 과정에서 지급지시서비스업과 종합지급결제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각 참가자에 대한 건전성 기준 및 물적·인적 설비 기준 외에도,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각종 조치 의무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급지시서비스업과 종합지급결제업의 신설에 대한 도입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연계하여 현실성 있는 기준을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sup>167)</sup>

### 3) 종합지급결제업과 마이 데이터업의 겸영 가능성

종합지급결제업은 이용자 측면에서 은행 계좌를 개설하거나 이용하지 않아도 입·출금, 이체, 법인 지급결제 등 은행 수준의 다양한 금융결제 서비스가 가능해지며, 사업자 측면에서는 오픈뱅킹 단계를 넘어서 금융결제망에 직접 참가도 가능해진다. 따라서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마이 데이터 사업자와 연계하여 조회·송금 등을 아우르는 종합자산관리 서비스를 고도화하여 그 시너지 효과를 누리하고자 할 것이다. 즉, 마이 데이터(데이터 조회)와 마이 페이먼트(간편송금·결제 지시 등)의 결합을 통하여 플랫폼 종합 금융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고자 할 것이다.

그런데 현행 법제도 하에서 보면 종합지급결제 서비스업자는 전자금융거래법에 업종을 신설하여야 하고, 종합자산관리 서비스업자는 신용정보법에 업종을 신설할 수 밖에 없다.

166) 한국은행, “「소액결제시스템 참가제도 개선」 관련 Q&A”, 보도참고자료, 2020.6.24., 2면.

167) 서정호·권홍진, “오픈뱅킹 고도화를 위한 개선방안”, 「오픈뱅킹 개선방안 세미나 자료집」, 한국금융연구원, 2020, 19면.

따라서 이러한 제도의 효율화 및 활성화를 위해서는 양 제도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 즉, 금융플랫폼을 통하여 은행업을 넘어 증권, 보험, 카드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양 제도의 통합한 오픈 파이낸스(Open Finance)의 실현이 필요하다고 본다.

다만, 오픈뱅킹을 통한 소액결제시스템 참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안정성 확보 조치나 이용자 보호 조치, 개인정보보호, 보안, 책임 등과 관련된 의무 규정의 도입이 필요하고, 종합지급결제업자 및 지급지시 전달업자의 내부통제제도 강화를 통하여 해당 의무 준수에 대한 자율적 관리·감독이 필요하다.<sup>168)</sup>

구체적으로는 결제사업자의 자금이체 지시에 대한 협조의무, 자사 채널을 통해 접수한 고객 또는 수취인의 자금이체 지시와 수수료, 처리순서, 소요시간 등에 있어서 차별금지, 안정적인 서비스가 가능한 오픈 API 인프라 구축·제공의무 등에 대하여 전자금융거래법에 규정하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법적책임을 지워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러한 제도를 급격하게 도입하는 경우 예상치 못한 시스템리스크나 피해가 발행하여 금융안정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금융샌드박스 제도에서 우선 실시하여 그 문제점과 대응책을 마련한 이후, 관련 제도의 도입에 따른 충분한 시스템적·법리적 검토를 통하여 입법적 기초를 확보한 후, 본격적으로 제도를 운영하는 것도 필요하다.

#### 4) 지급지시 청산회사 지정 문제 검토

현금 이외에 어음이나 수표,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은 지급인이 자신의 거래은행에 맡겨 놓은 돈을 수취인에게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는 수단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런 지급 수단을 사용하면 해당 금액을 지급인의 금융기관 예금계좌에서 인출해 수취인의 예금계좌로 입금해 주는 현금화 절차를 거쳐야 지급결제가 완료된다. 이 절차는 지급, 청산, 결제의 세 단계를 거쳐 이뤄진다. 즉, 결제는 청산 과정을 거쳐 확정된 금액을 각 금융기관이 중앙은행에 개설한 당좌예금 계좌의 자금이체 등을 통해 서로 주고받아 채권·채무 관계를

168) 서정호·권홍진, “오픈뱅킹 고도화를 위한 개선방안”, 『오픈뱅킹 개선방안 세미나 자료집』, 한국금융연구원, 2020, 12면.

해소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급결제시스템으로는 한국은행금융결제망(한은금융망·BOK-Wire+), 소액결제시스템으로는 금융결제원이 운영하고 있는 어음교환시스템, 지로시스템,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뱅킹 등을 처리하는 전자금융공동망 등이 있으며, 신용카드의 경우는 신용카드결제시스템, 주식이나 채권 등의 증권결제시스템은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이 운영하고 있다.<sup>169)</sup>

전자화폐 등을 통한 종합지급결제업을 신설하는 경우 결제업무까지 수행하게 된다. 이 경우 결제 전 단계에서의 청산 절차가 필요하게 되는데, 이 청산업무를 수행할 기관을 정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현행 전자금융거래업에서의 전자금융보조업자나 한국은행의 지급결제제도의 운영규정상의 정산소 규율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전자금융거래법의 개정에서는 이에 대한 규정을 두고자 한다. 다만, 지급지시 청산회사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먼저, 지급지시 청산회사는 지급지시의 중계, 금액정산 및 결제지시 전송 업무 등을 수행하게 된다. 생각건대, 기존의 금융결제원이 운영하고 있는 어음교환시스템, 지로시스템,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뱅킹 등을 처리하는 전자금융공동망에 전자화폐 등의 청산업무도 함께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무난할 것으로 판단된다.

## (2) 전자금융업종의 개편 및 간소화

### 1) 기능에 따른 전자금융업종의 통합 및 절차의 간소화 검토

현행법상 전자금융업종은 기능에 따라 기존의 전자금이체업, 전자화폐업, 선불 및 직불 전자지급수단업, 전자지급결제대행업, 결제대금예치업, 전자고지결제업으로 구분되어 있다. 나아가, 허가를 받은 전자금융업자는 위의 업무를 겸영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전자금융거래법 제35조 제1항). 그런데 종합지급결제업을 신설하는 경우 이 겸업제한의 규정을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169) 윤태길, “지급결제제도와 중앙은행”, 서울신문, 2014. 8. 11,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40811016004>. 2020.10.30. 최종검색)

나아가, 전자금융업종도 기능에 따라 기존의 구별 방식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즉, 전자자금이체업을 자금이체업으로, 전자화폐업과 선불전자지급수단업을 자금이체업과 대금결제업을 구분하고, 직불전자지급수단업을 대금결제업으로, 전자지급결제대행법, 결제대금예치업, 전자고지결제업을 결제대행업으로 통합하고자 한다.

이처럼 전자금융업종의 체계를 개편하고자 하는 취지에 대하여 금융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i) 현행 전자금융업 체계가 과거 신용카드 결제를 대행하거나 은행 계좌이체를 보조하는 역할을 담당할 경직적이고 낡은 규율 체계를 가지고 있고, ii) 새로운 기술발전이나 새로운 형태의 지급수단과 융복합 서비스에 대비하거나 미래기술 발전에 대한 탄력적 대응을 할 수 없으며, iii) 업종을 지나치게 세세하게 구분하다 보니, 동일한 기능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업종을 분류되어 다른 규제가 적용되는 한편, iv) 해외에서 활성화된 독자적이고 새로운 결제서비스를 탄력적으로 수용하는데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sup>170)</sup>

생각건대, 종합지급결제업, 오픈뱅크 및 공동업무시스템 등의 도입을 고려한다면 현행 규율 체계에서는 업무 수행에 수회에 걸친 허가 및 등록을 하여야 하고, 최소자본금은 얼마를 유지해야 할 것인지 등에 대하여 많은 논란을 초래할 수 있고, AI, 빅데이터 등 4차산업혁명에 따른 금융시스템의 급속한 발전을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형태의 금융시스템 도입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없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여 전자금융제도를 새로이 개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 2) 전자지급수단의 개편에 대한 검토

전자금융업종을 위와 같이 개편하고 종합지급결제업자의 등장을 하게 된다면 기존의 전자지급수단을 개편하여 전자지급수단의 하이브리드화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즉, 오픈뱅킹 전계좌를 등록한 후 추심이체 실시간 충전 직불결제를 보편화함으로써 잔액부족시

170) 금융위원회, 「핀테크 및 금융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방안」, 3~4면.

후불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지급수단이 단순한 대가지급, 송금에서 종합자산관리수단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처럼 실시간 출금이체 방식을 보편화할 경우 자산관리를 위한 출금이체 경쟁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보면, 현재 선불형으로 전자화폐,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이 있고, 직불형으로는 직불전자지급수단, 후불형으로는 전자채권이 있는데, 이에 대한 역할을 송금용과 결제용으로 엄격하게 분리할 필요가 있다. 즉, 선불, 직불, 후불형 전자지급수단으로 구분하고, 자금이동의 목적에 따라 송금용과 결제용으로 구분하는 현재의 틀을 그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 최근의 전자지급수단 간 융합 현상으로 복잡해 보이지만, 거래 특성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국제적으로도 아직까지 이 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전자금융업종을 개편하는 경우 선불 충전에 의한 송금은 전자자금이체로, 선불 충전에 의한 결제는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전자자금이체에 의한 결제는 직불전자지급수단으로 변화하게 된다. 전자화폐에서의 송금기능은 자금이체로 결제기능은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통합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 2. 소액지급결제 분야 디지털금융 이용자 자금보호 제도 강화

### (1) 손해배상책임 요건의 개정 필요

#### 1) 책임의 요건

현행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전자금융업자는 ①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전자식카드(직불, 선불카드의 복제 등), ②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전산장애, 프로그램 오류 등으로 증권 주문 미체결, 예금이자 과소지급, 증거금 초과 옵션 매도 등). ③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고(전자금융거래 해킹사고 - 공인인증서 탈취 등)로 인하여 이용

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제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고 규정을 하고 있다.

하지만, 포괄적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무권한거래’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가 명확하지 않다. 하지만, 이용자의 자금 보호를 위하여 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같은 조 제1호와 제3호와 관련하여 접근매체 이외의 거래 관련한 지급지시나 지급결제의 위·변조, 제3호의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인한 해킹이 아닌 거래지시의 해킹에 대해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지급지시 서비스업과 종합지급결제업을 새로이 도입한다면 이와 관련한 지급지시 내지 종합지급결제 로 인한 위조나 변조, 해킹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한 방법으로 위의 제1호 내지 제3호의 조문을 수정하여 이 부분을 포함시키거나 또는 전자금융거래법처럼 ‘사고’에 대한 책임이 아닌 신용카드(선불·직불) 등의 손해배상책임과 같이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으로 보인다.

## 2) 증명책임의 명시

위의 유형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증명을 하여야 하는데, 전자금융거래법에는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따라서 이용자는 단지 손해발생사실만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없음에 대하여 전자금융업자가 지도록 명문으로 들 필요가 있다.

## 3) 면책사유의 축소

현행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2항에 의하면, “전자금융업자는 ① 사고 발생에 있어서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로서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약정을 미리 이용자와 체결한 경우, ② 법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한다)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금융회사 또

는 전자금융업자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같은 조 제1호·제2호). 이와 관련하여 2013년에 무과실책임주의를 도입하였으나, 예외를 인정하여 전자금융업자의 면책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런데 은행을 가장한 파밍(허위) 사이트를 접속하여 금융거래에 필요한 모든 정보(접근매체 정보)를 입력하여 이를 사기범이 가로채 불법이체가 이루어진 경우 법원은 이에 대하여 이용자의 고의·중과실로 판단하여 전자금융업자의 책임을 면해주었다. 실제로 이와 관련하여 이용자가 승소한 경우는 한 건도 없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고의아닌 ‘중과실’에 대해서 과연 전자금융업자의 책임을 면해주는 것에 대하여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과실의 존재에 대한 판단은 매우 애매모호함이 있으므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등에 고의·중과실이 존재하는 유형을 열거하여 제한적으로만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할 것이다.

## (2) 전자금융업자의 자금과 고객의 자금 분리 필요

간편결제나 송금업자는 미상환 잔액을 대부분을 2018년말 기준으로 볼 때 현금·보통예금으로 77.9%, 정기예금으로 20.4%를 관리중이거나 일부 선불업자는 수시 입출식 특정금전신탁(MMT)의 형태로 보유하고 있다.<sup>171)</sup> 그런데 이러한 자금을 대해서 이자놀이를 하는 등 불법으로 운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이용자의 자금을 보호와 불법자금으로 유통하는 것을 통제하기 위해서 전자금융업자의 자금과 분리하여 이를 보관할 필요가 있다. 보관방법으로 금융당국은 선불 충전금을 신탁의 형태로 맡기거나 간편결제업체가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자금융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게 되면 보험자 내지 보험회

171) 권화순, “[MT리포트]카카오페이 충전잔액, 물어두면 이자 붙나요?”, 머니투데이 뉴스기사, 2018.11.14. (<http://news.zum.com/articles/48872858> 2020.10.5. 최종검색); 이승주, “카카오페이 등 지난해 간편송금 거래액 12조 육박. . . 금감원 ”강화할 것“”, ChosubBiz, 2018. 8. 14.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8/14/2018081401004.html](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8/14/2018081401004.html). 최종검색 2020.10.20.)

사는 보험상품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험에의 가입 실효성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용자의 자금을 보호할 수 있도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5조에서와 같이 매 분기말 현재 선불카드 발행총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탁하도록 한 것처럼 전자금융업자에게도 공탁의무를 둘 필요가 있다. 보관기관은 보험에 가입할 경우는 보험회사, 예치나 신탁을 할 경우는 은행 또는 금융증권에 보관하도록 의무화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 (3) 합병·영업양도시 이용자 보호

최근 들어 전자금융업자의 합병이나 영업양도 등이 활발해지고 있다. 영업양도의 예로는 네이버 - 네이버 파이낸셜, 카카오 - 카카오페이의 경우를 들 수 있고, 인수의 경우에는 바로투자증권-카카오페이증권, LG유플러스 PG사업 - 비바리퍼블리카로 인수된 경우를 들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합병이나 영업양도의 경우 이용자에 대한 사전고지를 하도록 하여야 하고, 이용자의 규모가 일정 이상인 경우에는 합병이나 영업양도의 심사를 통해 이용자 보호 수준과 시장 안정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 3. 전자금융거래의 활성화

### (1) 지급결제계좌의 허용에 대한 검토

#### 1) 필요성

지급결제서비스는 전통적으로 금융기관, 특히 은행의 고유업무 영역으로 인식되어 왔다. 이는 지급결제서비스의 근간이 되는 बैं킹 시스템 및 은행 간 자금이체 시스템의 1차 인프라(primary infrastructure)를 은행이 보유하고 있음에 기인한다. 그러나 정보기술(IT)과 지급결제의 융합은 점차 이러한 1차 인프라가 갖고 있는 고유의 독점적 이익을 약화시키고 있다.<sup>172)</sup>

전자금융업자가 이러한 지급결제계좌를 보유하는 것에 대한 논의는 2006년 전자금융거래법의 개정시 있었다. 하지만, 당시 비금융사업자가 금융회사와 연계되지 않는 독자적인 계좌를 보유하게 될 경우 예금 수신 등의 금융행위 및 지급결제업무가 가능하여 금융업무의 영역 구분이 없어질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전자금융업자의 독자적인 계좌 보유를 제한하였다.

최근에는 금융당국이 발표한 4차산업혁명 시대의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이 마련함에 따라 다시 이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 즉,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제도의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전자금융업자의 지급결제계좌의 보유가 다시 논의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이 제도가 도입되는 경우, 기능적인 측면에서 은행과 제휴 없이 독립적으로 계좌를 발급·관리·결제·청산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기 때문에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등에 대하여서는 한국은행이 소액결제시스템 참가제도 개선을 위하여 개정된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 규정」의 적용에 따른 재무건전성 및 리스크관리능력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며 이용자보호를 위한 조치 의무 등도 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 2) 지급결제계좌의 기능

만약 전자금융업자가 지급결제계좌를 직접 개설하여 지급결제의 목적으로 고객자금을 관리한다면 독자적인 자금이체 업무가 가능해짐에 따라 은행 등과 같이 금융결제망에 직접 참가하여 다양하고 폭넓은 지급결제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즉, 고객의 은행계좌가 없어도 자금이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현금 입·출금, 결제, 송금 등 포괄적인 지급결제 서비스가 가능하며, 선불전자지급수단과 달리 한도의 제한 없는 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172) 김소이, “비금융기관의 전자지급결제 부문 진출 현황과 시사점”, 「지급결제와 정보기술」(금융결제원 전자금융연구소, 2009. 7), 31면.

### 3) 기존 금융업자와의 관계 명확화 필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자금융업자에게 지급결제계좌의 개설을 허용하는 경우 전자금융업자는 다양하고 폭넓은 지급결제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경우 기존의 지급결제기능을 수행하는 금융업자와의 관계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도 명확하게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은행의 요구불예금계좌나 금융투자회사의 예탁금계좌의 경우 자유로운 입·출금 이외의 이자수입 내지 금융상품투자가 가능한데, 과연 전자금융업자에게 지급결제계좌의 개설을 허용한다면 은행이나 금융투자회사처럼 이자수입 내지 금융상품투자도 가능한지의 여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전자금융업자에게 독자적인 계좌를 보유하고 자금이체가 가능하도록 하는 경우 은행, 금융투자회사, 신용카드사, 보험사 등과 관련하여 규제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 (2) 금융결제망의 참가에 대한 검토

### 1) 필요성

종합지급결제업을 도입하는 경우 종합지급결제업자 중에서 입출금전용계좌 보유 등 결제관리능력이 인정되는 업체에 가입을 허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금융결제망에 대한 참가는 오픈뱅킹 고도화 및 법제화 검토 부분과 동일한 선상에서 고려하여 관련 의무 및 건전성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sup>173)</sup>

이와 관련하여 영국의 영란은행은 비은행 결제업체가 영란은행이 운영하는 거액결제시스템인 CHAPS(Clearing House Automated Payment System)에 직접참가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이미 2개사에 이를 허용하고 있고, 미국의 경우도 핀테크 기업에 대하여 연준 결제시스템(FEDWire 등) 접근을 허용할 필요성에 대하여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173) 서정호·권홍진, “오픈뱅킹 고도화를 위한 개선방안”, 『오픈뱅킹 개선방안 세미나 자료집』(한국금융연구원, 2020) 19면.

## 2) 참가 방식

금융결제망에 참가하는 방식으로는 직접참가 방식과 간접참가 방식이 있다. 전자의 경우는 ① 자금이체업무를 수행할 법적 근거를 확보하여야 하고, ② 「한국은행법」에 의하면 지급준비금 예치의무가 있는 금융회사로서 차액결제 참가기관의 결제불이행시 한국은행이 일시 부족자금 대출제도(일중당좌대출 자금조정대출)를 통해 결제유동성의 공급이 가능하여야 하며, ③ 설립법률에 따라 금감원과 공동검사의 실시가 가능하여야 하며, ④ 차액결제 리스크 관리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판단이 가능하여야 한다. 반면 후자의 경우 ① ③④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sup>174)</sup>

위의 방식과 관련하여 참가하는 방법으로는 ① 금융공동망(금융결제원 소액결제망)에 간접적으로 참가하는 방식, ② 한은금융망에 간접 - 금융공동망에 직접참가(차액결제 대행)의 방식, ③ 금융공동망-한은금융망에 직접참가(직접 차액결제 방식) 등이 있을 수 있다.

생각건대, 위의 방식 중에서 초기에는 한은금융망에 직접 내지 간접적으로 참가할 수밖에 없겠지만, 향후 오픈 बैं킹 및 공동결제시스템의 성공적 구축 및 제도 정착이 이루어진다면 핀테크 기업의 금융결제망에 직접 참가할 필요성은 점차 낮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 (3) 소액후불결제 · 충전한도의 상향 등 영업범위 확대

현행 간편결제서비스는 선불결제시스템이다. 나아가, 금융위는 소비자의 편익을 위하여 현행 간편결제의 한도를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1일 이용한도를 1000만원으로 상향하였다. 나아가, 결제 부족분(선불충전금과 결제대금간 차액)에 대해서도 최대 30만원의 소액 후불결제 기능을 인정하고자 하였다.

그 동안 소액지급결제 분야에서 후불결제에 대한 운용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소액 후불결제 기능의 채택을 위하여서는 지급결제에서의 거래 안전성과 이용자의 시장 신뢰 확보, 이용자 보호장치를 종합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174) 한국은행, 「「소액결제시스템 참가제도 개선」 관련 Q&A」, 보도참고자료, 2020.6.24., 2면.

이를 위하여 기존에 운용 경험이 있는 소액후불결제 제도로서 “통신과금서비스”를 통한 휴대폰소액결제서비스의 입법례와 비교하여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10호 및 「통신과금서비스 운영에 관한 고시」에서는 건전성 확보, 모니터링·해킹방지 시스템 구축, 비상시스템관리 대책, 통신과금서비스 이용 동의, 전자적 대금결제창, 결제비밀번호, 일자동결제, 결제사항 고지, 거래기록의 보존 등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액지급결제 분야에서의 후불결제 제도 운용을 위하여서는 거래 안정성 확보나 이용자 보호를 통하여 시장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서라도 이러한 일정한 기준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3) 전자금융보조업 관련 규정의 개정 검토

#### 1) 개념에 대한 재검토

현행 전자금융감독규정에 의한 전자금융보조업자란 ①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업자의 신용카드 승인 및 결제 그 밖의 자금정산에 관한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자(신용카드 VAN), ②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은행업을 영위하는 자의 자금인출업무, 환업무 및 그 밖의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자(계좌이체 PG(뱅크페이), CMS 사업자, NICE(ATM 관리업자), 인터넷 지로, 펌 VAN, 금융 료, 계좌통합조회), ③ 전자금융업무와 관련된 정보처리시스템을 해당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를 위하여 운영하는 사업자(금융클라우드, 재해복구센터), ④ 제1호 부터 제3호의 사업자와 제휴, 위탁 또는 외부주문(이하 "외부주문등"이라 한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정보처리시스템을 운영하는 사업자를 말한다(동 감독규정 제3조).

이러한 규정은 전자금융업자가 자금정산이나 수수대행에 초점을 두고 설계된 것으로 보조업자 또한 이 업무를 보조하거나 일부를 대행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보조업자의 역할이 강화되고, 새로운 형태의 사업자가 등장하여 전자금융업자의 역할, 책임, 안전성 준수 의무 등과 관련하여 재검토를 할 필요가 발생하였다.

특히, 인증정보 플랫폼 운영업자(통합인증사업자), 인증대행- 추가인증(SMS, ARS) 제공 통신사, 키생성관리·정보저당(단말기 제조사 Trust Zone), 통신사(USIM), 바이오 정보 분산관리센터, 자체 간편결제서비스 사업자 등 새로운 형태의 전자금융보조업자가 많이 등장하였는데, 이에 대해서도 포섭을 할 필요가 생겼다.

## 2) 전자금융보조업자의 책임 조항의 재검토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새로운 형태의 전자금융보조업자에 대하여도 규율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전자금융보조업자의 범위와 관련한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조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

먼저, 이의 개정을 위해서는 새로운 형태의 전자금융업자를 포섭할 수 있도록 개념을 재정립하여야 한다. 위의 감독규정 제4호에서의 '제1호부터 제3호의 사업자와 제휴, 위탁 또는 외부주문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정보처리시스템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제휴, 위탁 또는 외부주문'의 부분을 한정적으로 규정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전자금융보조업자를 포함할 수 있도록 광범위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즉, '제휴, 위탁 또는 외부주문, 기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정보처리시스템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광범위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다만, 이렇게 광범위하게 전자금융보조업자를 규정할 경우 문제될 수 있는 것은 전자금융보조업자의 난립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커지는 바, 더불어 이에 대한 책임 및 감독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즉, 전자금융보조업자가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케 하였을 경우에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금융보조업자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의 소홀로 인한 사용자책임을 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현행 전자금융거래법 제11조 제1항에서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전자금융보조업자(전자채권관리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고의나 과실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고의나 과실로 본다"고 규정한 취지와 함께 전자금융보조업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소비자에 대한 책임을 우선적으로 부담하고 전자금융보조업자에게 그에 대한 구상을 할 수 있도록 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 할 것이다.

### 3) 금융클라우드의 이용 및 그에 대한 감독 강화 필요

2011년, 농협 전산 사고로 3일 동안 은행 업무가 마비된 적이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5.5.7 규제'가 생겼다. 이는 금융회사에 IT 인력을 전체 인력의 5%로 채용하고, IT 예산을 전체 예산의 5% 수준으로 편성해야 하며, IT 예산 중 7%를 보안 분야에 편성하는 규제를 말한다. 그런데 이에 따른 제반 인력과 예산이 만만치 않고, 금융권 스타트업은 이 규제를 따르기에 버거운 측면도 있어서, 점차 클라우드 활용 범위를 넓히고 있다.

이러한 클라우드는 프라이빗과 퍼블릭 형태, 하이브리드 형태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폐쇄형 클라우드로, 클라우드를 이용하는 기업이 직접 클라우드 환경을 구축하는 형태이다. 기업 내에서는 데이터를 공유하거나 호환이 가능한 반면 기업 외부로 정보가 유출될 염려가 적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자체 서버를 구축해야 하므로 비용이 많이 들고, 고성능 컴퓨팅 자원 등을 자유롭게 확장하지 못해 빅데이터 분석력이 떨어지는 단점도 있다. 반면 후자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기업이 외부 클라우드 업체의 인프라를 활용하는 방식이다. 아웃소싱 형태의 클라우드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대부분의 퍼블릭 클라우드 업체는 빅데이터 분석, AI 개발 도구 등의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러한 서비스를 프라이빗 클라우드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마지막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는 프라이빗과 퍼블릭 클라우드를 혼합한 형태이다.<sup>175)</sup>

이러한 클라우드 서비스는 그동안 주로 아마존의 AWS,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애저(Azure), 구글의 GCP가 대표적이었으며, 국산 클라우드 서비스도 그 뒤를 이어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다. 최근에는 국내 금융권에서 국산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금융권에서도 이러한 클라우드를 적극 도입하고 있다.

175) [https://www.hyosungfms.com/fms/promote/fms\\_news\\_view.do?id\\_boards=13485](https://www.hyosungfms.com/fms/promote/fms_news_view.do?id_boards=13485) 2020.10.5. 최종검색.

예를 들면, 신한은행은 AI 코어 플랫폼 고도화 사업에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의 도입, 한화생명에는 NBP와 코스콤 금융 클라우드를 채택하고 클라우드를 활용한 ‘클레임 AI 자동 심사 시스템’의 도입, KB손해보험은 금융권에서는 처음으로 공적 마스크 조회 서비스의 오픈 등을 들 수 있다.<sup>176)</sup>

금융위원회는 2019년 1월 1일 시행된 「전자금융감독규정」(금융위원회고시 제 2018-36호, 2018. 12. 21., 일부개정)을 통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절차 등을 규정하고, 고유식별정보 또는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경우나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및 신뢰성에 증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보고하도록 의무화 한 바 있다(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의2 제3항).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는 경우 첨부해야 하는 서류에는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제7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서류, 제1항제1호에 따른 자체 중요도 평가 기준 및 결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관련 업무 연속성 계획 및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정보보호위원회 심의·의결 결과”를 포함하도록 하였다(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의2 제4항). 또한, i) 자체적으로 수입한 기준에 따른 이용대상 정보처리시스템의 중요도 평가, ii) 일정한 항목을 포함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건전성 및 안전성 등 평가, iii) 일정한 사항을 반영한 자체 업무 위수탁 운영기준의 마련 및 준수 절차를 수행하고, 그 평가결과 및 자체 업무 위수탁 운영기준에 대하여서는 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였다(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의2).

따라서, 금융회사가 감독당국에 보고 대상이 되는 안전성 확보조치, 계약 내용 등에 대하여서는 클라우드 이용 약관 내지 계약서에도 금융회사·감독 당국의 조사 및 접근권, 클라우드 제공자·금융회사의 법적 책임 등의 명시가 필요하다.

176) [https://www.hyosungfms.com/fms/promote/fms\\_news\\_view.do?id\\_boards=13485](https://www.hyosungfms.com/fms/promote/fms_news_view.do?id_boards=13485) 2020.10.5. 최종검색.

## 4. 전자금융거래의 감독 및 감시

### (1) 접근매체 · 인증 제도의 검토

#### 1) 개념의 확대

현행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에 의하면,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한다(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란 ①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② 「전자서명법」 제2조 제4호의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같은 조 제7호의 인증서, ③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④ 이용자의 생체정보, ⑤ 가목 또는 나목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를 말한다. 즉, 접근매체란 거래를 지시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지시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수단을 말한다. 미국의 경우(미국 전자자금 이체법) 접근매체(Access Device)란 계좌에 접근하여 거래를 개시하기 위한 수단으로으로 계좌번호 자체는 접근매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다.<sup>177)</sup>

이러한 접근매체의 예로는 전자식 카드, 전자서명 생성정보, 공인인증서, 아이디, PIN 등 이용자번호, 지문, 홍채 등 생체정보, 일회용 비밀번호 등 보안카드,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인 OTP 등을 들 수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의 접근매체의 정의에 의하면, 새로운 인증수단인 범용 인증플랫폼, 간편인증, 스마트폰 특화인증(스마트 보안카드, TZ, OTP, DID), 블록체인 인증, FIDO방식의 바이오인증, 프라이빗 인증공동망, OAuth인증, 음파·뇌파 인증, 신용카드인증 등을 접근매체에 포함시킬 수 없게 된다.

177) 2010년 6월 전자금융 감독 규정을 개정하여 공인인증서 외에도 공인인증서와 동등한 수준의 안전성이 인정되는 인증방법을 허용하였다([http://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394464&call\\_from=rsslink](http://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394464&call_from=rsslink) 2020.10.31. 최종검색).

따라서 새로운 형태의 인증수단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현행 접근매체의 개념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경우 열거주의 형식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예시주의의 형식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결정이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향후 IT 기술의 발달으로 새로운 형태의 인증수단을 계속해서 등장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예시주의로 규정함이 타당하다고 본다. 즉, 전자금융거래법에 접근매체에 대한 개념을 추상적으로 규정하여 새로운 형태의 인증수단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에 그 구체적인 인증수단을 제시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 2) 인증 방법의 자율성 보장과 그에 대한 감독 및 책임 강화

금융위원회는 2015년 3월의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을 통하여 전자금융거래에서 안전 인증 방법을 자율적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를 폐지하여 금융회사 등이 스스로 위험 수준의 결정 기준이나 강력한 인증 방법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sup>178)</sup> 다만, 이 경우 인증 제도가 부실할 경우 이용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금융회사 등의 관대한 리스크 평가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증방법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IT 실태평가 및 문제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에 대한 보완을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만약 이러한 인증방법을 두지 않거나 금융감독원의 보완 요구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케 하였다면 금융회사 등은 그에 대한 책임 및 행정조치의 미이행 등으로 인한 강력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178)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거래의 편리성·안전성 확보를 위한 「금융분야 인증·신원확인 제도혁신 T/F」 1차 회의록 개최하였습니다.”, 보도자료, 2020.6.8., 2면  
([https://fsc.go.kr/info/ntc\\_news\\_view.jsp?bbsid=BBS0030&page=1&sch1=subject&sword=금융분야인증·신&r\\_url=&menu=7210100&no=33952](https://fsc.go.kr/info/ntc_news_view.jsp?bbsid=BBS0030&page=1&sch1=subject&sword=금융분야인증·신&r_url=&menu=7210100&no=33952) 2020.10.5. 최종검색)

## (2) 비대면 신원확인 제도의 개선

### 1) 대면확인원칙의 폐지 및 정책의 방향

금융위원회는 2015년 12월의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 제정을 통하여 실명확인을 비대면 방식으로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하함으로써 대면 확인이 원칙이었던 실명 확인을 비대면 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비대면 실명확인을 할 경우에는 ① 실명확인 증표 사본 제출, ② 영상통화, ③ 위탁기관 등을 통하여 실명확인증표 확인, ④ 기 개설된 계좌를 이용한 소액 이체 등, ⑤ 기타 ①~④에 준하는 방식(생체인증 등)의 실명확인 방법 중 2개 이상을 증첩하여 적용하도록 하였다.<sup>179)</sup>

다만, 이러한 조치 이후에도 관련 규정들이 다양한 디지털 신기술을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오프라인·대면확인을 전제로 하는 신원확인도 ① 전자적 장치를 활용하는 대면 거래, ② 디지털 신기술이 활용되는 비대면거래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규제 샌드박스 운영을 통하여 관련 규정을 단계적으로 정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sup>180)</sup>

그 구체적인 방향은 기술중립성, 독자적 산업 육성, 금융안정이라는 3가지의 정책 방향에 다양한 혁신적인 인증수단이 개발·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검증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중요도·나이도 등 수준에 상응하는 신원확인 방식을 구축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실효성을 확보해 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sup>181)</sup>

179)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거래의 편리성·안전성 확보를 위한 「금융분야 인증·신원확인 제도혁신 T/F」 1차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보도자료, 2020.6.8., 2면

([https://fsc.go.kr/info/ntc\\_news\\_view.jsp?bbsid=BBS0030&page=1&sch1=subject&sword=금융분야인증·신&r\\_url=&menu=7210100&no=33952](https://fsc.go.kr/info/ntc_news_view.jsp?bbsid=BBS0030&page=1&sch1=subject&sword=금융분야인증·신&r_url=&menu=7210100&no=33952) 2020.10.5. 최종검색)

180)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거래의 편리성·안전성 확보를 위한 「금융분야 인증·신원확인 제도혁신 T/F」 1차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보도자료, 2020.6.8., 2~3면

181)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거래의 편리성·안전성 확보를 위한 「금융분야 인증·신원확인 제도 혁신 T/F」 1차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보도자료, 2020. 6. 8. 3면

## 2) 전자금융거래법과 전자금융감독규정의 조화 필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에 의하면, 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와 관련하여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접근매체를 발급할 때에는 이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임을 확인’한 후에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4조 제3호의 전자금융거래시 준수사항에 의하면,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명확인 후 교부할 것’이라는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양 규정을 비교하여 보면, ‘본인임을 확인’과 ‘실명확인 후 교부’라는 의미에 차이가 있다. 즉, 본인의 확인은 실명 이외의 방법으로도 가능하다. 생각건대, 인증제도와 관련하여 비대면 신원확인도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하고자 하는 바, 반드시 실명이 아니더라도 본인임을 인증하면 그 것으로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전자금융감독규정의 제34조 제3호 조문 내용 중에서 ‘실명확인후 교부’를 ‘본인확인후 교부’로 개정함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 (3) 망분리 엄격 규제의 검토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재택근무의 확대와 함께 망분리 규제의 문제점과 규제의 완화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즉, 국내의 금융회사에서 망분리 규제가 도입된 지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으나, 대량의 개인정보 유출을 막겠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금융사와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망분리 규제는 적절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 등이 그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현재와 같은 망분리 규제가 대량의 개인정보를 유출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다는 견해”로서 “정보의 중요도 구분없이 이분법적으로 분리를 한 것”은 “필요한 자료를 외부망에서 받아 내부망에서 쓰다가 자칫 잘못하면 내부망에 있는 모든 데이터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sup>182)</sup> 이에 대하여 핀테크 업계에서도 개인 정보 유출 사고는

182) 손예슬, “초연결시대와 안 맞는 ‘망 분리’, 규제 완화 공감대 형성”, ZDNet Korea 뉴스기사, 2020. 4. 4.(<https://www.zdnet.com.kr/news/entry.asp?id=104567&cid=1000000000>)

기업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기 때문에 기업 자율에 맡겨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며, 자율적인 규제를 하지 못할 경우 사후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한다. 또한 업계 표준이나 가이드라인을 통해 개인 정보 유출을 막는 망 분리에 대한 효과적인 기술과 기준을 알려주고 기업이 자율적으로 선택해 모니터링을 하는 자율규제가 시행되어야 하며, 만약 개인 신용 정보 유출 사고나 해킹 사고에 대하여서는 사후규제를 강화하여 EU 개인정보보호규정(GDPR)과 같이 위반시 전체 매출액의 4%까지 과징금 부과 등의 방안을 제시하기도 한다.<sup>183)</sup>

한편, 금융감독원은 2020년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의 개정을 통한 망분리 제도 개선 계획을 공개하고, 논리적 망분리의 일환으로 전산센터의 시스템 개발·운영·보안 업무와 원격 시스템 유지보수 업무를 제외한 콜센터 업무(외주직원)와 금융회사 임직원의 상시 원격접속을 허용한 바 있다.<sup>184)</sup>

<그림 13> 재택근무 관련 망분리 제도 개선사항<sup>185)</sup>



//zdnet.co.kr/view/?no=20200403133051 2020.10.5. 최종검색)

183) 손예술, “초연결시대와 안 맞는 ‘망 분리’, 규제 완화 공감대 형성” 2020.10.5. 최종검색

184) 금융감독원, “금융회사의 상시 재택근무가 가능해집니다”, 보도자료, 2020.9.17., 1~5면

([http://www.fss.or.kr/fss/kr/promo/bodobbbs\\_view.jsp?seqno=23378&no=15589&s\\_title=&s\\_kind=&page=3](http://www.fss.or.kr/fss/kr/promo/bodobbbs_view.jsp?seqno=23378&no=15589&s_title=&s_kind=&page=3) 2020.10.12. 최종검색)

185) 금융감독원, “금융회사의 상시 재택근무가 가능해집니다”, 보도자료, 2020.9.17., 2면.

나아가, 망분리 규제의 개선은 보안사고 예방이라는 시스템리스크의 사전적 관리와 망분리 규제에 대한 현대화, 합리화 요구 등을 균형감있게 수용하여 정책 개선 방향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또한, EU의 GDPR 과징금 부과제도와 같은 사후 책임 강화도 사전적 관리제도와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소액결제업자의 경우에도 이러한 개인 신용정보의 유출이나 해킹 사고에 대한 보안과 관리에 실질적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망분리 규제의 개선과 함께 그에 대한 사후책임의 주체로서도 기능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으로 판단된다.

#### (4) 사이버 보안 조치 검토

금융산업에서의 사이버보안의 문제는 금융회사의 고객정보탈취, 금융전산망의 마비, 금융회사의 고객자산탈취 등을 포괄하는 것으로 일찍이 2007년 이래 전자금융거래법이 시행되고 금융위가 전자금융감독규정으로 금융회사의 전자금융업무를 감독하면서 금융회사가 취하여야 할 사이버보안조치의 모든 것을 - 위반한 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포함하여 - 금융위에서 주도적으로 이끌어갔다. 또한 국가사이버안전대책등 범정부차원의 대응방안을 이들 법률과 규칙, 모범규준, 표준지침 등에 반영하면서 금융산업에 관련된 정보보호의 문제에 대처하였다.

예를 들어, 일정한 금융회사내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를 포함, 임직원의 책임을 강화가 필요하다면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 이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여 나갔고, 사법부는 뒤늦게 이용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전산망의 안전기준에 관한 판결로서 법적인 기준을 제시하였다.<sup>186)</sup> 이하 전자금융거래법을 중심으로 금융회사의 사이버보안관련 의무와 책임, 금융사고 대응시스템, 개인정보보호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86) 정영철, “금융산업과 사이버보안정책”, 『금융감독연구』(금융감독원, 2018. 10), 106-107면.

### 1) 금융회사의 사이버보안 관련 의무와 책임

금융회사는 전자금융거래 이용자의 확인의무,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정보최고책임자 지정의무, 전자금융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보고의무, 침해사고통지의무 등을 부담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전자금융감독규정에서 구체화되어 있다.

특히 안전성기준은 인력·조직 및 예산, 건물·설비·전산실 등 시설부문, 정보기술부문, 정보기술 내부통제로 나누어 각 요소별로 예를 들어 정보기술부문의 경우 단말기 보호대책, 전산자료 보호대책, 정보처리시스템 보호대책, 해킹 등 방지대책, 악성코드 감염 방지대책, 공개용 웹서버 관리대책, IP주소 관리대책 등으로 나누어서 정하고 있으며 금융감독원장이 금융회사의 정보기술부문의 건전성 여부를 감독하여 그 결과를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 2) 금융사고 대응 시스템

금융회사가 위의 사이버보안 관련 사전적 법정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침해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이런 경우 금융회사는 이를 즉시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 금융위는 사고보고의 처리와 대응책 마련, 이상금융거래정보공유 등을 위하여 금융결제원 및 코스콤의 정보공유분석센터와 금융보안연구원의 기능을 통합, 금융보안원을 금융회사의 ISAC(information sharing and analysis center)로서 사단법인으로 설립 허가하여 지원하고 있다.

### 3) 개인정보보호시스템

금융회사가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경우 신용정보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야 한다. 기본적인 규율시스템은 다른 개인정보와 유사하게 수집에 관한 사전 동의요구, 이용목적제한, 제3자제공과 활용에 관한 사전동의와 사후고지원칙, 전산시스템 안전성확보조치, 관리/보호인 지정 등이며 유출시 통지 및 신고를 요구하고 있다.<sup>187)</sup>

#### 4) 개선 방안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금융분야 사이버 안보와 관련해서는 다음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먼저, 미국이나 일본과 같이 사이버보안에 관한 통일된 단일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개선을 위하여 새로운 법이 시행되었지만 금융회사가 상장법인이 아닌 경우에 투자자 내지 고객에 대한 공시의무는 지극히 제한되어 있다. 하지만 전자금융업을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투자자 내지 고객에 대한 공시의무를 더욱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셋째, 금융회사의 금감원 또는 금융보안원에 대한 금융사고 통지의무와 확산방지조치의무를 더욱 강화하여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넷째, 민간주도의 보안기술의 개발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정책의 집행방법으로서 행정부처는 전산망의 안정성진단이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 기준을 시행세칙에서 자세하게 규정하는 방식 보다는 보다 선진적 기술개발을 위한 방식으로서의 민간주도의 사이버보안 관련 기술개발 촉진책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 (5) 민간 거버넌스 강화 제도 검토

##### 1) 금융보안 거버넌스 가이드 개정

금융보안원은 2015년 4월 제정된 '금융보안 거버넌스 가이드'를 개정하였다. 이는 기존의 전자금융감독규정에서 금융사가 일정 수준 이상 IT·보안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도록 권고하는 하한선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이는 기존의 5·5·7기준(전체 인력의 5% 이상 IT인력, IT 인력 5% 이상 보안인력, 전체 IT 예산 7% 이상 보안예산으로 확보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이 기준이 효력을 상실하여 새로이 권고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따라서 금융사들은 자유로운 보안 정책을 수립할 수 있게 되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9년 6월 기준 국내 금융사의 보안인력은 IT인력 대비 10.2%, 보안예산은 IT예산 대비 10.6%를 확보하고 있다. 가트너 최근 조사에 따르면, 해외 기업의 보안예산은 IT예산 대비 평균 7.6%(금융부문)이며, 보안인력은 IT인력 대비 평균 5.6%를 보유하고 있어 아직까지는 자율적으로 잘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sup>188)</sup>

나아가, 이 기준은 이 외에도 정보보호에 관한 최고경영자(CEO) 의사결정 권한과 책임, 정보보호와 비즈니스 간의 전략적 연계 등을 위한 7개의 기본 원칙을 담고 있다.

금융보안원 관계자는 이러한 개정 이후에도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보안 수준을 금융사 스스로 확보해 갈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금융사를 지속 지원한다고 한다.<sup>189)</sup>

## 2) 금융보안 거버넌스 가이드의 검토

이처럼 금융사의 자율권을 보장하고 그들 스스로 보안대책을 마련하도록 하였지만, 그 이면에서는 이러한 제도적 취지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법 제도를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즉, 이를 위하여 금융사 등이 산정한 보안인력 및 예산 비율이 자사의 위험 등을 적절하게 반영했는지를 실질적이고 주기적으로 감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내부적으로 정보보호를 위한 자율적 감시 시스템도 실질화할 필요가 있다. 즉, 영국과 같은 현업·정보화(IT) 부서, 정보보호·준법감시, 내부감사의 3단계 내부 통제 리스크 관리체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보보호와 관련하여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권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즉, 금융사의 이사회 개최시 주기적으로 금융보안 사항을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문제의 발견시

188) 이유지, “금융사 IT·보안 ‘5.5.7’ 기준 효력 일몰, 완전 자율로 ... ‘금융보안 거버넌스 가이드’ 개정”, Byline Network, 2020. 1. 2, <https://byline.network/2020/01/2-54/>.

189) 오다인, “금융보안원, 금융보안 거버넌스 가이드 개정”, 전자신문, 2020. 1. 2, <https://m.etnews.com/20200102000091?obj=Tzo4OijzdGRDbGFzcyI6Mjp7czo3OijyZWZlcmVyljtOO3M6NzoiZm9yd2FyZCI7czo3Mzoid2VilHRvIG1vYmlsZSI7fQ%3D%3D>.

별도의 절차 없이 지체 없이 해당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이로 인하여 이용자의 개인 정보 등이 유출되었을 때에는 그 에 대한 책임도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에는 금융보안 분야가 소액결제시장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므로 전자금융거래관계법에서의 이용자 보호를 위한 보안 조치 관련 법률 관계와 전자금융업법에서의 전자금융서비스제공업자에 대한 보안 관련 규정도 대폭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제6절 소액결제 관련 법제의 개선 필요성

### 1. 소액결제 관련 법률 편제상의 문제점

현행의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지급수단과 세부업무유형별로 시장진입요건 기준이 마련되어 있어 새로운 유형의 전자지급결제서비스에 대한 종합적이고 적절한 규제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소액결제시장 변화에 따른 법제 개선을 위하여서는 EU 등의 사례와 같이 전자지급결제서비스 유형별 업종 진입요건과 각 세부업종별 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다층화된 행위규제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금융위원회는 2020년 7월 27일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에서 Small License 제도를 채택하여 각 제공서비스 유형별로 진입요건 및 행위제한의 범위를 각각 다르게 설정하고, 통합업무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서는 종합지급결제업자의 지위를 도입하여 진입요건과 거래질서와 이용자보호를 위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지급결제 전용 계좌(여수신 불가)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한편, OECD 모바일 및 온라인 결제 소비자정책 지침(Consumer Policy Guidance on Mobile and Online Payments)과 BIS 금융시장 인프라 원칙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향후, 입법적 개선을 통하여 각 서비스제공 유형별 사업자에 대한 이용자 보호 및 분쟁해결 절차를 도입하고, 각 사업자별로 지급결제거래에서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준수 사항 등 행위규제 관련 규정의 법적 근거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지급결제법제는 새로운 지급결제수단 및 지급결제거래 형태의 등장에 따라 부처의 관할 서비스 진입규제의 차원에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여 규율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전자화폐의 경우전자금융거래법, 통신과금서비스의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상자산의 경우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적용된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의 지급결제법제는 「전자금융거래법」을 기반으로 각

지급결제서비스 유형별로 각각의 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어 지급결제거래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어렵고, 최근의 소액결제시장변화에 따른 간편결제 등의 확대에 인한 이용자보호에도 미흡한 점이 많다. 이러한 입법적 한계는 지급결제수단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신뢰를 확보에 일정한 방해요소로 작용하면서 새로운 지급결제수단의 등장과 발전을 저해하는 상황까지 이르고 있다. 이에 부처별 관할 서비스에 대한 진입규제의 관점이 아니라 지급결제수단을 제공하는 자와 이용자(지급인과 수취인)의 거래라는 관점에서 건전하고 투명한 지급결제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이용자보호를 꾀할 수 있도록 지급결제거래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규율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 2. 지급결제시스템 참가 대상 확대에 따른 시장친화적 입법의 필요성

### (1) 지급결제시스템 참가 대상 확대 관련 규정의 재정비

금융위원회 · 기획재정부 · 중소기업벤처부 · 한국은행 · 금융결제원이 2019년 2월 공동으로 마련하여 발표한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방안]에서의 3대 추진전략 및 9대 추진 과제는 다음과 같다.<sup>190)</sup>

#### 〈 3대 추진전략 및 9대 추진과제 〉

- ◆ 목표 : 금융결제 인프라 전반의 개편 → 혁신적인 결제서비스 출현과 활성화 지원 → 금융결제 부문의 혁신 및 경쟁 촉진
  - 전략 ① 금융결제 시스템을 혁신적으로 개방하여 다양한 결제서비스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
  - 전략 ② 전자금융업의 기능별 규율 전환 및 기능 확대 등 금융결제업 체계 전면 개편을 통해 혁신적인 결제서비스 창출 촉진
  - 전략 ③ 낮은 규제 정비, 세제 인센티브 등 규제·세제의 시장 친화적 개선을 통해 새로운 결제서비스 활성화 여건 마련

190)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개방형 금융결제망[오픈뱅킹] 구축, 핀테크 성장을 촉진하고 생활금융을 혁신하겠습니다. - 핀테크 및 금융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방안」-”, 별첨자료 5면, 2019.2.26., ([http://fsc.go.kr/info/ntc\\_news\\_view.jsp?menu=7210100&bbsid=BBS0030&no=32976](http://fsc.go.kr/info/ntc_news_view.jsp?menu=7210100&bbsid=BBS0030&no=32976) 2020.6.15. 최종검색)

① 금융결제 시스템 혁신적 개방	② 금융결제업(전금업) 체계 전면 개편	③ 규제·세제의 시장 친화적 개선
① 공동 결제시스템 (오픈뱅킹) 구축	④ 업종별 → 기능별 규율 체계 전환	⑦ 낮은 규제 개선
② 오픈뱅킹 법제도화	⑤ 새로운 전자금융업 도입	⑧ 범용성 제고를 위한 제도 지원
③ 핀테크기업에 금융결제망 개방	⑥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 허용	⑨ 세제 인센티브 방안 검토 추진

이러한 금융결제 인프라 개편 추진 방향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금융결제원의 오픈뱅킹 API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은행은 핀테크기업 등 비금융기관에 대하여서도 소액결제(차액결제)시스템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고 그 기준을 마련한 바 있다.<sup>191)</sup>

특히, 한국은행 및 금융통화위원회는 2020년 6월24일의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 규정」개정을 통하여, “『동일업무-동일리스크-동일규제』 원칙에 의거 안정적인 수신기반 확보를 통해 차액결제리스크를 무리없이 관리할 수 있는 금융회사는 차액결제 직접참가 가능”하도록 하고, 「한국은행법」상 “지급준비금 예치 의무가 없고 차액결제 참가기관의 결제 불이행 시 한국은행이 일시부족자금대출제도(일중당좌대출, 자금조정대출)를 통해 결제유동성 공급이 불가능한 기관은 차액결제 대행은행을 통해 차액결제에 간접참가”하도록 하여 참가제도를 개선하였다.<sup>192)</sup>

191) 한국은행 보도참고자료, “소액결제시스템 참가제도 개선”, 1면 (<https://www.bok.or.kr/portal/bbs/P0000559/view.do?nttId=10058595&menuNo=200690&pageIndex=1> 2020.6.16. 최종검색); 한국은행 보도참고자료, “『소액결제시스템 참가제도 개선』 관련 Q&A”, 1~10면 참조(<http://www.bok.or.kr/portal/bbs/P0000559/view.do?nttId=10058896&menuNo=200690> 2020.10.5. 최종검색)

192) 한국은행 보도참고자료, “『소액결제시스템 참가제도 개선』 관련 Q&A”, 3면

< 표 23 > 차액결제 참가 요건 개요<sup>193)</sup>

차액결제 직접참가 요건	차액결제 간접참가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자금이체업무 수행의 <b>법적 근거</b> 확보</li> <li>② 「한은법」상 <b>지급준비금 예치의무</b>가 있는 금융회사로서 차액결제 참가기관의 결제불이행 시 한국은행이 일시부족자금대출제도(일중당좌대출, 자금조정대출)를 통해 <b>결제유동성 공급</b>이 가능</li> <li>③ 설립법률에 따라 금감원과의 <b>공동검사</b> 실시 가능(자료제출 포함)</li> <li>④ <b>차액결제리스크 관리</b>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판단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자금이체업무 수행의 <b>법적 근거</b> 확보</li> <li>② 설립법률에 따라 금감원과의 <b>공동검사</b> 실시 가능(자료제출 포함)</li> <li>③ <b>차액결제리스크 관리</b>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판단 가능</li> </ul>

이러한 각 제도의 운영과 기준의 마련으로 지급결제 분야의 혁신과 경쟁 촉진에 일정한 추진력을 가지게 될 것으로 기대되나, 동일업무-동일리스크-동일규제 원칙에 따른 리스크 관리능력을 증시킨 참가요건이 실질적인 효과를 얻기 위하여서는 기존의 금융투자회사 참가제도와의 차별성 확보 및 지급결제 규모에 따른 차등화된 다층화된 규정 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영국에서는 aggregator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aggregator를 통하여 핀테크 기업이 결제시스템 중앙인프라에 연결되어 대행결제은행을 통하여 자금결제를 처리하게 된다.<sup>194)</sup> 이와 같이 영국에서의 aggregator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다양한 참가방식을 보장하는 한편, aggregator를 하나의 지급결제 분야 핀테크산업으로 육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판단된다.

193) 한국은행 보도참고자료, 「『소액결제시스템 참가제도 개선』 관련 Q&A」, 4면의 표를 인용

194) 한정환, “오픈뱅킹 성공을 위한 핀테크기업의 지급결제시스템 접근성 향상방안”, 지급결제학회지 11권 2호, 한국지급결제학회, 2019.12, 72면.

또한, 호주에서는 결제특화은행의 성격을 가진 aggregator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급결제대행기능과 중앙인프라 연결을 함께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sup>195)</sup> 이러한 결제특화은행 제도의 운용은 실무상 인터넷전문은행의 일정한 수익모델로서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다양한 참가방식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을 통하여 지급결제분야 핀테크기업의 지원과 육성에도 장기적으로 일정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2) 소액후불결제제도 도입 관련 쟁점 및 형평성 확보

금융위원회는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방안]에서 현행 핀테크 결제사업자의 경우, 휴대폰 소액결제와 같은 후불 결제를 할 수가 없도록 규제 받고 있어서, 소비자의 신용도와 상관없이 단기적·일시적 자금부족에 대한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일례로, 대중교통 결제(후불방식)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후불결제를 위하여서는 신용카드업 인허가 요건이 적용되어 자기자본 200억원 이상이 요구되며, 이는 휴대폰소액결제를 활용한 소액후불결제제도와 비교하여 볼 때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동통신사는 정보통신망법상의 통신과금서비스를 통해 휴대폰 소액 후불 결제 업무를 영위하고 있으며, 이에 금융위원회도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시 금융소비자 권익 및 금융시장 안정성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일정 범위내 시범 테스트를 우선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sup>196)</sup>

전자금융거래법상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후불전자지급수단과 비교하여 살펴본다면,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거래방식은 소비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구입(충전)하고, 거래가능 사업자로부터 재화등을 구매한 대가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전달하면, 차후에 사업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자에게 환급을 요청하는 방식으로서 소비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구입하고, 제3자가 이를 환불받는 구조로 상품권과 동일한 구조를 가지게 된다.<sup>197)</sup> 선불전자

195) 현정환, “오픈뱅킹 성공을 위한 핀테크기업의 지급결제시스템 접근성 향상방안”, 지급결제학회지 11권 2호, 한국지급결제학회, 2019.12, 80면.

196)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개방형 금융결제망[오픈뱅킹] 구축, 핀테크 성장을 촉진하고 생활금융을 혁신하겠습니다. - 핀테크 및 금융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방안」-”, 별첨자료 5면, 2019.2.26.  
([http://fsc.go.kr/info/ntc\\_news\\_view.jsp?menu=7210100&bbsid=BBS0030&no=32976](http://fsc.go.kr/info/ntc_news_view.jsp?menu=7210100&bbsid=BBS0030&no=32976) 2020.6.15. 최종검색)

197) 윤민섭, “소액후불결제제도 쟁점 검토”, 한국법제연구원 지급결제포럼 Kick-off 회의 발제문, 6면.

지급수단의 경우 자본금 20억원 이상으로서 전자금융거래법 제31조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50조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갖추는 경우 업무를 영위할 수 있으며, 이러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업무범위로 하고 있는 전자금융업자에 대하여 여신기능을 부여하는 것에 대하여서는 여신전문금융업자와의 형평성, 이동통신사의 통신과금서비스를 통한 휴대폰소액결제 제도와의 정합성, 이용자의 편익과 보호 측면을 균형감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용자의 편익을 고려하는 경우, 신용평가제도 및 소액후불결제금액 범위 등에 대하여 휴대폰소액결제와의 정합성 확보를 통하여 전자금융거래법상 후불전자지급수단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신용카드 사업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한다면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요건을 갖추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서는 정책적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시에는 선불전자지급수단 사업 요건을 차등화하여 업무범위를 보다 세분화하고, 이에 대한 다층화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 3. 새로운 전자기급수단 대응 및 이질적 요소 간 통합의 필요성

전자금융거래법은 제정 당시 전자화폐 등에 대한 전자기급수단 관리·감독을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지만, 제정 이후 등장한 새로운 전자기급수단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에는 일정한 한계를 보인 바 있다. 즉, 전자금융거래라는 관점에서 새로운 유형의 전자기급수단의 등장과 발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는 쉽지 않은 측면이 있어 왔으며, 사업자가 제공하는 지급결제 관련 서비스에 대한 종합적인 규제와 관리도 어려운 문제점을 안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지급결제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전자기급수단이 기존의 전자기급수단에 비하여 편리성을 확보하고 있어서 간편결제·간편송금을 중심으로 한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와 관리도 시급한 상황이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의 주요특징은 전자금융거래 당사자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거래법적 규정(사법적 규정)과 전자금융사업에 대한 국가적 규제와 감독을 규율하는 사업법적 규정(공법적 규정)이 단일한 법률에 결합되어 있다는 점에 있다. 이에 대하여, 다소 이질적인

성격의 규정들을 단일한 하나의 법안으로 통합하여 제정하는 것에 대하여서는 그동안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된 바 있으며, 새로운 전자지급수단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진입 규제와 거래관계규율 및 이용자보호를 분리하여 규율할 필요도 있다.

또한, 발행 및 이용한도 등 진입규제의 문제와 관련하여서도 서로 이질적인 성격의 다양한 전자지급수단에 대하여 각각의 인허가요건(허가와 등록) 및 발행·이용한도를 차등적으로 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각 서비스제공자별 세부유형에 따라 시장 진입 요건을 다르게 적용하는 등 세밀하고 다층적인 규제 체계가 필요한 측면이 있다.

한편, 현행의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전자지급거래업자와 이용자(지급인과 수취인)의 법률관계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긴 하지만, 새로운 전자지급수단의 등장에 따라 좀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규율체계가 필요한 측면이 있다. 앞에서 살펴본 소액후불 결제서비스의 경우, 기존의 휴대폰소액결제 제도(통신과금서비스)와 견주어 유사한 수준의 규제를 설계할 필요가 있고, 건전성 확보 및 이용자의 시장신뢰 확보를 위한 다양한 규정의 채택이 필요한 것도 같은 맥락의 논의라 할 것이다.

#### 4.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방안

위에서는 금융위원회의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에 따른 「전자금융거래법」의 개정방향에 대하여 현행 법규와 법제를 토대로 추가적인 보완 사항을 위주로 검토하였다.

금융위원회가 제시한 혁신방안이 효과적으로 수행되기 위하여서는 금융위원회가 제시하고 있는 4대 추진전략에 대한 세밀한 법리적 검토와 학계 및 실무계의 논의가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7월의 보도자료를 통하여, 3분기 이내에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공개하겠다고 하였으나 다소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며, 이는 법리적인 검토와 실무계와의 논의를 충분히 하기 위한 숙려 조치로 해석된다. 판단컨대,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심층논의를 거친 이후, 연내에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의 정책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논의 과정에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표 24>에서는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에 따른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방향과 법리적 검토 사항을 정리하여 제시해 보았다.

**<표 24>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에 따른 「전자금융거래법」 개정방안 제언**

추진 과제	추진내용	개정 방안
혁신적 디지털 금융 산업 육성	- My payment ·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신설	양자 구별 최소자본금 요건 마련(완화) small license의 경우 별도 진입요건 마련 양자에 대한 업무 명확화 지급결제계좌의 허용 필요(기존 금융업자와 관계 명확화)
	- 전자금융업종 기능별 통합 및 간소화	기존과 달리 자금이체업, 대금결제업, 결제대행업으로 통합
	- 최소자본금 등 진입규제 합리화	최소자본금 기준 완화 기능별로 등록을 하던 것을 하나의 라이선스로 해결 필요
	- 소액후불결제 · 충전한도 상향 등 영업범위 확대	소액후불결제제도의 제한적 허용 간편결제의 충전한도 상향(이용자보호 제도 보완) 사업자 건전성 관리 및 이용자 보호 제도 재검토 필요
디지털 금융 이용자 보호 체계 확립	디지털 금융이용자 자금 보호 강화	전자금융업자의 자금과 고객자금 분리 명시 필요
	금융플랫폼 등 영업행위 규율체계 마련	자율규제제도 마련 내부컴플라이언스 제도 강화 이해관계자간의 책임관계 명확화
	전자금융사고 책임범위 확대	손해배상책임요건 개정 필요 입증책임 명시 내지 입증책임의 전환 사업자의 면책사유 축소

추진 과제	추진내용	개정 방안
	합병 및 영업양도 기준마련	이용자에 대한 사전고지제도 필요 심사제도 강화
디지털 금융 거래 기반 구축	오픈뱅킹 및 디지털 지급거래 청산제도화	오픈뱅킹 및 공동업무시스템 관련 법적 근거 마련 표준화된 자금이체 기능 제공 의무화 결제사업자에 대한 수수료 등 차별금지 등 명시 전자금융보조업 관련 규정 개편 필요 (개념, 책임조항, 금융클라우드 이용 및 감독 등) 기존 은행등과의 관계 정리 필요 - 지급지시 청산회사 지정제도 법제화 필요 (자격, 업무, 책임 등 구체화 필요)
	금융분야 인증·신원확인제도 개선	접근매체의 개념 확대 인증방법의 자율성 보장 및 책임 강화 비대면 신원확인제도 개선 및 책임 강화 망분리 규제에 대한 사업자의 자율권 인정
	전자금융거래법 적용대상 명확화	전자금융업의 적용범위 확대 필요
	Big tech의 금융업 진출 대비 관리체계마련	빅테크 기준 마련 필요(선정기준, 자산규모, 주된 사업 성격 등) 이용자 보호 및 금융안정을 위한 관리감독 체계 마련 필요
디지털 금융 보안 강화	디지털 리스크 관리·감독 선진화	금융회사의 의무와 책임 강화 사이버보안에 대한 단일법 마련 필요 투자자 내지 고객에 대한 공시의무 강화
	금융보안 관련 민간 거버넌스 강화	사이버보안 관련 기술 개발 촉진책 법제도화 필요 내부 컴플라이언스 제도 실질화 필요 정보보호최고책임자 권한 확대 필요
	금융분야 사이버 안보 관리체계 구축	- 금융사고 통지의무와 사고확산 방지조치의무 강화



## 제4장

# 소액결제시장 변화에 따른 해외 입법 동향

제1절 서 설

제2절 소액결제 관련 국제기구의 제도적 대응 동향

제3절 소액결제 관련 해외 각국의 정책 및 입법 사례

제4절 소결 및 시사점



## 제4장

# 소액결제시장 변화에 따른 해외 입법 동향

### 제1절 서 설

소액결제시장의 변화는 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혁신 기술의 발전에 따라 공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으로서, 금융분야 지급결제 관련 국제기구나 금융 선진국에서도 이러한 소액결제시장의 변화에 따른 법규를 최신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소액결제시장의 변화에 따른 국제기구의 제도적 대응 동향과 각국의 관련 입법 동향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법제 대응방안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한다.

### 제2절 소액결제 관련 국제기구의 제도적 대응 동향

#### 1. BIS CPMI

국제결제은행(BIS;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이하, BIS라 함)의 지급결제 및 시장인프라 위원회(CPMI; Committee on Payments and Market Infrastructures)(이하, CPMI라 함)에서는 거액지급결제 시스템, 소액결제 수단 및 시스템, 외환거래를 위한 결제 메커니즘, 증권 청산 및 결제 시스템 등 지급(payment), 청산(clearing) 및 결제(settlement) 시스템에 대한 다양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sup>198)</sup>

---

198) <https://www.bis.org/list/cpmi/index.htm> 2020.10.12. 최종검색

우선, CPMI는 2016년 11월 8일, 『Fast Payments-Enhancing the speed and availability of retail payments』 보고서를 공개하여, 지급결제 서비스에 대한 차액결제 시스템 개선 관련 문제를 다루면서 신속지급결제에 관한 내용을 제시한 바 있다.<sup>199)</sup> 즉, 수취인 측면에서의 최종 자금 가용성 차원에서 실시간 지급결제 또는 신속 지급결제가 신용 위험을 줄이는데에 도움이 된다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다만, ① 관할 구역에서 청산 및 결제 시스템이 최종 사용자와의 네트워크 및 플랫폼을 통한 연결이 원활해야 할 것이 전제되며, ② 국경 간 지급결제의 경우 기술·운영 표준 및 법규 등에 대한 상호 운용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들고 있다.<sup>200)</sup>

또한, CPMI는 2018년 2월 16일, 『Cross-border retail payments』 보고서<sup>201)</sup> 공개를 통하여 국경간 소액결제에 대한 지급결제 인프라 개선 필요성을 밝히고 있다.<sup>202)</sup> 해당 보고서에서는 모바일 또는 인터넷뱅킹과 같은 금융혁신을 통하여 국경 간 결제가 더욱 편리해졌지만 이러한 지급결제시스템을 더욱 빠르고 저렴하게 하는 열쇠는 청산 및 결제 방식의 다양화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sup>203)</sup>

『Cross-border retail payments』 보고서에서는 수요측면에서 국경 간 지급결제서비스에 대한 사용자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강조하면서, 국내 시장에서 신속하고 저렴하면서도 편리한 지급결제 방식에 익숙해지면서 사용자 편의와 속도, 투명성 및 지급결제 비용 개선에 중점을 둔 다양한 혁신이 이루어지음을 밝히고 있다.<sup>204)</sup> 다만, 그러한 각국 국내 지급결제시장의 혁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외국 공급업체 입장에서는 외환 송금이나 국경 간 지급결제를 진행하는 데에 많은 비용이 들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상을 지적하고 있다.<sup>205)</sup>

199) <https://www.bis.org/cpmi/publ/d154.htm> 2020.10.12. 최종검색

200) CPMI, 『Fast Payments-Enhancing the speed and availability of retail payments』p. 1~2 (<https://www.bis.org/cpmi/publ/d154.pdf> 2020.10.12. 최종검색)

201) <https://www.bis.org/cpmi/publ/d173.pdf> 2020.10.12. 최종검색

202) <https://www.bis.org/cpmi/publ/d173.htm> 2020.10.12. 최종검색

203) <https://www.bis.org/cpmi/publ/d173.htm> 2020.10.12. 최종검색

204) CPMI, 『Fast Payments-Enhancing the speed and availability of retail payments』p. 27

또한, 해당 보고서에서는 공급 측면에서 최종사용자 그룹에서는 중소기업과 관련하여 지급결제 서비스 제공 업체가 새로운 서비스(예: 소규모 기업을 위한 서비스를 개발하는 비은행 MTO)의 요구에 부응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용자의 특정 요구에 명시적으로 초점을 둔 이니셔티브의 필요성을 밝히고 있다.<sup>206)</sup> 또한, 국경 간 소액지급결제(retail payments)에서 거래 계정에 참가할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의 발달로 접근성이 확보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바람직한 경쟁이 촉진되는 한편, 국경 간 소액결제(retail payments) 서비스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측면도 제시하고 있다.<sup>207)</sup> 한편, 공급 측면에서 시스템 제공 서비스 업체의 경우에는 금융메시지 표준 및 당일 거래, 외환 결제의 동시 진행 등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음도 설명하고 있다.<sup>208)</sup>

그리고, 은행의 경우 국경간 소액지급결제의 경우 대부분 해당 은행을 통하여 청산 및 결제를 통한 정산이 이루어지며, 사용자가 지급결제 행위에 대한 경험 및 비용, 투명성 확보, 신속성 등과 관련된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CPMI는 SWIFT gpi와 같은 민간 이니셔티브 구축을 통하여 자체 기술 분석에 따른 FSB 거래 은행 협력 그룹에 대한 권고 사항 및 후속 조치를 함으로써 일부 문제를 해결해 오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sup>209)</sup>

이러한 시스템 연결 분야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분야는 독점폐쇄형 통합시스템(Proprietary closed-loop systems)으로서 지급인과 수취인이 동일한 시스템에서 또는 다른 방식의 계정을 개설하여 종단 간 지급결제를 통제하는 서비스 제공방식임을 밝히고 있다.<sup>210)</sup> 다만, 결제 인프라 연결 측면에서 국내 지급결제 인프라를 연결하는 방식은 운영상의 어려움과 재정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으며, 법규·기술·운영관리 측면의 조화와 설득력있는 비즈니스 시범사례가 필요하고, 이는 협력을 통해 이루어질 수

205) CPMI, 『Fast Payments-Enhancing the speed and availability of retail payments』p. 27

206) CPMI, 『Fast Payments-Enhancing the speed and availability of retail payments』p. 27~28

207) CPMI, 『Fast Payments-Enhancing the speed and availability of retail payments』p. 28

208) CPMI, 『Fast Payments-Enhancing the speed and availability of retail payments』p. 28

209) CPMI, 『Fast Payments-Enhancing the speed and availability of retail payments』p. 28

210) CPMI, 『Fast Payments-Enhancing the speed and availability of retail payments』p. 24, p. 28

있으나 넓은 범위의 통화 거래를 전제로 한다는 점, 금융당국의 적절한 위험관리 표준의 확립 등 효과적인 감독이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다.<sup>211)</sup>

## 2. FSB

FSB(Financial Stability Board)는 국제 수준에서 국가 금융 당국과 국제 표준 설정기구의 업무를 조정하고 재무 안정성을 위해 효과적인 규제, 감독 및 기타 금융 부문 정책의 구현을 개발하고 촉진하며, 24개국 및 관할권의 재정 안정을 담당하는 국가 당국, 국제 금융 기관, 규제 기관 및 감독자의 부문별 국제기관 및 중앙은행 전문가위원회로 구성된다.<sup>212)</sup>

FSB는 2020년 4월 9일 보도자료<sup>213)</sup>를 통하여, 「Enhancing Cross-border Payments - Stage 1 report to the G20」를 공개한 바 있다. G20에 전달되는 이 보고서는 전 세계 국경 간 지급결제에 대한 기존 계약 및 과제에 대한 평가를 제공하며, 해당 보고서는 국경 간 지급결제 촉진을 위한 발전 방안에 대한 1단계 보고서로서의 의미를 가진다.<sup>214)</sup>

G20은 2020년 2 월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FSB에 국경 간 지급결제를 강화하기 위한 로드맵을 개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3단계 프로세스를 추진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sup>215)</sup>

211) CPMI, 「Fast Payments-Enhancing the speed and availability of retail payments」p. 28

212) FSB Press release, 「FSB reports on its work to develop a roadmap to enhance global cross-border payments」, 9 April 2020, p.2(<https://www.fsb.org/wp-content/uploads/R090420.pdf> 2020.10.20. 최종검색)

213) [http://fsc.go.kr/info/ntc\\_news\\_view.jsp?menu=7210100&bbsid=BBS0030&no=33680](http://fsc.go.kr/info/ntc_news_view.jsp?menu=7210100&bbsid=BBS0030&no=33680) 2020.10.20. 최종검색)

214) <https://www.fsb.org/2020/04/enhancing-cross-border-payments-stage-1-report-to-the-g20/> 2020.10.20. 최종검색)

215) FSB Press release, 「FSB reports on its work to develop a roadmap to enhance global cross-border payments」, 9 April 2020, p.2(<https://www.fsb.org/wp-content/uploads/R090420.pdf> 2020.10.20. 최종검색)

- 분석과 평가 (1 단계) : 해당 보고서에서 FSB는 관련 국제기구 및 표준 설정기구와 협력하여 기존의 준비와 과제를 분석하여 평가하였으며, 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총재에게 제출되고, 자세한 내용은 기술 배경 보고서와 함께 제공됨.
- 블록 구축 (2 단계) : CPMI (Payment and Market Infrastructures)위원회는 현재 전 세계 국경 간 지급결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블록을 구축하는 작업을 이끌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공공 부문에서 국경 간 지급결제 시스템 개선 및 공공 상품교역 내지 불필요한 교역 장벽의 제거에 도움이 되는 부분을 찾아 지원함으로써 2020년 7월까지 G20에 관련 개선 정보를 제공함.
- 로드맵 (3 단계) : 이전 단계를 기반으로 FSB는 CPMI 및 기타 관련 국제기구 및 표준 설정기구와 함께 향후 추진할 로드맵을 개발하고, FSB는 G20에 실질적인 추진 일정을 보고하며, 이러한 3단계 프로세스에 대하여는 2020년 10월 G20에 종합 보고서로 제출함.

해당 보고서에서는 사우디 아라비아의 국경 간 지급결제 강화를 G20의 우선 순위로 두면서, 송금을 포함한다보다 빠르고 저렴하며 더 투명하고 포괄적인 국경 간 지급결제 서비스가 전세계의 시민과 경제에 광범위한 혜택을 제공하여 경제 성장, 국제 무역, 글로벌 개발 및 재무 통합 지원을 밝히기도 하였다.<sup>216)</sup>

특히, 국경 간 지급결제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① 서로 다른 데이터 표준 또는 상호 운용성의 부족, ② 자금 세탁 방지 및 테러 자금 조달 (AML / CFT) 및 데이터 보호 목적 등의 법규 요건에 따른 복잡성, ③ 시간대 차이에 따른 운영 시간의 차이, ④ 구식 레저시 기술 플랫폼 등 기존의 국경간 지급결제 프로세스에서 발생하고 있는 마찰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sup>217)</sup>

해당 보고서는 최종 로드맵을 개발할 때 고려해야 할 영역에 대한 몇 가지 검토 영역을 제안하고 있으며, 이러한 제안 사항에는 ① 지급결제 인프라의 운영 개선, ② 데이터 및 시장에서의 표준화, ③ 법적 규제 및 감독체계, ④ 진행상황 모니터링 및 정보 공유 등이 포함된다.<sup>218)</sup>

216) <https://www.fsb.org/2020/04/fsb-reports-on-its-work-to-develop-a-roadmap-to-enhance-global-cross-border-payments/> 2020.10.20. 최종검색

217) <https://www.fsb.org/2020/04/fsb-reports-on-its-work-to-develop-a-roadmap-to-enhance-global-cross-border-payments/> 2020.10.20. 최종검색

### 3.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14년 『모바일 및 온라인 결제 소비자정책 가이드라인 (Consumer Policy Guidance on Mobile and Online Payments)』을 발표한 바 있다.

이러한 OECD의 모바일 및 온라인 결제 소비자정책 가이드라인은 ① 거래 약관 및 조건과 비용에 관한 정보, ② 개인정보보호, ③ 보안, ④ 지급결제 승인 과정, ⑤ 아동, ⑥ 이용자 보호제도에 대한 고지, ⑦ 기망 또는 오인유발행위, 불공정한 상행위, ⑧ 분쟁해결 및 피해구제 등에 대하여 심화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sup>219)</sup>

다음은 OECD의 모바일 및 온라인 결제 소비자정책 지침의 주요 내용이다.<sup>220)</sup>

#### ① 거래 약관, 조건 및 비용에 관한 정보

가. 결제 관련 정보의 접근성 및 가독성

결제 관련 정보의 접근성 및 가독성을 보장하기 위해,

첫째, 결제 및 거래의 주요 정보는 거래 초기 단계에서 분명하고 쉽게 접근 가능한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제공되어야 함. 동 정보는 “분주한(on the go)” 상황에서 자주 사용되는 작은 화면이 있는 모바일 기기를 포함하여 전자상거래에서 사용되고 있는 다양한 유형의 기기에서 쉽게 읽을 수 있는 형식으로 제시되어야 함.

둘째, 법률상 의무비용이 광고된 가격에 포함될 것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 그 의무비용은 거래 초기 단계에서, 그리고 소비자의 결제 정보 혹은 결제 승인이 요구되기 전에 소비자에게 분명히 고지되어야 함. 다른 비용들은 관련 사업자에 의해 확정되는 즉시 소비자에게 분명히 고지되어야 함.

218) FSB Press release, 『FSB reports on its work to develop a roadmap to enhance global cross-border payments』, 9 April 2020, p.1(<https://www.fsb.org/wp-content/uploads/R090420.pdf> 2020.10.12. 최종검색)

219) OECD 모바일 및 온라인 결제 소비자정책 지침 원문은 OECD (2014-05-16), “Consumer Policy Guidance on Mobile and Online Payments”, OECD Digital Economy Papers, No. 236,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5jz432cl1ns7-en> 2020.10.5. 최종검색)

220) <https://www.oecd-ilibrary.org/docserver/5jz432cl1ns7-en.pdf?expires=1601914782&id=id&accname=guest&checksum=C67646929E3F8EA3812F347410B9EAC0> 2020.10.5. 최종검색; 번역문은 송민수, OECD 모바일 및 온라인 결제 소비자정책 지침 제정, 글로벌 소비자정책동향, 제1권 3호, 2014.7.4. 한국소비자원, 3~18면을 인용.

셋째, “분주한(on the go)” 상황에서 결제처리를 위한 세부사항에 대한 정보 접근 시 소비자가 겪을 수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이 그러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공개의 최적화·결제 정보 제시 방법의 간소화·단순화·표준화(적절한 경우)를 통해 해결해야 함. 정보를 명료하고 분명하게 제시하고 접근가능성을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 그래픽과 아이콘 등을 사용하는 방식을 검토해야 함. 그러한 방식들은 그 자체로 쉽게 알아보고 이해할 수 있으며 오해의 소지가 없음.

넷째, 소비자들은 결제 및 거래 정보를 보유할 옵션을 제공받아야 함. 그러한 옵션에는 정보의 인쇄, 메일링, 컴퓨터 저장이 있음. 이러한 옵션들은 가능한 전자상거래에서 사용되는 모든 기기의 유형에서 이용할 수 있어야 함.

#### 나. 결제 약관 및 조건의 복잡성

소비자들이 결제 약관 및 조건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첫째, 사업자들은 소비자들에게 결제 약관 및 조건의 전문뿐만 아니라 주요 요약내용을 제공해야 함. 요약내용에는 총 거래비용, 제품 유용성, 배송 소요시간, 환불 및 교환정책, 청약철회권, 반복하여 발생하는 비용(자동 재구매 및 자동 갱신, 이를 취소하는 방법을 포함), 분쟁해결 방안(사업자 관련 연락처를 포함) 등이 포함되어야 함.

둘째, 결제 약관 및 조건의 요약 내용은 분명하고, 눈에 잘 띄며, 간결해야 하고, 일반 대중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평이한 언어로 제시되어야 함.

#### 다. 청구서 내역의 명료성

청구서 내역이 명료하도록 하기 위해,

첫째, 청구자(billing entities)는 분명히 청구서 내역상 그들이 청구하는 비용과 제3자가 청구하는 비용을 구분하여 제시해야 함. 또한, 청구서 내역은 소비자들이 구매 상품 및 서비스 유형, 결제 제공자·결제대행기관(payment provider) 혹은 판매자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형식으로 나타내야 함.

둘째, 청구서 내역은 a) 가격과 기타 주요 거래 정보를 확인해주고, b) 소비자들로 하여금 청구자(제3자에 의한 청구 포함)를 포함한 결제 관련 모든 당사자들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하며, c) 당사자들에게 연락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함.

### ② 프라이버시 : 결제정보의 수입 및 활용

결제정보가 소비자의 이익과 반대되는 방식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첫째, 사업자들은 모바일 및 온라인 결제 시스템 고안 및 개발 시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포함해야 한다. 기존 결제 시스템에서 사용되고 있는 안전장치는 재검토되어야 하며, 적절한 경우, 새로운 시스템이나 업데이트된 시스템에 통합되어야 함.

둘째, 사업자들은 모바일 및 온라인 결제를 위해 수집되는 개인정보 중 i) 결제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거나, ii) 결제 제공자에 의해 요구되거나, iii) 법률상 필요하거나, 혹은 iv) 계좌 및 리스크 관리, 인증, 사기 예방, 법률 준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정보에 국한하여 수집해야 함. 그러한 정보에는 인증 대리인(authenticating data)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이름, 우편번호, 전화번호, 결제카드 번호, 은행 계좌번호, 은행 혹은 다른 금융기관의 계좌 식별 코드가 포함될 수 있음.

셋째, 결제과정에서 사업자가 위에서 명시한 사항 이외의, 법률상 필요하거나 결제를 마치기 위해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를 수집 및 사용할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그러한 사항에 대해 적절한 시기에 분명하게 고지해야 하며, 소비자들이 그러한 정보의 수집 및 활용을 제한 혹은 거부할 수 있도록 적절한 선택 방안을 제공해야 함. 사업자들은 개인적인 위치 정보, 건강 정보, 재정 정보나 아이 관련 정보와 같이 민감한 정보를 수집하기 전에 소비자의 명백한 동의를 얻어야 함.

넷째, 사업자들은 모바일 및 온라인 결제 환경에서의 정보 수집 및 활용에 있어서 투명해야 하며, i) 소비자의 개인정보가 수집 및 저장되는 이유와 ii) 그러한 정보가 사용되고 공유될 수 있는 방식과 iii) 소비자가 이를 통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야 함.

다섯째, 이해관계자들은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고, 서로 다른 유형의 기기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프라이버시 공개 및 선택 방안을 개발해야 하며, 이는 결제 과정 중 적절한 시점에서 분명하고 일관성 있는 방식으로 제시되어야 함.

### ③ 보안 : 결제 보안

모바일 및 온라인 결제 환경에서 수집 및 활용되는 소비자 결제정보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첫째, 결제수단 제공자들은 보안시스템 보호를 위한 적절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하고, 결제 관련 소비자 정보에 접근하는 모든 주체들이 그러한 조치를 취하도록 장려해야 함.

둘째, 결제수단 제공자들은 소비자의 정보가 위태롭게 되거나 금전적 손실을 겪게 될 때 소비자들에게 고지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시기적절하고 효과적인 피해구제 메커니즘을 제공해야 함.

셋째, 이해관계자들은 결제보안관련 쟁점 및 소비자들이 거래에서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한 소비자들의 의식을 고취시켜야 함.

### ④ 승인 과정 : 거래 불확실성

소비자들이 거래가 성립되어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 시점, 혹은 거래가 완전히 처리되지 않았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첫째, 거래 성립 과정이 분명하고 명료해야 하는 것처럼 소비자가 거래 승인을 요청받는 시점과 거래 승인 후 결제기한이 분명하고 명료해야 함. 소비자들은 또한 결제정보를 확인하거나,

거래 완료 전 거래 전체를 취소할 기회를 부여받아야 함.

둘째, 소비자들은 결제정보를 제공한 거래가 완전히 처리되지 않았을 때 이를 분명히 고지 받아야 함.

#### ⑤ 아동 : 상품 및 서비스 사용 아동이 유발하는 비용

아동의 모바일 및 온라인 결제를 부모나 보호자가 모니터링하고 제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업자, 정부, 다른 이해관계자들은 다음의 사항을 수행해야 함.

첫째, 아동이 비용을 유발할 수 있는 상품 및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이용하기 전에 부모와 보호자에게 비용에 관한 정보와 아동의 결제에 비용 청구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분명하고 투명하며 쉽게 이용할 수 있게 제공해야 함.

둘째, 부모나 보호자가 그들의 승인 시에만 아동에 의한 결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효과적인 방안을 개발해야 함.

셋째, 부모나 보호자가 아동이 결제하도록 승인한 제품에 대해 통제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해야 한다. 예를 들어, 명백한 부모의 동의 없이 아동이 구매할 수 없도록 하는 도구나 부모나 보호자가 정해진 기간 동안 청구될 수 있는 비용의 한도를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도구가 포함될 수 있음.

넷째, 부모나 보호자에게 그러한 도구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분명하고 명료하게 알려주어야 함.

#### ⑥ 결제수단 및 제공자의 소비자보호 수준 차이

##### 가. 소비자보호에 관한 정보

소비자들이 결제 처리에서의 그들의 권리 및 의무에 대해 충분히 알도록 하기 위해,

첫째, 정부, 결제 제공자, 사업자, 시민단체, 다른 이해관계자들은 함께 소비자들이 a) 구매 시 그들의 권리 및 보호받을 수 있는 사항과 b) 책임 제한, 반품, 교환, 가격할인, 환불정책 및 환불절차 등 보호받을 수 있는 정도가 결제 시스템과 같은 요인에 따라 다양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도록 소비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가능한 방안을 제공해야 함.

둘째, 국경 간 거래 관련 결제 제공자들은 약관 및 조건에 결제시스템 사용과 관련된 소비자 권리 및 보호사항이 국경 간 거래 특성에 의해 어떻게 영향받을 수 있는지 분명히 명시해야 함.

셋째, 결제 제공자, 사업자, 시민단체, 다른 이해관계자들은 함께 결제 시스템 및 관련 보호 쟁점에 대해 소비자들에게 교육해야 하고, 주요 사항에 대한 인식을 고취해야 함.

##### 나. 결제 보호 수준

소비자들이 거래 관련 문제 발생시 적절한 보상을 제공받도록 하기 위해,

첫째, 정부와 결제 제공자는 사용하는 결제 시스템과 상관없이, 모바일 및 온라인 결제가 이루어지는 거래에서 소비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최소 보호수준을 마련해야 함. 그러한 보호에는 모든 모바일 및 온라인 결제 시스템과 관련된 사기성 또는 불법 청구 요금에 대한 책임

규정과 기업자율규제가 포함되어야 함.

둘째, 정부와 결제 제공자는 a) 재판관할 사이에 결제 보호 정책이 일치될 경우 유익할 수 있는 영역을 모색해야 하고, b) 결제 보호 수준이 다를 경우 국가 간 거래 관련 쟁점들이 가장 잘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을 명확하게 해야 함.

### ⑦ 사기·기만성, 오도하는, 불공정한 상행위

#### 가. 일관성 없는 결제 관련 정보

부실표시를 피하기 위해,

사업자들은 소비자를 오도하는 혹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가격정보 및 기타 결제 관련 쟁점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해서는 안됨. 가격 및 기타 결제 관련 쟁점에 대한 정보는 결제과정 동안 일관성 있게 제공되어야 함. 거래과정에서 그릇된 혹은 오도성 있는 결제관련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한 후 나중에 그러한 정보를 수정하는 관행이 허용되어서는 안됨.

#### 나. 갱신가능한 계약, 갱신 가능한 구독 및 재구매

소비자들이 자동 재구매, 계약 및 구매 갱신에 대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업자들은 거래 과정 초기에 다음 사항을 소비자들에게 분명하고 뚜렷하게 고지해야 함. 사업자가 제공하는 상품 및 서비스에 재구매 혹은 재구독이 포함되거나 다른 상품에 대한 재구매 혹은 재구독이 결부되어 있는 시점, 네거티브 옵션과 같이 소비자가 계약이나 구독 갱신 취소를 하지 않을 경우 갱신되는 시점, 다시 발생하는 모든 요금의 액수 및 빈도도 공개되어야 함.

소비자들은 요금이 자동으로 청구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쉽게 사용가능한 절차를 제공받아야 한다. 그러한 절차들은 거래의 확인(승인) 단계에서 소비자에게 알려져야 함.

옵션이 철회되지 않는다면, 소비자들은 언제 자동 반복구매가 이루어지는지 또는 구독이 자동 갱신되는지 고지 받아야 한다. 고지는 소비자들이 구매나 갱신을 취소할 수 있도록 충분히 미리 이루어져야 하며, 취소방법에 대한 정보도 고지에 포함되어야 함.

결제 제공자들은 사업자들과 함께 소비자들이 재구매와 자동 구독 및 계약 갱신에 대해 충분히 고지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 다. 예기치 못한 비용

소비자에게 무료사용기간 만료 시 혹은 앱과 같은 제품의 사용으로 야기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특정 기간(trial period) 동안 소비자가 좋아할 만한 조건으로 제품이 제공될 때, 무료사용기간에 대한 정보 및 동 기간 만료 후 부과될 수 있는 비용에 대한 정보가 분명하고 뚜렷하게 소비자에게 제공되어야 함. 제품이나 서비스 구매를 중단하기 위한 절차에 대한 정보도 분명하고 뚜렷하게 제공되어야 함. 무료사용기간 이후로 소비자로부터 하요금 계속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추가 비용을 지불하기 전 소비자의 동의를 얻어야 함. 제품 사용 시 추가

비용이 부과된다면, 소비자는 그 사실에 대해 알아야 하고, 부과 비용에 대한 소비자의 동의가 필요함.

소비자에게 제3자에 의한 예기치 못한 비용이 청구되는 것을(특히 휴대폰 청구서로 청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자들은 제3자가 제품 및 서비스 비용을 소비자에게 청구할 가능성을 제한하거나 차단할 수 있게 소비자에게 옵션을 제공해야 함. 아이들이 사용하는 개인 계좌와 같은 sub-account에 청구되는 요금을 차단하는 것이 포함되어야 함. 사업자들은 소비자들에게 소비자의 명백한 승인 없이 제3자에 의해 요금부과가 될 수 있는 경우와 그러한 요금부과 제한 혹은 차단 방법을 분명히 알려주어야 함. 사업자들은 소비자가 그들의 계좌에 부과된 비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배상받을 수 있는 분명하고 일관성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함.

인앱결제와 관련한 예기치 못한 비용 청구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업자와 다른 이해관계자들은 함께 다음과 같이 해야 함. 소비자들이 구매를 목적으로 앱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및 소비자들이 그러한 앱을 사용할지 혹은 가능한 곳에서 앱 사용을 제한할지 여부에 대한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앱 사용에 수반될 수 있는 비용에 대한 분명하고 일관성 있으며 쉽게 접할 수 있는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모든 인앱결제에 대해 소비자 동의를 얻어야 함.

#### 라. 소비자 신뢰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해, 결제 제공자, 사업자, 다른 이해관계자들은 다음의 사항을 수행해야 함.

결제 사기 예방을 돕기 위한 효과적인 관행 및 규제 도구를 개발하여야 한다. 소비자들이 스스로 사기, 기만적, 오도성 상행위를 탐지하고 그러한 행위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돕는 도구 개발해야 한다. 불법 사용이 의심될 경우 원격으로 거래를 중단시킬 수 있는 방법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는 것도 포함되어야 하며, 여기에는 사용될 경우 결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휴대폰 및 앱이 사용되지 못하게 하는 것도 포함되어야 함.

전자 인증시스템의 효과성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함. 사기, 기만적, 오도성 상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사업자 및 모바일, 온라인 앱 제공자들과의 거래방지 등 소비자보호를 위해 고안된 포괄적인 사기 방지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함.

### ㉘ 분쟁해결 및 피해구제

#### 가. 당사자들의 역할과 책임

소비자들이 분쟁해결 및 피해구제 메커니즘에 충분히 접근가능 하도록 하기 위해,

정부, 결제 제공자, 플랫폼 운영자, 다른 이해관계자들은 결제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해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옵션들과 문제 발생 시 준수해야 할 절차들에 대해 분명히 해야 한다. 여기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결제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 연락을 취해야 할 당사자 및 연락 방법에 대한 분명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함.
- 사업자와 결제 제공자를 통해 문제가 만족스럽게 해결되지 않았을 경우 이용할 수 있는 규제 기구, 법 집행 기관, ombudsman, 혹은 자율 규제 기구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함.
- 전자상거래에 종사하는 결제 중개업자들이 소비자들에게 적절한, 낮은 비용의 쉽게 이용 가능한 분쟁해결 및 피해구제 시스템을 제공하도록 장려해야 함.
- 소비자가 제품에 대해 환급받을 권한이 있는 경우, 부당한 지체 없이 환급이 이루어져야 함. 전자상거래에 종사하는 결제 중개업자들은 분쟁해결 촉진을 위해 제3자들로 하여금 개별 요금에 대해 소비자가 승인했다는 충분하고 접근 가능한 기록을 보유하도록 강력히 요구해야 함.

#### 나. 보상청구 비용

소비자들에게 유의미한 분쟁해결 및 피해구제 메커니즘을 제공하기 위해,

정부, 결제 제공자, 판매자, 다른 이해관계자들은 낮은 비용의 분쟁해결, 메커니즘을 사용하기 쉬우며 그 중에서도 소액 결제 분쟁 해결을 촉진할 수 있는 대안적 분쟁해결 및 피해구제 메커니즘을 마련해야 함. 그러한 메커니즘에는 효과적인 온라인 분쟁해결 시스템의 개발이 포함될 수 있으며, 대안적 분쟁해결 및 피해구제 메커니즘으로 인하여 당사자들의 다른 형태의 피해구제 청구를 찾을 수 없어서는 안됨.

이러한 모바일과 온라인 결제에 있어서의 OECD의 소비자 정책 지침은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에도 대부분 채택되어 있다. 다만,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지급수단에 대한 정의와 전자금융거래업자에 대한 시장진입 및 건전성 요건과 인적·물적 설비 요건을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고, 전자금융거래 이용자에 대한 구체적인 보호 절차나 보호조치에 대한 기준 등에 관하여서는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두고 있지 않다.

## 4. ISO

국제표준화기구(ISO)는 2004년 금융업무 전반에 이용되는 통신메시에 관한 국제표준인 ISO 20022 - Universal financial industry message scheme」를 제정한 바 있다.

ISO 20022는 금융권 소프트웨어 설계 방법론을 모델링, 재사용성 보장을 위한 UML(Unified Modeling Language) 기반의 설계 저장 방법론 정의, 금융 행위 주체 간

메시지교환 형식인 XML 룰(Rule)을 정의하는 표준으로서, ISO 20022는 ‘금융서비스 – 범 금융 산업메시지 체계’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sup>221)</sup>

- 제1부 : ISO 20022 저장소로부터의 입력과 산출을 위한종합적 방안과 양식 명세
- 제2부 : 등록체의 역할과 책임
- 제3부 : ISO 20022 모델링 가이드라인
- 제4부 : ISO 20022 XML 디자인 규칙
- 제5부 : ISO 20022 역설계
- 제6부 : ISO 20022 메시지 전송 특성

ISO 20022는 금융업무 전반에 이용되는 통신메시지에 관한 국제표준으로서 영국 지급결제서비스산업의 경우 지급결제메시지에 대한 국제 표준인 ISO 20022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CHAPS 지급결제를 포함한 Real-Time Gross Settlement (RTGS) service가 ISO 20022에 따라 구축되어 있다.<sup>222)</sup>

221) ISO 20022에 대해서는 김성천,장희만,신용녀, 범 금융 산업메시 체계(ISO 20022) 표준화 동향, TTA Journal No.126,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2009, 79~82면 ; 윤재호,정준호, 금융통신메시지 국제표준 ISO 20022 주요 내용 및 시사점, 지급결제조사자료 2018-2, 한국은행, 2018, 8~16면.

222) Bank of England, A new messaging standard for UK payments: ISO 20022, (<https://www.bankofengland.co.uk/payment-and-settlement/rtps-renewal-programme/consultation-on-a-new-messaging-standard-for-uk-payments-iso20022> 2020.10.20. 최종검색)

### 제3절 소액결제 관련 해외 각국의 정책 및 입법 사례

국내에서 소액결제에 관한 법제는 그 기초가 금융법 편제 내에 구성되어 있으며, 금융의 기능에 따라 결제법제(전자금융거래법, 여신전문금융업법,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등), 자금제공(예금대출)법제(은행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상호저축은행법 등), 자산운용(투자)법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위험이전(보장)법제(보험업법 등)로 구분된다. 다만,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지급결제법제로서의 단독입법은 이루어져있지 않은 상황이나, 해외에서는 인터넷 및 모바일 지급결제서비스의 혁신을 위하여 개별 지급결제법제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소액결제 관련 해외 각국의 지급결제 관련 정책 및 입법 사례를 소개하고, 전자결제 및 소비자 금융정보 보호를 위한 엄격한 보안 요건 및 안전한 인증 체계 구축을 통한 사기 위험 저감과 지급결제 서비스 요건의 투명성 확보 등 관련 입법 사례를 통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한다.

#### 1. E U

##### (1) 개정 지급서비스지침(PSD2: DIRECTIVE 2015/2366/EU)

EU에서는 2009년 11월 「지급서비스지침(PSD1; Payment service Directive)(이하, PSD1이라 함)시행을 통하여 지급서비스(Payment Services) 및 지급서비스 제공자(PSP; Payment Services Provider)에 대한 정의 규정을 도입하고, 지급기관(PI; Payment Institution) 제도를 채택한 바 있다.<sup>223)</sup> 특히, 해당 지침에서는 예금 또는 전자화폐를 취급하지 않으면서 지급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동일한 인가 요건을 정하여, 해당 요건을 갖춘 경우 지급기관으로서 지급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sup>224)</sup>

223) 금융결제원, 「핀테크 혁신을 위한 전자금융업 제도·산업 개편방안」, 2018.12, 38~39면.

이후, 2016년 1월 12일 발효되어 2018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된 지급서비스 지침(PSD2; Payment service Directive 2)은 인터넷 및 모바일 지급결제서비스의 혁신을 위하여 개정 작업이 이루어진 바 있다.<sup>225)</sup>

PSD2의 개정 목적은 전자결제 및 소비자 금융정보 보호를 위한 엄격한 보안 요건을 적용하여 안전한 인증 체계를 구축하고, 사기 위험을 저감하며, 지급결제 서비스 요건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한편, 사용자 및 지급결제 서비스 제공업자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한편, 카드 기반 거래에 대해 은행간 거래수수료를 상한으로 설정함으로써 소비자가 직불·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상품·용역을 구매하는 경우에 대한 판매자의 비용 저감 효과 실현 등에 있다.<sup>226)</sup>

그 주요 개정 내용은, ① 인터넷 결제서비스를 보다 쉽고 안전하게 사용하게 하고, ② 사기, 남용 및 지급결제에 대한 소비자 보호 강화, ③ 혁신적인 모바일 및 인터넷 지급결제 서비스 홍보, ④ 소비자 권리 강화, ⑤ 감독당국 간 조정 기능 및 기술 표준 초안 마련을 위한 유럽은행청(EBA)의 역할 강화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sup>227)</sup>

구체적으로는 지급지시서비스 제공자(PISP), 계좌정보서비스 제공자(AISP) 등 새로운 유형의 지급서비스를 지침에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한 계좌접근을 허용하여 지급서비스 시장 내 경쟁 및 혁신을 촉진하고자 한 것이다.<sup>228)</sup>

이러한 PSD2의 조문 구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24) 금융결제원, 「핀테크 혁신을 위한 전자금융업 제도·산업 개편방안」, 2018.12, 39면.

225) [https://www.ecb.europa.eu/paym/intro/mip-online/2018/html/1803\\_revisedpsd.en.html](https://www.ecb.europa.eu/paym/intro/mip-online/2018/html/1803_revisedpsd.en.html) 2020.10.20. 최종검색

226) [https://ec.europa.eu/info/law/payment-services-psd-2-directive-eu-2015-2366\\_en&prev=search](https://ec.europa.eu/info/law/payment-services-psd-2-directive-eu-2015-2366_en&prev=search) 2020.10.20. 최종검색

227)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ko&sl=en&u=https://ec.europa.eu/info/law/payment-services-psd-2-directive-eu-2015-2366\\_en&prev=search](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ko&sl=en&u=https://ec.europa.eu/info/law/payment-services-psd-2-directive-eu-2015-2366_en&prev=search) 2020.10.20. 최종검색

228) [https://ec.europa.eu/info/law/payment-services-psd-2-directive-eu-2015-2366\\_en&prev=search](https://ec.europa.eu/info/law/payment-services-psd-2-directive-eu-2015-2366_en&prev=search) 2020.10.20. 최종검색

## 전문

## 제1편 목적, 적용대상 및 정의

## 제1조 목적

## 제2조 적용대상

## 제3조 제외범위

## 제4조 정의

## 제2편 지급결제서비스 제공업자(PSP)

## 제1장 지급결제기관

## 제1절 일반규칙 (제5조-제18조)

## 제2절 다른 요건 (제19조-제21조)

## 제3절 담당기관과 감독 (제22조-제31조)

## 제4절 면제 (제32조-제34조)

## 제2장 일반규정 (제35조-제37조)

## 제3편 지급결제서비스에 관한 조건의 투명성과 정보요건

## 제1장 일반규칙 (제38조-제40조)

## 제2장 단독지급결제거래(제43조-제49조)

## 제3장 기본계약 (제50조-제58조)

## 제4장 일반규정 (제59조-제60조)

## 제4편 지급결제서비스 제공 및 사용에 관한 권리와 의무

## 제1장 일반규정 (제61조-제63조)

## 제2장 지급결제거래의 권한부여 (제64조-제76조)

## 제3장 지급결제거래의 실행

## 제1절 지급결제지시와 이전금액 (제78조-제81조)

## 제2절 실행시간과 자금결제일 (제82조-제87조)

## 제3절 책임 (제88조-제93조)

## 제4장 데이터보호 (제94조)

## 제5장 운영 및 보안위험 그리고 인증 (제95조-제98조)

## 제6장 분쟁해결을 위한 대안적 분쟁해결절차

## 제1절 이의절차 (제99조-제100조)

## 제2절 대안적 분쟁해결절차와 제재 (제101조-제103조)

## 제5편 위임규정과 규제기술표준 (제104조-제106조)

## 제6편 최종규정 (제107조- 제117조)

## 별표I 지급결제서비스(제4조 (3) 관련)

## 별표II 이전 지침과의 대비표

또한, PSD2에서는 PSD2 Annex 1에서 지급서비스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확대하여 규정하고 있다.<sup>229)</sup>

1. 지급계좌로의 현금입금업무 (Services enabling cash to be placed on a payment account as well as all the operations required for operating a payment account)
2. 지급계좌로부터의 현금인출업무 (Services enabling cash withdrawals from a payment account as well as all the operations required for operating a payment account)
3. 지급계좌를 통한 자금이전을 수반하는 지급거래의 실행(Execution of payment transactions, including transfers of funds on a payment account with the user's payment service provider or with another payment service provider)
  - (a) 일회성 계좌이체를 포함한 계좌이체 실행(execution of direct debits, including one-off direct debits)
  - (b) 지급카드 또는 유사 장치를 통한 지급결제 거래의 실행(execution of payment transactions through a payment card or a similar device)
  - (c) 자동이체를 포함한 출금이체 실행(execution of credit transfers, including standing orders)
4. 신용공여를 포함하는 지급거래의 실행(Execution of payment transactions where the funds are covered by a credit line for a payment service user)
  - (a) 일회성 계좌이체를 포함한 계좌이체 실행(execution of direct debits, including one-off direct debits)
  - (b) 지급카드 또는 유사 장치를 통한 지급결제 거래의 실행(execution of payment transactions through a payment card or a similar device)
  - (c) 자동이체를 포함한 출금이체 실행(execution of credit transfers, including standing orders)
5. 지급수단의 발행 및 지급거래의 매입(인수)(Issuing of payment instruments and/or acquiring of payment transactions)
6. 송금(Money remittance)
- 7. 지급지시서비스 (Payment initiation services)**
- 8. 계좌정보서비스 (Account information services)**

229) <https://eba.europa.eu/regulation-and-policy/single-rulebook/interactive-single-rulebook/5460>  
2020.10.20. 최종검색

그 밖에 PSD2 Article 3<sup>230)</sup>에서는 지급결제 서비스 지침에 적용되지 않는 적용 제외

### 230) Payment Services Directive 2 (PSD2)

Article 3 Description: Exclusions Main content:

This Directive does not apply to the following:

- (a) payment transactions made exclusively in cash directly from the payer to the payee, without any intermediary intervention;
- (b) payment transactions from the payer to the payee through a commercial agent authorised via an agreement to negotiate or conclude the sale or purchase of goods or services on behalf of only the payer or only the payee;
- (c) professional physical transport of banknotes and coins, including their collection, processing and delivery;
- (d) payment transactions consisting of the non-professional cash collection and delivery within the framework of a non-profit or charitable activity;
- (e) services where cash is provided by the payee to the payer as part of a payment transaction following an explicit request by the payment service user just before the execution of the payment transaction through a payment for the purchase of goods or services;
- (f) cash-to-cash currency exchange operations where the funds are not held on a payment account;
- (g) payment transactions based on any of the following documents drawn on the payment service provider with a view to placing funds at the disposal of the payee:
  - (i) paper cheques governed by the Geneva Convention of 19 March 1931 providing a uniform law for cheques;
  - (ii) paper cheques similar to those referred to in point (i) and governed by the laws of Member States which are not party to the Geneva Convention of 19 March 1931 providing a uniform law for cheques;
  - (iii) paper-based drafts in accordance with the Geneva Convention of 7 June 1930 providing a uniform law for bills of exchange and promissory notes;
  - (iv) paper-based drafts similar to those referred to in point (iii) and governed by the laws of Member States which are not party to the Geneva Convention of 7 June 1930 providing a uniform law for bills of exchange and promissory notes;
  - (v) paper-based vouchers;
  - (vi) paper-based traveller's cheques;
  - (vii) paper-based postal money orders as defined by the Universal Postal Union;
- (h) payment transactions carried out within a payment or securities settlement system between settlement agents, central counterparties, clearing houses and/or central banks and other participants of the system, and payment service providers, without prejudice to Article 35;
- (i) payment transactions related to securities asset servicing, including dividends, income or other distributions, or redemption or sale, carried out by persons referred to in point (h) or by investment firms, credit institutions, collective investment undertakings or asset management companies providing investment services and any other entities allowed to have the custody of financial instruments;
- (j) services provided by technical service providers, which support the provision of payment services, without them entering at any time into possession of the funds to be transferred, including processing and storage of data, trust and privacy protection services, data and entity authentication, information technology (IT) and communication network provision, provision and maintenance of terminals and devices used for payment services, with the exclusion of payment initiation services and account information services

(Exclusions)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sup>231)</sup>

□ 지급결제서비스 지침의 적용 제외 대상<sup>232)</sup>

(a) 지급인 · 수취인간 (중개기관을 경유하지 않는) 현금거래

- (k) services based on specific payment instruments that can be used only in a limited way, that meet one of the following conditions:
  - (i) instruments allowing the holder to acquire goods or services only in the premises of the issuer or within a limited network of service providers under direct commercial agreement with a professional issuer;
  - (ii) instruments which can be used only to acquire a very limited range of goods or services;
  - (iii) instruments valid only in a single Member State provided at the request of an undertaking or a public sector entity and regulated by a national or regional public authority for specific social or tax purposes to acquire specific goods or services from suppliers having a commercial agreement with the issuer;
- (l) payment transactions by a provider of electronic communications networks or services provided in addition to electronic communications services for a subscriber to the network or service:
  - (i) for purchase of digital content and voice-based services, regardless of the device used for the purchase or consumption of the digital content and charged to the related bill; or
  - (ii) performed from or via an electronic device and charged to the related bill within the framework of a charitable activity or for the purchase of tickets; provided that the value of any single payment transaction referred to in points (i) and (ii) does not exceed EUR 50 and:
    - the cumulative value of payment transactions for an individual subscriber does not exceed EUR 300 per month, or
    - where a subscriber pre-funds its account with the provider of the electronic communications network or service, the cumulative value of payment transactions does not exceed EUR 300 per month
- (m) payment transactions carried out between payment service providers, their agents or branches for their own account;
- (n) payment transactions and related services between a parent undertaking and its subsidiary or between subsidiaries of the same parent undertaking, without any intermediary intervention by a payment service provider other than an undertaking belonging to the same group;
- (o) cash withdrawal services offered by means of ATM by providers, acting on behalf of one or more card issuers, which are not a party to the framework contract with the customer withdrawing money from a payment account, on condition that those providers do not conduct other payment services as referred to in Annex I. Nevertheless the customer shall be provided with the information on any withdrawal charges referred to in Articles 45, 48, 49 and 59 before carrying out the withdrawal as well as on receipt of the cash at the end of the transaction after withdrawal.

231) <https://eba.europa.eu/regulation-and-policy/single-rulebook/interactive-single-rulebook/8601>  
2020.10.30. 최종검색

- (b) 지급인·수취인간 협약을 통해 지정한 상업대리인을 통한 거래
- (c) 지폐 및 동전의 수집, 처리, 인도 등 물리적 운송
- (d) 비영리·자선행위에서의 현금 수입
- (e) 상품이나 서비스 구매에 따른 대금 지급거래에서 일부 현금을 환급받는 거래
- (f) 지급계좌를 통하지 않는 현금 간 환전거래
- (g) 장표기반 지급거래 (종이수표·어음, 거래증빙서류, 여행자수표 등)
- (h) 지급결제시스템 내 지급결제서비스 제공자, 결제·청산기관, 중앙은행, 참가기관간 지급거래
- (i) 증권 관련 지급 거래 (배당금 및 소득 분배, 증권 상환 및 판매)
- (j) 자금을 보유하지 않는 지급서비스를 지원하는 기술업자 (PISP, AISP는 제외)
- (k) 제한된 재화·서비스 구매에 사용하는 특정 지급수단 (주유카드, 식권 등)
- (l) 전자통신 네트워크 서비스업체(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일부 지급거래 (디지털 콘텐츠, 음성 기반 서비스 구매, 티켓 구매 등)
- (m) 지급서비스제공자의 대리인 또는 지점간 자기계산 지급거래
- (n) 동일 법인 내 (증개기관을 경우하지 않는) 자회사간 또는 모회사와 자회사간 지급거래
- (o) 카드 발행기관 대행업자의 ATM 현금인출거래 (CD 뱅사업자)

## (2) 개정 전자화폐지침(EMD(E-money Directive); Directive 2009/110/EC)

EU는 새로운 전자화폐 수단이 등장하자 전자화폐시장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존의 「전자화폐지침(Directive 2000/46/EC)」을 개정하여 개정 전자화폐지침(EMD; E-money Directive, Directive 2009/110/EC)(이하, EMD라 함)을 마련한 바 있다.<sup>233)</sup>

EMD는 기존의 전자화폐지침이 선불식 전자화폐 등 새로운 전자화폐수단에 대한 적절한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10년간의 검토 기간을 거쳐 제정되었으며,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사업자 등록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하고, 초기자본금 규제를 1백만유로에서 35만 유로로 낮추는 한편, 전자화폐 이외의 금융서비스 겸업을 허가한 바 있다.<sup>234)</sup> 지급서비스별 최소 설립 자본금 요건은 PSD2 Annex 1에 따른 각 지급서비스 유형별로 1.~5. 까지는 12만5천 유로, 6.은 2만유로, 7.은 5만유로로 정하고 있다.<sup>235)</sup><sup>236)</sup>

232) 금융결제원, 「핀테크 혁신을 위한 전자금융업 제도·산업 개편방안」, 2018.12, 46면.

233) 금융보안원, 「전자금융 정책 및 감독 선진화를 위한 주요국 사례분석」, 2012.11, 89면.

234) 금융보안원, 「전자금융 정책 및 감독 선진화를 위한 주요국 사례분석」, 2012.11, 89면.

특히, 전자화폐의 정의와 관련하여, ‘마그네틱 방식을 포함하여 전자적으로 금전적 가치를 저장하고 있으며, 지급인·수취인 간 지급거래(payment transaction)를 위해 사용하는 지급수단으로 발행자 이외의 제3자에 의해 지급수단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기존의 칩 기반 선불카드를 포함하여, 스마트폰과 같은 단말장치를 통하여 화폐 가치를 전자적으로 저장 가능한 개념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였다.<sup>237)</sup>

### (3) EU의 PSD2가 유럽 각국에 미친 입법적 영향과 국내법적 수용 사례

EU의 PSD2는 영국과 독일과 같이 기존에 유럽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국가들의 국내법으로 수용되는 절차를 거친 바 있으며, 이러한 PSD2는 EU 신규회원국 내지 가입의향이 있는 국가들의 지급결제법제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아래에서는 EU의 PSD2가 유럽 각국에 미친 입법적 영향과 국내법적 수용 사례를 간단하게 소개하고, 영국과 독일의 경우에는 별도의 목차로 구성하여 상세하게 소개하기로 한다.

#### 1) 세르비아

세르비아의 「지급결제서비스에 관한 법률(Law on Payment Services)」은 2014년에 제정되어 2015년부터 시행된 이래, 2018년 6월 16일 개정이 이루어진 바 있으며, EU 가입을 위한 조치로서 2019년 3월 17일부터 시행되었다. 그 구성은 총 8장 232개조문으로 이루어져 있다.<sup>238)</sup>

235) 금융결제원, 「핀테크 혁신을 위한 전자금융업 제도·산업 개편방안」, 2018.12, 64면.

236) PSD2 Annex 1 지급서비스의 범위

1. 지급계좌로의 현금입금업무
2. 지급계좌로부터의 현금인출업무
3. 지급계좌를 통한 자금이전을 수반하는 지급거래의 실행
4. 신용공여를 포함하는 지급거래의 실행
5. 지급수단의 발행 및 지급거래의 매입(인수)
6. 송금
7. 지급지시서비스
8. 계좌정보서비스

237) 금융결제원, 「핀테크 혁신을 위한 전자금융업 제도·산업 개편방안」, 2018.12, 60면.

세르비아의 지급결제 관련 시스템은 세르비아국립은행의 결제·청산 시스템을 기초로 하고 있으며, “통화 및 지급결제(Money and Payments)”분야에 대한 주요 지침(Decisions on payment system and payment services)들을 제정하여 공개하고 있다.<sup>239)</sup>

최근 EU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세르비아에 관한 2020년 보고서(Serbia Report 2020) 부속서(ANNEX I - RELATIONS BETWEEN THE EU AND SERBIA)에 서는, 금융서비스를 포함한 EU와 세르비아 간 협상 연혁과 관계를 정리하여 밝히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세르비아의 지급결제서비스 및 금융서비스 분야는 아직까지 EU와의 국경 간 거래 및 협력 원칙과는 일치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sup>240)</sup>

## 2) 조지아

조지아 「지급결제시스템 및 지급결제서비스에 관한 법률(LAW OF GEORGIA ON PAYMENT SYSTEMS AND PAYMENT SERVICES)」은 2012년 제정되어 시행되어오고 있다.<sup>241)</sup>

조지아 「지급결제시스템 및 지급결제서비스에 관한 법률」은 지급결제시스템과 결제·청산 참가자 뿐만 아니라 지급결제서비스 제공자와 지급결제서비스 이용자(사업자(가맹점)/소비자), “electronic money” 지급결제수단에 대한 규정도 두고 있다(Article 2 [Definition of terms] z)).

## 3) 그리스

그리스 지급결제서비스법 2018(The Payment Services Law 2018)은 총 6개장 총 112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실제 제명은 “결제서비스의 제공 및 사용과 결제시스템에

238) <https://www.karanovicpartners.com/news/law-payment-services-serbia/> 2020.10.12. 최종검색;  
[https://www.nbs.rs/internet/english/20/laws/law\\_payment\\_services.pdf](https://www.nbs.rs/internet/english/20/laws/law_payment_services.pdf) 2020.10.12. 최종검색

239) <https://nbs.rs/en/drugi-nivo-navigacije/propisi/propisi-ps/> 2020.10.12. 최종검색

240) [https://ec.europa.eu/neighbourhood-enlargement/sites/near/files/serbia\\_report\\_2020.pdf](https://ec.europa.eu/neighbourhood-enlargement/sites/near/files/serbia_report_2020.pdf)  
2020.10.12. 최종검색

241) <https://matsne.gov.ge/ru/document/download/1673253/1/en/pdf> 2020.10.12. 최종검색

대한 접근에 관한 법률; Ο περί της Παροχής και Χρήσης Υπηρεσιών Πληρωμών και Πρόσβασης στα Συστήματα Πληρωμών Νόμος του 2018 (31(I)/2018))”이다.<sup>242)</sup>

#### 4) 불가리아

불가리아 「지급결제서비스 및 지급결제시스템에 관한 법률(Law on Payment Services and Payment Systems)」은 2018년, 2019년, 2020년 매년 개정되어 현재, 총 13장 188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sup>243)</sup>

## 2. 영국

영국에서는 지급결제 서비스와 관련하여, 영국 재무부가 EU의 PSD2에 따라 국내법으로 제정한 「Payment Services Regulations(PSR) 2017」과 전자화폐에 관한 「Electronic Money Regulations(EMR) 2011」이 근거 법규가 된다.<sup>244)</sup>

PSR에서는 지급서비스 제공업자의 허가 및 등록, 지급서비스 외 서비스 제공업자의 요건, 지급서비스에 필요한 정보 요건, 지급서비스 규정 관련 권리와 의무, 지급결제시스템 및 은행계좌 접근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sup>245)246)</sup>

242) [https://www.centralbank.cy/images/media/pdf\\_el/Payment%20Systems%20Law%20GR%2018042018.pdf](https://www.centralbank.cy/images/media/pdf_el/Payment%20Systems%20Law%20GR%2018042018.pdf) 2020. 10.12. 최종검색

243) [http://www.bnb.bg/bnbweb/groups/public/documents/bnb\\_law/laws\\_payment\\_services\\_en.pdf](http://www.bnb.bg/bnbweb/groups/public/documents/bnb_law/laws_payment_services_en.pdf) (2020. 10.12. 최종검색)

244) <https://www.fca.org.uk/firms/payment-services-regulations-e-money-regulations> 2020.10.20. 최종검색

245) 금융결제원, 「핀테크 혁신을 위한 전자금융업 제도·산업 개편방안」, 2018.12, 117면.

246) <https://www.legislation.gov.uk/uksi/2017/752/contents/made> 2020.10.20. 최종검색

영국의 PSR은 총 11장 158조문, 별표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총칙 (제1조-제3조)

제2장 등록

등록부 (제4조)

지급결제기관으로서의 지정 (제5조-제12조)

소규모 지급결제기관으로서의 등록 (제13조- 제19조)

공통규정 (제20조.제21조)

제3장 지정지급결제기관

일반 (제22조-제25조)

허가권의 시행 (제26조-제30조)

제4장 지정지급결제기관와 소규모 지급결제기관에 대한 적용규정 (제31조-제37조)

제5장 지급결제서비스가 이닌 일정한 서비스제공자의 요건 (제38조.제39조)

제6장 지급결제서비스의 정보제공요건

적용범위 (제40조-제42조)

단일 지급결제서비스계약 (제43조-제47조)

기본계약 (제48조-제54조)

공통규정 (제55조-제59조)

그 밖의 정보제공요건 (제60조-제62조)

제7장 지급결제서비스 제공 관련 권리와 의무

적용범위 (제63조-제65조)

수수료 (제66조)

지급결제서비스의 지정 (제67조-제80조)

지급결제서비스의 실행 (제81조-제84조)

실행과 결제일 (제85조-제89조)

책임 (제90조- 제96조)

보칙 (제97조-제101조)

제8장 지급결제시스템 접근과 은행정산 (제102-제105조)

제9장 금융행위청

일반 (제106조-제107조)

감독 및 집행 (제108조-제117조)

보칙 (제118조-제122조)

제10장 지급결제시스템 규제자 (제123조-제136조)

## 제11장 일반규정

- 법정요건의 민간위탁 (제137조)
- 형사처벌 (제138조-제146조)
- 보칙 (제147조.제148조)
- 경과규정 및 이전규정 (제149조-제153조)
- 지브롤터 (제155조)
- 검토 (제158조)

한편, EMR에서는 전자화폐를 선불카드(pre-paid cards)와 선불전자지급수단(electronic pre-paid accounts for online use)으로 구분하고,<sup>247)</sup> 전자화폐발행업자의 허가, 건전성 감독 및 패스포팅 권한, 전자화폐발행업자의 고객, 유통업자 및 대리기관 업무, 전자화폐 발행 및 환불, 전자화폐 발행 금지 등에 대한 내용을 주로 규정하고 있다.<sup>248)249)</sup>

### 3. 독일

독일 지급결제서비스감독법(Zahlungsdiensteaufsichtsgesetz)은 유럽연합 PSD2를 국내법화한 것으로 2017년 7월 21일 제정, 2018년 1월 13일 시행되었다.<sup>250)</sup>

독일 지급결제서비스감독법은 지급결제서비스의 감독에 관한 법률로서, 독일 연방금융감독원(BaFin)에 의해 지급결제서비스사업은 물론 전자화폐사업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연방금융감독원은 지급결제서비스사업과 전자화폐사업에 대한 라이선스규제권을 갖고, 지급결제서비스사업과 전자화폐사업에 대한 법적 요건과 기준을 정할 수 있다.

247) <https://www.fca.org.uk/firms/payment-services-regulations-e-money-regulations> 2020.10.20. 최종검색

248) 금융결제원, 『핀테크 혁신을 위한 전자금융업 제도·산업 개편방안』, 2018.12, 117면.

249) <http://www.legislation.gov.uk/ukxi/2011/99/contents/made> 2020.10.5. 최종검색

250) 독일 지급결제서비스감독법(Zahlungsdiensteaufsichtsgesetz) 원문은 Bundesministerium der Finanzen, Gesetz zur Umsetzung der Zweiten Zahlungsdiensterichtlinie,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Downloads/Gesetze/2017-07-21-G-z-Umsetzung-d-Zweiten-Zahlungsdiensterichtlinie.pdf?\\_\\_blob=publicationFile&v=3](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Downloads/Gesetze/2017-07-21-G-z-Umsetzung-d-Zweiten-Zahlungsdiensterichtlinie.pdf?__blob=publicationFile&v=3)) 2020.10.5. 최종검색

이러한 지급결제서비스감독법은 총 14장, 69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 제1장 총칙

제1절 정의, 적용범위, 감독(제1조-제6조)

제2절 허가예약의 실시 (제7조.제8조)

제3절 즉시 강제력 (제9조)

#### 제2장 허가 ; 중요 보유물의 소유자, 연방 법무 및 소비자보호주의 서비스 및 연방사법부

제1절 허가 (제10조-제13조)

제2절 중요 보유물의 소유자 (제14조)

#### 제3장 자기자금, 책임 발생시 보호 (제15조.제16조)

#### 제4장 보안요구사항 (제17조.제18조)

#### 제5장 경과규정. 기관감독 (제19조-제30조)

#### 제6장 전자화폐사업과 배포 및 상환에 대한 특별규정, 연방 법무 및 소비자보호부의 서비스 및 연방사법부(제31조-제33조)

#### 제7장 계정정보서비스에 관한 특별규정 (제34조-제37조)

#### 제8장 유럽지역, 지사 및 국경간 서비스, 제3국 지사 (제38조-제42조)

#### 제9장 등록 (제43조.제44조)

#### 제10장 모든 지급결제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한 공통규정

제1절 카드기반 지급결제수단 (제45조-제47조)

제2절 지급결제시기 및 지급결제 계정의 계정정보서비스업자 (제48조-제52조)

제3절 위험 및 사고보고 (제53조.제54조)

제4절 강한 고객인증 (제55조)

제5절 계정 및 지급결제서비스에 대한 접근 (제56조- 제58조)

제5a절 기술인프라서비스(제58a)

#### 제11장 데이터보호 (제59조)

#### 제12장 불만 및 대안적 분쟁해결 (제60조-제62조)

#### 제13장 벌칙 및 행정벌 (제63조-제65조)

#### 제14장 경과규정 (제66-제68조)

독일 지급결제서비스감독법은 유럽지침인 PSD2를 국내법화한 것이므로 특별한 별도의 국내법적 의미를 도출하기는 어렵지만, 2가지 측면에서 지급결제서비스가 지급결제서비스 감독법의 감독을 받게 되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즉, 지급결제개시서비스는 고객의 요청에 따라 지급결제서비스를 시작하는 단계에서의 업무로서 이 과정에서 접근계정은 지급결제서비스 제공업체가 아닌 다른 기관에 보관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또한, 지급결제서비스에 새롭게 추가된 새로운 업무 유형으로는 계정정보서비스가 있다. 지급결제서비스 이용자가 다른 기관에 보유한 하나 이상의 계좌에 대한 통합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서비스이다. 즉, 고객 자금이체에 대한 접근이 포함된 경우뿐만 아니라 결제계정과 관련된 데이터에 대한 단순한 접근도 감독대상으로 포함되게 되었으며, 이는 우리나라 금융위원회가 디지털금융혁신방안을 통하여 제시한 My Paymnet 업종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한편, 지급수단 발행 또는 지급거래수단의 획득(Akquisitionsgeschäft)에 대한 정의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디지털 지급결제서비스는 더 이상 별도의 표준 및 요구사항이 적용되는 결제서비스가 아니라, 지급결제서비스가 가지는 기존 개념과 새로운 유형의 지급거래수단이 더해지게 된 것이다.

그리고, 지급결제서비스 유럽지침의 독일 국내법으로의 수용과정에서는 특정 결제시스템 및 통신부분에 대한 업계의 범위가 좁혀지는 효과를 가지고 왔는데, 지급결제수단의 승인요건 면제 대상은 매우 좁은 범위의 상품 및 사회적 특성, 조세 관련 특정 목적을 가진 것으로 대상이 제한된다. 통신 관련 데이터의 경우에도 특정 상한성을 초과하지 않는 한 특정유형의 거래에 대한 승인요건에서만 면제된다.

한편 지급결제서비스감독법은 결제 및 전자화폐 기관의 감독을 위해 물적설비 외에도 기술요건을 상향하였는데, 보안사고 처리나 민감한 결제데이터 처리 및 위기상황에서 사업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 등을 통계데이터 수집 및 보안전략과 동일한 수준에서 실현되도록 하고, 보관의무 등을 부과한 것이 그것이다.

계정정보서비스를 독점하거나 계정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지급결제서비스업체는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으므로, 등록을 통한 감독만을 받게 된다. 한편, 지급개시 및 계정정보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책임 분담의 방법으로 책임보험 가입과 같은 의무나 조치도 요구된다.<sup>251)</sup>

## 4. 일본

### (1) 자금결제법

#### 1) 자금결제법의 연혁 및 구성

일본의 자금결제법(資金決済に関する法律)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이용자들의 요구의 다양화 등 자금결제시스템에 관한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①선불식지불수단(前払式支払手段), ②자금이동업(資金移動業), ③자금청산업(資金清算業: 은행 간의 자금결제의 강화 및 면허제)을 내용으로 하여 2010년 4월 1일에 시행되었다.<sup>252)</sup>

2016년에는 자금결제법 개정을 통해 가상통화 개념을 정의하고 가상통화교환업자의 금융청 등록을 의무화했으나, 2020년 개정에서는 암호자산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가상자산교환업자 정의에 가상자산보관업자 포함, 자산관리 등에 이용자 보호 강화를 규정한 바 있다.<sup>253)</sup>

251) BaFin, Payment services supervision law [https://www.bafin.de/EN/PublikationenDaten/Jahresbericht/Jahresbericht2017/Kapitel2/Kapitel2\\_4/kapitel2\\_4\\_node\\_en.html](https://www.bafin.de/EN/PublikationenDaten/Jahresbericht/Jahresbericht2017/Kapitel2/Kapitel2_4/kapitel2_4_node_en.html) 2020.10.20. 최종검색)

252) 일본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 원문은 電子政府の総合窓口(e-Gov), 資金決済に関する法律, ([https://elaws.e-gov.go.jp/search/elawsSearch/elaws\\_search/lsg0500/detail?lawId=421AC0000000059](https://elaws.e-gov.go.jp/search/elawsSearch/elaws_search/lsg0500/detail?lawId=421AC0000000059)) 2020.10.5. 최종검색)

253) 최근 일본 자금결제법 개정 동향에 대하여는, 조영은, 일본의 가상자산(Virtual Assets) 이용자 보호 규율 강화 - 2019년 자금결제법 및 금융상품거래법 개정 내용을 중심으로,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 국회입법조사처, 2020. 4.29., 3~7면을 참고.

이러한 일본의 자금결제법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장 총칙 (제1조.제2조)

제2장 선불식지불수단

제1절 총칙 (제3조.제4조)

제2절 자가형발행자 (제5조.제6조)

제3절 제3자형발행자 (제7조-제12조)

제4절 정보의 제공, 발생보증금의 공탁 그 밖의 의무 (제13조-제21조의2)

제5절 감독 (제22조 - 제29조)

제6절 잡칙 (제29조의2 - 제36조)

제3장 자금이체

제1절 총칙 (제37조 - 제42조)

제2절 업무 (제43조-제51조의2)

제3절 감독 (제52조 - 제58조)

제4절 잡칙 (제59조 - 제63조)

제3장의2 암호자산

제1절 총칙 (제63조의2-제63조의7)

제2절 업무 (제63조의8-제63조의12)

제3절 감독 (제63조의13-제63조의19)

제4절 잡칙 (제63조의19의2- 제63조의22)

제4장 자금청산

제1절 총칙 (제64조-제68조)

제2절 업무 (제69조-제75조)

제3절 감독 (제76조-제82조)

제4절 잡칙 (제83조-제86조)

제5장 인정자금결제사업자협회 (제87조-제98조)

제6장 지정분쟁해결기관 (제99조-제101조)

제7장 잡칙 (제102조-제106조)

제8장 벌칙 (제107조-118조)

부칙

## 2) 주요 내용

### ① 선불식 지불수단

선불식 지불수단은 자가형(발행자가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제3자형(발행자 이외에 가맹점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발행자로부터 자금을 회수하는 것)이 있는데, 자가형은 신고제이고 제3자형은 등록제로 되어 있다(제5조, 제7조).

선불식 지불수단의 발행자는 기준일 미사용 잔고가 기준액(현행 1천만엔)을 넘는 경우에는 미사용잔고의 1/2 이상에 상당하는 액의 발행보증금을 공탁소에 공탁하지 않으면 안 되며(제14조), 이것에 대신하는 자산보전방법으로서 은행이나 부령에 규정된 자가 발행자를 위하여 내각총리대신의 명령에 응하여 발행보증금을 공탁하는 취지의 계약(발행보증금보전계약)을 체결하거나(제15조), 신탁회사 등에 신탁하는(발행보증금신탁) 방법이 인정된다(제16조).

선불카드의 권면, 선불카드와 일체가 되어 발행되는 서면에는 발행자, 금액, 유효기간, 고충처리기관 등 일정한 정보를 표시하게 하여, 이용자에 대하여 정보의 제공을 의무화하고(제13조 제1항) 서버형 선불카드와 같이 유체물을 이용자에게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권면의 표시를 갈음하는 방법을 부령에 정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제13조제2항).

### ② 자금이체

은행 이외의 자가 환거래(소액의 거래로서 부령으로 정하는 것에 한함)을 업으로 영위하는 것을 인정, 자금이체업으로서 총리의 등록을 얻은 자가 자금이체업을 영위하는 것이 가능하다(법 제2조제2항, 제3항, 제37조). 자금이체업자는 업무범위에 제한이 없고 겸업이 가능하며,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제3자에게 자금이체업을 위탁하는 것도 가능하다(법 제38조제1항제8호, 제50조).

### ③ 암호자산

일본은 2016년 자금결제법, 범죄수익이전방지법 등을 개정하여 결제수단으로써 가상통화의 정의와 가상통화취급업소에 대한 등록제의 신설 뿐만 아니라 가상통화취급업자를 범죄수익이전방지법상 특정사업자에 포함시켜 규제하고 있다. 즉, 2019년에는 가상통화 유출피해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자금결제법, 범죄수익이전방지법을 개정하였고, 금융상품거래법의 개정을 통해 가상통화의 자산성을 인정하고 가상통화의 현물거래와 가상통화 관련 파생상품거래를 규제대상에 추가하였다.<sup>254)</sup> 자금결제법 개정에서 법률상 명칭인 가상통화는 암호자산으로 바뀌었고, 가상자산교환업자 정의에 가상자산보관업자를 포함시키고, 자산 관리 등에 이용자보호 강화 등이 포함된 바 있다.<sup>255)</sup>

이는 가상통화의 성격을 지급결제수단으로 이해하였던 초기의 의도나 경향과 달리 실제로는 투자대상이 되어 자산화 과정을 거치게 되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가상자산교환업자는 이용자 보호에 적합한 방법으로 가상자산을 관리할 의무를 가지며, 그 외의 방법으로 관리되는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동종 동량의 가상자산(이하 '이행보증가상자산')을 보유하고 관리하여 이용자를 보호할 의무를 지게 된다(법 제63조의11제2항, 제63조의11의2). 일본 금융청의 법률 개정안에 대한 설명자료에 따르면 개정 법률은 가상자산교환업자에게 해킹에 대비하여 이용자의 자산을 안정적인 방법으로 보관하게 하고(예: 콜드월렛) 가상자산 교환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만 그 예외(예: 핫월렛)를 인정하고 있다.<sup>256)</sup> 이러한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가상자산교환업자는 고객의 인출권을 보호하기 위해 이행보증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관리해야하며, 이용자들이 가상자산의 위험성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투자 할 수 있도록 가상자산교환업자의 허위광고 및 오인 광고가 금지된다(법 제63조의9의2, 제63조의9의3).

254) [https://elaws.e-gov.go.jp/search/elawsSearch/elaws\\_search/lsg0500/detail?lawId=421AC000000059](https://elaws.e-gov.go.jp/search/elawsSearch/elaws_search/lsg0500/detail?lawId=421AC000000059) 2020.10.5. 최종검색

255) [https://elaws.e-gov.go.jp/search/elawsSearch/elaws\\_search/lsg0500/detail?lawId=421AC000000059](https://elaws.e-gov.go.jp/search/elawsSearch/elaws_search/lsg0500/detail?lawId=421AC000000059) 2020.10.5. 최종검색

256) [https://elaws.e-gov.go.jp/search/elawsSearch/elaws\\_search/lsg0500/detail?lawId=421AC000000059](https://elaws.e-gov.go.jp/search/elawsSearch/elaws_search/lsg0500/detail?lawId=421AC000000059) 2020.10.5. 최종검색

가상자산교환업자에게 업무에 관한 광고 시 상호, 가상자산과 법적 성격 및 이용자의 거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사항들을 표시하여 이용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의무와 가상자산교환업무 관련 광고 시 허위 사실을 표시하거나, 가상자산의 성격을 오인하게 할 만한 표시를 금지하여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였다(제63조의10).

암호자산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가상자산교환업자는 고충처리제도 및 분쟁 해결제도를 운용하여야 한다(제63조의12).

한편, 가상자산보관업자에 대한 규제가 법개정에 의해 신설되었으며(법 제2조제7항제4호), 이는 가상자산보관업자가 그동안 등록 의무 등의 규제를 적용받지 않았던 것에 대하여 가상자산교환업자 정의에 포함되면서 법률상 규제의 대상이 되었다.

#### ④ 자금 청산·결제

자금결제법 제4장에서는 총리의 면허를 얻어 채무인수 등에 의한 자금청산을 업으로 행하는 자금 청산결제관을 인정함으로써 은행간 자금결제의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제64조에서 제86조).

자금결제법 제2조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자금청산 업무”와 “자금청산 기관”은 각각 ‘외환 거래에 따른 채권 채무의 청산을 위한 채무 부담, 개정 기타의 방법으로 은행 등의 사이에 생긴 외환 거래에 따른 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제64조 제1항의 면허를 받은 자’로 규정하고 있다.<sup>257)</sup>

한편, 자금결제법 제69조에서는 자금청산 기관이 자금청산 업무 및 이와 관련된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다른 업무를 허용하고 있으며, 제70조에서는 자금청산 업무의 일부를 내각 총리 대신의 승인을 받은 경우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57) [https://elaws.e-gov.go.jp/search/elawsSearch/elaws\\_search/lsg0500/detail?lawId=421AC000000059](https://elaws.e-gov.go.jp/search/elawsSearch/elaws_search/lsg0500/detail?lawId=421AC000000059) 2020.10.5. 최종검색

## (2) 소액결제후불서비스의 도입과 할부판매법 개정

2019년 11월, 일본 경제산업성은 IT(정보기술) 스타트업 기업들이 비현금의 소액결제 서비스 시장에 진입하기 쉽도록 할 환경을 조성할 방침임을 표명하고, 개인 한도액이 10만 엔까지인 분할지급이나 리볼빙(revolving payment) 등에 대해서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 등 요건의 완화를 검토하여, 인터넷상의 통신판매나 서비스결제에 관한 경쟁을 촉진하여 심사기술의 향상과 비현금결제의 확대를 도모할 예정임을 밝힌 바 있다.<sup>258)</sup>

그 후 그 후 내각은 2020년 3월 3일 할부판매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참의원을 거쳐 중의원에서 같은 해 6월 16일 가결되었고, 6월 24일 공포(법률 번호 64)되었다.<sup>259)</sup>

개정 할부판매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sup>260)</sup>

### (1) 소액의 분할 후불 규제의 도입

소액(한도액 10만 엔 이하)의 분할 후불 서비스의 제공사업자에 대해서 등록 제도를 창설한다. 등록요건으로서는 순자산요건([자산-부채]≥자본금 등×90/100을 그룹 또는 5년 이내에 달성 등)과 적절한 한도액 심사에 관한 요건을 규정함과 동시에 소비자보호규제와 보안규제에 대해서는 종래의 신용카드회사와 동등하게 부과하기로 한다.

### (2) 심사기법의 고도화에 대한 대응

축적된 데이터 등에 따른 고도의 한도액 심사기법에 대해서 경제산업대신이 인정하는 제도를 창설한다. 인정 사업자는 인증을 받은 심사기법을 가지고 현재의 지불 가능 예상액 조사에 갈음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그 때, 사전에 심사기법 및 내부관리 체제를 확인함과 동시에 사후 정기적 보고 등에 의해 실시 상황을 감독한다. 현저히 부적정한 경우에는 개선명령, 인정취소 등을 한다.

258) 강영기, “일본의 소액결제 관련 제도정비의 최근 동향에 대해서”, 한국법제연구원 지급결제포럼 Kick-off 회의, 2020.6.12., 발제문 1면(원출처: “少額決済 参入しやすく 経産省、後払い方式の要件緩和 キャッシュレス 拡大促す”, 2019.11.12.付 日本経済新聞 朝刊 (<https://www.nikkei.com/article/DGKKZO52030130R11C19A1EE8000/>))

259) <https://www.sangiin.go.jp/japanese/joho1/kousei/gian/201/meisai/m201080201039.htm> (2020. 10.5. 최종검색)

260) 강영기, “일본의 소액결제 관련 제도정비의 최근 동향에 대해서”, 한국법제연구원 지급결제포럼 Kick-off 회의, 2020.6.12., 발제문 12면(원출처: 경제산업성 웹페이지 <https://www.meti.go.jp/press/2019/03/20200303001/20200303001.html>)

**(3) QR코드 결제 사업자 등의 보안대책의 강화**

현행 신용카드 회사, 해당중개업자, 가맹점에 더하여, 새롭게 결제 시스템에서 대량의 신용카드 번호 등을 취급하는 사업자(결제대행업자, QR코드 결제사업자·EC 쇼핑몰 사업자 등)에 대해서도 신용카드 번호 등의 적절한 관리를 의무화하기로 한다.

**(4) 기 타****1) 서면교부의무의 개선**

신용카드 회사의 이용자에 대한 서면교부 의무에 대하여 전자적 방법을 포함한 정보제공의무로 하는 등 교부 방법을 유연화 한다.

**2) 업무정지명령의 도입**

신용카드회사에 대한 감독수단으로서 실효적인 이행확보조치를 강구한다는 관점에서 현재 조치가 없는 업무정지명령을 새로이 신설한다.

**(3) 금융 서비스 중개업의 도입과 금융상품판매법 개정**

한편, 2019년 12월 20일에 정리된 금융심의회 보고서(『金融審議會 決済法制及び金融サービス仲介法制に関するワーキング・グループ報告』)를 토대로 금융상품의 판매 등에 관한 법률, 금융상품거래법,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 등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구성된 「금융서비스의 이용자 편리성 향상 및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금융상품의 판매 등에 관한 법률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金融サービスの利用者の利便の向上及び保護を図るための金融商品の販売等に関する法律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案』)은 2020년 3월 6일 일본 국회에 제출된 바 있다.<sup>261)</sup> 동 개정 법안은 「금융 상품 판매 등에 관한 법률」(금융상품 판매법)을 개정하여 「금융 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법률」로 개칭한 후, 새로운 업종으로서 「금융 서비스 중개업」을 창설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sup>262)</sup>

261) 강영기, “일본의 소액결제 관련 제도정비의 최근 동향에 대해서”, 한국법제연구원 지급결제포럼 Kick-off 회의, 2020.6.12., 발제문 1면(원출처: “少額決済 参入しやすく 経産省、後払い方式の要件緩和 キャッシュレス拡大促す”, 2019.11.12.付 日本経済新聞 朝刊 (https://www.nikkei.com/article/DGKKZO52030130R11C19A1EE8000/) )

262) 강영기, “일본의 소액결제 관련 제도정비의 최근 동향에 대해서”, 한국법제연구원 지급결제포럼 Kick-off 회의, 2020.6.12., 발제문 6면.

그 후 이 법률안은 6월 5일 국회를 통과 성립되었다.<sup>263)</sup> 개정 금융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sup>264)</sup>

- (1) 법률명칭의 변경  
 ◇ 「금융상품의 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법률」로 명칭을 변경한다.
- (2) 금융서비스 중개업의 창설  
 ① 정의, 업무범위 등  
 ◇ 「금융서비스 중개업」이란 예금 등 매개 업무, 보험 매개 업무, 유가증권 등 중개업무, 대부업 대출 매개 업무의 어느 하나를 업(業)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한다(금융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법률(안)11조)  
 ◇ 다만, 「고객에 대해 고도로 전문적인 설명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정령에서 규정하는 것」(주 1)을 금융서비스 중개업자는 취급할 수가 없다.(동 11조)  
 ◇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금융서비스 중개업무(전자금융서비스 중개업무)를 하는 금융서비스 중개업자는 일정한 요건(주 2)을 충족하면, 전자결제 등 대행업을 수행할 수 있다.(동 18조)  
 ◇ 소속제는 채용하지 않는다.
- ② 진입규제  
 ◇ 금융서비스 중개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내각총리대신의 등록을 받아야만 한다(등록제).(동 12조)  
 ◇ 금융서비스 중개업자에게 보증금의 공탁 등을 의무화한다(손해배상자금역량 확보의 관점).(동 22조)
- ③ 업(業)규제  
 ◇ 금융서비스 중개업자가 취급하는 서비스 분야에 따른 각종 규제를 정비한다.  
 (공통규제) 성실의무(동 24조),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보수 등 정보의 제공(동 25조), 중요사항의 설명의무(동 26조), 이용자 정보의 적정한 취급(동 26조), 이용자 재산의 수취금지(동 27조), 장부서류의 작성(동 33조) 등  
 (은행 분야의 규제) 정실(情實)용자의 매개 금지 등(동 29조에 의한 은행법의 준용)  
 (증권 분야의 규제) 내부자 정보를 이용한 권유의 금지, 손실보전의 금지, 고객주문의 동향 등의 정보를 이용한 자기매매의 금지 등(동 31조에 의한 금융상품거래법의 준용)

263) <https://www.fsa.go.jp/common/diet/index.html> 2020. 10.12. 최종검색

264) 강영기, “일본의 소액결제 관련 제도정비의 최근 동향에 대해서”, 한국법제연구원 지급결제포럼 Kick-off 회의, 2020.6.12., 발제문 6~9면.(横山 淳, “国会提出 資金移動、新金融サービス仲介の法律案 金融商品販売法、資金決済法の改正の概要”, DIR(大和総研) Report 2020.3.17. 번역)

(보험 분야의 규제) 자기계약의 금지, 고지의 방해 금지, 부적절한 환승모집의 금지 등(동 30조에 의한 보험업법의 준용)

④ 기타

◇ 당국에 의한 감독(동 35~39조), 자율규제기관(인정 금융서비스 중개업협회)(동 40~50조), 재판 외 분쟁해결제도(동 28, 51~73조), 유가증권 등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의 외무원(外務員)제도(동 75~80조)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한다.

(3) 환거래에 관한 규정의 정비

◇ 일정한 수납 대행(주 1)에 대해 환거래에 해당하는 것을 명기한다.(금융상품판매법 등 개정법안에 따른 자금결제법 2조의2)

(4) 선불식 지불수단(선불카드 등)에 관한 규정의 정비

◇ 선불식 지불수단 발행자에 대하여 내각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불식 지불수단의 이용자의 보호를 도모하며, 선불식 지불수단의 발행 업무의 건전하고 적절한 운영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의무화한다.(동 13조)

◇ 선불식 지불수단 발행자에 대해 선불식 지불수단 발행업무의 일부를 제삼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위탁처에 대한 지도 기타 적정하고 확실한 수행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의무화한다.(동 21조의2)

◇ 내각총리대신이 선불식 지불수단 발행자의 선불식 지불수단 발행업무의 건전하고 적절한 운영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필요의 한도 내에서 업무개선명령을 내리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주 2) (동 25조)

## 5. 싱가포르

### (1) 개 관

싱가포르는 2019년 지급결제서비스법(Payment Services Act: 이하 ‘PSA 2019’라 함)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sup>265)</sup> 지급결제서비스 업무는 7개 유형으로 구분되고, 3종의 라이선스를 운영하고 있다.<sup>266)</sup>

265) 싱가포르 지급결제서비스법 원문은 Singapore Statutes Online, PAYMENT SERVICES ACT 2019(No. 2 of 2019) (<https://sso.agc.gov.sg/Acts-Supp/2-2019/Published/20190220?DocDate=20190220>) 2020. 10.5. 최종검색)

PSA 2019의 규율을 받는 7가지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PSA 2019 제42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싱가포르 통화청(the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MAS)의 지정을 받거나, 또는 PSA 2019 제6조 제4항에 규정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싱가포르 지급결제서비스법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장 총론 (제1조- 제4조)
제2장 지급결제서비스 제공자의 라이선스
제1절 지급결제서비스 제공자의 라이선스 (제5조-제13조)
제2절 사업행위
제1관 일반 (제14조-제21조)
제2관 주된 지급결제기관 (제22조-제26조)
제3절 라이선스 통제자의 통제 (제27조-제33조)
제4절 라이선스 담당기관의 통제 (제34조-제36조)
제5절 라이선스의 심사 (제37조-제40조)
제3장 지급결제시스템
제1절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정보수집권한 (제41조)
제2절 지급결제시스템의 지정 (제42조-제46조)
제3절 운영자의 의무와 지정지급결제시스템의 정산기관 (제47조-제50조)
제4절 접근영역 (제51조-제54조)
제5절 자발적 사업이전 (제55조-제57조)
제6절 지정지급결제시스템의 운용자의 통제자의 통제 (제58조-제64조)
제7절 지정지급결제시스템의 정산기관과 운용자의 담당기관의 통제와 (제65조-제67조)
제8절 지정지급결제시스템의 운영자 및 정산기관의 심사 (제68조-제71조)
제4장 검사와 조사 (제72조- 제76조)
제5장 긴급권한 (제77조-제83조)
제6장 외국규제기관에 대한 지원 (제84조-제89조)
제7장 위반 (제90조-제96조)
제8장 보칙 (제97조-제108조)

266)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PAYMENT SERVICES ACT- A GUIDE TO THE ESSENTIAL ASPECTS OF THE PAYMENT SERVICES ACT 2019』, 2019.(<https://www.mas.gov.sg/-/media/MAS/Regulations-and-Financial-Stability/Regulations-Guidance-and-Licensing/Payment-Service-Providers/Guide-to-the-Payment-Services-Act-2019.pdf?la=en&hash=B03712F4EEEE907C39BA2C12DE63A545495EE1C2> 2020.10.12. 최종검색)

제9장 후속개정법률들 (제109조-제120조)
제10장 약어 및 전환규정 (제121조-제126조)
별표 1 지급결제서비스
제1장 지급결제서비스가 되는 서비스
제2장 지급결제서비스가 되지 못하는 서비스
제3장 해석
별표2 특정규정
1. 제13조(3)
2. 100조(4)

## (2) 주요 내용<sup>267)</sup>

### 1) 결제서비스의 종류

PSA 2019의 규율을 받는 결제서비스의 종류는 계좌개설(account issuance), 국내송금(domestic money transfers), 국제송금(cross border money transfers), 가맹점 인수(merchant acquisition), 전자화폐 발행(e-money issuance), 디지털토큰(digital payment token), 환전(money-changing) 등 7가지로 분류된다(제6조 제4항).

### 2) 적용대상 및 결제서비스 지정 제도

싱가포르 내에서 계좌개설, 국내송금, 국제송금, 가맹점 인수, 전자화폐 발행, 환전 등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물론 디지털토큰을 발행, 디지털토큰을 중개하거나 디지털토큰 거래소를 운영하는 사업자까지 모두 포함된다. 싱가포르 통화청(MAS)은 싱가포르 국내에서 널리 사용되거나 다른 결제체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제서비스를 PSA 2019 제42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지정(Designation)할 수 있다.

267) 싱가포르 지급결제서비스법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이현균, 싱가포르 결제서비스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최신외국법제정보 2019 제5호, 한국법제연구원. 참조.

### 3) 면허제도(Licensing)

싱가포르 통화청은 허가제도를 통해서 각각의 결제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범위와 규모에 맞추어 광범위한 규제가 가능한데, 면허제도는 환전면허(Money-changing license), 일반결제기관면허(Standard payment institution license), 주요결제기관면허(Major payment institution license) 등 3가지로 구분된다(제6조 제2항).

환전면허(Money-changing license)는 일반결제기관면허 또는 주요결제기관면허가 없는 사람이 환전서비스만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제도(제6조 제3항)이지만, 환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환전서비스 외에 하나 이상의 다른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하고자 할 때는 환전면허 대신 일반결제기관면허 또는 주요결제기관면허를 발급받아야 한다(제6조 제4항 (b)호). PSA 2019 제6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7가지 서비스 가운데 환전서비스만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일반결제기관면허(Standard payment institution license)를 발급받아야 한다. 주요결제기관면허(Major payment institution license) 제도에 따라 PSA 2019 제6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7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가운데 PSA 2019 제6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결제기관면허 대신 주요결제기관면허를 발급받아야 한다.

### 4) 디지털 결제토큰 서비스에 대한 규제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

PSA 2019에서는 디지털 결제토큰 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추가하였고, 암호화폐를 가치 저장수단(거래 또는 교환의 매개체)으로 인정하고 이에 대한 규제 조항도 신설하였다.

### 5) 이용자 보호 제도<sup>268)</sup>

싱가포르통화청(MAS)은 2020년 9월 5일 수정된 전자지급결제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

268) Guidelines for E-Payments User Protection

([https://www.mas.gov.sg/-/media/MAS/Regulations-and-Financial-Stability/Regulations-Guidance-and-Licensing/Payment-and-Settlement-Systems/PSOA-Guidelines/E\\_payments-User-Protection-Guidelines-WEF-5-September-2020.pdf](https://www.mas.gov.sg/-/media/MAS/Regulations-and-Financial-Stability/Regulations-Guidance-and-Licensing/Payment-and-Settlement-Systems/PSOA-Guidelines/E_payments-User-Protection-Guidelines-WEF-5-September-2020.pdf) 2020.10.5. 최종검색)

이드라인(E-PAYMENTS USER PROTECTION GUIDELINES)을 공표하고, 무단거래로 인한 금융보안사고 발생시 무단 거래로 인한 손실에 대한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제5장의 무단거래로 인한 손실에 대한 책임 부분에서는 손실에 대한 책임의 귀속을 계정 소유자로 규정함으로써 원칙적으로 금융서비스제공자(financial institution (“FI”))의 책임을 면탈하고 있다. 다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계정의 경우에는 계정 소유자에게 고의·중과실이 없고 금융서비스제공자 및 제3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 계정 소유자는 무단 거래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 일일 1,000 싱가포르 달러를 상한으로 하여, 과실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게 된다.

#### 5. 무단 거래로 인한 손실에 대한 책임 (Liability for losses arising from unauthorised transactions )

5.1 섹션 5는 책임있는 FI가 발행 한 신용 카드, 청구 카드 또는 직불 카드와 관련하여 책임있는 FI에 적용되지 않는다.

#### □ 계정 소유자가 실제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경우

5.2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계정의 계정 소유자는 계정 사용자의 고의 및 중과실이 주요 원인인 무단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실제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진다.

##### 손실

고의 및 중과실에는 계정 이용자가 고의로 제3조를 준수하지 않은 상황이 포함된다. 계정 이용자는 계정 이용자가 무모한 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책임있는 FI가 합리적으로 요구하는 정보를 책임있는 FI에 제공해야 한다. 이 단락에서 계정 소유자가 책임을 지는 실제 손실은 계정 소유자와 책임있는 FI가 동의한 해당 거래 한도 또는 일일 지불 한도로 제한된다.

5.3 의심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계정 이용자가 거래 (“승인 된 거래”)를 알고 동의 한 경우, 그러한 거래는 계정 소유자가 거래에 동의하지 않았더라도 미승인거래로는 판단하지 않는다. 여기에는 계정 이용자가 계정 소유자 또는 책임있는 FI를 속이기 위해 사기적 행위를 하는 상황도 포함된다.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계정의 계정 소유자는 계정 소유자와 담당 FI가 동의 한 적용 가능한 거래 한도 또는 일일 지불 한도까지 모든 승인 된 거래에 대해 책임을 진다.

### □ 계정 소유자가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

#### 책임있는 FI의 조치 또는 누락으로 인한 손실

5.4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계정의 계정 소유자는 책임있는 FI의 조치 또는 누락으로 인해 손실이 발생하고 계정 이용자가 섹션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지 않는 경우 무단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5.5 책임있는 FI의 모든 조치 또는 누락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a) 책임있는 FI, 그 직원, 대리인 또는 책임있는 FI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계정을 통해 책임있는 FI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계약한 아웃소싱 서비스 제공업체의 사기 또는 과실
- (b) 금융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책임있는 FI에 대해 당국이 부과한 요구 사항을 책임있는 FI 또는 그 직원이 준수하지 않은 사실
- (c) 제4조에 명시된 의무에 대한 책임 FI의 불이행.

#### 독립적인 제3자의 조치 또는 누락으로 인한 손실

5.6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계정의 계정 소유자는 \$ 1,000를 초과하지 않는 승인되지 않은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단, 5.5 항에 언급되지 않은 제3자에 의한 조치 또는 누락으로 인해 발생하고 계정 이용자가 제3조의 의무를 준수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 계정 소유자의 책임을 줄이기 위한 동의

5.7 계정 계약이 본 조에서 규정된 상황과 동일한 때, 계정 소유자의 책임금액이 낮게 지정된 경우에도 담당 FI는 계정 계약에 따라 모든 계정 소유자에 대하여 동일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5.8 책임있는 FI는 경우에 따라 본 조에 명시된 계정 소유자의 책임을 감경할 것을 제안 할 수 있다. 다만, 책임있는 FI가 더 낮은 금액을 계정 소유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라야 한다.

#### 이 섹션을 공동 계정에 적용

5.9 보호 대상 계정이 공동 계정 인 경우, 본 조에 명시된 손실에 대한 책임은 공동 계정의 각 계정 소유자에게 공동으로 적용된다.

## 6. 이스라엘

### (1) 개 관

이스라엘은 지급결제서비스법(Paymetn Services Law, 5779-2019; חוק שירותי תשלום, התשע"ט)을 2019년 제정, 2020년 시행되었다. 지급결제서비스법은 총 12개장 79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sup>269)</sup> 그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장 정의(제1조)
제2장 지급결제서비스 계약(제2조-제6조)
제3장 적절한 공개 및 사기 금지(제7.제8조)
제4장 지급결제 작동 - 실행, 중지 및 책임
제1절 지급결제 작동 실행 (제9조-제15조)
제2절 지급결제 작동 중지 (제16조-제18조)
제3절 지급결제 작동 실행에 대한 책임 (제19조-제21조)
제5장 지급결제수단 사용 동결 (제22조.제23조)
제6장 지급결제수단 도용 (제24조-제32조)
제7장 청구 권한(제33조-제39조)
제8장 제재 (제40조)
제9장 재정적 제재 (제41조-제44조)
제10장 보칙 (제46조-제54조)
제11장 다른 법률 개정 (제55조-제76조)
제12장 시행일, 적용가능성, 경과규정 및 한시규정 (제77조-제79조)

### (2) 주요 내용

이스라엘 지급결제서비스법은 기존의 체크카드법(Debit Cards Law)을 대체한 것으로 진입규제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은 배제하고 i) 지급결제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총칙, ii) 지급결제서비스 제공자와 그 이용자(사업자(가맹점) 및 소비자)의 법률관계, 그리고, iii)

269) 이스라엘 지급결제서비스법 원문은 -2019ט"התשע חוק שירותי תשלום, [https://fs.knesset.gov.il/20/law/20\\_lsr\\_528386.pdf](https://fs.knesset.gov.il/20/law/20_lsr_528386.pdf) 2020.10.5. 최종검색)

이용자 보호 및 지급결제서비스 제공자와의 계약에 대한 권리 등에 대하여 주로 규정하고 있다.<sup>270)</sup>

이스라엘 지급결제서비스법에서는 지급결제서비스업자와 고객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특별법으로 모든 지급결제수단을 통일적으로 규율하고 있으며, 고객보호강화라는 점에서 소비자법의 일종으로서, 행정제재 및 형사처벌에 의한 민사규율을 다루는 한편, 지급결제거래 실행을 위한 책임 지급결제거래 시행의 거절, 구제 및 특별한 인증코드에 의한 지급결제, 지급결제주문의 취소, 지급결제수단의 무권한 이용에 대한 책임 등을 규율하고 있다.<sup>271)</sup>

한편, 2018년 5월 시행된 「개인정보보호규정(the Privacy Protection (Data Security) Regulations)」에서는 개인정보에 대한 규제가 GDPR 수준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sup>272)</sup>

## 7. 중 국

중국은 비은행 결제기관의 송금업무와 결제업무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법에서 함께 규제하고 있는데, 이들 기관의 법적지위는 중국인민은행의 감독관리를 받는 ‘비금융 기관’ 혹은 ‘비은행 지급결제기관’이며, 결제정보의 중개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sup>273)</sup>

270) Shoval, Adi, The Israeli Payment Services Law Enters into Force, Jan 30, 2020, PEARL COHEN (<https://www.pearlcohen.com/the-israeli-payment-services-law-enters-into-force/> 2020.10.12. 최종검색)

271) 이스라엘 지급결제서비스법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Plato-Shinar, Ruth, The New Israeli Law on Payment Services: Towards a New World of Digital Payments .)2020( שלומים דיגיטליים :-2019 חוק שירותי תלום, 35 Banking & Finance L. Rev. 351 (2020), Available at SSRN: <https://ssrn.com/abstract=3626178>; <https://www.pearlcohen.com/the-israeli-payment-services-law-enters-into-force/> 참조(2020.10.5. 최종검색).

272) Yuval Shalhevet, Itamar A. Cohen, Associate, Roy Keidar, Special Counsel, 『The Legal 500 & The In-House Lawyer - Comparative Legal Guide Israel: Fintech (2nd edition)』 5. How does the regulation of data in your jurisdiction impact on the provision of financial services to consumers and businesses? ([https://www.tarbut-hadiur.gov.il/sites/default/files/Israel\\_%20Fintech%20%282nd%20edition%29InHouseLawyer.pdf](https://www.tarbut-hadiur.gov.il/sites/default/files/Israel_%20Fintech%20%282nd%20edition%29InHouseLawyer.pdf) 2020.10.12. 최종검색)

273) 안수현, 해외 주요국의 간편결제 서비스 및 입법정책 현황과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 정책연구용역보고서, 2019.11., 175면

중국인민은행이 2010년 제정한 「비금융기관 결제서비스 관리방법(非金融机构支付管理办法)」에 따라,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모든 비금융 결제기관은 ‘결제업무허가증(支付业务许可证, Payment business license)’을 발급받아야 하고, 결제업무허가증을 취득한 비은행 결제기관은 중앙정부인 국무원의 동의 하에, 민정부가 설립허가하고 인민은행이 관리하는 중국지급청산협회에 반드시 회원가입을 하여야 한다.<sup>274)</sup>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 중국의 비은행 지급결제기관인 알리페이(Alipay)의 금융상품인 위어바오는 2013년 출시 초기 중국의 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로부터 펀드판매관리방법과 펀드판매결산자금 관리임시방법 등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발표하기도 하였다.<sup>275)276)</sup>

한편, 2013년 3월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증권투자펀드 판매사의 제3자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한 업무에 관한 임시규정(证券投资基金销售机构通过第三方电子商务平台开展业务管理暂行规定)」을 마련하여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빅테크기업에 대하여 펀드 판매업자로서의 제3자 지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채택한 바 있다.

2015년, 중국인민은행은 국무원 소속 10개 부처와 공동으로 「인터넷금융의 건강한 발전에 관한 지도의견(关于促进互联网金融健康发展的指导意见)」(이하 지도의견)을 발표하고, 2016년 4월에는 국무원 판공처에서 「인터넷금융 리스크 전담 조정업무 실시방안에 관한 통지(国务院办公厅关于印发互联网金融风险专项整治工作实施方案的通知)」를 마련하여 비은행 지급결제기관이 여러 은행시스템에 연결하여 청산업무를 진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비은행 지급결제기관의 은행 간 결제업무는 반드시 인민은행의 은행 간 청산시스템 혹은 자격조건에 부합하는 청산기관에서 진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2017년 8월, 중국

274) 노은영, “중국의 소액결제 관련 이용자 보호정책 추진 현황과 쟁점”, 한국법제연구원 제5차 지급결제포럼, 2020.8.28., KeyNote Speech 자료 1면

275) <https://tech.sina.com.cn/i/2013-07-05/20168512514.shtml> 2020. 10. 20. 최종 검색

276) 알리페이는 인민은행에서 감독하고 위어바오를 운영하는 텐홍펀드는 증감회에서, 그리고 위어바오의 자금이 은행에 예치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자금은 은감회의 감독대상이 되며, 알리페이 내에서 위어바오는 펀드의 매입과 상환 신청만을 받는 것이므로, 직접적으로 판매를 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감독기관의 주요 규제대상은 펀드운용을 담당하는 텐홍펀드라고 볼 수 있다고 한다(노은영, “중국의 소액결제 관련 이용자 보호정책 추진 현황과 쟁점”, 한국법제연구원 제5차 지급결제포럼, 2020.8.28., KeyNote Speech 자료 3면; 원출처- 黄梓芮, “对余额宝的法律性质分析及金融消费者的权益保护”, 《知识窗(教师版)》 2019年01期).

인민은행 지급결산처는 「비은행지급결제기관 온라인 결제업무의 왕련청산플랫폼으로의 이전에 관한 통지(中国人民银行支付结算司关于将非银行支付机构网络支付业务由直连模式迁移至网联清算平台的通知)」(이하 통지)를 통하여 베이징에 소액지급결제 전문 청산기관인 왕련청산유한회사를 설립한 바 있다.<sup>277)</sup>

그리고, 2019년 1월 14일 중국인민은행은 고객예치자금인 비은행 결제기관의 고객 비부금 유용 및 오용, 분산예치 위험성 등의 이유로 비부금의 결제준비율을 기존 50%에서 100%로 상향조정한 바 있으며, 비은행결제기관들의 수익모델에 기여하였던 비부금을 인민은행에 100% 예치하면서 이러한 수익구조에도 영향을 주게 된 것으로 전해진다.<sup>278)</sup>

무권한 거래 피해 보상과 관련하여, 중국 인민은행은 2015년 「비은행 결제기관 온라인 결제업무 관리방법(非银行支付机构网络支付业务管理办法)」를 제정하고, 간편송금·간편결제인 ‘콰이지에’ 결제에 대해서 은행이 고객자금 관리의 책임 주체로서 은행의 인증시스템 오류뿐만 아니라 지급기관의 오류로 인한 고객자금 손실에 대해서 우선 배상하도록 규정한 바 있다. 즉, 동 관리방법 제19조에서는 “고객의 사유로 인한 자금손실임을 유효하게 입증할 수 없는 때에는 지체 없이 전액 배상하여 고객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어 이용자 보호에 대한 기본 원칙을 정하고 있다.

한편, 중국 모바일결제 시장점유율 1위 업체인 알리페이(支付宝)의 경우, <알리페이 안전보장규칙(支付宝安全保障规则)>에서는 무권한 거래(未经授权支出)에 대해 “제3자가 알리페이 계좌 소유자 혹은 은행 계좌 소유자의 권한위임을 받지 않고 사용자의 알리페이 계좌 잔액, 위어바오 펀드 예치금을 사용하거나 콰이지에결제를 위한 은행 계좌 자금 및 유효기간 내의 지펀바오(集分宝)와 알리페이 홍바오(红包) 등을 연동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무권한 거래 피해의 보상조건에 대해서는 ; 180일 이내에 사실을 통지하고, 당해 계정

277) 노은영, “해외 소액결제시장의 변화와 관련 법제 정비 동향(중국)”, 한국법제연구원 제2차 지급결제포럼, 2020.7.10., KeyNote Speech 자료, 2면

278) 노은영, “중국의 소액결제 관련 이용자 보호정책 추진 현황과 쟁점”, 한국법제연구원 제5차 지급결제포럼, 2020.8.28., KeyNote Speech 자료, 4면

이 알리페이의 실명인증을 받은 것으로서 알리페이가 제공하는 안전조치 수단을 정확히 사용하고 있으며, 현재 사용중인 핸드폰 번호가 연동되어 있어야 할 것을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한다.<sup>279)</sup>

## 제4절 소결 및 시사점

EU PSD2는 지급결제서비스와 관련하여 지급서비스를 중심으로 분류하여 규제함으로써 동일한 지급서비스에 대한 동일한 규제 원칙을 적용하고 있으며, 비금융회사 등에 대한 진입규제를 완화하여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낮은 지급결제서비스에 대하여는 자부금 요건 등 진입규제를 완화 또는 차등적용하고 있다. 즉, 지급지시서비스(PIS)와 계좌정보서비스(AIS) 유형을 지급지시업으로 포함하는 한편, EU 각 회원국에서는 월평균 지급결제 거래액이 3백만 유로 이하인 경우에는 일부 진입규제요건을 면제하고, EMD 개정에 따라 진입규제를 완화 및 다층화하여, 전자화폐기관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범위를 확대한 바 있다. PSD2의 입법목적에서 보듯이, 전자결제 및 소비자 금융정보 보호를 위한 엄격한 보안 요건을 적용과 안전한 인증 체계 구축은 사기 위험 저감 효과와 연결되어 있으며, 지급결제 서비스 요건 투명성 확보 및 지급결제서비스 제공업자와 이용자간 법률관계에 대한 상세한 규정은 혁신적인 모바일·인터넷 지급결제서비스에 대한 안전성과 사기·남용 위험성의 저감, 소비자 보호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sup>280)</sup> 특히, 감독당국 간 조정 기능 및 기술 표준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등은 우리나라 금융당국의 기능 조정에도 일정한 시사점을 주고 있으며,<sup>281)</sup> 동일업무-동일규제 원칙<sup>282)</sup>을 추진하고자 하는 지급결제 분야

279) 노은영, “중국의 소액결제 관련 이용자 보호정책 추진 현황과 쟁점”, 한국법제연구원 제5차 지급결제포럼, 2020.8.28., KeyNote Speech 자료, 5면

280) [https://ec.europa.eu/info/law/payment-services-psd-2-directive-eu-2015-2366\\_en&prev=search](https://ec.europa.eu/info/law/payment-services-psd-2-directive-eu-2015-2366_en&prev=search) 2020.10.12. 최종검색

281)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ko&sl=en&u=https://ec.europa.eu/info/law/payment-services-psd-2-directive-eu-2015-2366\\_en&prev=search](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ko&sl=en&u=https://ec.europa.eu/info/law/payment-services-psd-2-directive-eu-2015-2366_en&prev=search) 2020.10.12. 최종검색

282) 금융결제망 접근을 통한 오픈뱅킹 시스템에는 아직까지 신용카드사 등 여신전문금융업의 참여가 허용되지 않고 있으나, 향후 제2금융권 및 관련단체, 카드사 등에 대한 오픈뱅킹 참가범위에도 이러한 “동일업무-동일규제원칙과 같이 ‘동일업무, 동일리스크,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리스크 관리 능력을 중심으로 참가 요건을 판단할 필요

감독·관리 방식에도 참고가 될 것이다. EU PSD2의 규정은 실제로 소액 지급결제분야에 대한 국내 정책 및 법제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으며,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에서 이에 대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sup>283)</sup>

최근 한국은행은 지급결제시스템 참가와 관련하여 자금이체 업무 수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동일업무, 동일리스크, 동일규제’ 원칙 하에 리스크 관리 능력을 중심으로 참가 요건을 규정한 바 있다.<sup>284)</sup> 즉, 한국은행과 금융결제원은 핀테크기업 등 비금융기관의 지급결제시스템 참가 확대 가능성에 대비하여 상호 협력 하에 소액결제(차액결제\*)시스템 참가기준을 마련하였으며,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소액결제시스템을 통한 고객의 자금이체는 한국은행(한은금융망)을 통한 차액결제 방식으로 금융기관 간 결제(Settlement)가 최종 완결되는 구조로 통합관리할 방침을 밝힌 바 있다.<sup>285)</sup>

또한, 금융위원회가 2019년 발표한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방안]에서도 금융결제업 체계를 전면 개편하여 업종별 규율체계를 기능별 규율 체계로 전환하는 한편, 외국인 간편결제를 허용하고, E-money 라이선스 채택을 통해 종합지급결제업을 도입함으로써 지급결제계좌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여 결제·송금·인출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sup>286)</sup>

EU의 PSD2는 거래의 지리적 및 통화 범위를 확대하고, 신규 지급결제서비스 등 포괄적인 형태의 전자금융거래를 동 지침의 규정범위에 포함함으로써 지급결제서비스의 경쟁과

가 있을 것이다.

283)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개방형 금융결제망(오픈뱅킹) 구축, 핀테크 성장을 촉진하고 생활금융을 혁신하겠습니다.”,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방안] 별첨자료 15면, 2020.2.26.

([http://fsc.go.kr/info/ntc\\_news\\_view.jsp?menu=7210100&bbsid=BBS0030&no=32976](http://fsc.go.kr/info/ntc_news_view.jsp?menu=7210100&bbsid=BBS0030&no=32976) 2020.6.15. 최종검색)

284) <http://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01438&topic=> 2020.10.12. 최종검색

285) 한국은행 보도자료, “소액결제시스템 참가제도 개선”, 2020. 6. 4.

(<http://www.bok.or.kr/portal/bbs/P0000559/view.do?nttId=10058595&menuNo=200690&pageIndex=1> 2020.6.15. 최종검색)

286)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개방형 금융결제망(오픈뱅킹) 구축, 핀테크 성장을 촉진하고 생활금융을 혁신하겠습니다.”,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방안] 별첨자료 15면, 2020.2.26.

([http://fsc.go.kr/info/ntc\\_news\\_view.jsp?menu=7210100&bbsid=BBS0030&no=32976](http://fsc.go.kr/info/ntc_news_view.jsp?menu=7210100&bbsid=BBS0030&no=32976) 2020.6.15. 최종검색)

혁신을 촉진하고자 하였다. 즉, 지급지시서비스 제공업자(PISP), 계좌정보서비스 제공업자(AISP) 등 제3자 지급결제서비스 제공업자를 규정하고 이들의 소비자계좌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는 한편, 이용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고, 서비스 제공업자의 거래에 대한 정보공개 의무 및 거래에 따른 보안조치를 강화함으로써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다.

일본의 자금결제법에서는 선불식 지불수단과, 자금이체, 암호자산, 자금 청산·결제에 대한 규제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완하면서 거래의 안정성과 시장신뢰 확보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바 있다.

싱가포르 지급결제서비스법에서는 지급결제서비스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여 유형별로 규제하고, 디지털지급토큰 등의 전자적으로 저장도니 금전적 가치에 대하여 규정하는 한편, 주요지급기관(자본금 25만 싱가포르달러 이상)으로 구분되는 지급결제서비스제공 사업자는 표준지급기관(자본금 10만 싱가포르달러 이상)이나 환전서비스업자와 달리 이용자 보호예치금 규정이 적용되어 규모별·업무유형별로 차등화된 인허가 요건을 보이고 있다. 또한, 계정 소유자에게 고의·중과실이 없고 금융서비스제공자 및 제3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 계정 소유자는 무단 거래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 일일 1,000 싱가포르 달러를 상한으로 하여, 과실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게 된다. 이처럼 무단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이용자에게 일일 1,000 싱가포르달러 한도 내에서 그 손실금액에 대한 면책 즉, 지급결제서비스 제공자가 우선변제하는 보호계정 제도는 소액결제시장에 대한 신뢰 확보에 상당한 효과를 줄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의 경우 디지털금융 분야에 대한 다양한 입법과 관련 정책을 선도적으로 확립하려 노력하고 있으며, 다양한 규정들에서 이용자보호를 극대화하려는 모습이 엿보인다. 즉, 이용자의 예치자금(비부금)을 50%에서 100%로 상향하면서 리스크관리를 통한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며, 소액온라인지급결제 청산전문기관인 왕롄을 중국결제청산협회가 설립하여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바코드결제 등 다양한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이처럼 이용자보호와 디지털금융의 효율성을 모두 확보하기 위한 각국 금융당국의 노력은 FSB 등 국제기구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 소액지급결제시장에서의 금융안정성 확보 측면이나 각국 감독당국의 관련 규제 시스템 운용과 정보 교류측면에서도 일정한 기여를 하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에서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지급거래인 지급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를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로 규정하고 있으나,<sup>287)</sup> 전자금융거래법의 전체 조문 구성은 전자금융거래법의 적용객체인 전자지급수단 즉, 전자자금이체,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신용카드, 전자채권 그 밖에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수단을 위주로 설계되어 있다.

즉, 현행 우리나라의 전자금융거래법은 사업자의 전자금융업 진입규제에 관한 사업법으로서의 요소를 중심으로 거래법적 요소가 혼재되어 있는 모습이 특징적이라 할 것이다. 실제 사업법적 요소로 전자금융업자의 진입규제는 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한 허가·등록 등을 받는 경우와 전자화폐(허가), 전자자금이체업무, 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 등(등록) 등의 규정 등이 채택되어 있다.

그러나, 전자금융거래법의 태도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를 전자지급거래를 수행하는 지급결제서비스제공자로서 판단하면서도 진입규제가 여러 규정에 흩어지는 형태로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전자금융거래법을 통일된 진입규제 사업법 체계로 보기도 어려운 점이 있다.

287)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지급거래를 수행하도록 하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범위

- |  |
|--|
| <p>(1) 금융회사<br/> 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기관<br/>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br/> 다.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br/> 라.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br/> 마. 그 밖에 법률의 규정에 따라 금융업 및 금융 관련 업무를 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p> <p>(2) 전자금융업자<br/>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금융회사는 제외한다)</p> |
|--|

향후 전자금융거래 및 지급결제서비스제공에 대한 진입규제 영역은 가능한 한 각 금융 관련 개별법에서 해결하고,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우선 지급결제서비스의 제공자와 이용자 간의 법률관계를 중심으로 하여 지급결제의 다층적 구조를 반영한 거래관계에 대한 요소와 금융거래요소로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즉, 지급결제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당사자 간 권리와 의무에 대한 상세한 규정을 채택하여 시장 신뢰의 확보 및 이용자 보호의 강화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이용자보호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하여 당사자 간 책임의 범위와 입증책임의 전환, 손해배상액의 예정, 우선보상조치 등 위험부담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권리관계를 규정하는 조문들을 명시적으로 채택하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여신전문금융업에 의한 신용카드회사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간접할부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것과 유사한 구조로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이스라엘 지급결제서비스는 새로운 형태의 지급결제서비스법제로서의 특징을 가진 입법 형태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유럽지침 및 회원국의 국내법은 물론 싱가포르법, 그리고, 우리나라의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은 진입규제와 감독, 법률관계와 권리 및 의무에 대해 나누어 규정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의 입법 사례와 같이 이를 분리하여 제정하는 것도 향후 지급결제법체계의 바람직한 방향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미국의 경우 연방법 및 주법, 규정 및 판례법이 결제시스템을 규율하게 되며, 관련 법률의 원칙은 일반적으로 지급방법(종이기반 또는 전자) 및 경우에 따라 소비자, 가맹점 또는 금융기관과 같은 지급당사자의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 미국의 지급결제서비스 관련 입법에 대하여서는 선행연구들에서 상세하게 소개한 내용들이 많아 본 연구보고에서는 별도의 목차로 구성하지는 않았다. 미국의 입법례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이용자보호에 대한 다양한 법규를 두고 있다는 점이다. 소액결제시장과 관련된 미국의 법규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미국의 지급결제서비스 제공자 관련 입법 체계 및 주요 내용<sup>288)</sup>**

- 미국의 전자금융업 감독법규는 자금송금업 면허 및 규제 모델법(MMTA, Model Transmitter Licencing and Regulation Act), 은행비밀법 규정(BSR, Bank Secrecy Act Regulation)등으로 구성됨
- 자금송금업(Money Transmitter) 면허 및 규제모델법은 자금세탁방지 및 송금업의 면허제도 운영 등 사항의 규정을 제정한 것으로 규제대상기관에 대한 면허발급 및 등록, 금융파산 및 경험부족, 미숙함, 진실성 부족 등에 따른 면허 정지 또는 취소 등을 포함하고 있음(MMTA§4(k))
- 은행비밀법 규정은 1970년 자금세탁 및 다른 금융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제정된 은행비밀법(BSA)의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MSB, 은행, 보험, 카지노 등의 의심스러운 거래에 대한 보고, 자금서비스업에 대한 특별규정을 다루고 있으며, 자금서비스(제107.41조) 등이 주요 적용대상임. 이러한 은행비밀법 규정은 우리나라에서의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유사한 입법목적 가지고 있으나, 진입규제 측면의 자금서비스업 면허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두고, 자금이체(transfer of funds)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금융업자(MSR, Money Services Business) 등에 대한 등록규정에 대한 규제범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기도 함
- 그리고, 이용자보호에 대해서는 연방 차원에서 연방법이 소비자부분의 지급활동에 적용되며, 전자자금이체법, 도드-프랭크법, 그램-리치-블라일리법, 공정신용거래법, 연방거래위원회법, 진실대부법, 소비자신용보호법 등으로 구성됨
- 전자자금이체법(EFTA, Electronic Transfer Act)은 1978년 제정된 것으로 전자자금이체 및 송금제도에서 참여자의 권리, 채무,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는 기본원칙을 제공하고, 개별 소비자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음(15 U.S.C § 1693(b)). 적용범위는 전자기기, 전화기, 컴퓨터, 자기테이프 등을 통해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고객계좌에서 지급 또는 예금이 가능하도록 지시·허가하는 거래임. 판매시점단말기(POS) 이체, 자동입출금기(ATM) 이체, 예금이체, 전화이체, 직불카드거래 등이 포함됨. 연방준비이사회는 이 법의 구체화를 위해 하위규범으로 규정 E(Regulation E)를 제정·시행하고 있음. 금융소비자 보호 조항은 금융소비자와 금융기관간의 책임부담조항보다 우선한다고 선언하고 있고, 비금융기관인 전자자금이체서비스 제공자도 적용대상이 됨. 금융기관은 고객이 일정시간내에 무권한거래를 신고했는지 여부에 따른 고객에게 책임을 부과할 수 있음
- 진실대부법(TLA, Truth in Lending Act) 및 하위규범인 규정 Z (Regulation Z)은 부적확 또는 불공정한 신용 및 신용카드 관행으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금융소비자가 다양한 여신 조건을 용이하게 비교할 수 있도록 중요정보의 공개의무화를 규정하고 있음
- 주 차원에서는 통일상법전(UCC, Uniform Commercial Code)이 일부 은행 및 증권을 포함한 특정 상업 및 금융활동에 적용되는 일련의 모델 법령을 규정하고 있음. 시장거래, 결제 및 결제활동과 관련한 UCC 조항은 제3조(협상가능한 상품), 제4조(은행예금 및 징수), 제4A조(도매 ACH 신용 이체를 포함한 자금이체), 제8조(투자증권) 등이 포함됨

288) 금융보안연구원, 전자금융정책 및 감독 선진화를 위한 주요국 사례분석, 금융위원회 용역보고서, 2012.11, 103~105면, 116~126면, 167~169면, 174~176면, 208~210면; 안수현, 해외 주요국의 간편결제 서비스 및 입법정책 현황과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 정책연구용역보고서, 2019.11, 43~68면.



## 제5장

# 소액결제시장 변화에 따른 법제 대응방안 및 결어

제1절 서 설

제2절 소액결제시장 변화에 따른 이용자 보호 강화 방안

제3절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 방안

제4절 소액결제시장 변화에 따른 법제 개선방안

제5절 결 어



## 제5장

# 소액결제시장 변화에 따른 법제 대응방안 및 결어

### 제1절 서 설

4차산업혁명에 의한 AI, 빅데이터의 활용 등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급속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최근에는 온라인 쇼핑 등에서 지급수단의 모바일화로 국내외의 구분없이 간편결제 서비스의 전성시대에 진입하고 있다.<sup>289)</sup> 이러한 서비스의 증가는 유통·제조회사에서 이용 빈도나 규모를 급격하게 증가시키고 있다. 특히, 유통기업들이나 온라인플랫폼들도 ‘○○페이’ 등의 이름으로 간편결제를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on-line 거래 뿐만 아니라 off line거래에서도 간편결제·간편송금의 비중이 늘어나고, 금융회사의 재택·유연근무의 확대 등은 금융의 디지털·비대면화를 심화시키고 있다.

이처럼 온라인 포털(거래 플랫폼)이나 기술개발 프레임워크(혁신 플랫폼) 등을 통해 다양한 이용자 그룹의 상호작용이 가능하게 하는 비대면 산업의 대표적인 형태인 디지털 금융의 혁신은 전자적 방식의 결제·송금·증개 등에서 신기술과 결합한 금융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다. 즉, 결제·송금의 간편·다양화, 인증·신원확인 기술의 발전, 금융 플랫폼 구축 경쟁 등을 통해 이용자·거래 규모가 크게 성장하였으며, 이용자 네트워크, 빅데이터 등을 기반으로 다양한 Player들이 ‘디지털금융’과 ‘데이터경제’의 연계를 통해 경쟁·혁신을 촉진하고 있다.<sup>290)</sup>

289) 박태준·김민정, “간편결제 서비스의 등장과 카드업 영향분석”, 『CFRI INSIGHT 2020』(여신금융연구소, 2020), 1면.

290) 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 발표- 디지털금융의 혁신과 안정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전자금융거래법』의 전면 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2020. 7. 27. 보도자료 1면([http://www.fsc.go.kr/info/ntc\\_news\\_](http://www.fsc.go.kr/info/ntc_news_)

하지만, 이렇게 빠르게 발전하는 글로벌 디지털금융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이를 규제하는 국내의 「전자금융거래법」은 2006년 제정(2007년 시행) 후 전산사고 등으로 인해 금융 보안 관련 세부 규정만 10여 차례 개정되었을 뿐 큰 틀의 변화가 없이 아날로그 시대의 규제 체계가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 그 결과 현재의 전자금융업 분야에서 새로운 전자지급수단이 등장하거나 새로운 유형의 지급결제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 적시에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디지털금융의 거래 규모의 급증에 따른 보호장치의 마련이 시급하고, 기존의 아날로그 방식에 따라 설계된 금융 인프라·제도를 탈피하여 디지털금융에 맞는 새로운 체계를 구축하고자 「전자금융거래법」의 개정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sup>291)</sup>

다만,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금융위원회가 방향성을 제시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서는 OECD 가이드라인 수준의 이용자보호나 시장신뢰 확보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 있지 않아 법제 대응방안이 다소 부족한 감이 있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최근 금융위원회가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에서 밝힌 바 있는 「전자금융거래법」의 개정 방향 내용에 더하여 이용자보호 및 보안 강화, 시장신뢰 확보 등을 위한 법제적 개선 사항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view.jsp?menu=7210100&bbsid=BBS0030&no=34066 2020.10.5. 최종검색) 1면.

291) 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 발표- 디지털금융의 혁신과 안정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전자금융거래법」의 전면 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2020. 7. 27. 보도자료 2~4면.

## 제2절 소액결제시장 변화에 따른 이용자 보호 강화 방안

2020년 7월 금융위원회에서 제시한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에서의 지급결제서비스 이용자 자금보호 강화나 이용자 보호 강화 방안은 국제적으로 권고되는 일반적인 소비자 보호 기준이나 EU에서 제정한 온라인플랫폼 이용자에 대한 보호방안에 비하여 다소 미흡한 점이 많이 발견된다.

이에, 아래에서는 향후 전자금융거래 분야 관련 입법의 개선·보완 작업 추진시에 고려하여야 할 소액결제시장 변화에 따른 이용자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방안을 제시하기로 한다.

### 1. 소액결제시장 변화에 따른 전자금융거래 이용자 보호 필요성과 최근 입법 동향

#### (1) 소액결제시장 변화와 간편결제·간편송금 확대에 따른 이용자 보호 필요성

소액결제시장에서 거래당사자를 이용 및 지급과정을 중심으로 살펴본다면 소비자로서의 지급결제서비스 이용자(소액지급결제)-상품·서비스의 제공자(전자금융거래 가맹점), 소액지급결제업자의 3면(Three-party) 구조를 기초로 하여 각 제공서비스의 기능별로 다면화된 구조를 가지게 된다. 최근 소액결제시장에서 간편결제 방식의 활용이 빠른 속도로 늘고 있는 가운데, 기존의 신용카드나 은행계좌를 연계한 다양한 지급결제수단 외에도 새로운 유형의 지급결제수단의 활용도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 때, 소액지급결제업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이 지급수단별로 해당 지급결제에 당사자로 참여하는 경우, 각 근거 법률에 따라 일정한 진입·행위규제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이러한 구조적 특성을 가진 소액결제 서비스시장은 상호연결을 필요로 하는 둘 이상의 구분되는 고객군이 존재하고, 한 면의 고객군이 다른 면의 고객군의 규모가 클수록 더 높은 효용을 얻게 되는 양면시장(Two sided Market) 또는 다면시장으로서의 플랫폼(MSP multisided Market) 기능이 중요하게 작용하게 된다.<sup>292)</sup> 소액결제서비스계약의 경우 소비자로서의 이용자가 가지는 지위는 소액결제서비스제공자의 지위에 비하여 정보접근성이나 교섭력 측면에서 모두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법리적으로 보자면, 전자상거래에 대한 소액결제의 경우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정한 소비자보호조치가 적용되기도 하지만, Off-Line 에서 소액결제나 간편결제/간편송금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지급결제수단별로 전자금융거래법 등의 법률이 적용되는 법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또한, 소액결제서비스 이용계약은 소액결제 서비스제공자와 다수의 이용자 간 거래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되며, 부당한 약관 조항의 경우 일정한 제한을 받게 되나, 소액결제서비스 이용계약은 비전형계약으로서 민법에 따른 일반적 원칙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개별법에서 법적 근거를 두지 않으면 발생하는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어렵게 된다. 그러나,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에는 이러한 소비자로서의 이용자 보호에 충분할 정도의 직접적 규정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금융위원회가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에서 “이용자 보호 강화”를 중요한 한 축으로 두고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강화 조치와 명문화된 법적 근거의 채택은 필요불가결하다 하겠다.

## (2) 전자금융거래 분야에서의 소액결제 관련 최근 국내외 입법 동향

제4장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2014년 제정된 「OECD 모바일 및 온라인 결제 소비자정책 가이드라인(Consumer Policy Guidance on Mobile and Online Payments)」에서

292) 이상규, “양면시장의 정의 및 조건”, 『정보통신정책연구』 제17권 제4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0.12, 84면.

는 온라인플랫폼 내지 APP을 기반으로 한 지급결제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에 대한 지급결제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다양한 주의의무와 조치의무를 규정하여 두고 있다. 해당 가이드라인에서는 지급결제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에 대한 다양한 각도의 접근을 통하여 이용자 보호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원칙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소액결제시장 변화에 따른 법제 대응방안 수립에서 OECD의 가이드라인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소액결제서비스를 둘러싼 이용자 보호 관련 쟁점은 경쟁법적 쟁점과도 연계되어 있는 특성을 가지게 되는데, 이는 사업자(가맹점)의 결제거래수수료가 증가하면 소비자가격에 전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경우로 온라인 플랫폼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지급결제 수수료를 사업자에게 부담시키게 되면, 양면시장 내지 다면시장의 구조적 특성상 결국 해당 수수료는 비용과 원가로 이전되어 최종소비자가격으로의 전환가능성이 높다. 이에, EU나 일본 등은 온라인플랫폼의 경쟁에 관한 법제를 마련한 바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온라인 플랫폼 경쟁법제와 관련한 입법안이 제안된 바 있다. 다만,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이용자보호 법제는 아직 불비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법제 개선도 필요하다.

2019년 7월의 EU 『온라인 중개서비스의 사업적 이용자를 위한 공정성 및 투명성 촉진에 관한 규칙(REGULATION (EU) 2019/1150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0 June 2019 on promoting fairness and transparency for business users of online intermediation services (Text with EEA relevance)』는 온라인플랫폼을 이용하는 기업을 위해 예측가능하고 투명한 온라인 거래환경을 조성하고 효과적인 분쟁해결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채택되었으며, 불공정관행 금지 및 투명성 제고, 분쟁해결시스템 도입, 집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sup>293)</sup> 즉, i) 거래조건과 내용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약관 통제 조치로서 약관의 변경 및 이용자의 해지권 보장(제3조, 제8조)과 함께 상품공급의 제한·유보·중단(제4조) 규

293)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A32019R1150> 2020.10.5. 최종검색

정을 채택하고, ii) 투명성 증대를 위한 정보공개 의무로서 검색·배열순서에 대한 투명성을 보장(제5조)하고, iii) 차별적 대우에 대한 설명의무를 부과(제7조)하는 한편, 최고 우대 조항에 대한 설명의무 및 공시의무를 부과(제10조)하였으며, iv) 실효성 있는 분쟁해결을 위하여 옴부즈만(민원처리) 시스템(제11조)과 분쟁조정절차(제12조) 및 집단소송제도(제14조)를 채택한 바 있다. 이러한 EU의 입법례는 우리나라에도 일정한 시사점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일본의 경우에도 2020년 6월 3일, 「특정 디지털 플랫폼의 투명성 및 공정성 향상에 관한 법률(特定デジタルプラットフォームの透明性及び公正性の向上に関する法律)」이 제정된 바 있다. 동 법률의 주요 내용은 특정 디지털 플랫폼 제공자를 지정방식으로 선별하고, 그 특정 디지털 플랫폼 제공자에 대하여서는 정보공시의무와 일정한 조치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에 일정한 사항에 대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sup>294)</sup>

한편, 우리나라 21대 국회에서는 「온라인플랫폼 통신판매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이 2020년 7월 13일 제안된 바 있다.<sup>295)</sup> 해당 법률안은 온라인플랫폼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공정한 온라인플랫폼 통신판매중개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온라인판매중개업자와 온라인판매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하며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안 제1조), 온라인플랫폼 운영의 투명성 제공, 온라인플랫폼 통신판매중개거래의 공정화, 분쟁의 조정 등,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절차, 벌칙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2020년 4월 7일 개정되면서(2021년 4월 8일 시행) 제4장의2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 개념이 법제화 되기도 하였다. 즉,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의 종류를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점사업, 여객자

294) <https://www.meti.go.jp/press/2019/02/20200218001/20200218001.html> 2020.10.5. 최종검색

295)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X2V0N0G7Z1V3V1S3V4H3A3A1D2K7Y7](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X2V0N0G7Z1V3V1S3V4H3A3A1D2K7Y7) 2020.10.5. 최종검색

동차플랫폼운송중개사업” 등으로 규정하고(제49조의2)있어서 플랫폼기반 가맹점과 플랫폼기반 중개업에 대한 규정을 채택함으로써 기존의 사업방식과 다른 별도의 플랫폼 사업방식을 기존의 법체계에 추가하여 규정하고 있다.

다만, 다면시장성을 가지는 지급결제로서의 소액결제시장에서는 장기적으로는 전자금융거래법 보다는 「(가칭)지급결제서비스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함으로써 최근의 지급결제서비스에 관한 규제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독립된 지급결제서비스법의 해외 입법례로서는 앞서 살펴본 싱가포르의 2019년 1월 지급결제서비스에 관한 법률(the Payment Service Act 2019)이나 이스라엘의 2019년 지급결제서비스법(Payment Services Law 5779-2019(2020년 9월 14일 시행)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아래에서는 전자금융거래법 내지 지급결제 관련 법제에서 채택되거나 강화되어야 할 다양한 이용자보호 방안에 대하여 「OECD 모바일 및 온라인 결제 소비자정책 가이드라인(Consumer Policy Guidance on Mobile and Online Payments)」(이하, ‘OECD 가이드라인’이라 함)<sup>296)</sup>과 유럽법률협회(ELA)의 「온라인 플랫폼 모델법(Model Rules on Online Platforms)」을 기초로 하여 제시할 수 있도록 한다.<sup>297)</sup> 이를 통하여 향후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작업 및 (가칭) 「지급결제서비스에 관한 법률(안)」의 제정시에 이용자보호 관련 규정에 대한 일정한 입법적 기준으로 역할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296) OECD, 「Consumer Policy Guidance on Mobile and Online Payments」, OECD Digital Economy Papers No.236, 2014

(<https://www.oecd-ilibrary.org/docserver/5jz432c1ns7-en.pdf?expires=1602157463&id=id&accname=guest&checksum=CFC5CBC348AEC8E783FC8405BBEFC865> 2020.10.5. 최종검색)

297) OECD 가이드라인 원문과 송민수, “OECD 모바일 및 온라인 결제 소비자정책 지침 제정”, 『글로벌 소비자법제 동향』 제1권3호(통권3호), 한국소비자원, 2014.6.30., 1~18면을 참고하여 아래의 2. 이하 내용을 작성하였음.

## 2. 소액결제서비스 이용시 명시·설명 의무 강화

### (1) 소액결제업자의 계약체결전 정보제공의무

지급결제 플랫폼으로서의 소액결제업자는 지급결제 서비스 이용자가 소액결제업자가 아니라 사업자(가맹점)와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는 점을 사업자(가맹점)-이용자 간 계약 체결이 시작되기 전 가장 이른 시점에 명확하고 눈에 띄는 방식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이러한 명시적인 정보 제공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이용자는 사업자(가맹점)와의 계약에서 사업자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와 구제수단을 소액결제업자에게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정한 규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이용자의 권리행사는 거래당사자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이용자(소비자)에 대한 책임 관계도 명료하게 처리되는 효과도 가지게 된다.

이러한 정보제공의무와 책임에 관하여서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에서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는 자신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0조의2 제1항은 “고지를 하지 않은 경우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소비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여 고지의무 위반에 대한 내용을 두고 있다. 해외 입법례로서는 유럽법률협회(ELA)의 「온라인 플랫폼 모델법(Model Rules on Online Platforms)」 제13조<sup>298)</sup> 및 제19조<sup>299)</sup>에서 관련 정보제공의무와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EUI 2019)<sup>300)</sup>

#### 298) Article 13: Duty to Inform About the Role of the Platform

At the earliest opportunity and directly before the conclusion of the supplier-customer contract, the platform operator must inform the customer, in a prominent manner, that the customer will be entering into a contract with a supplier and not with the platform operator.

#### 299) Article 19: Liability of the Platform Operator for Lack of Transparency

In the case of a violation of Article 13, the customer can exercise the rights and remedies available against the supplier under the supplier-customer contract also against the platform operator.

다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과 제20조의2 제1항 규정은 통신판매증개역할을 하는 플랫폼으로서의 지급결제 서비스 제공자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소액결제시장에서의 간편결제·간편송금을 포함한 지급결제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서도 동일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2) 소액결제업자의 설명의무 강화

소액결제업자는 약관과 지급결제서비스 이용 조건 및 관련 비용 등에 대한 정보를 명확하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내용에 대한 투명성을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즉, 소액결제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며, 약관이나 이용조건이 까다롭고 복잡한 경우에는 알기 쉽고 눈에 띄는 방식으로 해당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관련 비용의 청구시에 청구서의 내용이 알기 쉽고 이해가 가능한 내용과 방식으로 작성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1) 소액결제 관련 정보의 접근성 및 가독성 확보

소액결제 서비스 이용 약관 및 이용조건은 소액결제업자가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소비자가 접근하기 어렵고, 그 내용이나 글씨크기도 모바일기기에서는 읽기 쉽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소액결제 서비스 이용자는 사업자(가맹점)와의 거래를 위한 지급결제 서비스 이용 전에 지급결제가 급박한 상황에서 관련 정보를 충분히 확인하고 이해하기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

실제 거래 실무에서 간편결제 방식을 통하여 결제를 진행하는 경우, 모바일 기기 등을 활용하게 되기 때문에 소액결제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주요 내용을 링크접속이나 어플알림창을 통하여 빠곡하게 작은 글씨로 작성된 사항을 통하여 확인하게 된다. 즉, 모바일 기기를 통한 거래 및 지급결제 과정은 이용자가 소비에 대한 빠른 판단을 통하여 지급결제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는 것이 가장 중심이 되는 일련의 처리 과정을 거치기

300) <https://www.europeanlawinstitute.eu/projects-publications/completed-projects-old/online-platforms/> 2020.10.5. 최종검색

때문에 대부분 거래 중 빠르게 결정을 내리는 “분주한(on the go)” 상황에서 이루어진다. 301)지급결제 서비스 이용은 대부분 이런 상황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용자가 사업자(가맹점)와의 물품·서비스 구매 이전에 꼼꼼하게 소액결제 관련 약관을 충분히 읽고 이해하여 검토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분명하고 뚜렷하며 읽기 쉬운 방식으로 지급결제가 일어나기 이전인 사업자(가맹점)와의 거래과정 초기에 지급결제 서비스 이용 관련 정보가 제시되지 않을 경우, 이용자는 지급결제서비스 이용에 대한 현명한 결정을 내리기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얻지 못할 수 있고, 그러한 정보들을 얻기 위해서는 거래과정 이전에 상당한 시간을 소요해야만 한다.

또한, 소비자가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찾기 어렵거나 이해하기 어려워서 완전한 정보를 충분히 얻지 못할 수도 있는데,<sup>302)</sup> 이러한 정보에는 구매 결정을 내리는데 중요한 마일리지, 포인트 정책이나 보상·교환·환불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들이 모두 포함된다. 특히, 사업자(가맹점)가 예약수수료, 신용카드수수료 및 관세, 배송비 등의 추가 서비스요금과 같은 비용들을 포함하지 않은 표제가격(headline) 가격으로 제시하는 경우, 이러한 지급결제서비스 이용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따라서, 소액결제 관련 정보의 이용자에 대한 접근성 및 가독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며,<sup>303)</sup> 사업자(가맹점)와 소액결제업자에 대하여 이러한 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301) OECD, 『Consumer Policy Guidance on Mobile and Online Payments』, OECD Digital Economy Papers No.236, 2014, p.6: 송민수, “OECD 모바일 및 온라인 결제 소비자정책 지침 제정”, 『글로벌 소비자법제 동향』 제1권3호(통권3호), 한국소비자원, 2014.6.30., 3면  
(<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4083&mode=view&no=1001550184&page=4&cate=00000005> 2020.10.5. 최종검색)

302) 송민수, “OECD 모바일 및 온라인 결제 소비자정책 지침 제정”, 『글로벌 소비자법제 동향』 제1권3호(통권3호), 한국소비자원, 2014.6.30., 3면.

303) 송민수, “OECD 모바일 및 온라인 결제 소비자정책 지침 제정”, 『글로벌 소비자법제 동향』 제1권3호(통권3호), 한국소비자원, 2014.6.30., 4면.

## 2) 복잡하고 어려운 소액결제 약관 및 부가조건에 대한 요약서 제공

소액결제 서비스 이용 약관 및 이용조건은 그 내용이 복잡하고 길 뿐만 아니라 일반이용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 법률 용어로 제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일상생활에서 소비자나 소액결제 서비스 이용자는 약관이나 이용조건, 적립 및 환불, 보상 등에 대한 정책을 사전에 완전하게 사전 검토하거나 그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용자가 소액결제 서비스의 특성이나 범위, 비용, 품질, 불만 접수, 환불 및 보상, 분쟁해결절차 등에 대하여 인지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지급결제서비스 제공자인 소액결제업자는 이용자가 소액결제 서비스 이용 약관 및 이용조건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OECD 가이드라인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지을 필요가 있다.<sup>304)</sup>

i) 사업자(가맹점)과 지급결제업자는 소비자(이용자)에게 거래 약관 외에도 지급결제 서비스 이용 약관과 이용 조건의 전문을 접근하기 편리한 방법으로 다양하게 제공하고, 주요내용으로 구성된 요약서를 함께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ii) 해당 요약서에는 총 거래비용, 제품의 품질 및 기능, 배송 소요시간, 환불 및 교환, 반송 정책, 철회권, 반복·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지급결제(자동 구매 및 자동 갱신, 이를 취소하는 방법을 포함), 사업자(가맹점) 및 지급결제서비스업자의 연락처를 포함한 정보, 분쟁해결 방안(사업자 관련 연락처를 포함) 등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iii) 소액결제 서비스 이용 약관 및 이용 조건에 관한 요약 내용은 명확하고, 눈에 잘 띄며, 간결하게 작성되도록 하고, 법률 지식이 풍부하지 않은 일반 이용자의 수준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 3) 명료하고 이해하기 쉬운 청구서 내역 작성

소액결제업자가 제공하는 청구서 내역은 소비자가 구입한 물품·서비스의 내용과 관련 비용들을 파악할 수 있을 만큼 세부적으로 작성하여야 소비자 내지 이용자가 청구내역서

304) OECD, 『Consumer Policy Guidance on Mobile and Online Payments』, OECD Digital Economy Papers No.236, 2014, p.8; 송민수, “OECD 모바일 및 온라인 결제 소비자정책 지침 제정”, 『글로벌 소비자정책 동향』 제1권3호(통권3호), 한국소비자원, 2014.6.30., 5면.

의 정확성을 기초로 거래 여부에 대한 결정 내지 지급결제서비스 이용에 대한 선택 등의 결정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물품·서비스 대금 및 요금 청구자는 청구서 내역상 거래의 직접 당사자가 청구하는 비용과 거래와 관련하여 비용이 발생하는 제3자 청구 비용을 구분하여 제시하도록 하고, 청구서 내역은 OECD 가이드라인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지을 필요가 있다.<sup>305)</sup>

i) 가격과 기타 주요 거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 ii) 소비자가 청구자(제3자 청구 포함)를 포함한 결제 관련 모든 당사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구분하여 쉽게 표시하도록 하고, iii) 거래 및 지급결제에 참여한 각 당사자에게 연락할 수 있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 때, 청구서 내역도 약관 및 이용조건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는 방식과 수준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 3. 소액결제를 통한 지급사실의 통지의무 강화 및 거래오류의 정정요청 제도화

#### (1) 승인과정에서 거래의 불확실성 제거

소액결제를 통해 물품·서비스를 구입한 소비자는 언제 결제가 승인되었는지 모르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 일례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인터넷쇼핑플랫폼 APP에서 담아두기 기능과 구매하기 클릭을 교차로 이용하는 경우 의도치 않은 아이콘 클릭을 통해 구매가 결정되고 자동으로 지급결제까지 한번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거래 취소나 철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구매 및 결제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도 종종 발생하게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승인 과정 중 모바일 기기 및 인터넷 연결 장치의 문제로 거래 완료 및 결제 정보가 적시에 확인되지 않아 거래 진행 현황에 대한 판단이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생긴다.

305) OECD, 『Consumer Policy Guidance on Mobile and Online Payments』, OECD Digital Economy Papers No.236, 2014, p.8; 송민수, “OECD 모바일 및 온라인 결제 소비자정책 지침 제정”, 『글로벌 소비자정책 동향』 제1권3호(통권3호), 한국소비자원, 2014.6.30., 6면.

따라서, 온라인플랫폼 내지 지급결제APP 운용자는 이용자에게 거래가 성립되어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시점과 거래가 완전히 성립되었는지, 어떤 처리과정 중에 처해있는지 등에 대한 정보를 OECD 가이드라인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이를 적시에 정확하게 제공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sup>306)</sup>

i) 이용자가 거래 승인을 요청받는 시점과 거래 승인 후 결제기한을 분명하고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하고, 이를 기초로 이용자는 지급결제정보를 확인하여 거래 완료 전 거래 전체를 취소할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 또한, ii) 지급결제 정보를 제공하였던 해당 거래가 완전하게 성립되지 않고 지급결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나 지급결제가 완료되었는지에 대한 상태를 분명하게 고지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2) 아동 등 미성년 자녀의 지급결제에 대한 사전·사후 보호 조치 강화

일반적으로 물품·서비스 구매 시 매번 상세 금융 정보를 입력할 필요 없이 전자상거래를 통해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간편결제·간편송금 수단의 증가는 아동에 대한 사전·사후 보호 조치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높이고 있다.

아동 등 미성년 자녀가 off-line에서 물품·서비스를 구매하고, 간편결제·간편송금 방식으로 지급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 제3항에 따른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기 때문이다.<sup>307)</sup>

더욱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도 최근의 공유플랫폼이나 중고 물품거래중개플랫폼과 같이 사업자와 소비자 간 거래를 기초로 하여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의무와 준수사항을 위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최근에 나타나는 다양한 거래 방식이나

306) OECD, 「Consumer Policy Guidance on Mobile and Online Payments」, OECD Digital Economy Papers No.236, 2014, pp.13~14; 송민수, “OECD 모바일 및 온라인 결제 소비자정책 지침 제정”, 『글로벌 소비자법제 동향』 제1권3호(통권3호), 한국소비자원, 2014.6.30., 9~10면.

307)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

③ 통신판매업자는 미성년자와 재화등의 거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미성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지급결제방식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즉, 중고물품거래중개사이트 등과 같이 온라인중개플랫폼이나 APP을 통한 거래라고 하더라도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일반 개인인 경우, 실제 대금의 지급을 간편송금 방식으로 하게 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거래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취소는 법적으로 강제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전자상거래 등에 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와 제21조는 각각 통신판매중개자의 의무와 책임, 통신판매중개자 및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나, 제20조 제2항 “통신 판매중개의뢰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성명·전화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여 거래의 당사자들에게 상대방에 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정보 열람에 대한 권리만이 보장되고 있으며, 제20조 제3항 “통신판매중개자는 사이버몰 등을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불만이나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그 원인 및 피해의 파악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규정에 따라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소비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이나 불만 처리에 대한 절차를 활용할 수 있을 뿐이다.

아동 등 미성년자가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비밀번호를 매번 입력할 필요없이 여러번 구매가 가능하도록 하는 APP에서 아동 등이 거래 및 지급결제를 시도하는 경우에는 계좌 보유자 등 사실상의 대금지급을 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동의 절차나 인지의 기회가 주어 지지 않은 채 비용이 청구되는 결과가 되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특히, “무료”라고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도 관련 콘텐츠의 이용을 위하여서는 일정한 예상 외의 비용이 청구되는 경우, 이에 대한 지급결제서비스 이용자 및 실제 대금지급자의 보호가 필요한 측면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OECD 가이드라인에 따라 아동 등 미성년자에 대한 소액결제를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모니터링하고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조치가 필요하겠다.<sup>308)</sup>

308) OECD, 『Consumer Policy Guidance on Mobile and Online Payments』, OECD Digital Economy Papers No.236, 2014, pp.14~15; 송민수, “OECD 모바일 및 온라인 결제 소비자정책 지침 제정”, 『글로벌 소비자법제 동향』 제1권3호(통권3호), 한국소비자원, 2014.6.30., 10~11면.

i) 첫째, 아동이 비용을 유발할 수 있는 물품·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이용하기 전에 법정대리인에게 비용에 관한 정보와 아동의 소액결제에 대한 비용 청구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분명하고 투명하며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제공해야 할 것이다. 또한, ii)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아동에 의한 대금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인 조치가 강구되어야 하며, iii) 법정대리인이 동의한 물품·서비스라고 하더라도, 중복적으로 구매가 이루어지는 경우 별도의 확인 절차를 마련하고, 대금지급 한도를 정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고, iv) 이러한 보호 정책을 법정대리인이 활용할 수 있음에 대하여 정확한 정보와 방법을 분명하고 알기쉽게 고지하여야 할 것이다.

#### 4. 부당거래행위의 규제

##### (1)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금지 및 규제 강화

소액결제업자가 이용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기망 가능성이 있는 지급결제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즉, OECD 가이드라인에 따라 가격 등 결제 관련 정보를 지급결제서비스 처리과정 내내 일관성있게 제공하고, 과장되거나 거짓인 정보 내지 잘못된 기재된 정보에 대하여 사후에 정보를 수정하는 경우에는 수정전 정보에 기반하여 거래 및 지급결제를 이행한 이용자에게 일정한 보상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각각의 이용자에게 연락이 닿을 수 있는 방법(전화, 이메일, SNS, APP알림창 등의 방법을 2개 이상 이용하도록 하여야 함)으로 별도의 고지를 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sup>309)</sup>

##### (2) 갱신 및 철회 권한 고지 및 유료서비스 전환 전 사전 고지 의무화

소액결제시장에서 간편결제·간편송금 방식을 이용하여 물품·서비스를 구매하는 소비자는 사업자(가맹점)나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제공하는 거래 약관 및 매매조건에 물품·서비

309) OECD, 『Consumer Policy Guidance on Mobile and Online Payments』, OECD Digital Economy Papers No.236, 2014, pp.17~18.; 송민수, “OECD 모바일 및 온라인 결제 소비자정책 지침 제정”, 『글로벌 소비자법제 동향』 제1권3호(통권3호), 한국소비자원, 2014.6.30., 13면.

스의 정기구매 등 자동 재구매나 자동 구독 갱신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거래 과정에서 명확한 고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일례로, 온라인플랫폼에서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거나 이용권을 구매하는 소비자의 경우, 사용권계약(end-user licensing agreement)에 기존 계약의 종료시점에 자동갱신 및 자동 대금청구에 따른 지급결제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고지받지 못한 채로 최초 구매 계약이 진행될 수 있다. 이 때, 소비자는 자동 갱신을 원하지 않았더라도 비용을 지불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고, 지급결제수단도 자동으로 처리되도록 설정된 경우에는 이용권한 여부에 대한 인지조차도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OECD 가이드라인에 따라 다음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sup>310)</sup>

- i) 자동 재구매나 자동 지급결제가 이루어진다는 사실과 금액, 구매기간 및 지급결제 빈도 등을 최초 계약과 갱신 계약시에 매번 정확하게 소비자 내지 이용자에게 고지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ii) 이용자가 거래계약이나 구독신청을 명시적으로 취소하거나 종료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계약연장 및 지급결제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그 취소나 종료의 의사표시와 효력발생이 최대한 간단한 방식과 절차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 iii) 취소나 종료의 의사표시를 통하여 이루어진 해당 절차의 효력에 대한 공지도 사업자(가맹점)와 온라인플랫폼 및 APP, 지급결제서비스 제공자 모두 이용자에게 각각 고지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iv) 이러한 정책의 기본 원칙들과 이용자의 권리에 대하여서도 최초의 거래나 지급결제가 이루어지는 과정 또는 각각의 자동 계약 갱신 및 자동 지급결제 과정이 진행되기 이전에 충분히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고지되어야 한다.

### (3) 예상비용 외의 추가 비용에 대한 사전 설명의무 및 사전동의 절차화

사업자(가맹점)나 온라인플랫폼 및 APP의 광고·표시에 따라 “무료”라고 소개되는 상품·서비스의 경우에도 예상 외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비용이 발생한다고 고지된 경우라 하더라도 이용자가 예상한 비용 외의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310) OECD, 『Consumer Policy Guidance on Mobile and Online Payments』, OECD Digital Economy Papers No.236, 2014, pp.18~19; 송민수, “OECD 모바일 및 온라인 결제 소비자정책 지침 제정”, 『글로벌 소비자법제 동향』 제1권3호(통권3호), 한국소비자원, 2014.6.30., 13~14면.

일례로 무료이용 기간(trial period)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무료이용 기간 만료시 무료사용 기간의 종료 사실을 이용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고지하지 않아 이용자가 해당 서비스 및 상품을 지속적으로 이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해당 상품·서비스의 이용을 위한 특정 APP의 설치나 회원가입 등의 절차를 유도하여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이용자는 APP 관련 서비스의 이용을 위하여서는 추가적인 비용을 지급해야 하거나, APP 기능 향상을 위한 추가 서비스 비용을 지급해야 하기도 하며, 심지어는 이러한 비용 발생 사실이나 자동으로 지급결제된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도 생긴다.

2017년 8월 25일 FCC(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에서 제시하고 있는 소비자 안내서에서는 케이블 요금 청구서에 대한 소비자 보호 방안을 소개하고 있다. 즉, FCC의 “부당요금부과(cramming)” 사실확인 조사에서 해당 케이블서비스 제공업자와 환불조치를 취하기로 하였으며, 가입자에게 요청하지 않은 서비스나 장비에 대한 요금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요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용자로부터 프리미엄 채널 가입, 셋톱박스 내지 디지털 비디오 레코더의 사용과 같은 별도의 약정을 하기 위하여서는 명시적인 동의를 받도록 하고, 구매를 요청하지 않은 장비나 서비스에 대한 수령 또는 가입에 대하여서는 이를 고지하고, 청구서에 명시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원칙임을 밝히고 있다.<sup>311)</sup>

온라인플랫폼 또는 APP을 이용한 무료이용이나 off-line 상에서 물품·서비스의 무료이용을 약정한 이후, 해당 물품·서비스의 정식구매 시 소액결제방식의 대금지급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 OECD 가이드라인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용자 보호조치가 필요할 것이다.<sup>312)</sup>

311) <https://www.fcc.gov/consumers/guides/keibeul-yogeum-ceongguseoe-daehan-sobija-boho> 2020.10.5. 최종검색

312) OECD, 「Consumer Policy Guidance on Mobile and Online Payments」, OECD Digital Economy Papers No.236, 2014, pp19~21.; 송민수, “OECD 모바일 및 온라인 결제 소비자정책 지침 제정”, 『글로벌 소비자법제 동향』 제1권3호(통권3호), 한국소비자원, 2014.6.30., 14~15면.

i) 무료이용 기간 만료 이후 부과될 수 있는 비용 및 대금 정보와 지급결제방식, 해당 물품이나 서비스의 구매나 이용을 취소·철회하거나 중단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에 대한 정보를 이해하기 쉽고 명료하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 ii) 무료이용 기간의 종료 사실과, 기간 종료 이후 구매·이용에 따른 비용의 상세 정보 및 지급결제 방식 및 환불·보상 절차 등에 대하여도 충분한 내용으로 이해하기 쉽고 접근 가능한 방법으로 제공되어야 하고, iii) 이용자의 사전 동의 절차도 거쳐야 할 것이다. iv) 특히, 사업자(가맹점) 내지 지급결제서비스사업자는 물품·서비스 구매·이용 비용이 이용자에게 자동으로 청구되고 자동으로 지급결제되는 경우를 차단하기 위하여 이용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사전에 알리고, 그 동의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 5. 분쟁해결제도 보완

### (1) 분쟁해결 시스템 접근가능

소액결제에 있어서 이용자가 분쟁해결제도 및 고충처리 민원, 피해구제 방법을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절차를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즉, 정부/소액결제업자/플랫폼운영자/사업자/은행 및 신용카드사 등은 소액결제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해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분쟁해결 시스템과 사후구제 정책에 대한 정보를 이용자에게 알기 쉽고 접근 가능한 방법으로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

분쟁해결을 위한 접근성 및 활용성을 확대하기 위하여서는, OECD 가이드라인에 따라 소액결제사업자는 문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락처 및 연락방법, 담당자 등의 정보를 이용자에게 명시적이고 정확하게 제공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sup>313)</sup>

313) OECD, 『Consumer Policy Guidance on Mobile and Online Payments』, OECD Digital Economy Papers No.236, 2014, pp.21~22; 송민수, “OECD 모바일 및 온라인 결제 소비자정책 지침 제정”, 『글로벌 소비자법제 동향』 제1권3호(통권3호), 한국소비자원, 2014.6.30., 16~18면.

i) 사업자(가맹점) 또는 소액결제업자를 통해 불만 및 고충사항을 제기하였으나, 해당 문제가 만족스럽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분쟁해결제도와 해당 사업자(가맹점) 및 온라인플랫폼·APP과 소액결제서비스와 관련한 업무의 관리·감독당국 및 관련기관 정보, 옴부즈만·자율규제기관 등의 정보를 이용자에게 사전에 제공하도록 하고, 이러한 분쟁해결 및 피해구제 메커니즘을 이용하기 위한 비용과 노력이 최소화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또한, ii) 이용자가 물품 및 서비스에 대한 이용 중지 및 반환, 환급의 권한이 있는 경우 및 불가한 경우를 명시적이고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이용한 지급결제수단을 통한 지급결제 취소 및 환불 조치 등이 적시에 지체없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iii) 소액결제업자는 분쟁해결 촉진을 위해 제3자로 하여금 각 비용별로 대금 지급청구가 있었다는 사실과 이용자가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여 지급결제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고, 해당 확인 내용 및 지급결제에 관한 정보를 보존하도록 함으로써 분쟁해결제도에 직·간접적으로 기여 및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2) 보상청구 비용의 최소화

거래의 취소나 철회, 무료이용기간의 만료 등으로 인하여 물품이 반품되거나 서비스 이용이 중지되는 경우, 소액결제 내지 간편결제·간편송금 방식으로 대금지급이 이루어진 때에는 분쟁 대상 금액은 소액이지만, 분쟁해결에는 상당한 비용과 시간, 노력이 들어갈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이용자로 하여금 소액인 대금지급분에 대한 환급 노력이나 지급결제금액의 보상을 위한 분쟁해결 시도를 원천적으로 무력화하기도 한다.

따라서, 소액결제시장에서 소액결제서비스 이용자로서의 소비자에게 실효성있는 분쟁해결제도 및 피해구제 메커니즘을 제공하려는 정부와 업계의 선제적인 노력과 법제화가 필요한 측면이 있다.

즉, 소액결제서비스 내지 소액결제 대상 거래에 적용되는 온라인 분쟁해결 플랫폼을 구축하고, 민원 및 고충처리의 방법으로도 만족할만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소액결제 전담 조정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해당 절차들이 최대한 쉽고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특히, 「금융소비자보호법」이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액결제서비스 이용자들의 편익을 최대화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6. 소액결제 서비스 수단의 호환성 및 다양성 보장

소액결제시장에서 대부분의 사업자(가맹점)나 온라인플랫폼·APP이 소액결제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특정 지급결제수단을 이용하도록 강요하거나 특수한 표준을 가진 지급결제프로그램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어서, 실제로 이용자들의 어려움과 불편을 자아내기도 한다. 따라서, 기술의 중립성과 다양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차원에서 사업자(가맹점) 및 온라인플랫폼·APP에서 소액결제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지급결제수단을 폭넓게 인정하도록 조치하고, 지급결제 관련 프로그램도 2개 이상 제공하도록 하여 소액결제서비스 수단에 대한 호환성과 다양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서는 “사업자는 전자문을 사용할 때 소비자에게 특정한 전자서명 방법을 이용하도록 강요(특수한 표준 등을 이용함으로써 사실상 특정한 전자서명 방법의 이용이 강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서는 아니 되고, 소비자가 선택한 전자서명 방법의 사용을 부당하게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전자서명방법 강요를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규정을 「전자금융거래법」 내지 지급결제 관련 법제에서도 채택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최근 현금 사용권(right to use cash)을 둘러싸고 국내외에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sup>314)</sup> 현금 및 기존의 지급결제수단을 사용하도록 보장하는 한편, 특정 지급결제수단의 강요를 금지하여야 한다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2019년 5월 30일 발의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의원 대표발의)이 사업자(가맹점)이 거래과정에서 이용자에게 특정한 지급수단을 강요하거나 전자화폐등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이용자를 달리 대우하지 못하도록 하여 소비자가 자유롭게 결제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취지로 국회에 제출되기도 하였다.<sup>315)</sup> 즉, 해당 법률안에서는 「전자금융거래

314) BEUC(Bureau Européen Des Unions De Consommateurs Aisbl), “Cash Versus Cashless: Consumers need a right to use cash”

([https://www.beuc.eu/publications/beuc-x-2019-052\\_cash\\_versus\\_cashless.pdf](https://www.beuc.eu/publications/beuc-x-2019-052_cash_versus_cashless.pdf) 2020.10.5. 최종검색)

315)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의원 대표발의, 2019.5.30.)(임기만료 폐기)

법 제37조(가맹점의 준수사항 등) 제1항과 제49조(벌칙) 제5항의 개정을 통하여 “거래과정에서 이용자에게 특정한 지급수단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지급결제수단의 다양성 보장은 Cassless 내지 현금 없는 매장의 등장에 따라 ‘소비자의 결제 선택권’에 대한 논의로 이어지고 있다.<sup>316)</sup> 이처럼 소액결제시장의 변화에 따라 향후 지급결제수단에 대한 다양성 보장 및 접근성 강화는 입법적 조치를 동반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향후 전자지급결제서비스 외에도 거래관계에 대한 지급서비스 제공 당사자 간의 관계를 포괄적으로 다룬 비전자지급서비스 등에 대하여도 적용대상으로 포함하는 포괄적 지급서비스법제의 도입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 7. 소액결제 서비스제공자의 의무와 책임 강화

소액결제업자는 off-line이나 온라인플랫폼·App에서 사업자(가맹점)과 소비자의 대금지급에 관여하기도 하지만, 최근 소액결제업자가 지급결제플랫폼으로서 기능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최근 소액결제업자에게는 온라인중개 플랫폼 운영자로서의 의무와 책임도 요구된다.

### (1) 소액결제업자의 적절한 조치의무와 지배적 영향력이 있는 경우의 책임

소액결제업자는 지급결제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이용자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적절한 조치의 의무를 부담해야 할 것이다.

제37조(가맹점의 준수사항 등) ① 가맹점은 **거래과정에서 이용자에게 특정한 지급수단을 강요하거나** 직불전자지급수단·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전자화폐(이하 “전자화폐등”이라 한다)를 사용하여 거래하는 이용자를 달리 대우해서는 아니 된다.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N1N9V0J5U3R0G1T6P4A1R4A2U1T4C0](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N1N9V0J5U3R0G1T6P4A1R4A2U1T4C0) 2020.10.5. 최종검색)

316) 이병희, “[현금 없는 매장 ‘불법’ 논란] “소비자 결제권 침해” VS “시대흐름 거스르는 규제”, 중앙 시사매거진 이코노미스트 뉴스기사(<https://jmagazine.joins.com/economist/view/329218> 2020.10.5. 최종검색)

유럽법률협회(ELA)의 「온라인 플랫폼 모델법(Model Rules on Online Platforms)」 제8조<sup>317)</sup>에서는 관련 이용자보호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의 소액결제지급업자에 대한 의무화 방안으로 고려해볼직 하다.

즉, 지급결제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이용자의 신체훼손, 개인정보침해, 재산권침해 등 권익침해 또는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소액결제업자가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였면서도 적절한 이용자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소액결제업자에게도 이용자의 손해에 대한 책임을 일부 인정할 필요가 있다.

이는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보호 등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통신판매증개자의 의무와 책임) 제3항에서 “사이버몰 등을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불만이나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그 원인 및 피해의 파악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시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규정과도 연계하여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 (2) 지배적 영향력이 있는 소액결제업자의 책임

최근 온라인플랫폼이나 지급결제플랫폼의 대형화에 따라 소액결제업자가 사업자(가맹점)에게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용자의 입장에서 판단할 때 소액결제업자가 사업자(가맹점)에게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합리적으로 신뢰가 있는 경우, 이용자는 사업자(가맹점)와 소비자로서의 이용자 간 계약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 사업자(가맹점)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와 구제수단을 소액결제업자에게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317) Article 8: Duty to Protect Users

1. The platform operator has no general duty to monitor the activity of platform users.
2. A platform operator who, on obtaining credible evidence of 30
  - a) criminal conduct of a supplier or customer to the detriment of other users; or
  - b) conduct of a supplier or customer which is likely to cause physical injury, violation of privacy, infringement of corporeal property, deprivation of liberty or violation of another similar right to the detriment of another platform user, fails to take adequate measures for the protection of the platform users, is liable for damages caused to platform users as a result of this failure.
3. Paragraph (2) also applies where the detriment is suffered by another person who stands to benefit from, or to be exposed to risks emanating from the goods, services or digital content to be provided under the supplier-customer contract.

이 때, 신뢰할 수 있는 판단기준은 사업자와 소비자사이의 계약이 오로지 소액결제서비스에 의하여 제공되는 기능을 통해서만 체결되는지 여부, 사업자와 소비자사이에 계약조건이 근본적으로 소액결제업자에 의하여 결정되는지 여부, 소비자가 지급할 대금액이 소액결제업자에 의하여 결정되는지 여부, 마케팅이 사업자가 아닌 소액결제서비스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여부 등이 될 것이다.

유럽법률협회의 온라인플랫폼 모델규칙 제20조<sup>318)</sup>에도 이러한 플랫폼의 외관책임이 규정되어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소액결제업자가 플랫폼으로 기능하는 때에는 「전자상거래 보호 등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통신판매중개자 및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책임)에 따라 일정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 판단된다. 즉,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일정한 방법으로 미리 고지하지 않는 경우 통신판매중개의뢰자(사업자(가맹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소비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 318) Article 20: Liability of the Platform Operator with Predominant Influence

1. If the customer can reasonably rely on the platform operator having a predominant influence over the supplier, the customer can exercise the rights and remedies for the non-performance available against the supplier under the supplier-customer contract also against the platform operator.
2. When assessing whether the customer can reasonably rely on the platform operator's predominant influence over the supplier, the following criteria may be considered in particular:
  - a) The supplier-customer contract is concluded exclusively through facilities provided on the platform;
  - b) The platform operator withholds the identity of the supplier or contact details until after the conclusion of the supplier-customer contract;
  - c) The platform operator exclusively uses payment systems which enable the platform operator to withhold payments made by the customer to the supplier;
  - d) The terms of the supplier-customer contract are essentially determined by the platform operator;
  - e) The price to be paid by the customer is set by the platform operator;
  - f) The marketing is focused on the platform operator and not on suppliers; or
  - g) The platform operator promises to monitor the conduct of suppliers and to enforce compliance with its standards beyond what is required by law.

향후 소액결제변화에 따라 지급결제사업자에 대한 의무와 책임 사항을 보완하는 입법작업을 추진할 때에는 해당 규정을 「전자금융거래법」 내지 지급결제법제에 명시적으로 법제화할 수 있을 것이다.

### (3) 소액결제업자의 보증책임과 오인 정보 제공에 대한 책임

소액결제업자가 사업자(가맹점) 또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서비스 등에 대하여 보증을 한 경우 소액결제업자는 그에 따른 보증책임을 지도록 의무규정을 도입하고, 사업자(가맹점) 또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서비스 등에 대하여 이용자로 하여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표시를 한 경우,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유럽법률협회의 온라인 플랫폼 모델규칙 제23조<sup>319)</sup> 및 제22조<sup>320)</sup>의 규정도 같은 맥락의 규정으로 이해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자상거래 보호 등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통신판매중개자 및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책임) 제2항에서 제3항에 유사한 수준의 규정이 있다. 특히, 동 규정의 경우, 물품·서비스 거래당사자 일방이 통신판매업자가 아닌 경우에도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온라인플랫폼으로 기능하는 소액결제업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

#### 319) Article 23: Guarantees

A platform operator is liable for guarantees which it gives about suppliers or customers, or about goods, services or digital content offered by suppliers.

#### 320) Article 22: Misleading Statements Made by the Platform Operator

If a platform operator makes misleading statements about suppliers or customers, about goods, services or digital content offered by suppliers, or about any other terms of the supplier-customer contract, the platform operator is liable for the damage which this misleading information causes to customers or suppliers.

#### (4) 지급결제서비스 협의기구의 구성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가 보장

최근 지급결제서비스 방식이 다양화되면서 새로운 형태의 지급결제수단도 등장하고 있어 소액결제시장은 부단히 변화하고 있다. 새로운 지급결제서비스의 등장에 따른 서비스 제공방식 또는 보안상의 쟁점 등과 관련하여, 최근에는 금융당국이나 감독기관, 사업자, 이용자 모두 그 정확한 위험성을 예견하기 어려운 경우도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전세계적으로 금융분야에서 규제샌드박스제도가 가장 먼저 도입되기도 하였다. 즉, 이용자 보호의 범위나 방식은 각 지급결제서비스 제공업자의 영업 범위 설정이나 새로운 지급서비스제공업자의 결제시스템 접근성, 오픈뱅킹시스템 확대 등에 따른 다양한 서비스와도 연계되어 있다.

따라서, 소액결제시장변화에 따른 다양한 지급결제서비스의 등장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개입과 다층화된 거래구조 및 법률관계 속에서 지급결제서비스의 편의성과 안전성, 보안성 등이 복합적으로 연결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따라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금융분야에서 새로운 기술을 기반으로 한 소액결제서비스 제공에 따른 위험성을 평가하고, 금융안정성과 보안 등 안전성을 모니터링하기 위하여서는 각 이해당사자가 함께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지급결제서비스 분야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협의체는 해외에서도 빠른 속도로 조직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금융분야 규제환류체계의 절차화를 다룬 다양한 보고서와 논문들이 제시된 바 있다.

다음 <표 25>는 해외에서 지급결제서비스 분야 협의체 설치 사례 및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lt;표 25&gt; 지급결제서비스 관련 협의체 운영 해외 사례 및 시사점

입법	협의기구 명칭	주요 특징	시사점
EU	유로지역 소액결제위원회 (Euro Retail Payment Board)	- 소액결제시장 수요자 및 공급 자 참가 - 유럽중앙은행이 주도 - 유럽위원회가 옵저버로 참여	- 금융당국과 관련기관, 지 급결제서비스제공자, 소 비자단체가 참가하는 협 의기구 설치  - 핀테크 및 소액결제 분야 규제개선을 위한 규제환 류체계의 절차적 보장
싱가포르	지급결제위원회 (Payments Council)	- 싱가포르 중앙은행이 주도 - 청산기구, 카드사, 소매상협회 등 참가	
스웨덴	소액지급위원회 (Retail Payments Council)	- 재무부, 금융감독청이 옵저버 로 참여 - 이용자 및 공급자 참가	
일본	결제고도화민관 추진회의 (決済高度化官民推 進會議)	- 중앙은행 및 수요자 불참 - 은행, 학계, 핀테크 및 빅테크 참여	

자료: 현정환·한재현(2020), “우리나라 지급서비스협의기구 구성 방안(미발표 논문)”<sup>321)</sup>의 표를 인용하여  
시사점을 추가 작성함

321) 현정환, “소액결제시장 변화에 따른 법제 대응방안 연구 관련 자문의견서”, 2020.9., 3면의 내용을 재인용.

## 제3절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방안

### 1. 소액결제 관련 정보의 수집 및 활용 동의 및 정보제공

소액결제업자, 사업자, 금융기관 외에도 이러한 지급결제과정에 참가하게 되는 다양한 전자금융보조업자의 경우에도 소비자가 지급결제를 위하여 제공한 소액결제정보를 접할 수 있게 된다. 일례로 위치정보가 포함되는 경우, 이용자의 소비패턴이나 생활방식, 이동경로 정보 등을 통하여 소액결제정보가 상업적 목적으로 가공되거나 활용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My Data와 My Payment 사업자가 인정되어 시장 주체로서 일정한 역할을 확대하는 경우, 이용자의 정보를 활용한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가 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즉, 관련 업자의 결제정보 접근 및 활용은 소비자에게 유익한 정보를 재창출할 수도 있으며, 특정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정보에 지급결제정보를 접목하게 되면 소비자 취향과 관심을 적중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도 유리하다. 이러한 고객 지급결제정보에 대한 접근과 활용을 위하여 사업자(가맹점)나 정보통신사업자, 지급결제업자들은 할인권 제공 및 무료체험 행사 등 다양한 유인책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보의 취득 가능성도 높은 편이다.

반면에, 고객의 입장에서는 이용자 정보가 거래 완료 이후 제3자에게 어떠한 목적으로든 유출되거나 활용되는 것이 달갑지 않을 수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지급결제 정보가 어떤 식으로 수집되고 관리되는지에 대한 불투명성은 소비자의 불안을 증폭시키게 된다. 특히, 지급결제 정보 제공 이후에는 소비자로서의 이용자가 그 정보의 활용을 통제하기 어렵고, “앱(application)”을 통한 물품·서비스의 구매를 위한 지급결제에서 소비자가 개인 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 시에, 어느 정도의 범위에서 개인정보가 수집되고 활용 동의가 이루어지는지 명확하게 이해되지 않거나 고지조차 명확하게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7조의 개정을 통하여, 개인정보처리자는 “동의 내용을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을 SNS나 문자, 앱알림창 등에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러한 간편 동의 절차는 더욱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대부분의 이용자들은 간편 동의 절차 과정에서 동의 과정이 진행된 후에는 어떤 동의를 했는지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해 볼 수조차 없는 경우가 많다. 또한, 지급 결제에 필요한 정보라 하더라도 해당 수집정보가 수집 또는 관리 과정에서 도난 또는 분실, 침해, 오용 등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아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은 계속 커지고 있다.

따라서, 소액결제에 따른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이용자의 이익과 반대되는 방식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OECD 가이드라인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몇가지 준수 의무에 대하여 「전자금융거래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개별 법률에 명시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sup>322)</sup>

#### ① 개인정보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을 정도의 안전성 확보

소액결제업자는 소액결제 시스템 고안 및 개발시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포함해야 할 것이며, 적절한 안전장치는 새로운 시스템이나 업데이트된 시스템에 통합되도록 조치해야 한다.

#### ② 수집되는 정보의 범위 최소화

소액결제업자는 소액결제를 위해 수집되는 개인정보 중 i) 결제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거나, ii) 배송업자 등에 의해 요구되거나, iii) 법률상 필요하거나, 또는 iv) 계좌 및 리스크 관리, 인증, 사기 예방, 법률 준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정보에 국한하여 수집해야 한다. 이러한 정보에는 인증 대리인의 정보(authenticating data)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이름, 우편번호, 전화번호, 결제카드 번호, 은행 계좌번호, 은행 또는 다른 금융기관의 계좌 식별코드 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③ 이용자의 개인정보 수집 범위에 대한 선택권 보장 및 정보 제공

소액결제 과정에서 사업자가 위에서 명시한 사항 이외의, 법률상 필요하거나 결제를 마치기 위해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를 수집 및 사용할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그러한 사항에 대해 적절한

322) OECD, 「Consumer Policy Guidance on Mobile and Online Payments」, OECD Digital Economy Papers No.236, 2014, p11.; 송민수, “OECD 모바일 및 온라인 결제 소비자정책 지침 제정”, 「글로벌 소비자법 제 동향」 제1권3호(통권3호), 한국소비자원, 2014.6.30., 7~8면.

시기에 분명하게 고지해야 하며, 소비자가 그러한 정보의 수집 및 활용을 제한 혹은 거부할 수 있도록 적절한 선택 방안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사업자는 개인 위치정보, 건강정보, 재정정보나 가족관계 정보와 같이 민감한 정보를 수집하려는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정확히 해당 정보의 수집 사실을 알리고, 정보의 활용 범위를 설명한 뒤, 정보제공에 대한 명시적인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④ 지급결제 관련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관련 방침에 대한 설명 의무

소액결제업자는 소액결제에 필요한 정보 수집 및 활용에 있어서 그 수집 대상 정보와 관리 정책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i) 소비자의 개인정보가 수집 및 저장되는 이유와 ii) 그러한 정보가 사용되고 공유될 수 있는 방식과 iii) 소비자가 이를 통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할 의무를 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 ⑤ 일반적 접근성이 확보된 기술중립적 정보제공 수단 및 채널 등의 사용

이해관계자는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고, 서로 다른 유형의 기기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한 정보제공 수단과 채널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는 지급결제 과정 중에서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는 방법과 적절한 시점에 분명하고 일관성 있는 방식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 2. 지급결제 관련 보안 강화

소액결제업자의 지급결제플랫폼에서 오픈뱅킹을 이용하는 이용자 등의 경우,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전 금융업역에 걸쳐 다량으로 수집·보관되고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적절한 수준의 보안조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가장 중요한 조치이기도 하다.

「전자상거래 보호 등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전자적 대금지급의 신뢰 확보)<sup>323)</sup>에서는 소액결제업자에게도 보안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32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전자적 대금지급의 신뢰 확보) ①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수단에 의한 거래대금의 지급(이하 "전자적 대금지급"이라 한다)방법을 이용하는 경우 사업자와 전자결제수단 발행자, 전자결제서비스 제공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대금지급 관련자(이하 "전자결제업자등"이라 한다)는 관련 정보의 보안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와 전자결제업자등은 전자적 대금지급이 이루어지는 경우 소비자의 청약의사가 진정한 의사 표시에 의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명확히 고지하고, 고지한 사항에 대한 소비자의 확인절

한, 「전자상거래 보호 등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전자결제업자등)에서는 전자결제서비스의 이행을 보조하거나 중개하는 자 중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해당 보안 조치 의무를 지우고 있다.

1. 「은행법」 등 법령의 규정에 따른 금융회사로서 계좌이체업무를 수행하는 금융회사
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신용카드업자
3. 전자적 대체 또는 정보처리시스템에 화폐가치 또는 그에 상응하는 가치를 기록·저장하였다가 재화 등의 구매 시 지급하는 결제수단의 발행자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6. 전자결제 대행 또는 중개서비스 사업자

다만, 「전자상거래 보호 등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에서는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서는 구체적인 인적·물적 기준을 정하여 두고 있지 않다.

한편,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책임) 및 제21조(안전성의 확보의무), 제21조의2(정보보호최고책임자 지정), 제21조의3(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평가), 제21조의4(전자적 침해행위 등의 금지), 제21조의5(침해사고의 통지 등), 제21조의6(침해사고의 대응), 제22조(전자금융거래기록의 생성·보존 및 파기)에 이르는 다양한 보안 관련 조치의무와 책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마련하여야 한다.

1. 재화등의 내용 및 종류
2. 재화등의 가격
3. 용역의 제공기간

③ 사업자와 전자결제업자등은 전자적 대금지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전자문서의 송신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언제든지 소비자가 전자적 대금지급과 관련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④ 사이버몰에서 사용되는 전자적 대금지급 방법으로서 재화등을 구입·이용하기 위하여 미리 대가를 지불하는 방식의 결제수단의 발행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제수단의 신뢰도 확인과 관련된 사항, 사용상의 제한이나 그 밖의 주의 사항 등을 표시하거나 고지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에 전자적 대금지급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전자결제업자등은 대금지급 관련 정보의 열람을 허용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분쟁의 해결에 협조하여야 한다.

또한, 금융위원회의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에도 디지털 금융보안 강화를 금융안정 분야 주요 추진전략으로 설정함으로써 적절한 보안조치를 수립하고, 인력·거래규모, 영업범위 등을 고려하여 내부통제 거버넌스를 구축하도록 하며, 직무분리 의무 등을 합리적으로 차등화 하는 한편, 오픈뱅킹에 있어서도 금융인프라로서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참가기관이 준수하여야 하는 보안·인증·표준화·정보보호 등의 기준을 마련해 나갈 것으로 제시한 바 있다. 다만, 기술·근무환경 변화 등에 맞지 않는 금융보안 규제는 현대화하여 직무분리 및 최소 전산인력 등의 요건을 개선하고, 재택근무 관련 망분리 규제와 관련하여서는 새로운 망분리기술을 활용하여 기존의 망분리규제를 논리적 망분리규제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에는 비조치의견서 발행을 통하여 망분리 예외를 임시로 허용하고 있으나, 향후 「전자금융감독규정」 및 POST코로나 재택근무 가이드라인 등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 제4절 소액결제시장 변화에 따른 법제 개선방안

### 1. 소액결제 관련 개별법에 대한 법제 개선방안

#### (1)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소액결제서비스분야 신설

현재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근거한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시로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소액결제시장 변화에 따라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업종, 품종, 해당품목의 하나로 소액결제서비스를 신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즉, 결제수단의 일종인 상품권 관련업(상품권, 신유형 상품권), 신용카드업 등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와 유사한 소액결제서비스(간편결제)에 대해서도 분쟁유형 및 분쟁기준을 신설하는 것이 가능하다. 해당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대표적으로 잔액환급거절, 결제거절, 부정사용에 따른 보상, 거래수수료가 회원에게 전가된 경우, 비밀번호 유출, 항변권행사거절 등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도니다.

#### (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액결제서비스 표준약관 제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 등록소비자단체, 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의해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표준이 될 약관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19조의3).

현재 소액결제서비스와 유사한 표준약관으로는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등이 있으나, 간편결제 등에 대한 표준약관은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소액결제

서비스 중에서도 향후 계속 활용도가 증대될 것으로 보이는 간편결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표준약관을 제정·시행할 필요가 있겠다.

간편결제 표준 약관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내용으로는, 서비스 가입대상 및 제한, 이용계약의 성립, 서비스이용 및 제한, 소액결제업자의 의무와 책임, 회원의 의무, 서비스의 해지 및 이용제한, 손해배상, 약관의 변경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 (3)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비자보호지침에 소액결제서비스 내용 신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법과 시행령 등 관련법령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여 예시함으로써 이 법 위반행위의 방지 및 소비자피해의 예방을 위하여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를 행함에 있어 사업자가 지켜야 할 기준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을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에는 일반적 준수사항의 하나로 전자적 대금지급의 신뢰확보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권고사항의 하나로 후불식전화결제서비스의 사용제한 및 요금분쟁 관련 등이 규정되어 있을 뿐이다.

따라서, 향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에 새롭게 등장한 소액결제서비스에 대해서도 규정할 필요가 있다. 즉, 전자적 결제서비스로서의 소액결제서비스의 경우 소비자에게 통지해야할 내용을 신설하고, 통신판매중개자로서의 소액결제서비스의 경우 소액결제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를 둘러싼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규정해야 할 것이다.

### (4) 「콘텐츠산업진흥법」에 의한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 적용범위에 소액결제사업자 포함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콘텐츠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준수할 내용을 정한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제정·시행되고 있다.

소액결제업자의 경우, 콘텐츠사업자의 지위와 기능을 가지는 때에는 콘텐츠이용자보호 지침이 적용된다. 소액결제업자는 온라인플랫폼으로서의 콘텐츠사업자 기능을 하기 때문에 콘텐츠사업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며, 해당 지침에 소액결제업자의 지위를 명확하게 표기함으로써 적용 대상으로 포섭하여 규정하여야 한다.

### (5)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이용자보호 강화

「전자금융거래법」 제3장 [전자금융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및 이용자보호]에서 온라인 플랫폼 내지 지급결제플랫폼의 기능에 대한 고려를 통하여 사업자와 소비자를 구분하여 이용자보호 강화방안을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지급결제서비스업자에 대한 플랫폼운영자로서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이용자를 더욱 강하게 보호하는 다양한 조치들을 의무화해야 할 것이다.

「전자금융거래법」의 개정을 통하여 이용자 보호 제도를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앞에서 제시한 제4절 소액결제시장 변화에 따른 이용자보호 강화 방안에서 언급한 6개 유형별로 구체적인 입법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즉, i) 소액결제서비스 이용시 명시·설명 의무 강화, ii) 소액결제를 통한 대금지급사실의 통지의무 강화 및 거래요류의 정정요청 제도화, iii) 부당거래행위의 규제, iv) 분쟁해결제도 보완, v) 소액결제 서비스 수단의 호환성 및 다양성 보장, vi) 소액결제 서비스제공자의 의무와 책임 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법」에 원칙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절차 및 방법 등 세부 내용에 대한 규정은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과 「전자금융감독규정」에 정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결제가 늘면서 소액결제시장에서의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전자금융감독규정」이나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에 마련된 감독기준에 대하여 비조치의견서 방식으로 감독 및 규제 대상에서 적용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며, 이러한 임시적 행정조치들도 중장기적으로는 법률 및 시행령, 감독규정, 감독규정시행세칙 등의 개정을 통하여 명문화하는 입법 개선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용자보호규정 강화

지급결제업자에 대한 소액후불결제 제도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통하여 도입되는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과금서비스업자와의 경쟁을 통하여 해당 소액결제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소액후불결제 1회 한도 및 횟수, 1일 총한도 및 월 총한도 등 다양한 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장 [통신과금서비스]에서도 통신과금서비스업자의 기능과 지위 및 책임에 대하여 「전자금융거래법」상의 소액후불결제업무와 유사한 수준으로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즉, 통신과금서비스업자의 경우에도 다양한 온라인플랫폼 및 APP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급결제플랫폼 내지 온라인플랫폼 운영자로서의 이용자보호 조치의무 및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7)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대한 소액결제서비스 관련 규정 강화

소액결제서비스가 선불할부이거나 후불할부인 경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며, 향후 소액후불결제서비스가 도입될 경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경우 2020년 6월 24일 개정된 할부판매법을 통하여 소액분할후불규제를 도입하고, QR 코드 결제사업자 등의 보안 대책을 강화한 바 있다. 즉, 소액(한도액 10만엔 이하)의 분할후불서비스 제공사업자 등록제도를 창설하고, 등록요건과 적절한 한도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과 동시에 소비자보호규제와 보안규제내용은 기존의 신용카드회사와 동일하게 부과한 바 있다. 또한, 현행 신용카드회사, 가맹점계약회사(立替払取次業者), 가맹점에 추가하여, 새로운 결제시스템에서 대량의 신용카드번호 등을 취급하는 사업자(결제대행업자, QR코드 결제사업자, EC 쇼핑몰사업자 등)에 대해서도 신용카드 번호 등의 적절한 관리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채택한 바 있다.

다만, 금융위원회에서 제시한 소액후불결제서비스에서는 리볼빙서비스(결제금액 할부 성격)나 현금서비스(소액일시금대출의 성격), 거래대금 할부 등을 허용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 2. 지급결제 중심의 법제 개편 필요성과 입법적 대응방안

코로나19 상황에서 지급결제생태계는 또 다시 큰 변화를 겪고 있다. 지급결제가 온라인 플랫폼을 등장하여 새로운 시장파괴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어 기존 업계에 변화를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sup>324)</sup> 이에 빠르게 변화하는 소액결제시장에서의 지급결제생태계에 따라 관련 법제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온라인플랫폼에 기반한 지급결제서비스의 경우 지급결제업자와 이용자(지급인,수취인)과의 법률관계, 진입규제(허가,등록 등), 감독, 이용자보호에 대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규율이 필요하고, 역외적용 내지 역내적용에 대한 국경간 전자지급결제에 대한 국제적인 수준의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핀테크의 발전에 따른 새로운 지급결제수단의 출현과 간편결제의 확대에 따른 소액결제 시장 변화에 유연하고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하여서는 지급결제법제의 통합입법과 이용자 보호 강화를 통한 시장 신뢰보호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 (1) 전자지급결제거래 체계화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방안

전자금융거래라는 표현은 기존의 금융기관을 전제로 한 것으로 새로운 전자지급결제수단의 등장에 따른 법적 대응을 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새로운 전자지급결제수단의 등장에 따른 국내 전자지급결제수단을 이용한 전자지급결제서비스의 진입완화를 통해 전자지급결제의 발전을 촉진하고 전자지급결제서비스의 발전의 걸림돌이 되는 법률관계의 명

324) Maan, Amar, Payment Services - Disrupting a Disruptor's Market, 27 July 2020, <https://www.dlapiper.com/ko/global/insights/publications/2020/07/payment-services-disrupting-a-disruptors-market/2020.10.5>. 최종검색

확화와 이용자보호 강화를 통해 국내외적 전자지급결제서비스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다.

즉, 법률의 명칭을 전자금융업에 대한 거래법제로서의 특징을 반영한 기존의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법에서 “전자지급결제거래”를 기초로 한 전자지급결제 거래구조에 관한 법으로서의 법률 제명으로 개칭하고, 전자지급결제거래를 중심으로 한 “전자지급결제서비스, 전자지급결제 거래의 법률관계, 전자지급결제 서비스 이용자보호, 그리고 전자지급결제거래 서비스제공자의 유형에 따른 진입규제와 감독” 등을 규정하는 체계로 구성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다만, 전자지급결제거래법(가칭)의 적용대상에 가상자산, 간편결제 수단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서는 지속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때, 비교법적으로는 유럽연합의 PSDS2, 싱가포르 지급결제서비스법, 일본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 등을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1)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방안

### ① 전자금융거래법

금융위원회 · 기획재정부 · 중소기업벤처부 · 한국은행 · 금융결제원이 2019년 2월 공동으로 마련하여 발표한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방안]에서의 3대 추진전략 및 9대 추진 과제와 금융위원회가 2020년 7월 발표한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에 따른 4대분야 혁신 전략에 기초하여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제시한다면,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규정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은 2019년의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방안’에 비하여 금융안정과 이용자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도입을 예고하고 있어 향후 전자금융거래법은 대폭적인 개정이 예상되며, 현행 제도를 보완하는 다양한 개정안이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시장의 신뢰성 확보 및 관리체계-거버넌스의 조정 측면에서 본다면,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편리하면서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데이터 및 관련 금융거래

정보 등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고, 전자금융 및 지급결제서비스 관련 기술을 국내외적으로 표준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지능정보사회화를 앞당기고 전자금융 거래 분야 및 지급결제 분야에 안정성과 안전성을 확보하면서도 장기적인 발전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디지털금융협의회 등의 협의체가 필요할 것이다.

한편, 거래 관계 및 거래 당사자 측면에서 소액결제 등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이용자가 전자금융업자 종사자 간 대면·비대면을 가리지 않고 금융상품 또는 금융서비스를 제공·이용 시,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거래 전체로 전자금융거래 방식을 확대함으로써 디지털 금융에서 이용자 보호와 금융보안 등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② 새로운 유형의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제공자 및 종합지급결제업자 도입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My Payment로 불리우는 지급지시 전달업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통하여 법 적용대상으로 포섭되는 경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독립금융상품자문업자”와 함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5호에서 제17호에 규정한 “가명처리”, “가명정보”, “익명처리”를 이용한 제11조의2(부수업무)에 따른 My Data업과 함께 새로운 유형의 다양한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즉, 지급지시전달업이라는 새로운 유형의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전자금융거래법의 적용대상으로 확대하고, 소액결제 과정에서 지급인의 자금을 보유하지 않으면서도 지급인의 계좌가 개설된 금융회사 등에 지급지시를 전달함으로써 전자자금이체 등을 돕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지급지시전달업이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지급지시전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서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규정하여야 할 것이며, 지급지시전달업자로부터 지급지시를 받은 금융회사 등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법에 따라 이용자가 지급지시 전달업자에게 지급지시를 한 경우, 동일하게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이 경우, 지급지시결제업자 등은 이용자로부터 사전에 관련 지급지시에 관한 동의를 통하여 권한을 수여받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전자지급수단별로 세분화된 전자금융업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에 따라 향후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업무의 기능에 따라 자금이체업과 대금결제업, 결제대행업, 지급지시전달업의 4개 유형으로 재편되고, 자금이체업은 허가제로, 나머지는 등록제로 운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 각 업별 재무건전성 및 행위규제 등에 대한 다층적인 규제 적용 외에도, 진입시에도 일명 Small License제도로 운용함으로써 최소자본금 등의 진입규제를 영업규모 등에 따라 다층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한편,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에서도 밝힌 바 있는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자금이체업을 하면서 대금결제업과 결제대행업을 함께 할 수 있는 종합지급결제서비스제공이 가능하게 되면, 은행 등이 개설하는 통장이나 계좌와는 별도의 서비스 범위가 정해질 것이므로 이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행위제한이 따라야 할 것이다. 특히, 전자금융업 외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My Data 업 내지 「외국환거래법」 및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5조의2(소액해외송금업무의 등록)에 따른 외환업무를 담당하는 경우나 재무건전성 내지 금융안정성에 직결된 업무를 하는 경우 등에는 업별 규제 외에 업무별 행위제한 설계도 필요하다. 이를 통하여, 이용자 입장에서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어 편리성과 수익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되며, 다만, 이 경우에도 금융실명거래 및 금융안정성 관련 의무, 보안성 관련 안전조치 등을 모두 준수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향후 AI나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디지털경제 활성화에도 전자금융거래업이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므로, 전자금융거래업자 내지 지급결제플랫폼 등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일정한 조치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하여,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디지털금융협의회 등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융복합 기술 및 서비스와 관련된 다양한 기준을 제시하고, 디지털금융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③ 이용자의 예탁금 관리 및 후불소액결제에 대한 한도 설정 등 행위규제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한 충전금액 등 이용자 예탁금에 대하여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에서는 지급결제서비스제공자인 전자금융거래업자의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위탁관리하도록 하겠다는 방향성을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서는 전자금융거래업자의 파산 등의 경우에 대비하고, 이용자의 예탁금이 안전하게 보호되고 우선 지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즉, 별도로 관리되는 이용자 예탁금은 해당 전자금융거래업자의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도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후불소액결제 제도가 채택되는 경우, 충전잔액에 대한 부족분으로 후불결제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 및 이용 총한도 등의 제도가 함께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Small License로 등록한 대금결제업자 등에 대하여서는 후불결제업무를 겸영하려는 경우 금융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관리감독체계를 확립하고, 사업자별 후불결제총액 한도를 사업자의 재무건전성 등과 연계하여 관리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이용자별 개인 한도 설정시에도 이용자에 대하여 데이터 기반의 다양한 신용평가가 가능하도록 하는 Micro신용평가 기준 등을 개발하고, 이를 적용하기 전 사전등록 및 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투명성·공정성 확보 관련 조치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 ④ 이용자 보호 강화 및 금융 보안 강화

최근 간편송금·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업자의 경우 APP을 통한 플랫폼 방식의 금융상품 광고·판매 및 서비스제공에 주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금융상품이나 금융서비스에 대한 대리·중개·주선 등의 서비스를 광고나 비교분석·추천중목제시 등의 이름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플랫폼을 직접 운영·관리하는 전자금융거래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및 상품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따라서, 금융플랫폼 운영에 관한 행위규제가 필요하며, 이용자의 정보 비대칭에서 오는 거래관계에서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소액결제 분야에서의 디지털 금융거래시장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최근 비대면거래가 늘면서 금융회사의 보안 강화 외에도 지급결제서비스제공자의 이용자에 대한 우선보상 및 이용자의 보안조치 최신성 유지 등의 협력 의무에 대하여서도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즉, 싱가포르의 입법 사례에서 보듯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서도 지급결제업자에 대한 일정한 손해배상책임을 원칙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지급결제업자가 고의·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이용자에게 보상조치를 하도록 하는 방법의 보호 조치 강구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용자의 협력의무에 대하여서는 다양한 사례를 바탕으로 협력의무에 대한 적정성·적합성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전자금융거래업자와 이용자 간 손해의 분담에 대한 고민과 논의, 이용자의 보안조치 협력의무 수준 등에 대하여 다양한 논의가 이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공인인증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전자금융거래에서 다양한 인증수단의 활용이 기대되고 있다. 따라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서도 혁신적 인증수단의 발전과 활용을 위하여서는, 접근 매체를 정보 조회용 매체와 거래 지시용 매체로 구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각각의 매체에 대한 다층화된 등급별 기술·보안 규제가 적용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즉, 매체의 이용 목적별로 단일 매체를 활용하여 접근하도록 할지, 2개 이상의 매체를 통하여 접근하도록 할지 그 위험별 보안조치를 정하고, 매체를 이용하여 활용하려는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서도 다층화하여 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지급결제사업자 등 전자금융거래업자가 가진 정보나 관리하는 정보와 관련하여, 정보처리시스템 및 정보통신망 등에 대한 무결성, 가용성, 기밀성, 지속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금융보안 관련 원칙을 전자금융거래법에서 명확하게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즉,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 외에도 재정적 지원 및 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지원, 금융보안 관련 교육 등 다양한 유형의 책임에 대하여서는 법률에서 명문으로 관련 원칙을 규정하고, 세부 기술 수준 및 절차 등에 대하여서는 하위규정으로 위임할 수 있도록 하여 보안 관련 규정의 입법화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금융보안과 관련된 책임자 지정 및 이사회의 관리 책무, 보안조치 계획 등의 금융위원회 보고의무 등 원칙 규정의 채택이 필요할 것이다.

## ⑤ 역외적용

최근 온라인·모바일 지급결제가 늘어나면서 전자금융거래 분야에서도 역외적용에 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에서도 이러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통하여 역외적용 규정을 채택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서는 국내 시장이나 국내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 소위 빅테크로 불리는 해외의 지급결제사업자 등에 대하여서도 전자금융거래법이 적용되도록 하는 역외적용 규정의 채택이 기대된다. 즉, 해외 지급결제사업자라 하더라도 국내 이용자가 해당 서비스를 제공받게 되는 경우, 국내에 법인 또는 지점·영업소 등의 설치 의무를 적용하고,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다층화된 진입규제 및 행위규제를 적용받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역외적용 규정이 채택되는 경우, 위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포함되는 다양한 의무와 책임이 국내 전자금융거래업자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를 통하여, 이용자예탁금 보호 및 보안조치 등이 동일하게 적용됨으로써 이용자 보호에 더욱 유리하게 될 것이며, 빅테크기업의 지급결제거래업무에 대한 투명성이 보장되고, 관련 서비스·상품의 국내 이용에 대하여서도 안정성이 보장될 것으로 판단된다.

## 2) 전자지급결제거래법의 도입 가능성 검토 및 제언

전자금융거래라는 표현은 기존의 금융기관을 전제로 한 것으로 새로운 전자지급결제수단의 등장에 따른 법적 대응을 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새로운 전자지급결제수단의 등장에 따른 국내 전자지급결제수단을 이용한 전자지급결제서비스의 진입완화를 통해 전자지급결제의 발전을 촉진하고 전자지급결제서비스의 발전의 걸림돌이 되는 법률관계의 명확화와 이용자보호 강화를 통해 국내외적 전자지급결제서비스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다.

즉, 법률의 명칭을 전자금융업에 대한 거래법제로서의 특징을 반영한 기존의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법에서 “전자지급결제거래”를 기초로 한 전자지급결제 거래구조에 관한 법으로서의 법률 제명으로 개칭하고, 전자지급결제거래를 중심으로 한 “전자지급결제서비

스, 전자지급결제 거래의 법률관계, 전자지급결제 서비스 이용자보호, 그리고 전자지급결제 거래 서비스제공자의 유형에 따른 진입규제와 감독” 등을 규정하는 체계로 구성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다만, 전자지급결제거래법(가칭)의 적용대상에 가상자산, 간편결제 수단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서는 지속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때, 비교법적으로는 유럽연합의 PSDS2, 싱가포르 지급결제서비스법, 일본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 등을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2) 소액결제시장 생태계 활성화 및 종합적인 관리·감독을 위한 법률 제정 방안

지급결제에 관한 법적 체계는 이원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바, 전자는 지급결제의 등록, 발행, 이용한도 등 진입규제에 관한 것이고, 후자는 지급결제거래에 관한 당사자간의 관계 및 이용자보호를 규율이다.

향후 지급결제거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이질적인 요소를 분리하여 전자는 각각의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지급결제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는 모든 지급결제수단을 둘러싼 지급결제업자와 이용자간의 관계와 이용자보호를 규율하는 방식으로 체계화 해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즉, 이용자는 지급인과 수취인으로 구분하고, 이들간의 관계 자체에 대한 규정은 각각의 법률에서 규정하는 한편, 지급결제법에서는 지급결제서비스 유형별로 제공자와 이용자 간의 관계를 규율하여 거래안정화 및 시장신뢰 보호 방안을 주로 규정하는 방식으로 채택할 수 있을 것이다.

## 제5절 결 어

본 연구에서는 소액결제시장의 변화에 따른 법제 대응방안을 효과적으로 검토하여 제시하기 위하여, 제2장에서 소액결제시장 현황과 관련 정책 추진 현황을 소개하고, 제3장에서는 「전자금융거래법」을 위주로 설계되어 있는 소액결제 관련 법제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 필요성에 대하여 살펴보았으며, 제4장에서는 소액결제시장 변화에 따른 해외의 지급결제법제 입법 동향에 대하여 소개하였다.

제5장에서는 소액결제시장 변화에 따른 법제 대응방안을 효과적으로 제시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 · 기획재정부 · 중소기업벤처부 · 한국은행 · 금융결제원이 2019년 2월 발표한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방안]에서의 3대 추진전략과 2020년 7월 금융위원회에서 제시한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을 기초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논의와 이에 대한 입법적 검토를 수행하였다. 또한, 2020년의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 정책 추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전자금융거래법」 주요 개정 방향을 제시한 내용을 토대로 본 연구 수행과정에서 수렴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작업에서 고려하여야 할 사안들에 대하여 추가적인 법제 대응방안을 함께 제시하였다. 그리고, 소액결제시장 변화에서 그 활용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온라인플랫폼 · APP을 통한 간편결제 · 간편송금 서비스 이용 확대에 따라 기존의 「전자금융거래법」에서 다루지 않았던 이용자 보호 강화 방안 내지 개인정보보호 · 보안 강화 방안에 대하여도 추가적인 제언을 수행하였다. 특히, 「전자금융거래법」의 개정을 통하여 채택할 필요가 있는 사항 외에도, 실제로 소액결제서비스 이용자의 지급결제와 관련된 유관 법제들의 개정방향성을 함께 살펴보고, 이용자 편익을 최대화 하는 관점에서 법제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아래의 <표 26>은 본 보고서의 주요 내용인 소액결제시장 변화에 따른 쟁점별 법제 대응방안의 주요 논점 및 제언 방향을 정리한 것이다.

<표 26> 소액결제시장 변화에 따른 법제 대응방안 주요 내용

근거 법령	관련 제도	법제 대응 방안	관리·감독 기관
전자 금융 거래법	- My payment ·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신설	양자 구별 최소자본금 요건 마련(완화) small license의 경우 별도 진입요건 마련 양자에 대한 업무 명확화 지급결제계좌의 허용 필요(기존 금융업자와 관계 명확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결제원, 금융보안원, 디지털금융협의회,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 등
	- 전자금융업종 기능별 통합 및 간소화	기존과 달리 자금이체업, 대금결제업, 결제대행업으로 통합	
	- 최소자본금 등 진입규제 합리화	최소자본금 기준 완화 기능별로 등록을 하던 것을 하나의 라이선스로 해결 필요	
	- 소액후불결제 · 충전한도 상향 등 영업범위 확대	소액후불결제제도의 제한적 허용 간편결제 충전한도 상향과 이용자보호 강화 사업자 건전성 관리 및 이용자 보호 제도 재검토 필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결제원, 금융보안원, 디지털금융협의회 등
	디지털 금융이용자 자금 보호 강화	전자금융업자의 자금과 고객자금 분리 명시 필요	
	금융플랫폼 등 영업행위 규율체계 마련	자율규제제도 마련 내부컴플라이언스 제도 강화 이해관계자간의 책임관계 명확화	
	합병 및 영업양도 기준마련	이용자에 대한 사전고지제도 필요 심사제도 강화	
	금융분야 인증 · 신원확인제도 개선	접근매채의 개념 확대 인증방법의 자율성 보장 및 책임 강화 비대면 신원확인제도 개선 및 책임 강화 망분리 규제에 대한 사업자의 자율권 인정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결제원, 금융보안원,

근거 법령	관련 제도	법제 대응 방안	관리·감독 기관
	전자금융사고 책임범위 확대	손해배상책임요건 개정 필요 입증책임 명시 및 입증책임 전환 사업자의 면책사유 축소	디지털금융협의회 등
	전자금융거래법 적용대상 명확화	전자금융업의 적용범위 확대 필요	
	Big tech의 금융업 진출 대비 관리체계마련	빅테크 기준 마련 필요(선정기준, 자산규모, 주된 사업 성격 등) 이용자 보호 및 금융안정을 위한 관리감독 체계 마련 필요 지급결제서비스 협의기구 설치 및 운영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디지털금융협의회
	디지털 리스크 관리·감독 선진화	금융회사의 의무와 책임 강화 사이버보안에 대한 단일법 마련 필요 투자자 내지 고객에 대한 공시의무 강화	
	금융보안 관련 민간 거버넌스 강화	사이버보안 관련 기술 개발 촉진책 법제도와화 필요 내부 컴플라이언스 제도 실질화 필요 정보보호최고책임자 권한 확대 필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등
	금융분야 사이버 안보 관리체계 구축	- 금융사고 통지의무와 사고확산 방지조치 의무 강화	
	오픈뱅킹 및 디지털 지급거래 청산제도화	오픈뱅킹 및 공동업무시스템 관련 법적 근거 마련 표준화된 자금이체 기능 제공 의무화 결제사업자에 대한 수수료 등 차별금지 등 명시 전자금융보조업 관련 규정 개편 필요 (개념, 책임조항, 금융클라우드 이용 및 감독 등) 기존 은행등과의 관계 정리 필요 - 지급지시 청산회사 지정제도 법제화 필요 (자격, 업무, 책임 등 구체화 필요)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결제원, 디지털금융협의회 등

근거 법령	관련 제도	법제 대응 방안	관리·감독 기관
한국은행법,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 규정	소액결제시스템 참가제도 개선	- 재무건전성, 이용실적, 담당인력, 전산접속 기준 등 참가요건의 엄격적용을 통한 금융안정성 확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결제원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가상자산사업자의 지급결제서비스 제공 관련 조치 의무 및 피해구제 제도 마련	- 가상자산을 기초로 한 지급결제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서비스이용자 보호 조치 및 피해구제 제도의 적용 및 기준 마련	금융위원회, 법무부
금융소비자보호법	소액결제 분야 분쟁해결제도 개선	- 금융소비자의 범위에 소액결제시장에서 운영·관리되고 있는 각 지급결제 관련 분쟁에 대한 통합관리 및 분쟁절차 명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비자기본법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마련	- 소액결제서비스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을 마련하여 이용자에 대한 피해구제 강화 필요	한국소비자원
약관규제법	소액결제서비스 표준약관 신설	- 전자금융분야 약관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소액결제서비스 표준약관 신설 필요	공정거래위원회
전자상거래보호법	소액결제 분야 소비자보호지침 신설	- 소액결제 분야 소비자보호지침을 신설하여 이용자 보호를 위한 기준 마련 필요	금융위원회
콘텐츠산업진흥법	온라인플랫폼 및 APP 서비스 운용 기준 마련	-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에 소액결제서비스 내용 신설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통신망법	통신과금서비스 제도 개선	- 소액후불결제제도와 연계한 이용자보호 제도 채택 필요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할부거래법	소액후불결제 제도 연계 규제	- 소액후불결제제도와 통신과금서비스제도와 관련한 할부거래 규제 및 제한 필요	공정거래위원회

근거 법령	관련 제도	법제 대응 방안	관리·감독 기관
	제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액결제시장 변화에 따른 지급결제서비스 관련 규제개선 및 이용자보호와 금융보안 분야 쟁점에 대한 협의체 구성</li> <li>- 지급결제서비스 협의기구(가칭)를 통하여 빠르게 변화하는 소액결제시장에 대한 규제환류체계를 확립</li> <li>- 이용자보호 강화를 통하여 소액결제시장의 신뢰성을 확보</li> <li>- 단기적으로 지급결제서비스 관련 법제의 정비 및 장기적으로 지급결제서비스법(가칭) 제정을 통한 입법상의 정합성 및 체계성 확보</li> </ul>	

전자금융거래에서의 지급수단과 업무유형별로 각 조문을 구성하고 있는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은 그동안 소액결제시장 변화에 따른 다양한 법제적 대응 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하기에 부족한 측면이 있었고, 이용자 편의 제고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다층화된 규제 체계로 규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또한, 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의 보완 및 이에 따른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방향을 살펴보면, 국제적으로 권고되는 일반적인 소비자보호 기준이나 EU에서 제정한 온라인플랫폼 이용자에 대한 보호방안에 비하여 다소 미흡한 점이 많이 발견된다.

따라서, 소액결제시장 변화에 따른 새로운 지급결제유형의 등장이나 온라인플랫폼화 등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하여서는 중장기적으로 지급결제 중심의 법제 개편이 필요할 것이며, 이에 대한 논의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소액결제시장 변화에 따른 지급결제서비스 관련 규제개선 및 이용자보호와 금융보안 분야 쟁점에 대한 협의체로서 지급결제서비스 협의기구(가칭)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규제환류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한국은행의 2019년 『지급결제보고서』 및 금융위원회의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가 9월말까지 공개될 것으로 예정되었음에도 2020년 10월 31일까지 공개되지 않아 해당 내용들을 담을 수 없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논의가 부족하였던 부분은 향후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공개 이후, 법안 논의 과정이나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지급결제법제 관련 후속 연구과제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연구해나갈 예정이다.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참고문헌



## 참고문헌

### <단행본 및 논문>

- 강영기, “일본의 소액결제 관련 제도정비의 최근 동향에 대해서”, 한국법제연구원 지급결제포럼 Kick-off 회의, 2020.6.12.
- 김성웅, “무권한 전자금융거래 사고 사례”, 2020. 8. 7. 한국법제연구원 제4차 지급결제포럼 KeyNote Speech 자료
- 김소이, “전자금융사고 발생유형 및 대응현황”, 「지급결제와 정보기술」, 금융결제원, 2009. 10.
- 소이, “비금융기관의 전자지급결제 부문 진출 현황과 시사점”, 「지급결제와 정보기술」, 금융결제원 전자금융연구소, 2009. 7.
- 김시흥, “전자지급수단의 법적 규제방안”, 가천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12.
- 김자봉, 「지급결제기능과 금융시스템의 안정」, 한국금융연구원, 2010. 12.
- 길재식, “마이 페이먼트(PISP) 전쟁, 한국 금융 인프라 지형도 바뀐다”, IT INSIGHT], 2020. 4. 24.
- 노은영, “중국의 소액결제 관련 이용자 보호정책 추진 현황과 쟁점”, 한국법제연구원 제5차 지급결제포럼, 2020.8.28., KeyNote Speech 자료
- 노은영, “해외 소액결제시장의 변화와 관련 법제 정비 동향(중국)”, 한국법제연구원 제2차 지급결제포럼, 2020.7.10., KeyNote Speech 자료
- 노은영, “중국 비은행 지급결제기관의 모바일결제에 관한 규제 연구”, 『금융법연구』 제16권 제3호, 2019, 금융법학회, 185면.

- 박태준·김민정, “간편결제 서비스의 등장과 카드업 영향분석”, 「CFRI INSIGHT 2020-」, 여신금융연구소, 2020.1.
- 서정호·권흥진, “오픈뱅킹 고도화를 위한 개선방안”, 「오픈뱅킹 개선방안 세미나 자료집」, 한국금융연구원, 2020.
- 손예술, “초연결시대와 안 맞는 ‘망 분리’, 규제 완화 공감대 형성”, ZDNet Korea, 2020. 4. 4.
- 손현욱, “오픈뱅킹 도입 의의와 발전을 위한 제언”, 「오픈뱅킹 도입성과와 발전방향」 세미나 자료, 금융연구원, 2020. 7. 6.
- 송민수, OECD 모바일 및 온라인 결제 소비자정책 지침 제정, 글로벌 소비자정책동향, 제1권 3호, 2014.7.4.
- 송은영·박정현, “우리나라 소액결제시장 혁신을 위한 과제”, 「지급결제조사자료2015-3」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결제연구팀, 2015.
- 송은영·박정현, “2015년 지급수단 이용행태 조사결과 및 시사점”, 「지급결제조사자료 2016-3」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결제연구팀, 2016, 1.
- 안수현, 해외 주요국의 간편결제 서비스 및 입법정책 현황과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 정책연구용역보고서, 2019.11.
- 윤재호·정준호, 금융통신메시지 국제표준 ISO 20022 주요 내용 및 시사점, 지급결제 조사자료 2018-2.
- 이상규, “양면시장의 정의 및 조건”, 『정보통신정책연구』 제17권 제4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0.12.
- 이한진, “전자금융거래의 편리성·안전성 확보를 위한 「금융분야 인증·신원확인 제도 혁신 T/F」 1차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보도자료, 금융위원회, 2020. 6. 8.

- 전상욱, “지급결제 분야 해외 혁신 사례 및 시사점”, 「오픈뱅킹 도입성과와 발전방향」 세미나 자료, 금융연구원, 2020. 7. 6.
- 정영철, “금융산업과 사이버보안정책”, 「금융감독연구」(금융감독원, 2018. 10),
- 정용제, “플랫폼 산업현황 및 우체국 모바일금융 플랫폼 전략”, 「우정정보」, 정보통신 정책연구원, 2017. 9. 20.
- 정은진, “핀테크 산업의 도약을 위한 기점, 오픈뱅킹”, 『동향』 제32권1호 통권696호, 한국콘텐츠진흥원, 2020.1.31.
- 조현아, “국내의 비금융기관의 간편결제서비스 관련 동향 및 시사점”, 「지급결제와 정보기술」 금융결제원 제58호, 2014.
- 채규향, 조민경, 배문선, 신중 전자지급서비스의 확산 및 제약요인과 과제, 금융결제국 전자금융팀, 지급결제 조사자료 2015-2.
- 최지현, 새로운 전자지급서비스의 정착을 위한 입법과제, 경제·산업 분야 입법 및 정책 과제, 통권 3호, 입법조사처, 2016.12.1.
- 현정환, “오픈뱅킹 성공을 위한 핀테크기업의 지급결제시스템 접근성 향상방안”, 지급결제학회지 11권 2호, 한국지급결제학회, 2019.12.
- 금융결제원, 「핀테크 혁신을 위한 전자금융업 제도·산업 개편방안」, 2018.12.
- 금융보안원, 「전자금융 정책 및 감독 선진화를 위한 주요국 사례분석」, 2012.11.
- 한국은행, 「금융위의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중 한국은행 관련사항에 대한 검토의견」, 2019.
- 한국은행, 「한국의 지급결제제도」, 2014.
- 한국은행, 「2019지급결제보고서」, 2019. 9.
- 한국은행, 「2020지급결제보고서」, 2020. 3.
- 한국은행, 「2020지급결제보고서」, 2020. 9. (2020.10.31. 기준 미공개)

## 〈참고 사이트〉

<https://www.assembly.go.kr> 국회 2020.10.20. 최종검색

<https://www.law.go.kr> 법제처 2020.10.20. 최종검색

<https://www.bok.or.kr/portal/bbs/P0000559/view.do?nttId=10058595&menuNo=200690&pageIndex=1> 2020.6.16. 최종검색

<http://www.bok.or.kr/portal/bbs/P0000559/view.do?nttId=10058896&menuNo=200690> 2020.10.5. 최종검색

[http://fsc.go.kr/info/ntc\\_news\\_view.jsp?menu=7210100&bbsid=BBS0030&no=32976](http://fsc.go.kr/info/ntc_news_view.jsp?menu=7210100&bbsid=BBS0030&no=32976) 2020.6.15. 최종검색

<https://www.oecd-ilibrary.org/docserver/5jz432cl1ns7-en.pdf?expires=1601914782&id=id&accname=guest&checksum=C67646929E3F8EA3812F347410B9EAC0> 2020.10.5. 최종검색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Downloads/Gesetze/2017-07-21-G-z-Umsetzung-d-Zweiten-Zahlungsdiensterichtlinie.pdf?\\_\\_blob=publicationFile&v=3](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Downloads/Gesetze/2017-07-21-G-z-Umsetzung-d-Zweiten-Zahlungsdiensterichtlinie.pdf?__blob=publicationFile&v=3) 2020.10.5. 최종검색

[https://elaws.e-gov.go.jp/search/elawsSearch/elaws\\_search/lsg0500/detail?lawId=421AC0000000059](https://elaws.e-gov.go.jp/search/elawsSearch/elaws_search/lsg0500/detail?lawId=421AC0000000059) 2020.10.5. 최종검색

[http://fsc.go.kr/info/ntc\\_news\\_view.jsp?menu=7210100&bbsid=BBS0030&no=32976](http://fsc.go.kr/info/ntc_news_view.jsp?menu=7210100&bbsid=BBS0030&no=32976) 2020.6.15. 최종검색

[http://www.fsc.go.kr/info/ntc\\_news\\_view.jsp?menu=7210100&bbsid=BBS0030&no=34066](http://www.fsc.go.kr/info/ntc_news_view.jsp?menu=7210100&bbsid=BBS0030&no=34066) 2020.10.5. 최종검색

[http://www.fsc.go.kr/info/ntc\\_news\\_view.jsp?menu=7210100&bbsid=BBS0030&no=34066](http://www.fsc.go.kr/info/ntc_news_view.jsp?menu=7210100&bbsid=BBS0030&no=34066) 2020.10.5. 최종검색

- <https://www.fnnews.com/news/201501271514474131> 2020.10.5. 최종검색
- [http://it.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24/2020072403829.html](http://it.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24/2020072403829.html)  
2020.10.5. 최종검색
- <https://toss.im/terms/> 2020.10.5. 최종검색
- <http://www.eneu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17770>  
2020.10.5. 최종검색
-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0072702100858065001](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0072702100858065001)  
2020.10.5. 최종검색
- <http://www.eneustoday.co.kr> 2020.10.5. 최종검색
- <https://www.sentv.co.kr/news/view/579796>, 2020.10.5. 최종검색
- <https://www.boannews.com/media/view.asp?idx=85528>, 2020.10.5. 최종검색
- [http://m.ddaily.co.kr/m/m\\_article/?no=196215](http://m.ddaily.co.kr/m/m_article/?no=196215), 2020.10.5. 최종검색
- [http://www.fsc.go.kr/info/ntc\\_news\\_view.jsp?menu=7210100&bbsid=BBS0030  
&no=33724](http://www.fsc.go.kr/info/ntc_news_view.jsp?menu=7210100&bbsid=BBS0030&no=33724), 2020.10.5. 최종검색
-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A32019R1150>,  
2020.10.5. 최종검색
- <https://www.meti.go.jp/press/2019/02/20200218001/20200218001.html>  
2020.10.5. 최종검색
-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X2V0N0G7Z1V3V  
1S3V4H3A3A1D2K7Y7](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X2V0N0G7Z1V3V1S3V4H3A3A1D2K7Y7) 2020.10.5. 최종검색
- [https://www.europeanlawinstitute.eu/projects-publications/completed-projects  
-old/online-platforms/](https://www.europeanlawinstitute.eu/projects-publications/completed-projects-old/online-platforms/) 2020.10.5. 최종검색

<https://www.fcc.gov/consumers/guides/keibeul-yogeum-ceongguseoe-daehan-sobija-boho> 2020.10.5. 최종검색

<https://tech.sina.com.cn/i/2013-07-05/20168512514.shtml> 2020.10.20. 최종  
검색

연구보고 20-07  
소액결제시장 변화에 따른  
법제 대응방안 연구

2020년 10월 28일 인쇄  
2020년 10월 31일 발행

발행인 | 김 계 흥

발행처 | 한국법제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15  
(반곡동, 한국법제연구원)  
전화 : (044)861-0300

등록번호 | 1981.8.11. 제2014-000009호

홈페이지 | <http://www.klri.re.kr>

값 11,000원

1. 본원의 승인없이 전재 또는 역재를 금함. ©
2. 이 보고서의 내용은 본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

ISBN : 979-11-90802-70-3 93360





## 김 명 아(책임)

### 학 력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박사  
(현)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 연구실적 및 논문

기술혁신에 따른 금융안정 법제 연구  
금융감독 시범사업 수행에 관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벤처투자촉진법 제정에 따른 벤처투자산업 활성화  
방안 도출을 위한 연구  
국제 통상 투자 법제 연구(I)

# KLRI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9 791190 802703	 9 3360
--	---	--	---

ISBN 979-11-90802-70-3

값 11,000원